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4. 12

제 2 권

1. 정예농수산인력 육성
2. 농업생산기반정비
3. 경영규모확대
4. 농업기계화

농림부 도서실



0001241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4. 12

제 2 권

1. 정예농수산인력 육성
2. 농업생산기반정비
3. 경영규모확대
4. 농업기계화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241

등록일: 2004년 7월 21일

기증:

농림수산부

일 러 두 기

1.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수산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 1권의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에는 각종사업들의 절차와 방법이 2~4권에는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해당 사업의 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찾아보시면 됩니다.
3. 사업계획수립 안내기관은 농·어촌지도소, 시·군, 읍·면, 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농·수·축·임협으로 지정되었으니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4. 축산발전기금사업 등 '95년도 시도별 배분액이 일부사업은 잠정치로써 그 사실이 개별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 별	내 용
총 괄 편	제1권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훈령 제 801호)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3. 참고자료 (농어촌투융자계획, 정책자금대출안내, 농지전용안내등)
세 부 사 업 지 침	제2권	1. 정예농수산인력 육성 2. 농업생산기반정비 3. 경영규모확대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사업) 4. 농업기계화
	제3권	5. 품목별시설 현대화 (원예, 축산, 잠업, 특용작물) 6. 기술개발·보급
	제4권	7.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8. 소득원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9. 임업·산촌지원사업 10. 어업·어촌지원사업

목 차

〈총괄편〉

내 용	권	쪽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훈령 제801호)	제 1 권	17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	67
3. 참고자료	"	97
① 농림수산사업 추진 흐름도	"	99
② 농어촌 투융자계획		
- 42조원 조기투융자계획	"	102
- 농어촌 특별세 투융자계획	"	107
③ 농림수산 정책자금대출 안내	"	110
④ 농지전용 허가·신고 안내	"	122
⑤ 농업용시설 건축 허가·신고 안내	제 1 권	127

〈세부사업별〉

※ 표시예) 농어민자율추진사업 : 자율
 공공계획추진사업 : 공공계획

세 부 사 업 명	권	쪽
1. 정예농수산인력육성	제 2 권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자율)	〃	19
○ 전업농어가 육성(자율)	〃	62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 발작물 과수 화훼 특작 어업 축산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어가 교육훈련(공공계획) ... ○ 선도농어가 지원(공공계획) ○ 농업전문인력 양성(공공계획)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공공계획) ○ 농지관리위원 교육(공공계획) ○ 농업전문대학 지원(공공계획) ○ 농업기술전문학교설립 지원(공공계획) ○ 농과대학 시설장비 지원(공공계획) ○ 자영농수산고 육성지원(공공계획) ○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공공계획) </div> </div>	〃	104
	〃	107
	〃	116
	〃	122
	〃	124
	〃	127
	〃	128
	〃	130
	〃	133
	〃	136
2. 농업생산기반정비	〃	
○ 10ha미만 농지개발사업(자율)	〃	141
○ 농지 생산기반종합정비 조사사업(공공계획) ...	〃	144
○ 농어촌용수개발 일반사항	〃	149
○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공공계획)	제 2 권	153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 (공공계획)	제 2 권	163
○ 보강(지표수)개발사업(공공계획)	"	168
○ 지하수개발사업(공공계획)	"	185
○ 지하수조사(수맥조사)사업(공공계획)	"	191
○ 제주도 지하수개발(공공계획)	"	195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계획)	"	201
○ 발기반정비사업(공공계획)	"	217
○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공공계획)	"	234
○ 방조제 개보수사업(공공계획)	"	240
○ 저수지건설사업(공공계획)	"	262
○ 수해복구사업(공공계획)	"	267
○ 경지정리사업(공공계획)	"	271
○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공공계획)	"	283
○ 배수개선사업(공공계획)	"	287
○ 서남해안간척사업(공공계획)	"	320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공공계획)	"	332
3. 경영규모확대	"	
○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자율)	"	343
{ 농지매매사업	"	
{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	
{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제 2 권	

세 부 사 업 명	권	쪽
4. 농업기계화	제 2 권	
○ 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	439
○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자율)	〃	481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설치 지원(자율)	〃	499
○ 농업기계 기술훈련(공공계획)	〃	503
○ 농업기계 사후관리(공공계획)	〃	511
○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공공계획)	〃	530
○ 시설농업기자재생산 지원(공공계획)	〃	534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공공계획)	제 2 권	536
5. 품목별 시설현대화	제 3 권	
(1) 원예작물생산·유통지원	〃	
○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19
○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40
○ 고냉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48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54
○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74
○ 고품질 우량채소종자 개발·보급지원(공공계획) ...	〃	92
○ 채소 유통활성화사업(공공계획)	〃	97
○ 화훼수출용 유통시설 지원(공공계획)	제 3 권	100

세 부 사 업 명	권	쪽
(2) 축산 경쟁력제고 지원	제 3 권	
○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05
○ 한우 특화사업(자율)	"	119
○ 경주마 생산지원 사업(자율)	"	122
○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26
○ 돼지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34
○ 닭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40
○ 축산단지조성 사업(자율)	"	146
○ 기타 가축육성 사업(자율)	"	153
○ 가축계열화 사업(공공계획)	"	156
○ 축산농가 해외연수(공공계획)	"	163
○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공공계획)	"	173
○ 양돈 기술교육 시설지원(공공계획)	"	177
○ 축산경영개선 상담 및 지도(공공계획)	"	178
○ 축산경영진단 지도(공공계획)	"	179
○ 축산물 생산비 조사(공공계획)	"	180
○ 한우 개량단지 사업(공공계획)	"	181
○ 강화도 한우육용화 사업(공공계획)	"	194
○ 가축 인공수정 사업(공공계획)	"	196
○ 학교 우유급식(공공계획)	"	199
○ 사료제조시설 지원(공공계획)	"	204
○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공공계획) ...	"	208
○ 국내산 및 수입축산물중 유해잔류물질 공동조사사업(공공계획)	제 3 권	216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가축방역사업(공공계획)	제 3 권	218
○ 축산분뇨처리시설(공공계획)	"	264
○ 공수의 위축(공공계획)	"	274
○ 동물병원 시설개선자금 지원(공공계획)	"	279
(3) 경종농업지원	"	
○ 토양개량제 공급(자율)	"	282
○ 어린모 공동육묘장설치 지원(자율)	"	287
○ 공동 퇴비제조장설치 지원(자율)	"	292
○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자율)	"	298
○ 객토사업(자율)	"	304
○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자율)	"	308
○ 감자 원종 망실재배(자율)	"	314
○ 생산비 절감 및 농산시책 종합시장(공공계획).....	"	323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지원(공공계획)	"	328
○ 공동·항공방제(공공계획)	"	330
○ 유채 차액보상(공공계획)	"	337
(4) 잠업·특용작물 지원	"	
○ 잠업종합단지 조성(자율)	"	340
○ 잠종생산(자율)	"	345
○ 특작생산·유통사업 지원(자율)	"	348
○ 원잠종 생산(공공계획)	제 3 권	357

세 부 사 업 명	권	쪽
6. 기술개발·보급	제 3 권	
○ 현장애로 기술개발(공동계획)	〃	363
○ 첨단기술 개발사업(공공계획)	〃	368
○ 농림수산 정보화사업 지원(공공계획)	〃	373
○ 농지전산화 사업(공공계획)	〃	377
○ 농어촌개발 시험연구 사업(공공계획)	〃	381
○ 축산종합개발센터 건립(공공계획)	〃	383
○ 축산사업 교육·홍보(공공계획)	〃	385
○ 축산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공공계획)	〃	388
○ 세계축산학회개최 지원(공공계획)	〃	401
○ 양계박람회개최 지원(공공계획)	〃	403
○ 양돈박람회개최(공공계획)	〃	404
○ 축산설계도 개발보급(공공계획)	〃	405
○ 한우 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06
○ 한우 고급육생산기술 개발시험(공공계획)	〃	411
○ 한우 고급육생산사업 사후관리(공공계획)	〃	413
○ 한우개량 추세조사(공공계획)	〃	415
○ 젖소 후대검정 사업(공공계획)	〃	416
○ 젖소 산유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19
○ 돼지 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22
○ 닭 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24
○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사업(공공계획)	제 3 권	426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국산종계 개발 지원사업 사후관리(공공계획) ...	제 3 권	428
○ 종축 등록사업(공공계획)	“	429
○ 가축개량 신기술보급 사업(공공계획)	“	431
○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공공계획)	“	436
○ 가축개량기관 전산망구축 사업(공공계획)	“	437
○ 유해잔류물질검사 장비지원(공공계획)	“	439
○ 축산물검사원 교육(공공계획)	“	440
○ 원유검사장비(세균수·체세포수검사기) 지원 (공공계획)	“	442
○ 원유검사장비 검증(공공계획)	“	443
○ 수의사 연수교육(공공계획)	“	445
○ 사료기술연구소 지원(공공계획)	“	446
○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치(공공계획)	“	447
○ 농업특정연구개발 사업(공공계획)	“	451
○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공공계획) ...	“	453
○ 지역특화 시범사업(공공계획)	“	456
○ 지도시설·장비 지원(공공계획)	“	460
○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공공계획)	“	464
○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공공계획)	“	468
○ 잠상지역 적응시험(공공계획)	“	470
○ 도농촌진흥원 연구기반조성(공공계획)	“	472
○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공공계획)	제 3 권	474

세 부 사 업 명	권	쪽
7.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제 4 권	
(1) 유통구조개선	"	
○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자율)	"	19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자율)	"	28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자율)	"	38
○ 쌀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공공계획)	"	51
○ 농산물공판장 건설(공공계획)	"	62
○ 청과물종합처리장 건설(공공계획)	"	67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공공계획)	"	79
○ 농수산물 포장센터 건설(공공계획)	"	94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공공계획)	"	108
○ 공동규격출하 촉진사업(공공계획)	"	112
○ 매취사업 지원(공공계획)	"	122
○ 농협 유통사업 지원(공공계획)	"	124
○ 생산자(단체)출하조절 지원(공공계획)	"	127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조직(공공계획)	"	128
○ 출하촉진자금 지원(공동계획)	"	130
○ 축산 관측사업(공공계획)	"	132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공공계획)	"	136
○ 기타가축 생산물 수매사업(공공계획)	"	140
○ 축산업 자조금 지원사업(공공계획)	"	142
○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공공계획)	제 4 권	143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축산물공판장 건설(공공계획)	제 4 권	145
○ 위생도축시설 확충(공공계획)	“	146
○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사업(공공계획)	“	150
○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 사업(공공계획)	“	162
○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공공계획)	“	164
○ 가축시장 정비(공공계획)	“	170
○ 축산물 등급제 판정(공공계획)	“	172
○ 축산물공판장 출하활성화 자금(공공계획)	“	175
○ 쇠고기 수입(공공계획)	“	176
○ 돼지고기 수매(공공계획)	“	177
○ 닭고기·계란 수매(공공계획)	“	179
○ 한우 유통활성화 자금(공공계획)	“	181
○ 군납 출하조절 작업(공공계획)	“	185
○ 축산물가격 및 유통량 조사(공공계획)	“	186
○ 소·돼지도체 및 부위별 수출조사(공공계획) ...	“	187
○ 축산물 가격안정대 자금(공공계획)	“	188
○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공공계획)	“	189
○ 축산물 작업장지도 및 검사업무감독강화(공공계획)...	“	195
○ 원유위생관리 강화(공공계획)	“	197
○ 축산물위생용기 관리개선(공공계획)	제 4 권	199

세 부 사 업 명	권	쪽
(2) 가공지원	제 4 권	
○ 도계장 시설현대화 및 도축·도계부산물처리시설지원(자율)	”	200
○ 임도정공장 통폐합(자율)	”	202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공공계획)	”	205
○ 유가공시설 지원사업(공공계획)	”	263
○ 부분육 가공공장 건설(공공계획)	”	266
○ 육가공시설 지원(공공계획)	”	267
○ 계란가공·유통시설 지원(공공계획)	”	269
(3) 수입관리 및 수출지원	”	
○ 해외(싱가폴)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공공계획)	”	270
○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 지원(공공계획)	”	273
○ 해외시장 정보사업(공공계획)	”	277
○ 해외시장 개척사업(공공계획)	”	282
○ 농산물 비축 및 수출수매지원(공공계획)	”	286
○ 벌꿀 수입(공공계획)	”	292
○ 과실·화훼 판매촉진 사업(공공계획)	”	293
○ 과실수출업체 시설자금 지원(공공계획)	”	297
○ 돼지고기 고급육생산 지원(공공계획)	제 4 권	299

세 부 사 업 명	권	쪽
8. 소득원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제 4 권	
○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자율)	〃	317
○ 휴양단지개발 사업(자율)	〃	345
○ 관광농원개발 사업(자율)	〃	357
○ 농어촌 민박마을조성 사업(자율)	〃	386
○ 관광목장 조성(자율)	〃	395
○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자율)	〃	400
○ 농공단지 조성(공공계획)	〃	405
○ 농어촌 특산품판매장 설치(공공계획)	〃	415
○ 농업경영자금 지원(공공계획)	〃	418
○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공공계획)	〃	422
○ 일반정주권개발 사업(공공계획)	〃	434
○ 집단마을조성 사업(공공계획)	〃	450
○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공공계획) ...	〃	462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공공계획)	〃	470
○ 양축자금 지원(공공계획)	〃	474
○ 축산운영자금계정 지원(공공계획)	〃	478
○ 재해대책(공공계획)	제 4 권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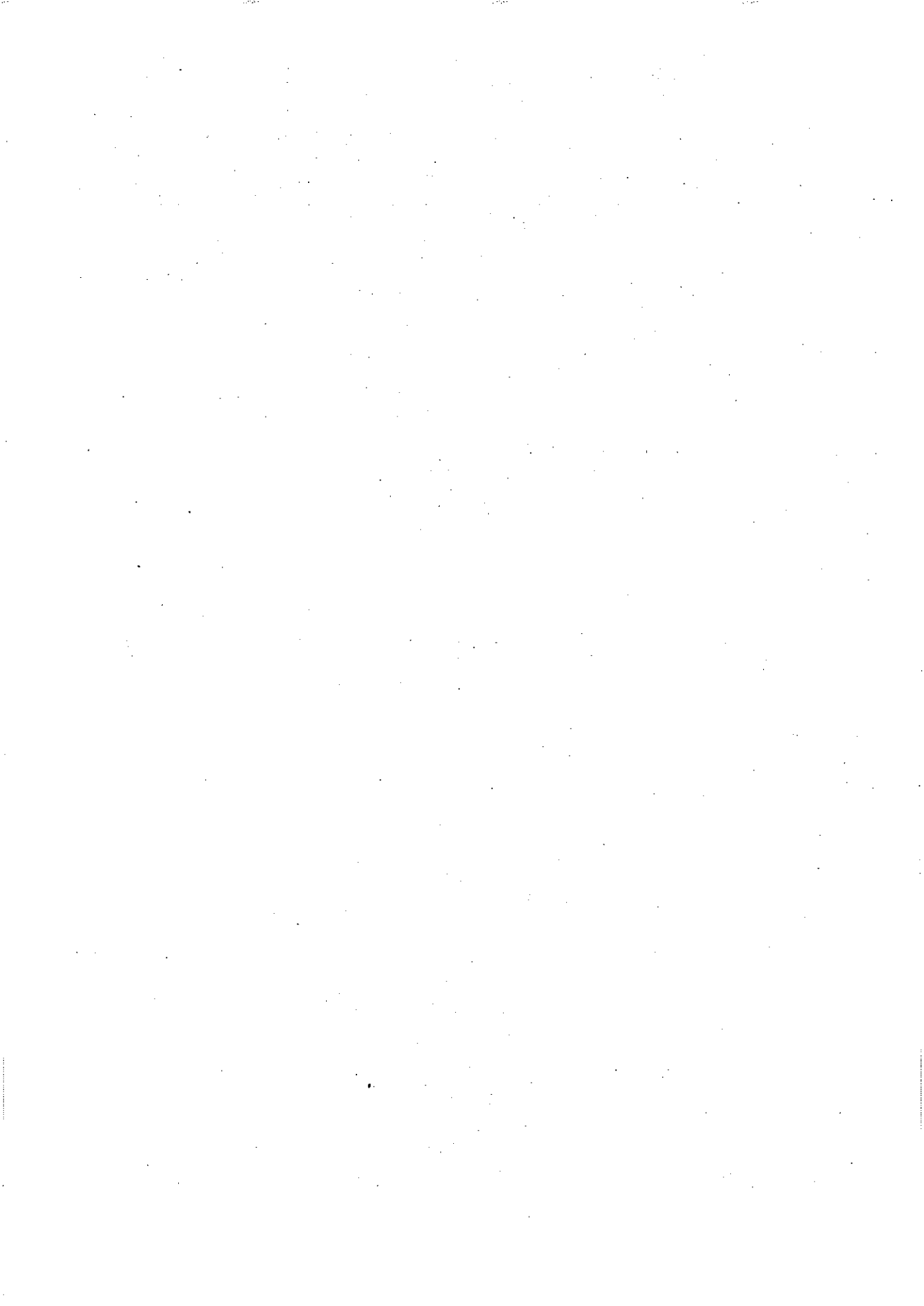
세 부 사 업 명	권	쪽
9. 임업·산촌지원사업	제 4 권	
(1) 임업인력 육성	"	
○ 임업후계자 육성(자율)	"	487
○ 산림개발사업단 및 작업단(공공계획)	"	491
○ 임업기능인 훈련(공공계획)	"	494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	
○ 민유림 조림사업(자율)	"	496
○ 민유림 육림사업(자율)	"	500
○ 간벌(자율)	"	504
○ 조림용 묘목생산(공공계획)	"	507
○ 산림 병해충방제(공공계획)	"	510
(3) 임업경영기반 확충 및 기계화	"	
○ 사유림 협업경영(자율)	"	514
○ 산림 경영장비지원(자율)	"	517
○ 임도시설(자율)	"	520
○ 국유림 확대 집단화(공공계획)	"	523
○ 영림계획(공공계획)	"	527
(4) 환경임업의 육성	"	
○ 사방사업(공공계획)	"	530
○ 산림환경기반조성(공공계획)	제 4 권	534

세 부 사 업 명	권	쪽
(5) 입산물생산·유통·가공	제 4 권	
○ 단기소득 입산물생산 및 시설(자율)	〃	536
○ 조경수·분재 소재생산(자율)	〃	539
○ 임목생산사업(자율)	〃	542
○ 입산물가공이용시설 지원(자율)	〃	543
○ 입산물이용 원자재구입 자금(자율)	〃	545
○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자율)	〃	547
○ 밤 저장시설(자율)	〃	549
○ 평 이용가공시설(자율)	〃	551
○ 입산물 유통구조개선(공공계획)	〃	553
○ 입산물 포장개선(공공계획)	〃	556
○ 표고 종균생산시설(공공계획)	〃	558
○ 입산물종합처리장 설치(공공계획)	〃	560
(6) 산지의 관광자원	〃	
○ 자연휴양림 조성(자율)	〃	562
○ 산림박물관 건립(공공계획)	〃	565
○ 지방수목원 조성(공공계획)	〃	567
○ 산촌종합개발(공공계획)	〃	569
○ 산림종합전시관 건립(공공계획)	〃	571
(7) 기타	〃	
○ 산지이용체계 개편(공공계획)	〃	573
○ 해외 산림개발(공공계획)	제 4 권	576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임업기술지도(공공계획)	제 4 권	578
○ 임업기술개발(공공계획)	"	580
○ 임업협동조합 육성(공공계획)	"	582
○ 산불방지 대책(공공계획)	"	584
○ 헬기운영(공공계획)	"	586
○ 야생조수 보호(공공계획)	"	587
○ 산지정화(공공계획)	"	591
○ 간벌재(소경재)활용장비 지원(공공계획)	"	592
○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공공계획)	"	594
○ 임업통계조사(공공계획)	"	596
○ 특정연구개발(공공계획)	"	598
○ 임업기술전문학교 설립(공공계획)	"	599
10. 어업·어촌지원사업	"	
(1) 수산자원 조성	"	
○ 내수면 어업개발(자율)	"	603
○ 수산 양식사업(자율)	"	604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공공계획)	"	605
○ 어장 환경정화 사업(공공계획)	"	606
○ 어항조성(공공계획)	"	607
○ 수산자원 조성(공공계획)	"	608
○ 지도선 건조사업(공공계획)	"	609
○ 굴 패각처리공장 건립(공공계획)	제 4 권	610

세 부 사 업 명	권	쪽
(2) 기계화·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제 4 권	
○ 경제성 어선건조(자율)	“	611
○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자율)	“	612
○ 어선기관대체(자율)	“	613
○ 노후어선대체(자율)	“	614
○ 어선용 기계공급(자율)	“	615
○ 양식용 기자재공급(자율)	“	616
○ 어선용 기자재생산업체 지원(공공계획)	“	617
○ 수산기술개발 사업(공공계획)	“	618
(3) 수산물 유통 및 가공	“	
○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자율)	“	619
○ 수산물유통보급 시설(자율)	“	620
○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자율)	“	621
○ 수산물처리·저장 시설(자율)	“	622
○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조성(공공계획)	“	623
○ 수산물가공업체운영 자금(공공계획)	“	624
(4) 소득원다양화와 생활환경개선	“	
○ 어촌관광개발 사업(자율)	“	625
○ 어촌종합개발 사업(공공계획)	“	626
○ 어민복지회관 건립(공공계획)	제 4 권	627

1. 정예농수산인력육성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자율)

1. 목 적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어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어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도모

2. 방 침

- 가. 농어민후계자 선발대상 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 나. 영농어정착지원자금을 확대하되 개인별 영농어사업계획을 기초로 사업자금 지원
- 다. 농어민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영지도·사후관리
- 라. 미혼여성의 농어촌 정착 유도
- 마. 품목별로 후계자 선정

3. 향후 추진 방향

가. 추진방안

향후 농어촌인력육성체계는 정착단계, 육성단계, 자립안정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지원(기존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제도도 이 체계에 흡수시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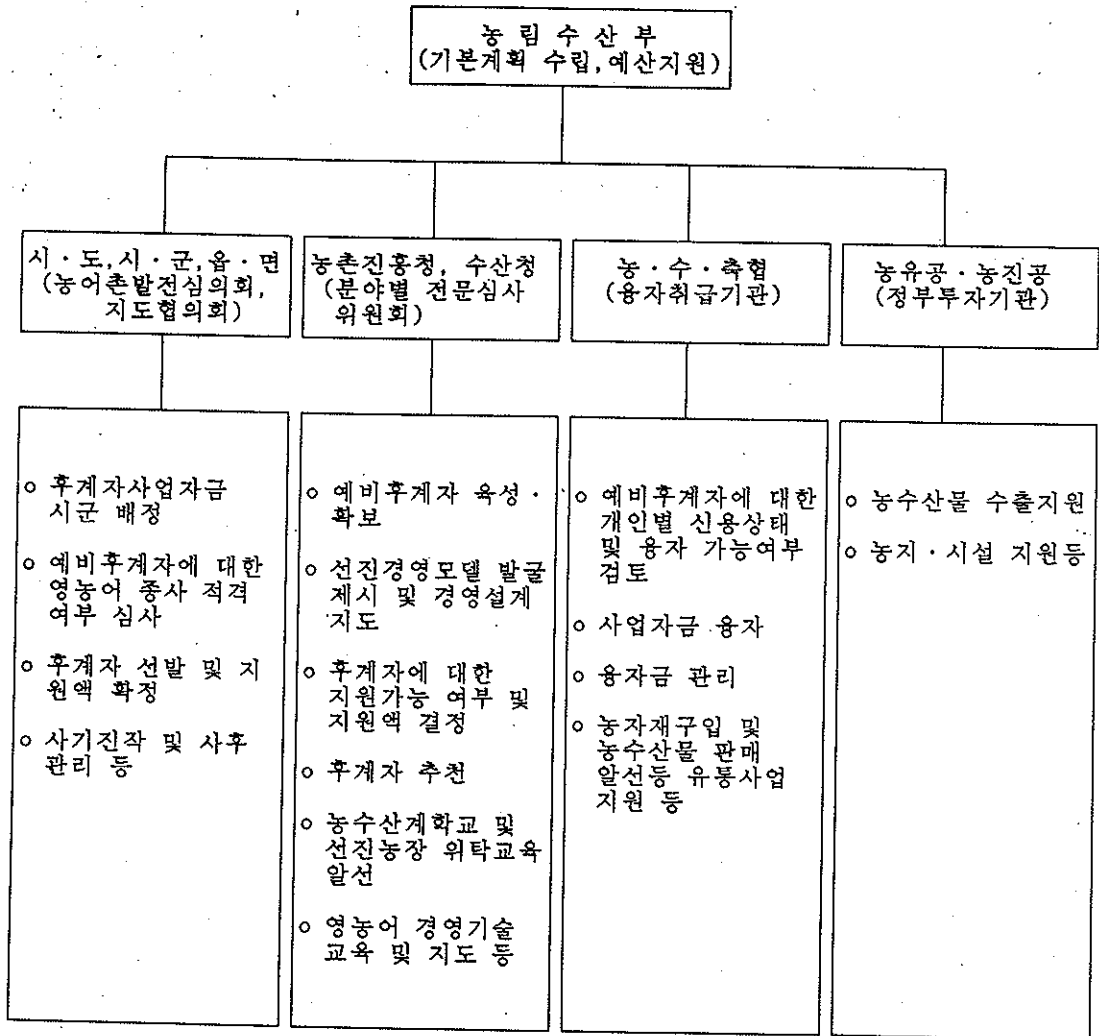
- (1) 정착단계 : 예비후계자 및 후계자의 정착지원
- (2) 육성단계 : 전업농어가 등 발전가능 농어가 지원
- (3) 자립안정단계 : 선도적인 전업농 또는 선도농어가 지원

나. 연도별 지원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년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담
'95	10,000	200,000	-	-	200,000	-
'96	10,000	200,000	-	-	200,000	-
'97	10,000	200,000	-	-	200,000	-
'98	10,000	200,000	-	-	200,000	-
'99~2004	60,000	1,800,000	-	-	1,800,000	-
계	100,000	2,600,000	-	-	2,600,000	-

4. 사업추진체계



5. 세부 실시 요령

가. 예비후계자 육성

(1) 신청대상

-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 현재 32세 미만인 자
(단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관련조항 개정시부터 예비후계자 등록을 받도록 함)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음

* 매년 1세씩 낮추어 '97년부터는 30세 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임

(2) 신청·접수

-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예비 후계자 신청서", "영농어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영농어 정착 예정 지역 시·군 농(어)촌지도소에 년중 수시로 신청(별지 제 1·2호 서식 참조)
- 신청받은 농(어)촌지도소장은 신청접수 순서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후계자 신청대장에 기록 관리
- 농(어)촌지도소장은 품목별로 선진 경영모델을 제시하여 예비후계자들이 영농어사업계획서 작성시 참작토록 하고 전문 지도사로 하여금 경영설계에 대해 지도 및 상담토록 조치

(3) 교육·훈련

- 농(어)촌지도소장은 등록된 예비후계자에 대하여 농어업에 대한 기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영농어기술교육, 선진농(어)장 및 농수산계학교 위탁교육 등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

(4) 예비후계자 신청현황 보고

- 시·군 농(어)촌지도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년도 12월말 현재 예비후계자 등록 현황을 익년도 1.20까지 계통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 및 수산청장은 이를 시·도별로 집계하여 매년 1.3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나. 농어민후계자 육성

(1) '95년도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계획

- 지원자금 : 2,000억원
- 지원대상분야

업종별	사업작목	지원대상사업내역
농업	경종(수도),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수경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대형농기계, 기타 농업기반시설
축산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축산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초지조성, 사료포조성, 대형농기계,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시설
수산	어선어업, 축양어업, 양식어업, 종묘배양, 수산물가공등	어선건조, 어선구입, 어선개보수, 어구·종묘(패)구입, 양식자재, 양식장 신축 및 시설개선, 어장구입, 어업시설장비, 저장시설, 가공시설, 기타 수산기반시설

(2) 시·도별 사업자금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자 금 지 원 계 획			비 고
	합 계	농 민	어 민	
합계	200,000	185,000	15,000	
서울	210	210	-	
부산	810	450	360	
대구	300	300	-	
인천	180	180	-	
광주	1,500	1,500	-	
대전	480	480	-	
경기	21,960	21,390	570	
강원	12,270	11,430	840	
충북	12,690	12,600	90	
충남	27,120	25,770	1,350	
전북	22,170	21,360	810	
전남	35,370	28,440	6,930	
경북	33,450	32,670	780	
경남	27,840	25,320	2,520	
제주	3,650	2,900	750	

(3) 지원조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
- 1인당 지원액 : 15백만원부터 30백만원까지
- 금 리 : 연리 5%
- 용자기간 : 10년, 5년거치 5년균분상환

(4) 시·군별 지원자금 배정

- 시·도지사는 각 시·군이 수립한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상의 농어민후계자 육성계획과 예비후계자수 및 농(어)가 호수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자금지원계획을 시장·군수에게 배정
- 시장·군수는 배정내역을 농(어)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함

(5) 지원대상자 자격 및 신청요령

○ 지원대상자 자격

- '94.3월말까지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로서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93년도 이전 농지구입자금(농지관리기금) 지원대상자 중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후계자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한 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로서 '95.1.1 현재 40세 미만에 해당하고 농(어)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단체(작목반, 영농조합, 참다래협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영농어사업계획과 동일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품목별 단체장이 농(어)촌지도소장에게 추천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품목별 단체장은 소속 단체에서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음)

※ 품목별 단체란

- 농(어)촌지도소 및 농협·축협·수협이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단체
- 법인 또는 회사로 등록·등기한 단체
- 기타 회원명부, 회칙 등을 갖춘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서 농(어)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단체

- 영농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로서 '95.1.1 현재 40세 미만에 해당하고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영농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30세 미만('95.1.1현재)의 미혼여성으로서 본인이 신청한 자

○ 신청요령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및 영농어사업계획서를 자필로 작성 '95. 1.15까지 사업장 관할 시·군농(어)촌지도소에 제출(별지 제1·2호서식)

(6) 평가기준

- 다음 평가기준에 의거 총 점수가 높은 자를 기준으로 추천순위를 정하되 평가기준상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 여성을 우선 추천 (영농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에 대한 평가방법은 추후 시달)

(총 600점)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어정착의욕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도협의회에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100점, 중: 60점, 하: 10점 * 상: 영농어에만 종사 및 발전가능 확실 중: 영농어에만 종사가능하나 발전가능 불확실 하: 영농어종사정도 미약 및 이농소지 농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읍·면)과 농어촌지도기관 공무원이 공동으로 영농어 정착의욕 및 발전가능성을 현지 확인한후 읍·면지도협의회에 보고
농수산계 학력 및 영농어교육 훈련(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계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계 대학졸업자: 100점 - 농수산계 전문대학 졸업자 : 90점 - 자영농수산과(자영농고, 농수고중 자영농과·자영수산과) 졸업자 : 80점 - 농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70점 - 기 타 : 60점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 50점 - 3개월 이상 : 30점 - 1개월 이상 : 1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수산청, 각도, 농·축·수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 수산청이 인정한 독농어가농어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수산계 학교부설 영농어 훈련기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어 경력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어 경력(영농 4-H 경력 포함) -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1년 미만은 10점)하되, 4H경력은 15점씩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계 학교(농수산계 학과 포함) 졸업자는 재학기간의 50%를 영농어 경력으로 인정함. ○ 기존 여성에 대한 영농어 경력 평가시는 혼인전 영농어 종사 경력도 포함.
영농어 기반 (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어 기반 보유 - 2.0ha이상 : 150점 - 1.5 ~ 2.0ha미만 : 120점 - 1.0 ~ 1.5ha미만 : 90점 - 0.5 ~ 1.0ha미만 : 60점 - 0.5ha미만 : 30점 * 본인·배우자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은 100% 영농어기반으로 인정 * 농지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임차 농지는 50%를 영농어 기반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2) ○ 영농어기반이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배점(15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어기반 전부가 있는 경우 : 50점 - 영농어기반의 50%이상 있는 경우 : 30점 * 농경지는 농업, 축산분야의 영농어 기반으로 인정.
영농어 사업 계획(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어사업계획의 타당성·치밀성 및 발전 가능성 - 20점 단위로 5등급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 - 평가사항 농어촌발전심의회 상정

(7) 선정절차

- 농(어)촌지도소장은 "(5)"항에 해당하는 자 전원에게 대하여 후계자신청서, 영농어사업계획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영농어기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명단 및 관련서류를 '95.1.23까지 신청인사업장 주소지 읍·면에 통보(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읍·면장은 읍·면 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어)촌지도소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영농어기반 및 영농어 경력 유무 등을 현지 확인한 후 읍·면 지도협의회에서 영농어사업계획서, 영농어 정착의욕 및 발전가능성, 사업자금 지원타당성, 개인별 신용도 및 사업자금 용자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평가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95.2.10 까지 농(어)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하되 여성에 대하여는 개인별 평가시 50점 가산(이 경우 단위 농협 등 용자취급기관에서는 개인별 신용도 및 용자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읍·면지도협의회에 통보)

< 읍면 지도 협의회 구성 >

- 읍·면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 농(어)촌 지도소장이 지정하는 읍·면담당 농어촌지도공무원
 - 단위농협등 용자 취급기관의 관련자
 - 선도농어가 3인 등 총6인이내(읍·면 농어민후계자 대표 1인 이상포함)
- ※ 읍·면지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어민에 대하여는 어업관련 기관과 어민이 참석하여 심의

- 농(어)촌지도소장은 분야별(농업·축산·어업)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장이 통보한 읍·면 지도협의회 심사자료, 영농어사업계획서,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기준에 의한 개인별 평가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95.2.20까지 시장·군수에게 추천 <농(어)촌지도소장은 여성에 대한 가점 사항 확인>

- * 시 지역의 농(어)촌지도소장은 읍·면 지도협의회 심의사항을 시의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의토록 하되, 영농어정착의욕, 개인별 신용도 등을 사전 조사
- *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는 개인별 사업자금 지원금액 결정시 분산지원(나누어 먹기식)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영농어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농(어)촌지도소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회 〉

- 시·군 농(어)촌지도소 전문지도사
- 농과계 학교 교사 또는 교수
- 분야별 선도농어가 4인등 총 6인이내
(관할구역내의 농어민후계자 대표 2인 이상 포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도소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된 시·군별 사업자금 지원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95.2.28까지 최종확정하되, 영농어사업계획서,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여론, 지역사회발전기여도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이 경우 자영농수산고(과) 졸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 선정)
- 품목별, 전업농 육성인원(쌀 10천호, 축산 3천호, 원예·특작·어업 등 2천호)과 연계하여 품목별로 적정인원을 선발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 *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농(어)촌지도소장이 자체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농어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농어민후계자 추천·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위탁영농회사등 농어업분야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업 종사자로 봄)

(8) 선발결과와 통보 및 보고

- 시장·군수(특별시, 직할시는 농어촌지도소장)는 선발된 자의 명단과 지원액을 도, 농(어)촌지도소, 용자취급 기관에 '95.3.5까지 통보 및 보고(별지 제 6호 서식 참조)
- 농(어)촌지도소장은 선발된 자에게 개별통지 및 사업자금 용자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사항을 안내
- 도지사(특별시, 직할시는 농어촌지도소장)는 '95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작성 '95.3.12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시·군별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만 집계하여 보고)

(9) 농어민후계자 교육 훈련

- 농어민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어)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어기술 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자금을 용자 받을 수 있음
- 농(어)촌지도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후계자로 선발된 자에게 영농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교육훈련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업자금을 용자 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도소장은 후계자로 선발된 자가 영농어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본인의 영농어 사업계획에 따라 선진농어가 및 농수산계 학교 위탁교육, 농(어)촌지도기관의 영농어 기술교육 등을 실시(경중 등 위탁 교육실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지도소장이 집합교육훈련을 1주이상 실시토록 하며 교육훈련 예산부족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생 자부담으로 함)
- 교육훈련 실시
 - 교육주관 : 농(어)촌지도기관
 - 교육방법 : 농(어)촌지도기관의 자체계획에 의한 집체 및 위탁교육
 - 교육대상 : '95년도에 선정된 농어민후계자
 - 교육과정

구분	공 통 교 육	영농어 기술 교육
기간	2 ~ 5일	1주이상
장소	농(어)촌지도기관	선도농어가, 농수산계학교, 농(어)촌지도기관 등
내용	정착의지, 농정시책, 지역농어업 발전방향, 경영설계와 진단 요령 등	분야별 전문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방법	강의, 사례발표 등	전문지도자 수시 방문지도, 선도농어가 실습지도, 교사전문기술지도등

○ 실시요령

- 선도농어가 위탁교육은 본인이 희망하는 해당작목의 선도농어에게 맡도록 하고, 동일 군내 해당작목의 선도농어가 없을 경우 도단위 농(어)촌지도기관과 협의 인근 군내 선도농어를 알선
- 선도농어가 위탁교육기간은 "개인별 영농어 경영기술수준별 기간표"를 참고하여 본인 및 선도농어와의 협의를 거쳐 농(어)촌지도소장이 결정
- 선도농어가 위탁교육기간중 합숙여부는 본인이 희망하고 선도농어가 동의할 경우 합숙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생 자부담
- 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수산청장이 동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

※ 개인별 영농어 경영기술수준별 위탁교육기간표

1 주	2 주	3 주	4 주
○ 1년 이상 2년 미만 영농어사업계획상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영농어사업계획상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최근 6개월 이상 영농어사업계획상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 본인이 희망하는 자

○ 영농어기술교육 면제(공통교육 제외)

- 영농어 사업계획상의 분야와 동일한 농수산계학교(대학, 전문대, 고교 등)졸업자
 - 최근 2년이상 영농어사업계획상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림수산부, 농진청, 수산청 계통기관이 인정하는 전문 영농어 교육 기관에서 4주이상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및 1개월이상 독농가(선도 농어가, 시범 농장등)입주훈련 이수자로서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영농어사업 계획상의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증 소지자
- ※ 단 공통교육은 후계자로 선정된자 전원이 이수함

(10) 자금지원요령

○ 용자취급기관

- 사업이 농업인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축산업인 경우에는 축협중앙회가, 수산업인 경우는 수협중앙회가 담당
- 용자취급기관(농·수·축협)의 중앙회장은 용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읍·면 단위에 위치한 계통기관(단위조합)으로 하여금 용자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사업자금배정

- 농·축·수협중앙회장은 농수산부장관이 통보한 "당해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시·도별, 분기별 사업자금지원계획을 수립
-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위탁 관리자(농협중앙회장)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축·수협중앙회장에게 대여
- 농·축·수협중앙회장은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 기관에 배정

-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자금을 배정할 때 지원대상자로부터 용자취급 기관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용자취급 기관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

○ 용자조건

- 이 자 : 연 5%
- 용자기간 : 5년거치 5년균분상환
- 납 기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민후계자가 분할납부 또는 자금 회전시기에 이자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용자방법

- 사업자금의 용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 후취담보대출로 분할 용자할 수 있으며, 가능한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 활용
- 농어민후계자가 사업계획에 의한 용자금을 당해년도 예산에서 용자받지 아니하면 자격 상실
- 용자취급기관의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운용 지침에 의함
- 용자취급기관은 농(어)촌지도소장이 발급한 교육훈련(이수·면제)증명서를 확인한 후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용자 지원하여야 하며, 용자된 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로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한 후 농(어)촌지도소장의 사업추진계획 확인서에 의거 용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업자금의 타목적 사용 방지(공통교육 미이수자 용자가능)
- 농·축·수협중앙회장은 용자신청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지역간 상이한 서류는 단일화(서식통일)

○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

- 농어민후계자가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등 용자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장 및 농(어)촌지도소장은 즉시 시장·군수에게 보고(별지 제 8호 서식)
- 시장·군수(특별·직할시는 농어촌지도소장)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용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취소와 용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 다만, 사망, 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용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용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용자시 용자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농어민후계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취소와 동시에 용자금을 회수토록 조치
 - 1) 도시이주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2) 회사, 공공기관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제 근무자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3) 본인의 농어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농어업관련 사업체 포함)를 경영하고 있는 자(예: 경종후계자가 정육점운영 등)중 농어민후계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형사소추를 받은 자

5) 시장·군수와 농(어)촌지도소장이 농어민후계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이 경우 농(어)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서 필요)

- 용자금 회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용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

- 시장·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의 사업취소와 용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을 회수

- 시장·군수가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반기익월 20일까지 보고(별지 제 9호 서식)

○ 자금지원상의 유의사항

- 용자금은 영농(어)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토록 하고 비료, 농약, 유류, 사료등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지원대상사업 참조)

- 개인별 당해년도 용자금은 일시에 전액용자 지원하여야 하며, 용자된 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로 여신관리계좌에 입금시킨 후 농(어)촌지도소장의 사업추진계획 확인서에 의거 단계별로 자금을 인출 사용(이 경우 농(어)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에 확인서 발급)

- 사업자금용자후 기 인출된 자금이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신관리계좌의 잔여금 인출을 중지하고 해당기관은 즉시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

(11)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

농어민후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동일업종(농업·어업)내에서 영농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농(어)촌지도소 해당작목 계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농(어)촌지도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장소변경

- 농어민후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소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이동 후의 사업지도는 사업장 관할 농(어)촌지도소에서 담당

1)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 시·군, 시·도내 이동절차

시장·군수는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시·도, 농(어)촌지도소,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및 보고

- 시·도별 이동

1) 시장·군수는 사업장 이동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동후의 시·도지사와 지도기관,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동 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동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동 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1) 이 관 조 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

2) 보증인 교체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동 후 용자취급기관)

3)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동전 용자취급기관에서 담당

○ 업종간의 이동

담, 저수지 건설에 따른 수몰 또는 간척사업으로 인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받아 사업착수 후 3년이상 경과된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농어사업계획서를 농(어)촌 지도소에 제출하여 농(어)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이 경우 농(어)촌지도소장은 영농어 사업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현지확인 실시)

(12) 농어민후계자의 교체 및 승계

○ 당해년도 선정 농어민후계자 교체

당해년도에 선발된 농어민후계자가 용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도시이주, 전업, 사망, 신병등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시장·군수는 다른 예비후계자로 교체 가능

- 시장·군수는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사업자금을 용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용자받지 않은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예비후계자로 교체 가능
- 위 경우 시장·군수는 농(어)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지도소장은 농어민후계자 선정 추천시 추천순위가 높은 자를 우선 추천
- 시장·군수는 농어민후계자 교체결과를 관계기관(농어촌 지도기관, 용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농어민후계자 사망·신병시 배우자,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 승계

- 사업자금 용자후 농어민후계자의 사망·신병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는 농(어)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결정(이 경우 형제·자매, 직계비속 승계시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승계일 기준 40세미만으로 영농어에 종사하고있는 자라야 하며, 남자배우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킬 때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에 의거 승계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계자는 반드시 농어민후계자 교육훈련 이수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액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농어촌 지도기관, 용자기관)등에 통보

○ 결혼시 형제·자매 승계

- 미혼인 여성후계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배우자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할 때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 (이 경우 후계자 사망·신병시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승계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6.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가. 사후관리

(1) 농어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어)촌지도소장, 융자담당기관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어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

(2)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활동지원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는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건전한 육성을 촉진

(3) 생산농수산물의 판매지원

○ 농·수·축협은 생산자제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

- 농산물 협동출하반에 적극 참여 유도
- 규격포장, 운송 판매등 알선 지원
- 판매매장을 이용한 주말시장개설 등 전시판매지원
- 농축수산물유통정보와 간행물 배부, 운송자금의 지원등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비축물자 구매시 농어민후계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생산물 판매를 알선

(4) 경영기술교육 및 해외연수 등

○ 농촌진흥청장, 수산청장은 농어업경영자(예비후계자,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어가 등)에 대한 영농어교육훈련을 위하여 시설장비가 우수한 농수산계학교 및 영농어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선진농어장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

- 농(어)촌지도소장은 영농어 경영실태 평가에 따라 경영실적이 저조한 자에 대하여는 영농어 기술교육, 선진농어장 위탁교육등을 실시
- 농(어)촌지도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수산청장의 지침에 따라 농어민후계자의 영농어 경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이때 선진경영모델을 발굴하여 교육훈련 등에 활용
- 농(어)촌지도소장은 농어업경영자의 관리카드를 전산화하여 경영설계와 발전단계에 맞도록 영농어기술 및 경영을 지도(별지 제11호 서식)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농(어)촌지도기관의 농어업경영자 교육훈련, 경영실태조사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극 지원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어)촌지도기관은 농어촌인력 육성 및 농어업 발전에 공헌을 한 공무원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하고, 해외연수시 우선하여 선정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시행

(5) 예비후계자 정리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농어촌지도소장이 예비후계자 등록을 취소함.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 중 전업, 도시이주 등으로 영농어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이 경우 농어촌지도소장은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예비후계자 등록 포기서 징구)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지 3년이상 경과한 자 중 도시이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자

(6) 농어민후계자 관리

- 농어민후계자로서의 관리 및 지원기간은 당초 용자조건상의 상환기간만료 시까지(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10년간)로 하되 후계자자격은 계속 유효
- 농어민후계자 육성 관련기관은 후계자의 시·도, 시·군간 진출입 등에 관계되는 사항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시·도, 시·군에 통보

나. 홍보실시

(1) 중점 홍보사항

○ 예비후계자 제도의 필요성

- 영농(어)기반이 다소나마 있고 영농(어)에 뜻이 있는 청소년층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하여 그들이 원하는 자금지원액 규모에 맞춰 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후계자를 효율적으로 확보 육성
- 농수산계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영농 4-H회원에게 영농(어)의욕과 새로운 농업시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들이 정착자금지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함으로써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는 즉시 영농(어)에 복귀를 촉진

○ 농어민후계자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 원칙적으로 예비후계자 경력이 1년이상인 자에게 농어민후계자 추천대상 자격이 주어짐.
- '95년도 농어민후계자 지원대상은 예비후계자로 등록한후 1년이상 경과한 자 전원과 품목별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40세미만인 자 및 영농(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30세미만의 미혼여성에게 신청자격을 부여
- 신청시기 : 예비후계자는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 농어민후계자 선정대상지역 확대

농어민후계자 선정대상지역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어촌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예비후계자(등록된 자)가 있어 당분간 후계자 선정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기타 실시요령상 필요한 사항

신청서 배부 및 접수장소, 신청서 작성요령, 증빙서류 등

(2) 홍보요령

○ 시·도단위

- 방송(TV 및 라디오) 및 지방신문보도
- 관계 공무원 지도·확인

○ 시·군단위

반상회, 겨울농민교육 및 각종회의시 홍보자료 배부

○ 읍·면단위

- 반상회, 리동장회의, 각종농어민단체회의시 홍보자료 배부·설명벽보 부착
- 마을방송 홍보등

다. 기타 유의사항

(1)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관계기관(각급 행정기관, 지도기관, 용자취급기관)은 관내 청소년·농어민을 대상으로 예비후계자 및 정착자금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전개

○ 시·군 농(어)촌지도소장은 예비후계자 신청서를 연중 수시 접수

(2)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

○ 농어민후계자는 지역별(시·군별, 읍·면별) 균형에 맞도록 선정하고 특정작목(한옥우, 복합영농, 어선어업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 시·군 농(어)촌지도소장은 농어민후계자를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용자취급기관(농·축·수협)에 통보하여 용자금 지원 가능여부 검토

(3) 교육훈련계획 수립보고

○ 교육훈련비 예산(안)제출

- 농촌진흥청장과 수산청장은 '95년 교육훈련비 예산(안)을 '95.1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95년도 교육훈련비 예산(안)은 경제기획원에서 배부한 정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

○ 교육훈련계획서 제출

- 농촌진흥청과 수산청은 '95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95.1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95년도 예산을 참고하여 작성 바람)

(4) 용자취급 및 지원계획, 용자실적보고

- 농·수·축협중앙회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자지원 및 자금관리요령을 작성 계통기관에 시달하고 '95년도 용자실적을 매분기 익월 3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농·수·축협중앙회장은 (사)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대한 경영지도와 생산물의 계통출하, 판매알선, 자금지원, 유통정보 및 간행물 제공 등 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과 축협중앙회장은 농·축·수산물 구매비축시 농어민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
- 용자취급기관은 분기별 용자실적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유관기관과 계통기관에 통보 및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5) 사후관리 추진등

- 농촌진흥청장 및 수산청장은 우수 농어민후계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홍보
-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별도 시달하는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농촌진흥청이 추진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 분 품 목	0.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 는 농가	1.0~1.5ha 미만에 준하 는 농가	1.5~2.0ha 미만에 준하 는 농가	2.0ha이상 준하는 농가
노지채소	ha미만 0.25	ha미만 0.25~0.5	ha미만 0.5 ~0.75	ha미만 0.75~1.0	ha이상 1.0
시설채소	0.1	0.1 ~0.2	0.2 ~0.3	0.3 ~0.4	0.4
사 과	0.15	0.15~0.3	0.3 ~0.45	0.45~0.6	0.6
배	0.11	0.11~0.22	0.22~0.33	0.33~0.44	0.44
포 도	0.25	0.25~0.5	0.5 ~0.75	0.75~1.0	1.0
감 귤	0.17	0.17~0.34	0.34~0.51	0.51~0.68	0.68
한 우	두 미만 3	두 미만 3~6	두 미만 6~10	두 미만 10~12	두 이상 12
낙 농	2	2~3	3~5	5~7	7
양돈(비육)	25	25~50	50~75	75~100	100
양돈(번식)	7	7~14	14~21	21~28	28
양계(산란)	수 미만 700	수 미만 700~1,400	수 미만 1,400~2,100	수 미만 2,100~2,800	수 이상 2,800
양계(육계)	1,000	1,000~2,000	2,000~3,000	3,000~4,000	4,000
담 배	ha미만 0.25	ha미만 0.25~0.5	ha미만 0.5~0.75	ha미만 0.75~1.0	ha이상 1.0
인 삼	a미만 5	a미만 5~10	a미만 10~15	a미만 15~20	a이상 20
양 잡	ha미만 0.45	ha미만 0.45~0.9	ha미만 0.9~1.35	ha미만 1.35~1.8	ha이상 1.8
버 섯 (느타리)	평미만 25	평미만 25~50	평미만 50~75	평미만 75~100	평이상 100

※ '93 농축산물 표준소득(농진청)자료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만 인정

영어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 분 품 목	0.5ha 미만에 준 하는 어가	0.5~1.0ha 미만에 준하 는 어가	1.0~1.5ha 미만에 준하 는 어가	1.5~2.0ha 미만에 준하 는 어가	2.0ha이상 에 준하는 어가
어선어업	미만 2톤	미만 2~3톤	미만 3~5톤	미만 5~7톤	이상 7톤
○정치망	2ha	2~3ha	3~5ha	5~7ha	7ha
○축방망	0.1ha	0.2~0.3ha	0.3~0.4ha	0.4~0.5ha	0.5ha
○낭장망	0.3ha	0.3~0.5ha	0.5~0.7ha	0.7~1ha	1ha
양식어업					
○어류양식					
- 해면	0.2ha	0.2~0.3ha	0.3~0.5ha	0.5~1ha	1ha
- 옥상	30평	30~50평	50~70평	70~100평	100평
- 내수면					
○가두리	4조	4~5조	5~7조	7~10조	10조
○지수식	0.1ha	0.1~0.3ha	0.3~0.5ha	0.5~0.7ha	0.7ha
○수조식	30평	30~50평	50~70평	70~100평	100평
○패류					
- 살포식	2ha	2~3ha	3~4ha	4~5ha	5ha
- 수하식	1ha	1~1.5ha	1.5~2ha	2~3ha	3ha
(굴)					
- 수하식	0.2ha	0.2~0.3ha	0.3~0.5ha	0.5~1ha	1ha
(전복, 진주)					
- 투석식	2ha	2~3ha	3~4ha	4~5ha	5ha
○해조류					
- 김	30척	30~50척	50~70척	70~100척	100척
- 미역, 다시마	2ha	2~3ha	3~5ha	5~7ha	7ha
- 툇	1ha	1~2ha	2~3ha	3~5ha	5ha
○우렁챙이	1ha	1~2ha	2~3ha	3~5ha	5ha
중요생산					
○옥상	50평	50~100평	100~150평	150~200평	200평
○해상	2ha	2~3ha	3~4ha	4~5ha	5ha
수산물가공	50평	50~100평	100~150평	150~200평	200평

※ 양식어업은 공동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관련있는 상기표의 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어업기반이 있을 경우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의 기반은 50%만 인정

< 별지 제1호서식 >

농어민후계자 신청서					접수 번호	사 진 (반명합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최종학력	학 교 과 (졸업)		졸업년월일		
지원사업	분 야	농업·축산·어업	작목명	지원금액 (지원시기)	() 백만원 분기	
영 농 어 반	경지면적	전 :	답 :	과수원 :	초지 :	기타 : 평
	시설규모	우사·돈사·계사: 평, 두·수, 비닐하우스: 기타:				
	장 비	트랙타: 이앙기: 트랙·승용차: 컴퓨터: 기타:				
가족사항 (본인 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	
장 포 상 영 농 어 기 술 자 주 요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 농 어 기 반 영 조 육 훈 령 력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영농어경력	년 월 ~ 년 월 까지					

위 본인은 농어촌특별조치법상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군농(어)촌지도소장 귀하

첨부서류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농어사업계획서, 영농어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영농어 사업계획서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농어민후계자	사업분야	농업·축산·어업
	작 목 명		주작목규모	
	신청금액	백만원	지원요구시기	분기

1. 현재의 사업기반(논, 밭, 가축의 종류, 시설의 종류별 규모)을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직계가족소유, 임차 등으로 구분 작성
2. 지원자금의 사업계획(용도별 구입 및 설치규모, 자부담 및 용자금 투자계획등 작성)

구 분	용 도 별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자부담	용자금	

3. 지원자금을 의한 사업계획 수립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설명
4. 앞으로 5년간의 경영계획

< 별지 제3호서식 >

농어민후계자 신청서 접수대장

연번	신청 년월일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연령)	사업분야 (작목명)	신청금액 (백만원)

< 별지 제4호서식 >

예비후계자 등록현황

1. 성별·년령별

(단위 : 명)

시 도 별	성 별			직 업 별			년 령 별							
	계	남	여	농어업 종사	학생	기타	20세 이하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46세 이상	
서울특별시 · · · 계 주 도 계														

2. '96년도 사업착수가능 년령별 인원

(단위 : 명)

시 도 별	계	년 령 별							'97년	'98년 이후
		20세 이하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46세 이상		
서울특별시 · · · 계 주 도 계										

3. '96년도 사업착수가능 분야별 인원

(단위 : 명)

시 도 별	계	농 업					축 산					어 업							
		소계	경 종	복 합 농 업	원 예	과 수 작	특 작	소계	한우 (육우)	낙 농	양 돈	양 계	양 기 타	어 선 어 업	어 류 축 양	해 조 류 양 식	어 패 류 양 식	기 타	
서울특별시 · · · 계 주 도 계																			

※ 작성시 유의사항

- 예비후계자중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
- 위 1, 2, 3항에 대하여 '95.3.31, 12.31기준으로 각각 작성(누계개념으로 작성)

농어민후계자 추천명단

추천위 추진순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최종학력	평 가 기 준 (점수)							지원자금									
					영농의욕 영양정	학력	교육 훈련	영농경 험	영농어 력	영농어 기반	사업 계획		농장시설 및 신도능력	총점수							

농어민후계자 선정결과 보고

1. 성별·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결혼여부		년령						50세이상		
		기혼	미혼	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대		졸	
				소계	농수산계	일반계	소계	농수산계	일반계		
											소계
합계											
남											
여											

3.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농				업			축				산				어				
		소개	경종	복합영농	원에	과수	목작	소개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소개	어선	어류	해조류	어패류	기타		
합계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농				업			축				산				어				
		소개	경종	복합영농	원에	과수	목작	소개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소개	어선	어류	해조류	어패류	기타		
합계																					

5. 분기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			농			업			축			산			어			임		
	계	2/4	3/4	4/4	계	2/4	3/4	4/4	계	2/4	3/4	4/4	계	2/4	3/4	4/4	계	2/4	3/4	4/4	
합계																					

6. 분기별 차금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			농			업			축			산			어			임		
	계	2/4	3/4	4/4	계	2/4	3/4	4/4	계	2/4	3/4	4/4	계	2/4	3/4	4/4	계	2/4	3/4	4/4	
합계																					

※ 품목별 단채장이 추천한 자 중 후계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보고사항 외에 1. 2. 3항 양식에 의거 별도보고(4. 5. 6항 제외)
 ※ 종여정후계자로 선정된 자 중 미혼여성에 대하여는 위의 보고사항 외에 1. 2. 3항 양식에 의거 별도보고(4. 5. 6항 제외)

교육훈련 (이수·면제) 증명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교육 기간 : 부터 까지(일간)
5. 교육 장소 :
6. 교육 내용 :
7. 교육면제사유 :

위의 사람은 년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로서 영농어 기술교육 이수 또는
면제된 자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농(어)촌지도소장

직 인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 별지 제8호서식 >

사업포기·취소신고 및 보고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지원 내용

사 업 명	지 원 액	회 수 결 정 액

5. 사업포기·취소사유

※ 사업을 포기·취소해야 될 사유(사망, 신병, 재혼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를 상세히 기재한다.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1. 년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년도별	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농업 어업	계	-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자금회수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사망	신병	재혼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	타
총	사 업 자	인	원							
취	소 자	금	액							
회	수 자	인	원							
완	료 자	금	액							
회	수	인	원							
수	증	원	회							
인	인	회	수							
자	자	수	액							
		미	회							
		수	액							
		회	수							
		액								

※ '81년도부터 사업취소자를 대상으로 작성

※ '81~'95.6.30, 8.31, 12.31까지 사고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익월 10까지 보고

※ 농어민후계자중 농민, 어민 분리작성

< 별지 제 11호 서식 >

예비후계자 · 후계자 카드

사 진 (반영합관)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④연주소	⑤정착사업장소	③연락처 전화번호: ⑥주사업(희망)좌목: ⑦자금지원(희망)내역
	우편번호: 학교	과(출업, 제학)	⑨결혼여부: ⑧기혼 ⑩미혼
⑩최종학력: 학교 과(출업, 제학) 우편번호: ⑨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 병역 및 예비후계자 · 후계자 경력

구분	기	간(년월일)	주요활동경력	사회활동직책
	· · ·	· · ·		
	· · ·	· · ·		
	· · ·	· · ·		

※ 활동기간중 연제, 주요활동경력, 최근사회활동직책은 연필로 작성

⑫ 장학금 · 포상경력 · 영농어기술자격 취득경력

년월일	내	용	수여자

⑬ 영농어 교육훈련경력(총교육일수: 일)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 가족사항(본인제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⑩ 영농(어) 기반조성 및 사업추진 실적

구	년	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 사과, 배, 오이, 배추, 한우, 인삼, 느타리버섯 등)별 규모(명, 두, 수)										
영농어 기반 <본인 소유 > · 승계대상 >	°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 온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저온 냉장고 스프링클러 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 컴퓨터, 트럭, 중용차, 이앙기 등)종류별 규모(대)									
경실영작(천원)	농	영	외	조	수	익				
	농	영	비	소	산	비				
	농	가	소	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① 매년도 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 말까지 읍면상담소장 또는 주사업자폭담담지도도가 현지파인후 작성하되 구분년에는 예비후계자 1년차, 2년차, ... 농어민후계자 1년차, 2년차, ...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중.하, 문계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 별지 제12호 서식 >

용자실적 보고

(단위 : 백만원)

도 별	자금배정		용 자 실 적				비고
			인 원		금 액		
	분 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합 계							

< 별지 제13호 서식 >

농어민후계자 사업추진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영농어사업계획

사업작목	부 자 계 획			비 고
	지원자금	자 부 담	계	

5. 지원자금 사업계획

사업작목	지 원 자 금 사 용 계 획			비 고
	사용목적	규 모	금 액	

위의 사업에 따른 용자금 사용계획을 확인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농(어)촌지도소장 직 인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전업농 육성 사업 (자율)

1. 목 적

-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경영체 확보
- 도시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 육성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향후 10년간 매년 15천호씩 2004년까지 총 15만호의 가족전업농 육성
 - 쌀전업농 10만호, 축산전업농 3만호, 원예·특작·어업전업농 2만호
-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생산·유통지원사업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등 각종 정책사업자금을 우선 지원(품목별 소관부서)

나. 장기계획

	'95	'96	'97	'98	'99~2004	계
육성목표	15,000 ^호	15,000	15,000	15,000	90,000	150,000
- 쌀	10,000	10,000	10,000	10,000	60,000	100,000
- 축 산	3,000	3,000	3,000	3,000	18,000	30,000
- 밭작물	200	200	200	200	12,000	2,000
- 채 소	850	850	850	850	5,100	8,500
- 과 수	300	300	300	300	1,800	3,000
- 화 채	100	100	100	100	600	1,000
- 특 작	300	300	300	300	1,800	3,000
- 어 업	250	250	250	250	1,500	2,500

※ 축산전업농은 축종별(한우·젓소·돼지·닭)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육성·지원

3. 사업신청 자격

가. 각 품목에 공통된 자격요건

-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며, 최근 3년 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농어가
-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어가, 또는 경영주가 56세 이상인 경우 그 영농어기반을 승계할 동거가족(영농어 승계자)이 있는 농어가
 - ※ 영농어승계자는 최근 1년이상 경영주와 동거하며 영농어에 종사한 자만 인정
- 경영주가 농업 또는 어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농어가
 - ※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농어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업으로 인정
- 가족노동력으로 일상적인 농작업을 수행하며, 전업농 규모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의 조작과 기초적인 정비 능력이 있는 농어가

나. 품목별 기타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현재의 경영규모	발 전 가 능 성										
쌀	2.0ha 이상(논·밭, 소유·임차지를 포함하며, 그중 자기 소유 논이 1.0ha 이상일 것) - 농기계는 5ha이상 인 농가도 지원	○ 쌀경영규모를 5ha(복합경영농가는 3ha)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농가										
밭작물 (식량류)	2.5ha이상 (논·밭, 소유·임차지를 포함하며, 그중 자기 소유의 밭이 0.6ha 이상일 것)	○ 전문품목 경영규모를 3.5~7ha(복합경영농가는 2.5~5ha)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농가 <table border="1" data-bbox="548 788 1241 966"> <thead> <tr> <th></th> <th>백 류</th> <th>두 류</th> <th>서 류</th> <th>잡곡(꽃옥수수등)</th> </tr> </thead> <tbody> <tr> <td>전업농 규모 (복합 농)</td> <td>7ha 이상 (5ha)</td> <td>5ha 이상 (3.5ha)</td> <td>3.5ha이상 (2.5ha)</td> <td>4ha이상 (3ha)</td> </tr> </tbody> </table>		백 류	두 류	서 류	잡곡(꽃옥수수등)	전업농 규모 (복합 농)	7ha 이상 (5ha)	5ha 이상 (3.5ha)	3.5ha이상 (2.5ha)	4ha이상 (3ha)
	백 류	두 류	서 류	잡곡(꽃옥수수등)								
전업농 규모 (복합 농)	7ha 이상 (5ha)	5ha 이상 (3.5ha)	3.5ha이상 (2.5ha)	4ha이상 (3ha)								
채 소 -노지채소 (양념류, 무·배추) -시설채소	1.0ha 이상 (채소 포장) 600평 이상 (일반시설 기준)	○ 채소류 경영규모를 2ha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농가 ○ 시설채소 경영규모를 1,200평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농가										
과 수	0.5ha 이상 (과수원)	○ 과수 경영규모를 2ha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농가										
화 훼	500평 이상 (일반시설 기준)	○ 화훼 경영규모를 1,200평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농가										
특용작물 -버섯 -약용작물	150평 이상 (일반시설 기준) 1.0ha 이상 (약용작물포장)	○ 버섯 경영규모를 현대화시설 150평(균상시설은 300평, 일반시설의 경우 500평)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농가 ○ 약용작물 경영규모를 3ha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농가										

	자 격 요 건	
	현재의 경영규모	발 전 가 능 성
어 업		
-어선어업	2톤 이상 (동력어선 기준)	어선어업 규모를 5톤(동력어선 기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가
-어류양식	0.2ha 이상 (해면양식 기준)	어류양식어업 규모를 0.5ha(해면양식기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가
-패류양식 (우렁쉥이 포함)	1.0ha 이상 (굴수하식 기준)	패류양식어업 규모를 3ha(굴수하식기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가
-해조류 양 식	2.0ha 이상 (미역양식 기준)	해조류양식어업규모를 5ha(미역양식기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가
-종묘생산	50평 이상 (육상배양기준)	종묘생산업 규모를 150평(육상배양기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가
-내수면	0.1ha 이상 (지수식 기준)	내수면 양식어업규모를 0.5ha(지수식 기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시·군

나. '95 사업내용,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1) 쌀전업농 육성지원(10천호)

(단위 : 천원)

지 원 내 용	지 원 규 모		지 원 조 건
	총사업비	농가당기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235,000,000	23,500	(농기계구입자금지원요령적용) 연리 5%, 1년거치 5~7년상환
- 국 고 보 조(20%)	47,000,000	4,700	
- 지방비보조(20%)	47,000,000	4,700	
- 국고융자(20%)	47,000,000	4,700	
- 농협자금융자(30%)	70,500,000	7,050	
- 자 부 담(10%)	23,500,000	2,350	
영농규모적정화 지원	280,000,000	28,000	연리 3%, 20년 균분상환 연리 3%, 5~10년 균분상환 무이자, 3~10년 균분상환
- 농지매매자금	235,000,000		
- 교환·분합자금	5,000,000		
- 입차료 선급금	40,000,000		
계	515,000,000	51,500	

※ 복합경영 형태의 쌀전업농에 대하여는 과수·채소·화훼·특작 또는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에서도 지원

2)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어업 전업농 육성지원(2천호)

○ 총 사업비 : 100,000백만원

○ 농가당지원기준 : 50백만원(30백만원이상, 100백만원까지)

※ 농가당 50백만원씩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이 50백만원 전액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유자금을 동일품목의 다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영농규모적정화 자금지원시에는 그 지원조건에 따름

○ 지원대상 사업

- 지원자금은 영농어 기반을 조성하는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자·비료·농약·유류 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내역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역	
농업분야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수경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시설, 생약조제시설, 저장시설, 관수시설, 대형농기계, 기타 농업기반시설
어업분야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배양)	어선구입, 어선건조, 시설물설치, 어구구입, 어선개보수, 치어(패)구입, 종묘구입, 저장 시설, 가공시설, 기타 어업시설장비

3) 축산전업농 육성지원(3천호)

- 축종별(한우·젓소·돼지·닭) 경쟁력제고 사업에 의거 육성지원
- ※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실시요령 참조

다. 시·도별 육성지원계획

1) 쌀전업농

(단위 : 호, 백만원)

도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농 기 계 구 입 비						농지매입 임차, 교 환·분합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보조	농협용자	자 부 담	
전국	10,000	515,000	235,000	47,000	47,000	47,000	70,500	23,500	280,000
경기	1,460	71,810	34,310	6,862	6,862	6,862	10,293	3,431	37,500
강원	590	29,995	13,865	2,773	2,773	2,773	4,159.5	1,386.5	16,130
충북	780	37,110	18,330	3,666	3,666	3,666	5,499	1,833	18,780
충남	1,470	77,925	34,545	6,909	6,909	6,909	10,363.5	3,454.5	43,380
전북	1,460	68,010	34,310	6,862	6,862	6,862	10,293	3,431	33,700
전남	1,650	84,005	38,775	7,755	7,755	7,755	11,632.5	3,877.5	45,230
경북	1,600	86,600	37,600	7,520	7,520	7,520	11,280	3,760	49,000
경남	980	55,630	23,030	4,606	4,606	4,606	6,909	2,303	32,600
제주	10	3,915	235	47	47	47	70.5	23.5	3,680

※ 지역특성 및 사업실적에 따라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전업농증 희망자에게도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자금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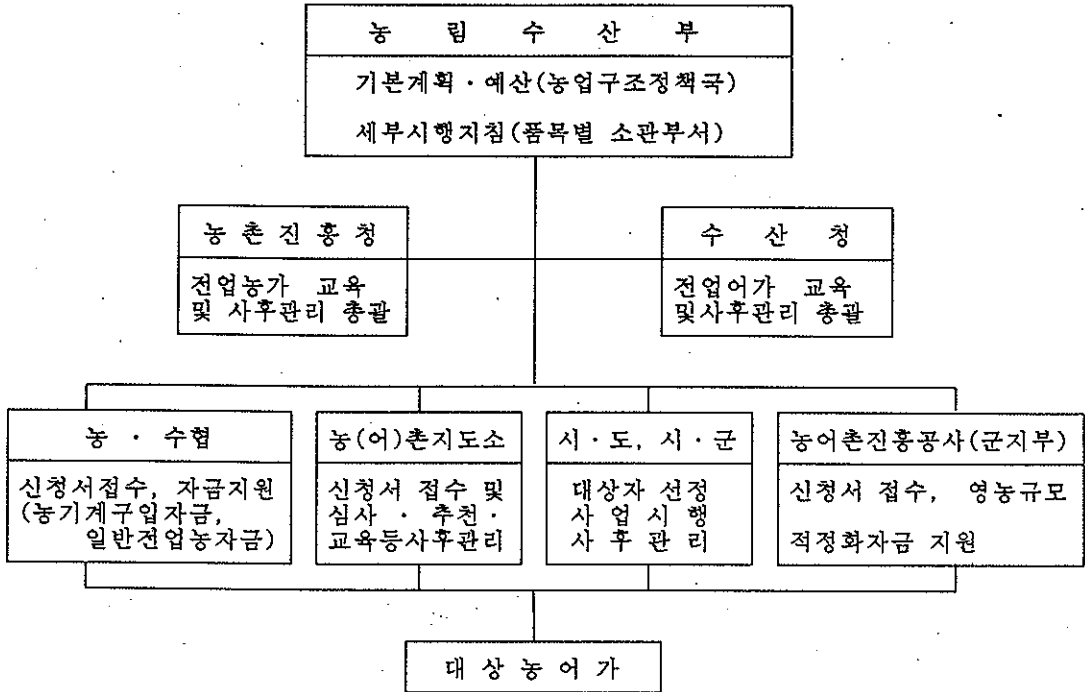
2)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어업 전업농

	밭작물 (식량류)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어업	계
전국	194 ^호	812	300	100	291	243	1,940
서울	-	-	-	4	-	-	4
부산	-	3	-	3	-	-	6
대구	-	-	-	2	-	-	2
인천	-	-	-	2	-	-	2
광주	4	-	-	2	-	-	6
대전	-	-	-	2	-	-	2
경기	11	91	29	28	55	15	229
강원	30	60	21	3	47	19	180
충북	11	56	34	5	21	-	127
충남	10	101	34	8	34	26	213
전북	18	85	24	10	25	15	177
전남	48	150	28	7	31	84	348
경북	20	148	91	3	58	15	335
경남	25	108	39	14	20	54	260
제주	17	10	-	7	-	15	49

※ 전업농중 일부는 중앙에서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임

※ 사업비 = 사업량 × 농가당 지원기준액(50백만원)

라.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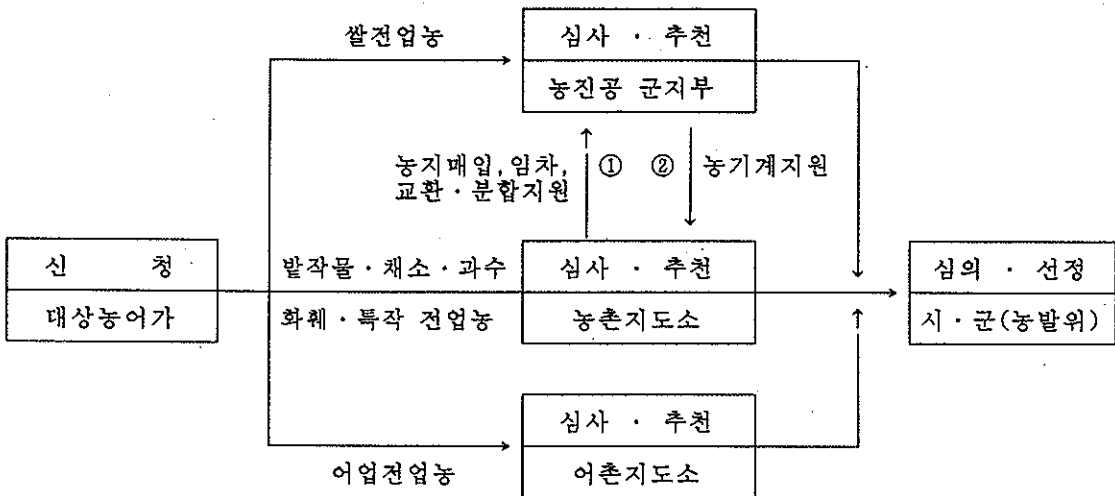
- 계획수립주체 : 대상농어가
- 계획수립 자원
 - **쌀 전업농사업계획** :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농촌지도소
 -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 전업농사업계획 : 농촌지도소
 - 어업전업농사업계획 : 어촌지도소
- 계획수립사항
 - 지원자금의 투자계획(용도별, 자부담계획 포함)
 - 향후 5년간의 경영계획(전업농규모로의 발전계획)

나. 사업신청

- 신청시기 : '95. 1. 15일까지
- 접수기관 : 읍·면, 시·군, 지도소, 농·수·축협, 농어촌진흥공사
- 신청방법 : 신청서(별지 1) 및 사업계획서(별지 2)를 위 접수기관에 제출
-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이를 해당기관에 송부(아래의 선정절차도 참조)

6.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선정 절차도 >



※ 선정절차도상의 ①, ② : 접수기관으로 부터 송부된 신청서 (첨부서류포함) 사본 1부씩을 화살표 방향으로 재송부함을 의미하며, 재송부된 신청서 사본도 접수기관으로 부터 송부된 원본과 동일한 신청서로 간주함

가. 대상자 심사·추천

- 시·군 농(어)촌 지도소장 및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천가능성 등을 조사·확인한후
 - 농(어)촌지도소장은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은 영농규모적정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분야별 심사위원회 구성 >

- 농(어)촌지도소 전문지도사,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관계자
- 농과계학교 교수 또는 교사
- 농어민후계자 출신 1인 이상을 포함한 그 분야의 선도농어가 2인
- 농·수·축협 임원, 농어민단체 대표 등 총 7인 이내

< 영농규모적정화 심사위원회 구성 >

- 농(어)촌지도소 관계자
- 농과계 교수 또는 교사
-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관계자
- 농지관리위원
- 농어민후계자 출신 1인 이상을 포함한 선도농어가 2인
- 농지개발조합 관계자
- 농어민단체 대표 등 총 8인 이내

○ 심사항목 및 평점방법 : 별첨(별지 3)

○ 시·군 농(어)촌지도소장 및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은 '95.2.10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별지 4의 서식에 의함)

나.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도소장 및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95.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 하되 사업계획서, 개인별평가 내용, 지역여론, 지역사회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및 자금지원계획을 확정

< 쌀전업농 대상자 >

- 시·군별로 배정된 '95 사업량의 3배수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향후 3년간 사업량)
- 그중, 선정우선순위가 높은 자의 순으로 상위 1/3을 '95사업대상자, 중위 1/3을 '96사업대상자, 나머지 하위 1/3을 '97사업 대상자로 선정
- ※ '96년에는 '98사업대상자들, '97년에는 '99사업대상자를 선정

- '95 농기계구입자금은 시군별 배정액범위내에서 '95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만 농가별 지원계획을 확정
 다만, '95 사업대상자중 이미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농기계구입 자금의 농가당지원기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그 여유 자금을 '96 사업대상자중 선정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농가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지원
- '95 영농규모적정화(농지매입·임차·교환분합)자금은 '95~'97사업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지원
 따라서, 대상자 선정시 동자금의 농가별 지원계획은 확정할 필요가 없음
 < 발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어업 전업농 대상자 >
- 시·군별로 배정된 '95 사업량의 2배수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향후 2년간사업량) 하여 농가별 지원계획을 확정
 - 그중 선정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상위 1/2을 '95사업대상자, 나머지 하위 1/2을 '96사업대상자로 선정
 - ※ '96년에는 '97사업대상자를, '97년에는 '98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선정자중 사업포기 자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즉시 대체 할 수 있도록 함

다. 대상자 추천 및 선정의 우선순위

- 1) "고도 벼농사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농가(쌀전업농 대상자에 한함)
 - 2) 사업장소가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농가(쌀 및 발작물 전업농에 한함)
 - 3) 농어민후계자, 농수산계학교(대학·전문대학·고등학교)졸업자
 - 4) 농(어)촌지도소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
- ※ 지역사회발전기여도, 지역여론 등을 적절히 감안

라.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결과를 각 신청자, 자금취급기관(농·수협,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농(어)촌지도소, 기타 유관기관에 통보 및 계통보고
 (별지 5-1부터 5-5의 서식에 의함)

7. 사업자금 지원

가. 농기계 구입자금

- 지원대상자는 사후봉사업소(농협, 대리점)등이 명확히 기록된 농기계 구입확인서(별지 6)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농기계 구입확인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확인한 후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농협에 통보
- ※ 농기계구입자금은 쌀전업농에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전업농에게도 지원 가능

나. 영농규모적정화사업자금(지원대상 : 쌀전업농,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 전업농중 농지매입 희망자)

- 지원대상자는 농지매입(장기임차, 교환·분합) 신청서(별지 7-1 내지 7-3)를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에게 제출
-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농지의 집단화, 통작거리, 농지가격, 관개 및 입지조건 등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금액을 결정·지원하고 시장·군수에게 통지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영농계획과 경작능력에 따라 적정규모까지 계속 지원 - 선정된 전업농중 농지매입자금 등의 지원 희망자가 적을 때에는 전업농 육성대상 기준에 적합하여 향후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될 자에게도 지원 (이 경우, 매매·임대차 대상농지는 전업농선정자중 경작여건이 적합한 자 또는 매매·임차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농지에 한함)

지원대상농지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농지매입자금 >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한 농지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집단화, 통작거리단축 등 농지규모화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전업농 선정 지원

< 농지임차자금 >

-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및 농어촌지역내 농지로서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와 농립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중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집단화, 통작거리단축 등 농지규모화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전업농 선정지원

< 농지 교환·분합자금 : 농민 상호간 교환·분합사업의 경우 >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농업진흥지역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집단화를 위한 교환·분합 대상농지
- 지원규모 : 교환분합 농지의 가격차액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환·분합에 의한 농지의 영농합리화 정도, 농지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후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다.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어업전업농 육성자금

○ 용자취급기관

- 사업이 농업인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어업인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담당
- 용자취급기관(농·수협)의 중앙회장은 용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한 읍·면단위에 위치한 계통기관(단위조합)으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농지매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

○ 사업자금배정

- 농·수협중앙회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통보한 "당해년도 전업농 육성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시·도별, 분기별 사업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 전업농 육성자금 위탁관리자(농협중앙회장)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수협중앙회장에게 대여
- 농·수협중앙회장은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 기관에 배정

○ 용자방법

- 사업자금의 용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에 의하거나 이를 병행할 수 있음.(농지매입자금은 매입농지 담보)
- 용자취급기관의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운영지침에 의함.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키로 결정된 자금을 일시에 전액 용자 지원하여야 하며, 용자된 자금은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한 후 농(어)촌지도소장의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8)에 의거 용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업자금의 타목적 사용 방지

8. 사후관리

가.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나. 관리보조자

- 시·군 농(어)촌지도소장, 읍·면장
-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
- 농·수협 지역조합장(용자취급기관장)

다. 점검 및 방법

< 정기점검 >

- 점검자 : 시·군 농(어)촌지도소 소속 전담지도사
- 점검시기 : 매월 2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 결과반영 :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어업 이탈 등의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

< 수시점검 >

- 시장·군수는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의한 농기계 구입현황 장부(별지 9)를 비치하고 농기계 구입확인, 기대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11월말까지 점검 완료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전업농별 농지매입 및 임차지원현황(별지 10)을 비치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지원농지의 전매·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담보제공 등 전업농 자격상실 여부를 매년 9월말까지 1회이상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 농협장은 농기계 구입자금 용자시 농기계 구입 및 용자현황 장부(별지 9)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군 및 농촌지도소에 통지하고 농협 면세유틸 관리대장도 정리·관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절차

○ 사업취소 사유

- 전업농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영농규모적정화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차한 농지를 전대·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 등은 제외)
- 본인의 농어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시장·군수와 농(어)촌지도소장이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 경우 농(어)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서 필요 >

○ 농(어)촌지도소장, 읍·면장,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 지역조합장(농·수협) 등 사후관리보조자는 사업취소 대상자가 발생한 즉시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특별·직할시는 농어촌지도소장)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자금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다만 사망,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용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용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용자시 용자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지원자금의 회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자금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금의 경우 지원받은 전액 또는 잔존가액(정액법기준)을 상환
- 시장·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의 사업취소와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자금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시장·군수가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반기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반기익월 20일까지 보고(별지 11의 서식에 의함)

라. 농어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어)촌지도소장, 자금취급기관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어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조치

마. 생산농수산물의 판매지원

- 농·수협은 생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지원
 - 농수산물 공동출하에 적극 참여 유도
 - 규격포장, 운송판매 등의 알선·지원
 - 주말시장개설 등 전시판매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비축물자 구매시 전업농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생산물 판매를 알선

바. 경영기술교육 및 해외연수 등

- 농(어)촌지도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수산청장의 지침에 따라 전업농의 영농어 경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자에 대하여는 영농어 기술교육, 선진농어장 위탁교육 등을 실시
- 농(어)촌지도소장은 각 전업농의 관리카드(별지 13)를 전산화하여 경영설계와 발전단계에 맞는 영농어기술 및 경영을 지도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농(어)촌지도기관의 전업농 교육훈련, 경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극 지원
- 농촌진흥청장·수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경영실적이 뛰어나고,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수 전업농과 전업농 육성업무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시행

사.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전업농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지도소장의 검토 의견을 받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별지 12의 서식에 의거 신청)
- 사업장소의 변경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업지도는 사업장 관할 농(어)촌지도소에서 담당
 - 1)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2)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 시·군, 시·도내 이전절차
시장·군수는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한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시·도, 농(어)촌지도소,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및 보고
- 시·도별 이전
 - 1) 시장·군수는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전 후의 시·도지사외 지도기관,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에 이전 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1) 이 관 조 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2) 보증인 교체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전 후 용자취급기관)
 - 3)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 전 용자취급기관에서 담당

9. 사업효과

- 농어업의 전문화·규모화·현대화로 대외경쟁력 향상
- 국민식량의 안정적공급을 담당할 농어업 경영체 확보

10.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 안내기관

	중 양	도	시 · 군
쌀	농림수산부 농산국 농산과	농정국 농산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군 지부
발 작 물	"	"	산업과,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군 지부
채 소	농산물유통국 채소과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과 수	" 과수화체과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경북 : 유통특작과, 제주 : 감귤진흥과)	"
화 체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경북 : 유통특작과, 제주 : 특 작 과)	"
특 작	농산국 잠업특작과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어 업	수산청 어정국 협동조합과	농정국 수산과 (전남, 경남: 어정과)	수산과, 어촌지도소

나. 용자취급 및 지원계획, 용자실적보고

- 농·수협중앙회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자지원 및 자금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계통기관에 시달하고 분기별 용자실적을 매분기 익월 3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용자취급기관은 분기별 용자실적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유관기관과 계통기관에 통보 및 보고

다. 농기계구입자금지원요령 및 영농규모적정화사업실시요령의 준용

- 쌀전업농육성사업 대상자에 대한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중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기계구입자금지원요령을 준용함
- 쌀·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 전업농육성사업 대상자에 대한 영농규모적정화(농지의 매입, 임차, 교환분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중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실시요령을 준용함

< 별지 2 >

전업농 사업계획서

작성자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전업농 신청품목		현재의 경영규모		
자금지원 신청금액	농기계 구입자금	천원	지원요구시기	년 월
	농지매입·임차자금등	천원	지원요구시기	년 월
	일반 전업농 자금	천원	지원요구시기	년 월

※ 농기계 구입자금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구입가격 총액을 기재

1. 현재의 영농어기본(논, 밭, 농기계 및 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소유와 임차로 구분작성)

2. 지원자금의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용도별	규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3.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설명

4. 앞으로 5년간 경영계획(전업농 규모로의 발전계획)

심사항목 및 평점방법

항 목	배 점 (단점)	평 점 방 법
영농어경력	100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 전업농 신청품목의 경영경력에 한함. ○ 농수산계 학교 졸업자는 학력에 따라 다음 가산점을 합산 - 고졸 30, 전문대졸 40, 대졸 50점
경영 규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전업농 기준규모 x 100점 ※ 전업농 신청품목의 경영규모에 한하며, 전업농 기준 규모 이상은 100점 ※ 전업농 기준규모는 신청 자격요건 중 발전가능성에 규정된 규모임.
기계화 및 시설 수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 100점 ○ 기본적인 기계 및 시설구비 : 50점 ○ 기계 및 시설이 전혀 미비 : 0점 ※ 위 기준에 따라 적절히 평점
재배 기술 및 경영 능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기술수준 : 보통 10, 우수 20, 매우 우수 30점 ○ 대형 농기계 및 시설의 조작·정비 능력 : 없음 0, 있음 20점 ○ 경영여건과 전문 품목의 적합성 : 부적합 0, 적합 20점 ○ 농어업이 주업인 동거 가족수(본인포함) : 1인 10, 2인 20, 3인이상 30점 ○ 농어업 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 및 경영성과 분석실행 : 50점(가산점, 최근 2년이상의 회계장부가 있는 자에 한함.) ※ 위 각 평점을 합산
사업 계획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점수 40, 보통 60, 우수 80, 매우 우수 100점
계	500	

< 별지 4 >

전업농어가육성사업 대상자 추천

< (품목명) 전업농 >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자 금 지 원(안)	
				농기계자금	전업농자금

- 첨부 : 1. 추천순위결정근거
 2. 자금지원신청액 조정사유
 3. 추천 제외자 및 사유

1. 추천순위 결정근거

<(품목명) 전업농>

추천 순위	성 명	심 사 항 목 별 평 점						비 고
		영 농 어 렷 경	경영규모	기계화및 시설수준	재배기술 경영능력	사업계획	평점합계	

※ 비고란에는 대상자추천 및 선정의 우선순위 해당사항,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지역여론 등을 기재

2. 자금지원 신청액 조정사유

<(품목명) 전업농>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성 명	신 청 액		조 정(안)		조 정 사 유
		농기계자금	전업농자금	농기계자금	전업농자금	

3. 추천제외자 및 사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추 천 제 외 사 유

※ 전업농 신청자중 추천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신청자격요건 미달(구체적 결격사유), 신청서 허위기재 등 추천제외사유를 명시

< 별지 5-1 >

전업농어가 선정결과 보고

(○○ 시·군 19 년도 지원대상자)

1. 연령별

전문품목	합 계	29세 이하	30~34	35~39	40~44	45~49	50~55	56세 이상
전 체								
쌀 (그중복합농) 밭 작 물 (그중복합농) - 보리류 - 콩류 - 감자류 - 잡곡류 채 소 - 시설채소 - 양념채소 - 무·배 - 기타 과 수 - 사과 - 배 - 기타 화 훼 특 작 - 버섯 - 약용작물 - 기타 어 린 - 어신어업 - 어류양식 - 패류양식 - 해조류양식 - 종묘배양								

2. 성별 및 결혼 여부

전문품목	합 계	남 자			여 자		
		계	기혼	미혼	계	기혼	미혼
전 체							
쌀 (그중복합농) 밭 작 물 (그중복합농) - 보리류 - 콩류 - 감자류 - 잡곡류 채 소 - 시설채소 - 양념채소 - 무·배 - 기타 과 수 - 사과 - 배 - 기타 화 체 특 작 - 벼 - 약용작물 - 기타 어 업 - 어선어업 - 어류양식 - 패류양식 - 해조류양식 - 중요배양							

3. 학력별

전문품목	합 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농수산계	농수산계
					농수산계	농수산계	농수산계	농수산계
전 체								
쌀 (그중복합농) 밭 작 물 (그중복합농) - 보리류 - 콩류 - 감자류 - 잡곡류 채 소 - 시설채소 - 양념채소 - 무·배 - 기타 과 수 - 사과 - 배 - 기타 화 훼 특 작 - 벼 - 약용작물 - 기타 어 업 - 어선어업 - 어류양식 - 패류양식 - 해조류양식 - 중묘배양								

< 별지 5-4 >

4. 농어업 주종사 동거가족수별(본인포함)

전문품목	합 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전 체							
쌀 (그중복합농) 밭 작 물 (그중복합농) - 보리류 - 콩류 - 감자류 - 잡곡류 채 소 - 시설채소 - 양념채소 - 무·배 - 기 타 과 수 - 사과 - 배 - 기 타 화 훼 특 작 - 버섯 - 약용작물 - 기 타 어 업 - 어선어업 - 어류양식 - 패류양식 - 해조류양식 - 종묘배양							

5. 월별 지원대상인원

<19 년도 지원대상자>

전문품목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체												
쌀 (그중복합농)												
밭 작 물 (그중복합농)												
- 보리류												
- 콩류												
- 감자류												
- 잡곡류												
채 소												
- 시설채소												
- 양념채소												
- 무·배												
- 기타												
과 수												
- 사과												
- 배												
- 기타												
화 채												
특 작												
- 벼												
- 약용작물												
- 기타												
어 업												
- 어선어업												
- 어류양식												
- 패류양식												
- 해조류양식												
- 종묘배양												

< 별지 6 >

농업기계구입확인서

기종별	규격	제조회사	수량	금액	구입처 및 사후봉사자

※ 1) 구입처 및 사후봉사자는 농기계 판매대리점 또는 공급단협명 기입

2) 부속작업기를 구입시 부속작업기도 기입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를 구입코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군(시) 면(읍) 리 번지

농장명 :

성명 :

(인)

군수(시장) 귀하

< 별지 7-2 >

농지장기임차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차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희망임차료	비고
	읍면	리동					
영농전문성	1. 자영농고및자영농과계대학졸업 2. 농업계고교, 농과계대학, 대학원졸업						
영농규모	계	㎡	소유농지	㎡	임차농지	㎡	
농지집단화	경작지와 1. 인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작거리	거주지로부터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임차기간	19 년 월 ~ 19 년 월 (연간)						
영농경력	년	영농기술개발		1. 유 2. 무			
병역관계	1. 병역필 2. 병역면제 3. 기타						
후계농민유무	가족중 18세이상 후계농민 1. 유 2. 무						
<p>위와 같이 귀공사 보유농지를 임차코져 신청하오니 본인에게 임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9 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p>							

< 별지 8 >

전업농어가 사업추진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영농어사업계획(전문품목 :)

세부사업	투 자 계 획			비 고
	지 원 자 금	자 부 담	계	

5. 지원자금 사업계획

세부사업	지 원 자 금 사 용 계 획			비 고
	사 용 목 적	규 모	금 액	

위의 사업에 따른 용자금 사용계획을 확인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농(어)촌지도소장 직인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농업기계 구입(용자) 현황

성 명	주 소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모델명)	자체검사 합격번호	구 입 비				구 입 년월일
						계	보조	용자	자담	

※ 자체검사 합격번호가 불분명시 엔진 혹은 기대번호 기재

< 별지 10 >

농지매입·장기임차·교환분합 지원현황

성명		주소	(전화 :)		
전문품목		주민등록번호		전업농선정년도	19 년

<지원현황>

지원일자	지 원 농 지						지원구분	지원금액 원	임차만료일 (임차농지)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면 적 ㎡			

※ 지원구분 : 매입, 임차, 분합 등으로 기재
 ※ 전업농으로 선정되기 이전의 지원실적도 기재

< 지원 농지의 전매·임대(전대) 여부 점검 >

점검일자	전매·임대(전대) 여부	조치사항	조치일자	점 검 자	확 인 자

※ 지원실적이 있는 전업농가별 카드 형식으로 작성, 매년 1회이상 점검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성 명	주 소	전문품목	취소사유 (취소일자)	지 원 자 금 회 수 현 황			
				자금종류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 ※ 1) 전업농 당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때에는 현주소를 ()내에 병기
 2) 전문품목은 전업농 선정당시의 품목을 기재
 3) 취소사유는 사망, 신병, 재촌전업, 도시이주, 무단이탈 등으로 기재하고, 취소사유를 ()내에 기재
 4) 자금종류는 농지자금, 농기계자금 (보조·용자를 구분), 전업농자금 등으로 기재

진입농업관리카드

사 진 (한명합관)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④연주소	⑤사업장소	③연락처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⑥진문종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⑥최종학력 :	학교	과(출업)	⑨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⑩후계자·진입농업자·선도농업자 경력		⑩영농어 교육훈련경력(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간(년월일)		주요활동경력	사회활동직책
	기	간		
후 계 자	· ·	· ·		
진입농업자	· ·	· ·		
선도농업자	· ·	· ·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한명
	기	간			
· ·	· ·	· ·			
· ·	· ·	· ·			
· ·	· ·	· ·			

※ 활동기간중 주요활동경력, 최근사회활동직책은 연필로 작성

⑬ 포상경력·영농어기술자격 취득경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⑭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첨언>
 ⑬ 영농(어) 기반조성 및 사업추진 실적

구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 사과, 배, 오이, 배추, 한우, 인삼, 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두,톤 등)									
영농어기반△본인소유·승계대상▽	◦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 돈사, 비닐 하우스, 유리온실, 저온 냉장고, 스프링클러 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 컴퓨터, 토임, 송용차, 이앙기 등)종류별 규모(대)								
경실영작(천원)	농업외 농경외 농가소득	조수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영기술표준									
조사자격·성명									

※ ①해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읍면상당소장 또는 주사업작목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
 ②구분관에는 전업농 1년차, 2년차, 3년차 구분기입
 ③경영기술표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년점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어가 교육·훈련(공공계획)

1. 국내 교육훈련

가. 목적

- 농어촌 후계인력에 대하여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 핵심인력으로 육성
- 농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기술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농어업전문인력 육성

나. 추진방향

-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선도농어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의 실습과 견학을 병행하여 교육효과 증대

다. 교육과정 및 내용

- 신규농어민 후계자 교육(10,000명)
'95년도에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정착의욕고취, 농정시책, 지역 농어업 발전방향 등을 위주로 소양교육 실시
- 산업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 교육(3,000명)
농어촌 정착의욕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과 복무 교육을 병행 실시
- 경영기술연찬교육(7,500명)
기존 후계자중 영농어 경영실적이 저조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 전업농어가 교육(2,000명)
'95년도에 선정된 전업농어를 대상으로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 실시

라. 교육시행기관

- 농촌진흥청, 수산청, 농어촌지도기관

2. 해외연수훈련

가. 목 적

- 선진농어업기술 및 지식을 습득케하여 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해외연수시 습득한 기술 및 정보를 인근농가와 사회 각 분야에 확산

나. 연수 추진방향

○ 연수대상분야

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어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 또는 수입대체가 가능한 작목을 위주로 추진
-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추진

○ 연수대상국

-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생산성이 높은 농업선진국
-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업을 수출산업화한 국가
- 자연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고 협업농업으로 농업을 수출산업화한 농업 선진국 등

○ 연수내용

방문국의 농업관련기관, 협업영농어조직체, 주산단지 우수농어가, 유통 시설, 농가민박 등을 통하여 농업기술, 경영기법, 유통체계, 농민조직, 농가의 생활상등에 대해 연수·견학

다. 대상자격

○ 후계자 해외연수(100명)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지 '95.1.1 현재 3년 이상경과한 자로서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전업농해외연수(200명)

-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전업농어가 육성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중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제 14회 농어촌청소년대상을 수상한 자중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선도개척농으로 선발된 자

라. 선정절차

○ 농어촌지도소장이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평가한후 농촌진흥원장·수산진흥원장에게 추천

○ 농촌진흥원장·수산진흥원장은 자체 선정위원회(4~5)를 구성하여 농어촌 지도소장이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마. 연수 시행기관

○ 농촌진흥청, 수산청

선도농어가 지원(공공계획)

1. 목 적

- 생산기술, 경영기법, 기계 및 시설, 생산규모, 소득 등의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업농을 「선도농어가」로 지정하여 이들을 일반 농어가가 국제경쟁력 있는 농어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델로 활용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선도농어가」가 농어업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농수산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
- 농촌진흥청 및 수산청과 그 산하 농어촌지도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농어민교육을 「선도농어가」주도의 실질적 현장교육 위주로 전환

나. 장기 계획

	'95 ~ '98					'99 ~ 2004	합 계
	'95	'96	'97	'98	소계		
지정목표	70 ^호	100	100	100	370	600	970
벼농사 등 일반 경종	25	35	35	35	130	210	340
과 수	11	16	16	16	59	96	155
채 소	16	23	23	23	85	138	223
화 체	2	3	3	3	11	18	29
특 작	4	5	5	5	19	30	49
축 산	7	11	11	11	40	66	106
어 업	5	7	7	7	26	42	68

※ 세부 품목별 지정 농가수는 분야별 대상자 심사과정에서 결정

3. 사업신청자격

- 당해분야 영농(어)경력이 5년 이상이고, 경영규모, 기계·시설,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등에 있어 다른 농어가의 모델이 되는 농어가
- 경영주가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일반농어가에 전파하려는 의욕이 있고, 실질적인 교육능력이 있는 자

< 품목별 대상자 선정기준 및 추천기관 >

품 목		선 정 기 준	추 천 기 관
품 목	쌀	10ha 이상, 대형농기계조작 기술, 직파재배	시·도(도진홍원, 농협도지회와 협의)
축 산 물	한우	100두 이상, 축사시설자동화	시·도, 축협
	젖소	50두 이상, 착유 및 사료급여의 자동화	시·도, 낙농육우협회, 축협
	돼지	1,000두 이상, 사료급여 및 분뇨처리의 자동화	시·도, 양돈협회, 양돈연구회, 축협
	닭	3만수이상, 사료급여·급수, 환경제어, 집란 및 계분처리 자동화	시·도, 양계협회, 축협 등
과 수	사과	2ha이상, 관배수시설완비, 모노레일 등 운반기, 저온창고	시·도(도진홍원과 협의), 사과전국협의회
	배	"	시·도(도진홍원과 협의), 배전국협의회
	감귤	"	시·도(도진홍원과 협의), 감귤조합

품 목		선 정 기 준	추 천 기 관
채 소	마늘	2ha이상, 우량종구활용, 퇴비 사용	시·도(진흥원과 협의), 농협
	양파 시설 채소	2ha이상, 우량종묘활용, " 1,200평이상, 자동화온실, 양액재배	" ("), 농협 " ("), 농협
화	시설 화훼	1,200평이상, 자동화 온실, 양액재배, 선별처리장, 자본처리시설, 저온수송차량	시·도(진흥원과 협의), 화훼협회
특 작	시설 버섯	300평이상, 자동화온실	시·도 (진흥원과 협의), 농협
	약용 작물	2ha이상, 저장·조제시설	시·도 ("), 농협 생약협회
어 업	어류 양식	1ha 이상, 사료저장고, 어망부수 시설, 어장관리동	시·도(수산진흥원과 협의), 수협
	패류 양식	3ha 이상, 어장관리선, 작업대	"
	해조 류 양식	5ha 이상, 어장관리선, 채취선, 가공처리시설	"

4. 사업내용 및 지원 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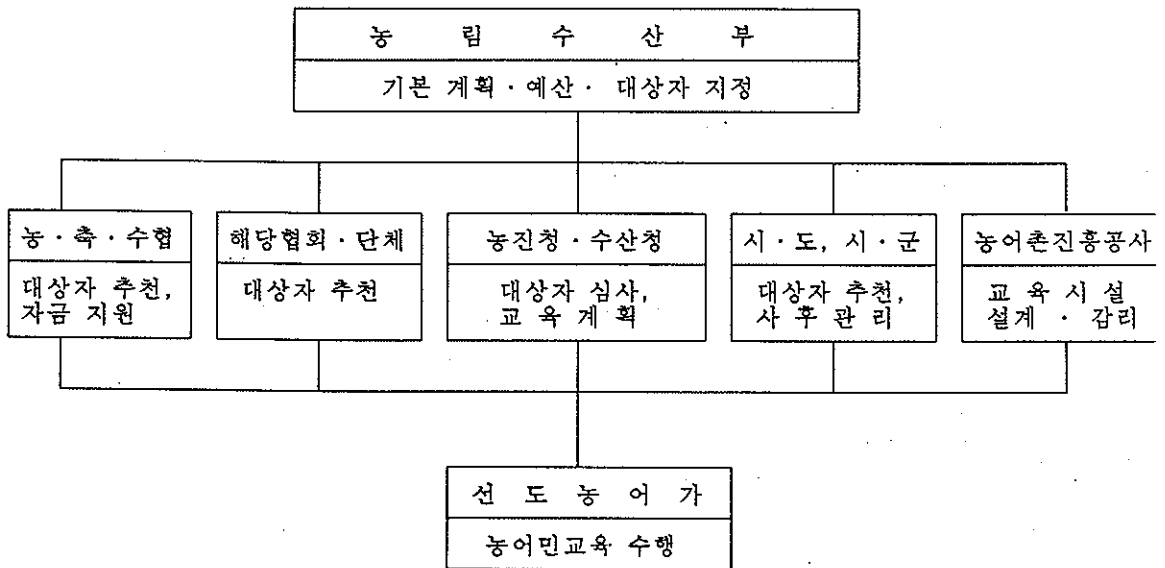
나. 사업내용

- 선도품목에 대한 교육 또는 견학을 제공코자 하는 농어가에 대한 교육·견학용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
- 교육·견학제공에 필요한 기타 시설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소요액 : 50백만원(농가당)
- 재원 : 국고용자 90%, 자담 10%
- 용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라.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 수립

- 계획수립 주체 : 선도농어가
- 계획수립 지원 : 시·군 농(어)촌지도소
- 계획수립 사항 : 교육시설계획 및 소요예산, 교육계획, 교육경비 부담계획

나. 사업신청

- 신청시기 : '95. 2. 20 ~ 3. 20
- 신청기관 : 대상자 추천기관(시·도, 농·수·축협, 해당협회·단체)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대상자 추천기관에 제출
※ 시·군 농(어)촌지도소의 안내와 지원을 받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천기관에 제출

6. 사업대상자 지정 절차



가. 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장이 사업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추천서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관장에게 제출

< 심사기관 >

- 농업분야 : 농촌진흥청
- 어업분야 : 수산청

나. 대상자 심사

- 심사 기관장이 품목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품목별 심사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품목 주무국장
 - 위 원 : 품목주무과장, 소속 4~5급 공무원중 품목전문가 등 5~10인
- 심사항목 및 평점방법 : 별첨
 - 심사기관장은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다. 대상자 지정

- 대상자 선정 : 농림수산부의 선정위원회가 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품목담당국장
 - 위 원 : 국 주무과장, 품목담당과장, 농진청 품목과장, 농·수·축협 담당부장, 품목관련협회 회장 등 10~15인
- 선도농어가 지정증서 수여 : 농림수산부장관

7. 사업자금 융자

- 융자방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다만, 대상자가 원할 경우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도 가능
- 융자기관 : 대상자의 주소지 시·군(읍·면) 농·수·축협 지역조합

8.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일 정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시행공고	'95.1.31까지	←→						
신청	2.20~ 3.20		←→					
추천	4. 1~ 4.10				←→			
심사	4.11~ 4.30				←→			
지정	5.30까지					←→		
교육시설 자금용자	'95.7월중							←→

9. 사후 관리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교육관리자 : 시·군 농(어)촌지도소장

○ 점검 및 방법

- 점검자 : 시·군 농(어)촌지도소 소속 전담지도사

- 점검시기 : 매월 2회 이상

- 점검내용 : 교육수행상황, 시설관리 실태

- 결과반영 : 특별한 이유없이 교육수행을 기피하거나, 지원 시설을 교육목적 이외로 전용하는 경우 선도농어가 지정을 취소하고 용자금 회수

10. 사업 효과

○ 농어민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향상으로 대외 경쟁력제고

11.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구조정책과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 시·군 : 산업과, 농(어)촌지도소

○ 선도농어가에 대한 기타 지원계획

- 기술선진국 또는 경쟁국에의 해외연수 및 시찰
- 선도농가 상호간의 생산 및 경영기술 교류를 위한 연찬회 개최 등 지원
-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와 영농자금 등을 우선 지원
- 정책자료 및 홍보자료와 농사정보, 유통정보 등 제공

○ 선도농어가의 임무

- 선도농어가는 시·군 농(어)촌지도소장이 위탁하는 농어민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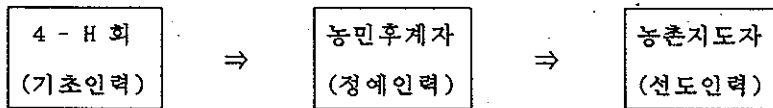
농업전문인력 양성 (공공계획)

1. 목 적

-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 의욕 배양
- 작목별 영농조직 육성으로 국제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
- 전문경영능력배양과 첨단 새기술의 신속보급으로 농가소득향상
- 지역 주산 성장작목 중심의 심층 기술교육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2. 추진방향

가. 학습 조직체 육성



- 4 - H 회 (120천명) : 영농 4-H회원 중심 농촌후계인력 저변 확대
- 농민후계자 (71천명) : 첨단기술농업을 실현하는 전업농화
- 농촌지도자 (76천명) : 국제화 · 개방화에 대응한 선도활동 강화

나. 작목별 농민교육

- 특려식 동원교육 → 희망농민 자율참여식 교육
- 여러작목 복합교육 → 단일작목 전문기술 경영교육
- 이론중심 강의식 교육 → 이론, 실기 실증교육
- 영농기술 중심교육 → 영농, 생활과학, 농의소득 종합교육
- 다수인 집합교육 → 소수정예화 연중교육

3.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 주체 : 도 농촌진흥원장 및 시군농촌지도소장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학습조직체 육성

4 - H 회 — 후계인력 저변확대

- 농심을 배울 수 있는 과제 및 4-H 전통문화찾기 과제지도 : 1인 1과제
- 작목별 시범 4-H 증점 육성 : 272개소 (생산활동 중심)
- 학습하는 4-H운동 전개 : 과제발표, 정보교환의날 설정 운영
-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23천명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 첨단기술농업 실천

- 성장단계별 농민후계자 육성 강화
 - 고졸이상 신규영농진입자, 병역특례자 : 연간 3,000명
 - 청·장년 영농종사자 예비전업농 차원으로 육성 : 40세미만 연 10천명
- 경쟁력 있는 작목별 전업농 육성 확대 : 15,000명
 - 우수후계자 및 전업농 해외연수 : 600명

농촌지도자회 - 농촌발전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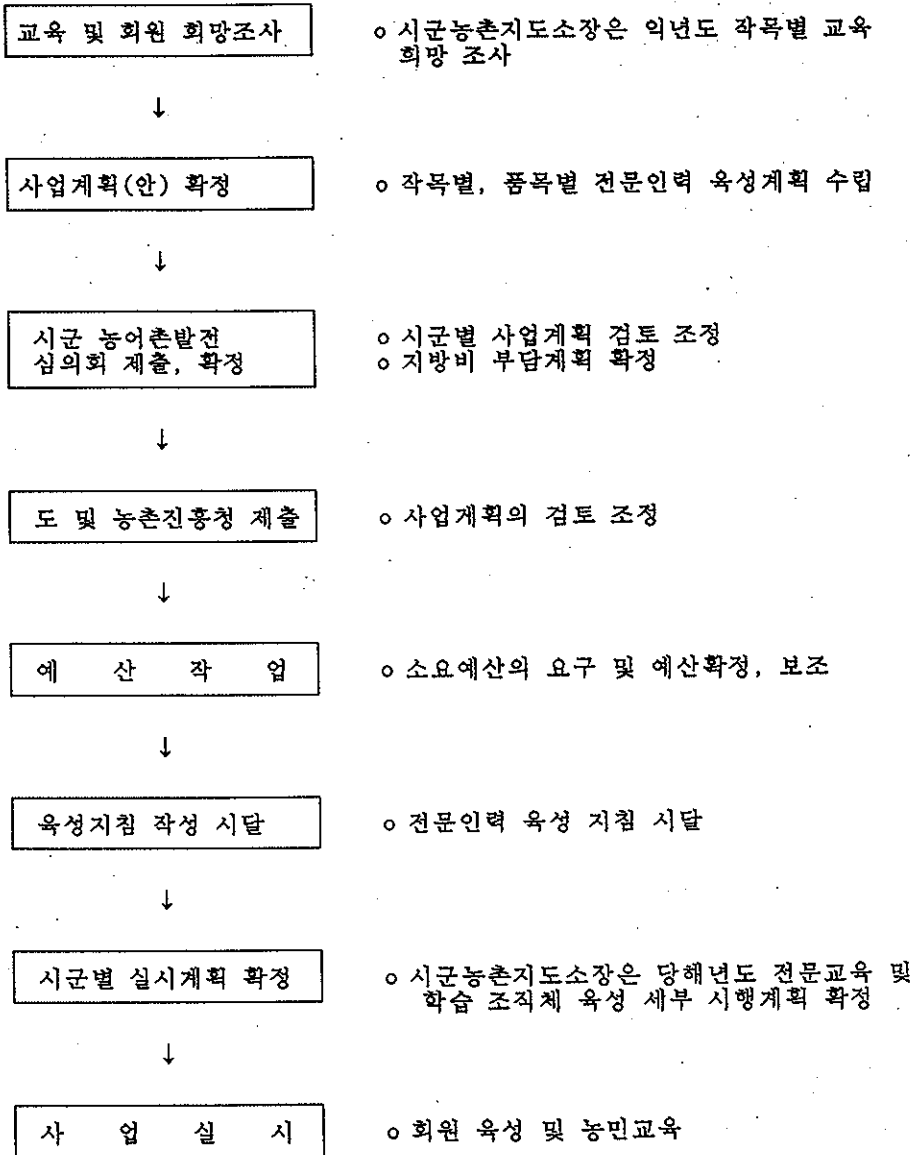
- 농촌지도자 농장의 시범농장화로 후계세대의 교육장화 : 136개 농장
- 농촌지도자의 작목별 영농조직 육성 : 1,453개 조직 (읍면당 1개소)
- 농산물품질회 및 UR대응 세미나 개최 : 10,000명 (15개소)
- 농촌지도자 작목별 연찬회 개최 : 6개작목 300명

(2) 작목별 전문교육

- 품목별 동일분야 농가중심 전문기술 연중교육 : 73천명
 - 생산, 가공, 유통 등 종합적인 전문기술교육 → 품목별 생산자 단체화
 - 경영상담실 및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상설교육장화
- 새해영농 설계교육 : 지방자체 계획
 - 품목별 농민조직 중심으로 주산지 또는 경영상담실 교육
 - 교육과정 : 영농기술반 + 생활개선반 → 작목기술반 + 생활개선반
- 당면영농 실천과제 현장기술교육 : 지방자체 계획
 - 연중 영농현장 순회교육 : 현장애로기술 신속타개
 - 여름농민교육을 연중교육으로 전환
- 생력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 23천명
 - 농기계 수리중심에서 기계화 영농종합 교육 실시
 - 농기계 교육 및 작목별 전문지도사로 순회지도란 편성 운영
- 지도공무원 전문특기교육으로 분야별 관내 최고전문가 양성
 - 지도공무원 전문특기화 교육 : 1,969명 (3년 1기)
 - 분야별 전문지도사 선진농업 해외연수 : 216명
- 작목별 주산단지 순회 영농공개강좌 개최 : 5천명
 - KBS 협력 수출주도 성장작목 집중교육 : 8회

다.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4.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5.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농촌지도소장

나. 점검 및 평가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 내용을 파악, 사업별 시행여부 확인
- 시군단위 사업평가회 실시
 - 교육 및 학습단체 지원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 농민의 희망 및 개선사항을 익년도 사업에 반영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2004
사업량	1,257천명	129	128	125	125	750
계	71,123	5,298	5,828	6,410	7,051	46,536
국비	45,804	3,412	3,753	4,128	4,541	29,970
지방비	25,319	1,886	2,075	2,282	2,510	16,566

7. 기대효과

- 영농후계인력 양성과 과학영농을 선도할 농민학습단체의 체계적 육성
 - 학습단체 회원의 농촌정착과 전문경영 능력 배양
 - 영농종사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 의욕 배양
- 작목별 농민교육의 질향상으로 전문농업인 양성
 - 지역특화작목 전문교육, 영농공개강좌 등 연중교육
 - 농민의 과학적 사고의 계발과 주요농정에 대한 공감대 조성

8.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재 정 용자급	자부담 기 타
계	121,115	3,772	1,886	1,886	-	-
서울	506	12	6	6	-	-
부산	521	20	10	10	-	-
대구	515	16	8	8	-	-
인천	513	16	8	8	-	-
광주	525	22	11	11	-	-
대전	517	18	9	9	-	-
경기	15,868	472	236	236	-	-
강원	12,595	356	178	178	-	-
충북	8,756	274	137	137	-	-
충남	11,722	406	203	203	-	-
전북	11,246	394	197	197	-	-
전남	17,196	550	275	275	-	-
경북	19,761	598	299	299	-	-
경남	18,696	558	279	279	-	-
제주	2,178	60	30	30	-	-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기관 안내

- 중앙 : 농촌진흥청 지도국 청소년과, 농민훈련과
- 도 : 도 농촌진흥원 지도국 사회지도과
- 시군 : 시군농촌지도소 교육훈련계, 사회개발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공공계획)

1. 목 적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구조개선촉진 도모

2. 추진방향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 단위로 설치·운영 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 농지임대차, 농지거래, 농지의전용 및 이용제도의 정책과 지역 실정에 맞고 농지행정추진 도모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시·군

나. 사업내용

- 각위원회의 실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및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연도	경비내역	예산	1개소당			비고
			계	국고(50%)	지방비(50%)	
'94	회의경비, 회의 참석수당, 자료 인쇄비등	백만원 774	천원 1,000	천원 500	천원 500	
'95	회의경비, 회의 참석수당, 자료 인쇄비등	930	1,200	600	600	

4. 사업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국고에서 위원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줌으로써 적극적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목적의 농업구조개선과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기여

농지관리위원 교육 (공공계획)

1. 목적

농지관리위원 중 농민대표위원을 대상으로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농지정책 및 농지관리위원회 업무처리요령등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농지관리위원의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사명감을 고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침

- 교육주관 : 농어촌진흥공사
- 교육대상 : 농지관리위원회당 선도적인 농지관리위원 1명(위원수가 많은 위원회는 2명)씩 시장·군수가 선발
- 교육내용 : 주요농정시책, 농지정책, 농지관리위원회 업무처리요령등 업무교육과 정신교육을 병행 실시
- 교육기간 : 3일(합숙)
- 교육참석 농지관리위원에 대하여 여비, 참석비등 실비 지급

나. 연차별 추진실적 및 '95계획

구 분	'92	'93	'94	'95(P)
교육인원	18,917 명	1,981	2,200	2,200
예산	백만원 554	371	371	410

※ '92년 교육인원은 지방교육 이수자 9,123명 포함

3.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가. 사업시행주체

농어촌진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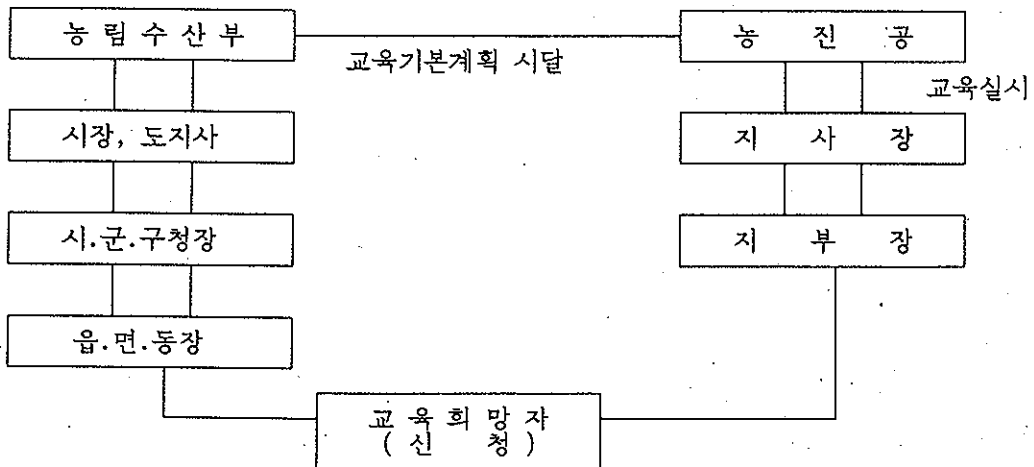
나. 사업내용

- 교육인원 : 2,200명 (200명씩 11기)
- 교육시기 : '95.2 ~ 9월

다. 교육인원 선발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교육일정 및 인원차출계획을 수립하여 당부 및 각시.도와 교육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 각 시.도지사는 별첨 교육일정 및 교육인원 차출계획에 따라 각도 관할 시.구.읍.면 농지관리위원회당 1명씩(농민위원이 29명 이상인 농지관리위원회는 2명) 시장.군수가 선발한 중앙교육 대상자의 명단을 당부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
- 지방교육 인원은 별첨 교육인원 차출계획에 따라 각 시.도지사(시장.군수)가 확정 선발하여 당부와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

교육생선발절차



라.사업비 지원

농지관리기금 보조(보조율 100%)

4.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5. 사후관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교육 종료후 교육결과를 분석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농업전문대학지원(공공계획)

1. 목 적

- WTO체제 발족에 대응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 이론식 강의에서 탈피하여 실험·실습위주의 기술습득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기자재 지원

2.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사업추진 체계도

가. 사업 시행주체 : 전라북도지사

나. 사업대상 : 이리농공전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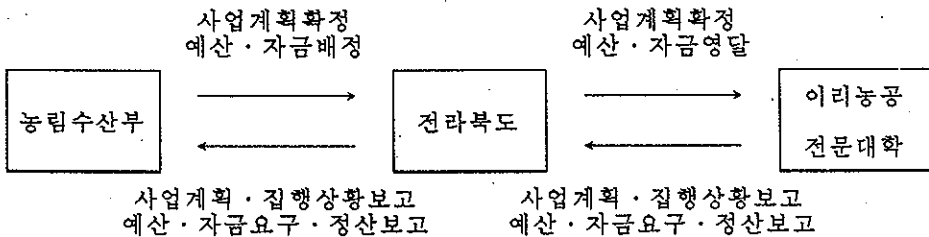
다. 사업내용

- 이리농공전문대학에 대한 실험실습 시설·기자재 확충

예) 유리온실, 축사, 돈사돈케이지, 계사자동급이기, 초지관리용 트랙터, 실험실 냉동원심분리기 등 시설 및 기자재

라. 지원조건 : 전액 국고보조

마. 사업 추진체계도



3. '95 지원계획 : 1,300백만원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구조정책과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경영)과

농업기술전문학교 설립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UR이후 기술농업을 주도할 정예 영농인력 양성
- 혁신기술 실기실습 특별교육과정 운영으로 증견영농인에 대한 첨단기술능력의 지속적 배양

2. 설립방향

- 교육법 제1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설치령 제정
- 농촌진흥청 시설인력의 최대한 활용
 - 축산시험장 초지 일부를 설치장소로 선정
 - 농촌진흥청 소속 직제화 및 산하시험연구 포장을 실습 교육장으로 지정 활용
- '95년도 교육시설 확충 및 개교준비
- '96년도 개교 :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 특작 등 6개과
240명 입학생 선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2004
계	79,930	12,720	11,904	5,588	5,923	43,795
시설비	16,503	11,529	4,974	-	-	-
장비비	5,256	962	4,294	-	-	-
교육비	58,171	229	2,636	5,588	5,923	43,795

3. '96학년도 입학생 선발

가. 선발시기 : '95. 12월

나. 선발대상

- 고졸이상의 자로서 농촌지도소장 및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선발방법

- 학과별 선발위원회 구성
- 필기시험,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종합 실시

4. 학사관리 및 졸업생 특전

가. 학사관리

- 입학금, 수업료 면제 및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 교육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전문대학 수준의 수업일수, 이수학점, 상벌 등 운영
- 졸업년도중 재학생 전원 해외연수 실시
- 방학중 자가 및 지정된 농장에서 연장실기실습지도 등

나. 졸업생 특전 및 의무사항

- 졸업생 전문대학 학력 인정
- 병역미필자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편입)에 의거 보충역 편입
- 졸업생 전원 영농정착자금지원
- 졸업후 4년간 영농종사의무제 실시 등

5. 특별교육과정 설치운영

- 중견 농민대상의 첨단영농 실기실습 특별교육과정 설치운영 (연수부 담당)
- 장기적으로 화란의 IPC (Innovation Practical Training Center)
교육모델 도입 정착 등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 농촌진흥청 지도국 청소년과

농과대학시설장비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농수산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인 농수산계 대학 교육을 내실화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각 지역의 특화품목과 연계하여 지역 농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실험실습시설등을 지원하여 지역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2. 추진방향

가. 지원방향

-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각지방의 농과대학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와 지역농민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
- 각도별로 1개대학을 선정(총 9개대학)하여 연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

나. 장기계획

(단위 : 억원)

	투 자 계 획					비 고
	총사업비	' 9 5	' 9 6	' 9 7	'98 이후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390	50	90	90	160	

※ 지원대상 학교수 : 9개교(도별 1개교)

3.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가. 지원대학 선정기준

- 지방에 있는 국립농과대학으로서 지역내 산·학·관·연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지역특화작목 개발계획이 있는 대학
 - 농수산지도직공무원, 농수산계 고교 교원을 위한 교육계획이 있는 대학
 - 농촌진흥청, 지도소, 기업체 등과 공동으로 시험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
 - 최고경영자 과정 등 지역 농어업인을 위한 교육계획이 있는 대학
 - 지역 특성화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해 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

나. 선정절차

- 농림수산부는 '95 농과대학 지원방침을 각도와 교육부에 통보
- 도지사 및 교육부는 해당학교에 지원방침을 통보
- 각 대학은 선정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 농림수산부 장관은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와 공동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학교 선정

4.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사업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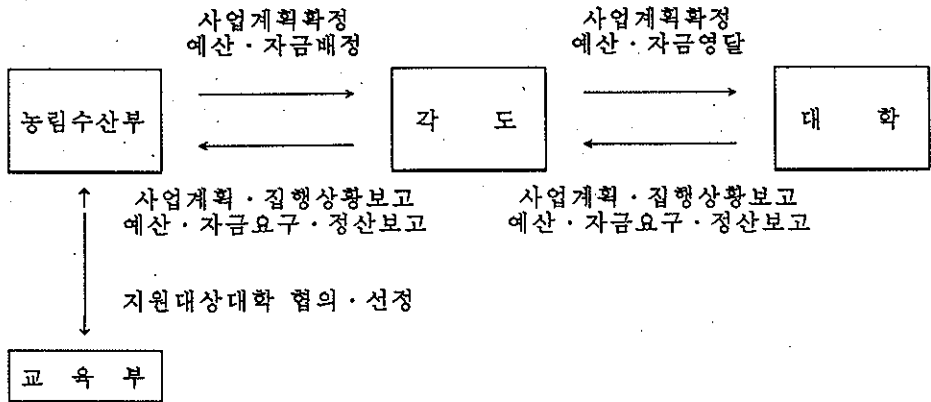
가.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나. 사업내용

- 연구개발 및 산학협동 체제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다. 지원조건 : 전액 국고보조

라.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관리

- 지원금액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지원하되 사업착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기지원
- 농림수산부와 각도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 실시
 - 필요시 교육부와 합동으로 점검·지도

6. '95 지원계획 : 5,000백만원

- 지원대상학교수 : 5개 대학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구조정책과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자영농수산고 육성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농림수산업의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정신을 갖춘 농림수산인의 육성이 필요
- 전문 농림수산인 육성의 일환으로 각 도별로 자영농(수)고를 지정하여 현대화된 영농어 기술습득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

2. 추진방향

가. 지원방향

- 도별로 지역여건과 학교시설 등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농어업후계자 육성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를 지정
 - 도별로 1~2개교 지정
-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자영학교로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나. 장기계획

(단위 : 억원)

	계		'95 계획		'96 계획		'97 계획		비 고
	학교수	사업비	학교수	사업비	학교수	사업비	학교수	사업비	
자영농고	8	400	3	144	3	144	2	112	○ 자영농고 1개교당 48 ○ 자영수고 1개교당 40 ○ 지원학교수 및 지원금액은 수 변될 수 있음.
자영수고	3	100	1	40	1	40	1	20	
계	11	500	4	184	4	184	3	132	

3.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가. 지원학교 선정기준

- 순수농수고 중 자영농수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
- 순수농고 중 자영농수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는 경우는 자영농수과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 재학생 수가 많고 생산학과 비중이 높은 학교
 - 졸업생의 농어촌 정착율이 높은 학교
 -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장비가 유리한 학교
 - 교원수가 많고 교원의 자질이 좋은 학교를 선정

나. 선정절차

- 농림수산부와 자영농수고 지원계획을 교육부와 시·도지사에게 통보
- 교육부 및 시·도지사는 교육청 및 관할지역내 학교에 통보
- 자영농수고 전환 및 자영농·수과 신설·증설을 희망하는 학교는 자영농수고 전환·시설(증설)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서에는 자영농수고 전환·신설(증설)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 시·도지사는 신청서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전달
- 농림수산부 장관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학교를 선정
 - 교육부와 협의 및 확인절차를 거쳐 선정

4.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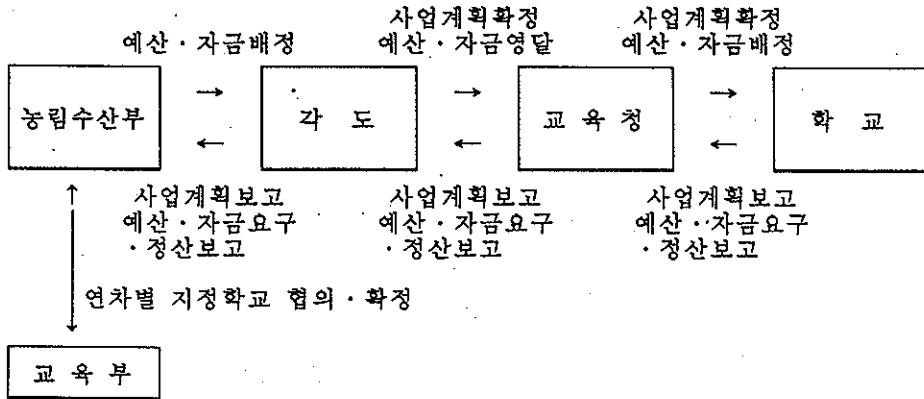
가. 사업시행 주체 : 도지사

나. 사업내용

- 학교의시설, 장비,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 예) 기숙사 유리온실, 자동화 축사, 조직배양실, 트랙터, 콤팩트, 양어
실습장, 선박조정 시뮬레이터, 답수·해수 집수정

다. 지원조건 : 전액 국고보조

라. 사업 추진체계도



5. 사업관리

- 지원금액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지원하되 사업착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기지원
- 농림수산부와 각도는 수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및 지도
 - 특히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사전 지도를 강화

6. '95 지원계획 : 18,400백만원

- 자영농(수)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 경우
 - 자영농교 : 144억원 (1개교당 48억원 x 3개교)
 - 자영수교 : 40억원 (1개교당 40억원 x 1개교)
- 자영농(수)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는 경우
 - 자영농(수)과를 두고있는 학교 중에서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된 학교수에 따라 지원액 배정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구조정책과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사업(공공계획)

1. 목 적

자영농과생에게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하여 핵심 농어민후계세대로 육성

2. 추진방향

- 자영농과 재학생에 대하여 기숙사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습기회를 부여함.
- 기숙사 급식비지원은 급식비의 70%를 지원하되 관련부처가 부담함.

내 무 부	교 육 부	농림수산부	학 교	학생부담
30 %	20	20	10	20

- 1인 1일 급식비 ('94) 1,649원 → ('95) 1,879원
- 지원일수 : 260일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기준 : 소요액의 70% (농림수산부20%)
- 지원 주체 : 각 도지사

3. 급식비 신청 자격

- 자영농과에 재학하고 있는 전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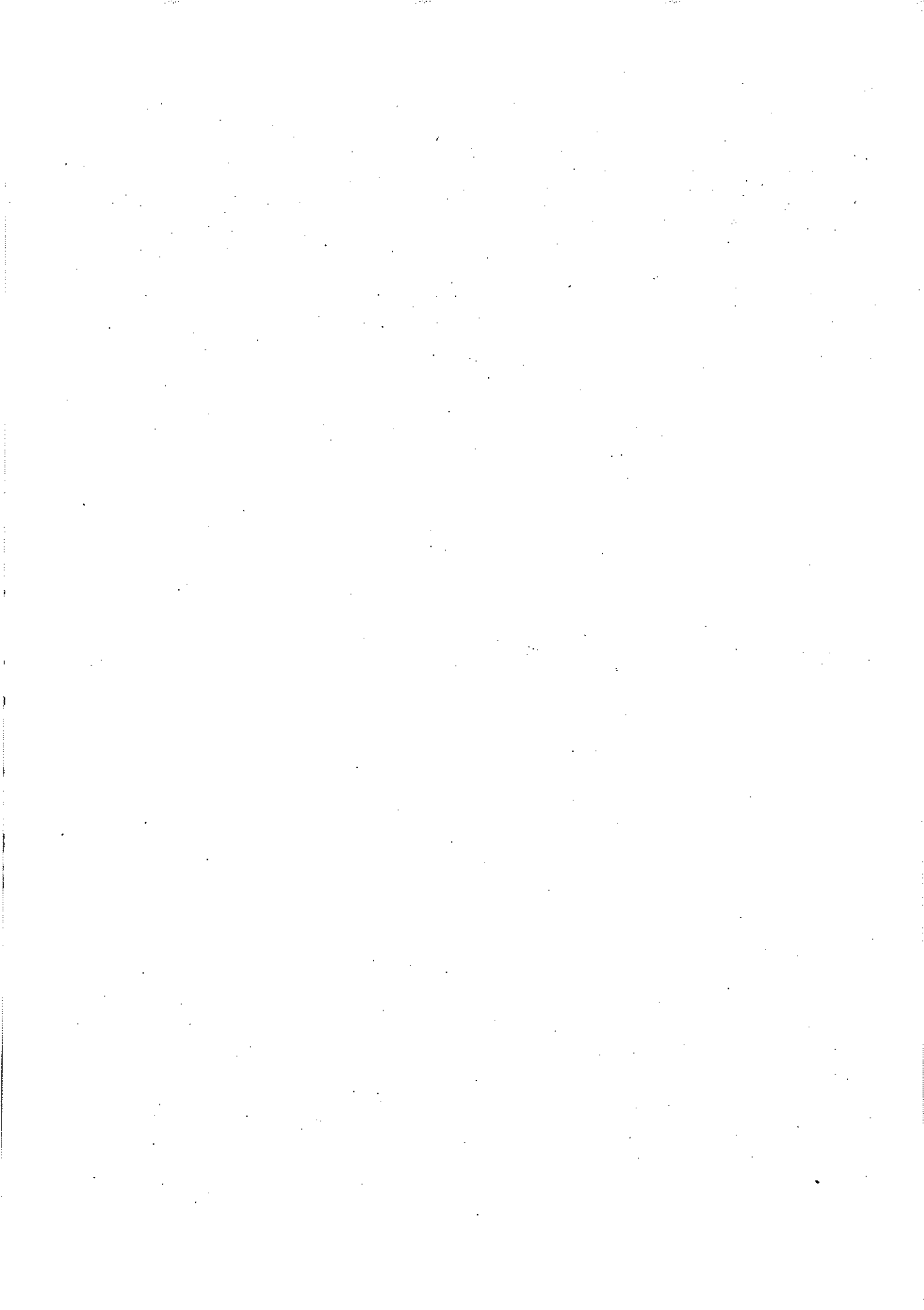
4.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사업 각 도별 '95예산안

	학생수	단 가 (1,879 원 × 260일)	사 업 비			
			총 사업비	국 고 (20%)	순 지방비 (30%)	교. 특 (50%:자부 담30%포함)
경 기 (여주)	462	488,540	255,705	45,141	67,711	112,853
강 원 (춘천) (주천)	132 (56) (76)	488,540	64,487 (27,358) (37,129)	12,898 (5,472) (7,426)	19,346 (8,207) (11,139)	32,243
충 북 (보은)	88	488,540	42,992	8,599	12,898	21,495
충 남 (공주)	40	488,540	19,542	3,908	5,863	9,771
전 북 (김제)	86	488,540	46,900	9,380	14,070	23,450
전 남 (강진)	64	488,540	31,267	6,253	9,380	15,634
경 북 (안동)	42	488,540	20,519	4,104	6,156	10,259
경 남 (사천)	97	488,540	47,388	9,478	14,216	23,694
계 주 (서귀)	78	488,540	38,106	7,621	11,432	19,053
합 계	1,099	488,540	536,906	107,382	161,072	268,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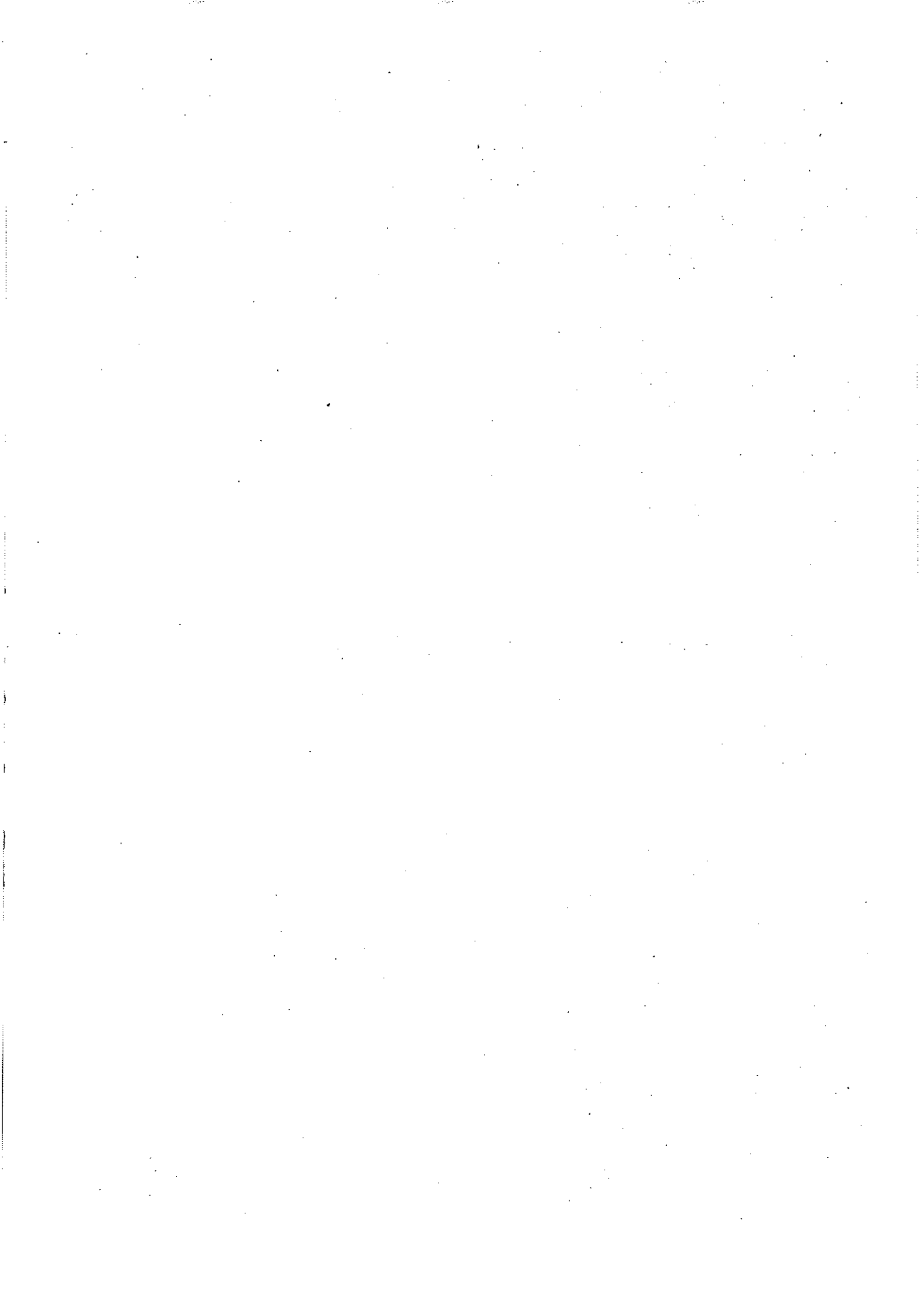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어촌복지담당관실
- 도단위 : 도청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도교육청 과학기술과
- 군 : 산업과



2. 농업생산기반정비



10ha미만 농지개발사업(자율)

1. 목 적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0ha미만의 소규모 농지개발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농어민 자율에 의한 농지개발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개발대상 토지

가. 자기소유 미간지라야 한다.

나.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역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 농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하게 할 수 있다.

3. 개발대상지 선정절차

가. 시장·군수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개간 희망자로부터 제1호서식에 의한 개발대상지역 선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토지가 법제3조 제1항 각호 (제5호는 제외함)의 규정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법적제한지역이 아님을 확인 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상면적의 다과에 불구하고 접수된 개발대상지역 선정신청서를 해당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나. 시장·군수로부터 농지개발대상지역 선정신청서를 이송받은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신청면적이 10ha이상일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의견서 포함)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송하고 신청면적이 10ha미만인 신청서는 법 제61조 및 령 제3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 의거 법 제5조 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관계도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한다.

다. 도지사로 부터 농지개발대상지역 선정 조사결과 관계도서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중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송부 (결과통지용) 하여야 한다.

4. 개간허가신청, 개간허가, 준공인가

가. 개간허가신청 (법 제23조 명제17조, 규칙 제16조) : 토지소유자는 도지사로부터 실행계획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도서를 첨부한 개간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율설계기준은 조성1143-1322 '76.6.22를 규약준칙은 농지확 1143-1324 '81.10.30을 참조)

나. 수인공동으로 사업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참가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해당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원금과 이자 및 기타채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사업참가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다. 개간허가 (법 제24조 명 제17조의2, 규칙 제17조) : 토지소유자로부터 개간허가신청서 또는 수인공동사업시행 대표자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 준공인가 (법 제29조, 규칙 제21조) : 개간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는 준공검사후 하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보고사항)

○ 농지개발 준공현황 보고 (년보)

농지개발 준공현황 보고 (년보)

(단위:면적ha, 사업비:천원)

시군별	계			개 전			개 답			간 척		
	계	면적	사업비	계	면적	사업비	계	면적	사업비	계	면적	사업비

※ 면적은 소수2자리까지 표시함.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조사사업(공공계획)

1. 목 적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지역특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별 영농유형 및 지역농민 의향등을 바탕으로 하는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맞는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이하 농지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기본방침

- 조사대상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한다. 다만, 진흥지역밖이더라도 진흥지역과 일체적인 농지이용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대상지역으로 포함
- 농지정비계획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농어촌발전 기본방침 『농림수산부 구조27210-105('92.2.25)호』과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세부 지침 『농림수산 구조27210-179('92.4.1)호』의 우량농지 정비방향을 수용하여 수립
- 농지정비계획은 시·군단위 행정구역내의 진흥지역을 지형·수리 및 영농조건에 따라 몇개의 지구로 구분하고 지구별로 농지정비계획을 수립
- 농지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

<년차별 추진계획>

	계	'92	'93	'94	'95	'96
조사대상시·군	160 개	30	20	24	40	46
조사대상면적	1,032 천ha	267	184	201	200	180
사 업 비	8,583 백만원	2,351	1,440	1,600	1,600	1,592

3.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농어촌진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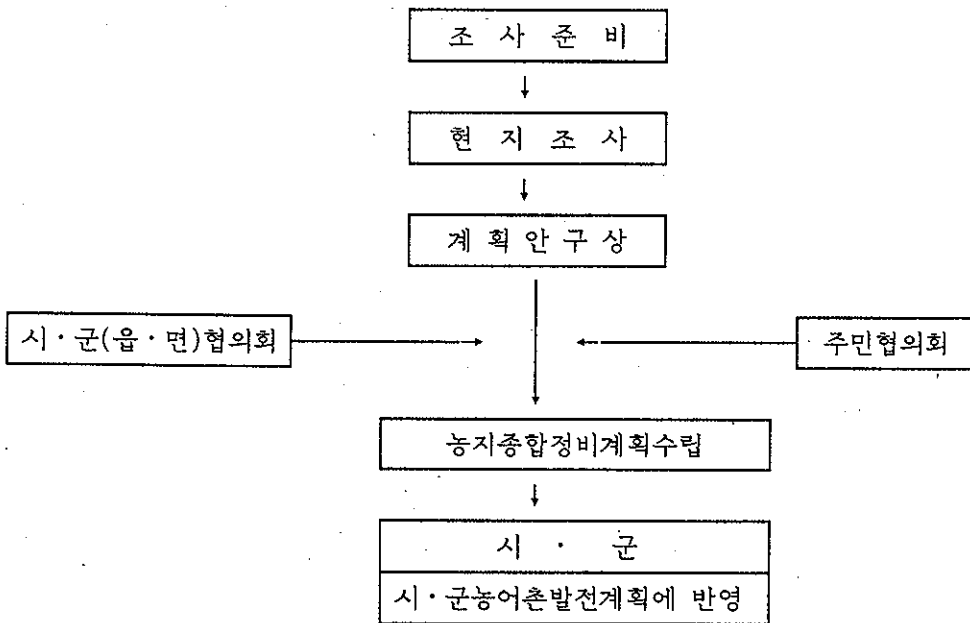
나. '95추진계획

- 조사대상시·군 : 40개시·군
- 조사대상면적 : 200천ha
- 사업비 : 1,600백만원
- 재원 및 지원조건 : 국고전액보조

다. 계획수립 절차

- 계획수립을 조사준비에서 정비계획 수립까지 4단계로 나누어 시행

<계획수립 절차도>



라. 계획수립 방법

(1) 조사준비

- 조사지역의 지형도 등 관련도면 및 자료수집
- 현지조사를 위한 예비도면 작성

(2) 현지조사

- 농지이용현황조사
- 농가의향조사
- 생산기반현황조사
- 관련시설조사

(3) 농지이용계획수립

- 토양특성, 경사도, 토양배수, 유효토심, 경지정리, 수리상태, 생산기반 정비실태, 주민의향등을 토대로 수립
- 농지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수립
 - 경종농업지구 : 답작전용지, 전답겸용지, 전작전용지로 세분
 - 시설농업지구 :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시설 설치지역
 - 과수지구 : 과수, 유실수 등 집단지역
 - 축산지구 : 축산단지화가 필요한 지역
 - 취락지구 : 농가집단화가 필요한 지역

(4) 생산기반정비계획 수립

- 농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어촌용수, 도로 정비, 용배수로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등 각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하되,
- 마을집단화, 취락배수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실시요령 및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등을 근거로 하여 수립

- 부문별 계획수립
 - 경지정리
 - 신규 경지정리, 재정비(대구획, 일반) 발 경지정리등으로 구분 수립
 - 구획의 형상, 면적, 주요도로 배치계획
 - 배수개선
 - 지표배수와 지하배수로 구분 수립
 - 농어촌용수개발
 - 농지이용계획에 따른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축산용수등이 부족하여 신규 및 보강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로정비
 - 경지정리 신규 및 재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전 지역의 농어촌도로 및 농도를 대상으로 노폭이 협소하여 노면이 불량한 도로
 - 용배수로 정비
 - 경지정리 신규 및 재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전 지역으로 물 손실이 많은 토공용수로 또는 사면이 붕괴되기 쉬운 배수로
 - 수리시설개보수
 -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재해의 위험이 많은 시·군, 농조수리시설 및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 투자계획
 -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사업별 표준 사업비 사용
 - 농어촌구조개선대책 투자재원을 근거로 진흥지역의 지구(Code No)별 단위사업별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년차별 투자계획 수립

마.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서
- 농지이용계획도(1:25,000)
-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도(1:25,000)

4. 조사결과 의 활용

- 시·군별 농어촌발전계획의 생산기반정비 증장기계획으로 활용
- 농지법 제정 이후 시·군별 농지이용계획 수립자료로 활용
- 시·군단위의 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기본자료로 활용
- 지역별 투자우선 순위 결정 및 개별사업시 항시 활용

5.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 농어촌진흥공사 : 농지이용사업처 진흥지역개발부

농어촌용수개발 일반사항

1.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함.

사 업 구 분	사 업 시 행 자	비 고
① 대중규모 용수개발	농 조	○ 50ha이상 지표수개발
② 일반용수개발		
㉠ 지표수 개발		
○ 소규모 개발	지방자치단체	
○ 보강개발	지방자치단체 및 농조	
㉡ 지하수 개발		
○ 대형관정	지방자치단체	
○ 집수정	지방자치단체 및 농조	
○ 수택조사	농어촌진흥공사	
㉢ 제주도 지하수개발	지방자치단체	
㉣ 한발대비		
③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지방자치단체	농특세 사업
④ 시험연구사업	농진공 또는 농조연	
⑤ 조사사업		
○ 대중규모 용수개발	농 진 공	

2. 농업진흥지역내의 한해상습지역 및 정주생활권개발 대상 지역을 우선하여 집중 개발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앞으로의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예산여건 등을 감안 점차 농어촌용수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4. 각 사업별 재원별 부담률이 변경될 때는 별도 시달
5. 조사측량설계는 개발지구의 위치, 지형, 토질 및 작부체계 등을 고려하고 완공후 유지 관리도 감안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함.

6. 단위공사의 추진은 완공, 부분완공 및 수원공완공 등의 순으로 사업의 효과 거양 또는 이상한발시 기성시설물의 이용가능성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한 연차별 공정계획에 의한 당해년 사업목표량의 선정과 소요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각 지구별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 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도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립
7. 공사감독은 착공전에 현지를 답사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 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이외에도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농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8. 풍수해 사전대비 및 응급대책으로는
 - 공사현장에 가마니, 새끼, 말뚝,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
 - 저수지에서는 기상정보를 검토하여 물을 사전배제하며, 공사장내의 배수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
 -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 등의 침수방지 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진행 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사전에 검토
9.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
10.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일반관리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는 국가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현지 확인, 지도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관리비로 필요한 경비를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관리비 요율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시·도·
사·군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11. 농림수산부에서 사업별로 각 시·도에 배정된 예산을 도지사가 지역별로 배정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서식 1-1호). 연초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동시에 당부에 보고

12.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따른 타법에 의한 허가, 면허 등 협의

-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 면허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9조에 의해 농림수산부장관과 허가, 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고 동법시행명 제71조 제1항 8호에 의해 협의권한을 위임 하고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 면허 협의는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사업시행 인가전에 행하도록 함.
단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장·군수가 행하도록 함.

< 예 > 대·중규모 용수 개발사업 : 도지사가 협의결정하되 하천법에 의한 허가 면허의 경우
기반조성과에서 치수과와 협의결정

13. 농업기반조성사업시행에 따른 국유지 무상양여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항 제1호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유인 도로, 용·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하천부지는 농지개량사업자에게 무상양여토록 하고 있으나,
- 법 제 165호 제3항에는 국유인 임야, 잡종지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토록 되어 있어 법 제 165조 제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국유지는 유상매입을 받으므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어 국고의 가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 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유지외에 농지개량사업시행에 필요한 국유지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공하게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되, 동법시행 규칙 제55조 제1호 의거 소유는 국유로 등기하고 관리청을 농림수산부로 첨기 등기할 것.

14. 자금의 운영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계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금으로 지원

○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금집행상황을 별첨서식 (1-2, 1-3)에 의거 매월 말일 현재로 익월 10일 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15.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시가 별도로 시달될 경우에는 그 지시에 의함.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공공계획)

1. 목 적

동리면적 50ha이상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등의 수리시설을 설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등을 원활히 공급하여 안전, 편의영농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영농기계화를 도모함.

2. 추진방향

- 가. 농어촌진흥지역내의 한발상습지를 우선 개발
- 나.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투자
- 다.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효과위주 시행

3. 사업지구선정

- 가. 예정지조사는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평면도(1:50,000지형도)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나. 도지사는 예정지를 답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예정지 답사 보고서를 검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
- 라.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중에서 실시설계지구를 선정하여 실시설계토록하고, 실시설계 확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선정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시행토록 함.

4.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농지개량조합장

나. 사업내용

(1) 저수지

- 저수지 위치 선정은 지역의 농업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사항, 수문, 입지 조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집단부락이 수몰 또는 집단 이주될 경우에는 댐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함.
- 신설되는 저수지의 몽리구역내 소류지 보강등 소규모 수리시설과 하류의 기존보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농공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등 특용 단지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계획시 고려하여야 함.

(2) 양수장

-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갈수량 산정시는 상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중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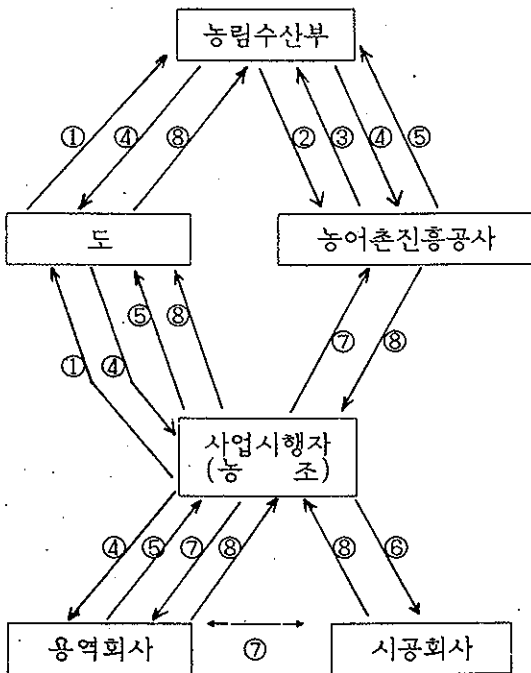
(3) 용·배수로

-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지역은 가능한한 물리구역에서 제외
- 소형수로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
- 부락, 집단분묘, 파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다. 사업비 재원

- 순공사비
자대대
용지매수등 기타 } 100% 국고 지원
- 개 답 : 국고 50%, 자부담 50%

라. 사업시행체계도



- ① 사업시행예정지 답사보고
- ② 기본조사 지시
- ③ 기본조사 보고
- ④ 실시설계지시(150ha미만→도→농조, 150ha이상 → 농진공)
- ⑤ 사업계획확정(150ha미만 →도 150ha이상 → 농림수산부)
- ⑥ 공사발주 및 공사 시행
- ⑦ 공사감리위탁 및 감리
- ⑧ 사업시행상황 및 준공보고

5. 사업계획수립

가. 기본조사

- (1) 기본조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지시하는 기본조사 예정지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당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함.
- (2) 기본조사비는 지구별로 추후 측량설계비내에 포함하여 요율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되, 별도 요율이 개정확정될 시에는 이에 준하여야 함.
- (3) 기본조사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농리민의 개발희망도의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편입동의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물리 및 내한능력) 및 경지 정리 병행 추진계획등이 반영 되어야 함.
- (4)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조사에 의거 사업시행예정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기본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
- (5) 기본조사시에는 TC/TM에 의한 집중물관리시스템(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등)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me)화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 (1) 실시설계 수행자 및 계획확정

구 분	실시설계수행자	계획확정
○ 물리면적 150ha미만	○ 사업시행자가 설계자 선정	도지사
○ 물리면적 150ha이상	○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진공에 위탁시행	농림수산부장관

- (2) 농림수산부장관은 물리면적 150ha미만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지구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설계 수행자를 선정토록 함.

- (3) 150ha미만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는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결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조사설계시는 도 및 사업시행자와 농리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사전 지시를 받아야 함.

6. 사업시행

가. 공정계획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2) 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적정한 공정계획에 대하여는 주요부분만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서식 1-4)
- (3)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4) 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월말 현재의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서식 1-5) *영진*

나. 계획보완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어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보완을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리면적, 수원공시설의 규모, 형식, 구조변경 및 기초지반개량공법 등의 주요 공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2) 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시행케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개정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간단한 공작물의 터파기 결과에 따른 토질 및 물량변경, 현지어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분수관, 분수문, 방수문, 배수암거, 배수잠관 및 건물목 관공사 등의 위치이동과 그에 따른 물량 변동 등
- (3) 도지사는 계획보완을 승인함에 있어서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사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4) 도지사는 계획보완승인과 동시에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서식 1-6)
- (5) 도지사는 계획보완신청내용중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후 확정하는 조건하에 우선 일괄 승인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건을 해제할 수 있음.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 (2)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농한기에 시행하여 작물보상이나 실농보상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물보상 등을 할 수 있음.
-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물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물지내 오염원은 담수 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하고 임대 경작케할 경우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공사감리수행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용역 업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지구별로 해당 공정을 감안하여 공사감리수행자로 하여금 전문 분야별 적정인원의 감독원을 배치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그 배치상황을 2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선식 1-7)
- (3)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원을 빈번히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수행하는등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감리 수행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가 계약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 위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함.

아. 자재 공급 및 관리

- (1) 자재의 관급은 사업시행자가 재무부 회계 예규 2200.04-122-3(1990.12.5)의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규정에 의함.
- (2)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3)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서식 1-8)
- (4) 구매공급하는 기자재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송되면 사업시행자는 품질 및 수량을 확인 검수하여 자재수불대장에 기재하고 보관창고에 보관 관리하여야 함.
- (5) 기자재 출고시에는 공사감리원의 출고요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출고수량을 자재수불대장에 기재한 다음 출고하여야 함.
- (6) 사업시행자는 지급자재의 구매공급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분기말 익월 10일 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서식 1-9)

바. 평야부 공사

- (1)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사업이 착공된 지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평야부계획을 사전에 재 검토 보완하여야 함.

- (2) 사업계획서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선, 용수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등으로 함.
- (3) 기타사항은 경지정리사업 병행실시요령에 의함.

사. 검 사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2) 공사감리업무를 위탁하였을때 사업시행자는 (1)항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공사감리 위탁기관 포함)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3) 사업시행자가 (2)항의 검사를 공사감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을때 공사감리자는 검사직무를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사케 할 수 있음.

7. 사후관리

- 가. 준공처리후 시설물인계인수시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리기관 및 준공검사자와 합동으로 준공 사업계획도서가 현지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나. 공사감리기관은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저수지관리규정을 작성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다.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후 시설물을 사업시행자 및 관리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함.
- 라. 관리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정비하는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8. '95년도 사업계획(안)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118지구 44,969ha	195,000	195,000			
경 기	4지구 2,190ha	5,470	5,470			
강 원	6지구 1,878ha	6,300	6,300			
충 북	7지구 1,054ha	6,600	6,600			
충 남	14지구 5,861ha	17,802	17,802			
전 북	10지구 5,567ha	28,487	28,487			
전 남	21지구 6,326ha	27,113	27,113			
경 북	27지구 11,924ha	46,668	46,668			
경 남	29지구 10,169ha	48,560	48,560			
계 주						
기 타		8,000	8,000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50ha이하 한밭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 농어촌용수 및 생활용수등을 공급하여 지역 농민의 영농 및 생활환경 개선

2. 추진방향

- 한해상습지로서 사업효과가 크고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지구 선정
-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기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

3. 사업지구선정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구별 사업비가 저렴하고 사업효율 및 수혜자의 호응이 높은 지역
-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한해우심지역을 우선 선정

4.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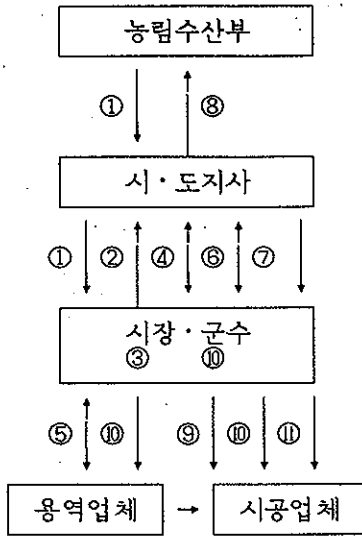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개발면적 50ha이하 지구로 소류지, 양수장, 취입보

다. 사업비 재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93이전 시행지구	100%	70%	30%
'94이후 신규지구	100%	-	100%

라. 사업추진 체계도



- ① 예산내시
- ② 사업시행 대상지구 선정보고
- ③ 예정지 답사
- ④ 조사설계 시행자 결정 및 통보
- ⑤ 조사측량 설계
- ⑥ 사업계획 확정승인 신청 및 승인
- ⑦ 신규지구 책정 및 사업시행인가
- ⑧ 사업시행인가 보고
- ⑨ 공사발주
- ⑩ 공사감독
- ⑪ 준공검사

5. 사업계획수립

가. 기본조사 : 시·도지사(기본계획수립)

나. 실시설계 : 시장·군수

6. 사업시행

가. 시행절차

(1) 신규사업 시행

(가) 신규사업지구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예정지 답사, 기본조사,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

(나)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추진

(2) 계획보완

- 신규여건상 부득이 설계를 보완하고자 할 때는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계획보완 요령에 준함.

나. 사업비 배정

- (1) 시·도지사는 내시된 사업비를 지구별로 배정함. 지구별 사업비 배정은 준공 위주로 우선 배정하고 계속지구는 사업효과 조기 거양 또는 공사중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예산배정함. '94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지방비로 추진
- (2) 시·도지사는 소요 지방비 전액을 확보지원 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게 의뢰하여 시행
- (2) 시·도지사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완공시까지 공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시·도의 기술진은 중요공사 시공시 반드시 입회 지도 감독
- (3) 공사감리는 관계기술서적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여야 이에 부합되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는 관계전문 기술진(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의견을 듣는등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 (4) 시공시는 무리한 공정계획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며, 중요시설물에 대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관리를 개선하고, 품질향상을 도모
- (5)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전 공사중 및 완공후의 현장사진(전경, 근경 12×8cm 칼라)을 기록보유용으로 설치

라. 시 공

- (1) 농업토목 일반시방서(농림수산부 발행),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특수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
- (2) 시공시는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 시공관리, 품질향상 및 개선을 도모

마. 기술지원

-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시·군 및 시·군에서 예정지조사,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기술지원
- (3) 시·도지사는 기술지원에 따른 발생 경비에 대하여 실비정산할 수 있음.

바. 조사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 (1)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첨 2"의 요율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2) 등 비용의 대상액중 순공사비 및 자재대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7. 사후관리

- 사업시행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지개량시설물 관리규정 및 시행지침에 의거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8. 사업효과

- 가. 기계화 영농 및 안전영농기반구출
- 나. 증수효과 및 품질향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9. 기타 참고사항

가. 보 고

- (1)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 2-1)
- (2) 도지사는 매월 말일 현재 추진현황(진도)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 1-5)

나.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수리과
- 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기반조성과(농지개발과)
- 군 : 건설과

10. '95년도 사업계획(안)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2,716	10,475	7,332	3,143		
경 기	92	52	36	16		
강 원	81	162	114	48		
충 북	89	252	177	75		
충 남	213	539	376	163		
전 북	402	1,384	971	413		
전 남	832	3,601	2,520	1,081		
경 북	579	2,598	1,818	780		
경 남	428	1,887	1,320	567		
제 주	-	-	-	-		

보강(지표수)개발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기존수리시설에 의한 급수답중 지역여건 변화등으로 물부족지역에 시설을 보강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노후시설을 보강하여 사전재해예방 도모

2. 추진방향

- 한해상습지로 사업효과가 크고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지구 우선 시행
-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기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

3. 사업지구선정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구별 사업비가 저렴하고 사업효율 및 수혜자의 호응이 높은 지역
-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물부족지역의 시설물 보강지구를 우선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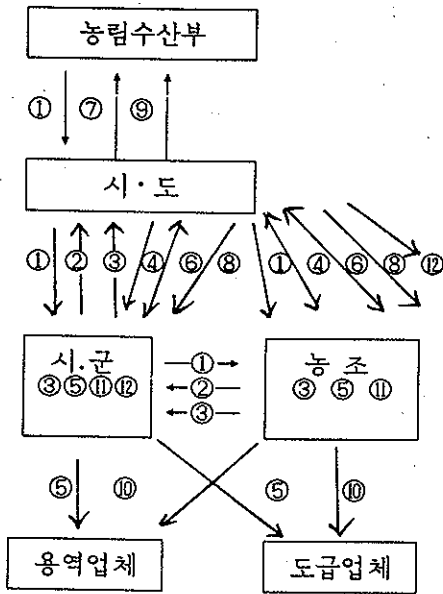
4.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및 농지개량조합

나. 사업내용 : 저수지제당더쌓기, 여수토확장 및 더쌓기, 양수장규모 확장, 취입보언체 더쌓기 및 연장, 취수시설의 증설 또는 확장, 집수 암거 유공관 증설 등

다. 사업비 재원 : 국고 70%, 지방비 30%

라. 사업추진체계도



- ① 예산내시
- ② 사업시행 대상지구 선정보고
- ③ 예정지 답사
- ④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지구결정
- ⑤ 조사측량 설계
- ⑥ 사업계획 확정승인 신청 및 계획확정
- ⑦ 신규지구 책정 사전 협의
- ⑧ 신규지구 책정 및 사업시행인가
- ⑨ 사업시행인가 보고
- ⑩ 공사발주
- ⑪ 공사감독
- ⑫ 준공검사

5. 사업계획수립

가. 기본조사 : 시·도지사(기본계획수립)

나. 실시설계 : 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

6. 사업시행

가. 시행절차

(1) 신규사업 시행

(가) 신규사업지구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예정지 답사, 기본조사,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

(나) '94부터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받아 추진

(2) 계획보완

- 신규여건상 부득이 설계를 보완하고자 할 때는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계획보완 요령에 준함.

나. 사업비 배정

- (1) 시·도지사는 내시된 사업비를 지구별로 배정한다. 지구별 사업비 배정을 준공 위주로 우선 배정하고 계속지구는 사업효과 조기 거양 또는 공사중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예산배정
- (2) 시·도지사는 소요 지방비 전액을 확보지원

다.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게 의뢰하여 시행
- (2) 도지사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완공시까지 공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시·도의 기술진은 중요공사 시공시 반드시 입회 지도 감독
- (3) 공사감리는 관계기술서적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여야 이에 부합되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는 관계전문 기술진(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의견을 듣는등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 (4) 시공시는 무리한 공정계획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며, 중요시설물에 대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관리를 개선하고, 품질향상을 도모
- (5)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전 공사중 및 완공후의 현장사진(전경, 근경 12×8cm 칼라)을 기록보유용으로 설치

라. 시 공

- (1) 농업토목 일반시방서(농림수산부 발행),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특수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
- (2) 시공시는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 시공관리, 품질향상 및 개선을 도모

마. 기술지원

- (1)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시·군 및 시·군에서 예정지조사,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기술지원
 - 기술지원을 요하는 시설 및 공정
 - 저수지 제당 더쌓기 및 신설
 - 취수시설의 단면확장 및 보강
 - 양수장의 증설 및 추가 설치
 - 기타 보충 수원공의 추가 설치

바. 조사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 (1)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첨 2"의 요율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2) 동 비용의 대상액중 순공사비 및 자재대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7. 사후관리

- 사업시행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지개량시설물 관리규정 및 시행지침에 의거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8. 사업효과

가. 기계화 영농 및 안전영농기반구출

나. 증수효과 및 품질향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9. 기타 참고사항

가. 보 고

(1)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서식 2-1)

(2) 도지사는 매월 말일 현재 추진현황(진도)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 1-5)

나. 사업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수리과
- 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기반조성과(농지개발과)
- 군 : 건설과

10. '95년도 사업계획(안)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6,726	16,897	11,834	5,063		
경 기	176	184	128	56		
강 원	530	389	272	117		
충 북	131	155	108	47		
충 남	404	759	531	228		
전 북	3,243	1,848	1,294	554		
전 남	773	2,621	1,833	788		
경 북	544	4,359	3,058	1,301		
경 남	945	5,153	3,610	1,543		
기 타		1,429	1,000	429		

농어촌용수개발사업예산배정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업시행처	위 치		지구명	주요 시설명	면적 (ha)	총사업비	년까지	년 계 획					비고
	군	리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주) 비교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 지구별로 구분표시할 것.

일중 생산기반조성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집행상황 보고

(특별회계)

년 월 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재 배정액	농림수산 부로부터 차수령액	시·도 농조 자금배정액		사 업 실형액	진 도 (%)	비고
				시·군	농 조			
1. 생산기반조성 (1) 발기반정비 (2) 경 지 정 리 (3) 배 수 개 선 (4) 수리시설 개보수 ○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 국가관리방조제 ○ 지방관리방조제 ○ 수해복구 - 농경지 복구 - 수리시설 복구 (5) 농어촌용수개발 ○ 대·중규모농업용수 - 대규모용수개발 - 중규모용수개발 ○ 일반농업용수개발 - 지표수개발 - 지하수개발 ○ 제주도지하수개발 ○ 한발대비용수개발 2. 생활환경개선 (1)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 군단위 종합개발 계획수립 ○ 농어촌가로등설치 (2) 농어촌오폐수처리 시설 지원 ※ 농지개량조합지원 (일반회계) ○ 농조조합비지원 ○ 농조장기채지원								

[서식 1-3호]

월중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도

년 월 일 (단위 : 천원)

농조명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 배정액	도지급 수령액	농 조 자 금 집 행 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보상비	기 타	계	

용수개발사업공정계획

농조장 (인)
 시공자 (인)
 작성자(공진소장) (인)
 (금액 : 원)

사업시행자 :
 시공자 :
 작성자(공진소장) :

도명 :
 동명 :

지구명 :
 용리면적 : ha, 착공년월일 :

구분	용량 단위	승인액		년도까지		년도계획		년도이후		공정(%)		분기별 공정계획				비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착공 이후 (F)	1/4		2/4		3/4		4/4				
		용량	(A)	용량	(B)	용량	(C)	용량	(D)		용량	(E)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순공사비																					
용담비	ha																				
저체대	대																				
양회	대																				
침근	M/T																				
기타																					
용지매수및보상비	ha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중시강축비																					
판리비																					
집지출																					
조합채비																					
영선비																					
에비																					

(주)
 D=A-(B+C)
 C
 E=X-100(%)
 A
 B+C
 F=X-100(%)
 A
 <감수면적>
 o 93가지: ha
 o 94상원기: "
 o 94하원기: "
 o 94이후: "

지표수개발사업추진상황

도

위시 시군 읍면		사업 시행처	지구명	구분	시인명	봉리 면적	총사업비			기정잔액	진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신항액	진도(%)		확공이후 누계실행	비고 (부신시시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계																				

단위 : 천원, 년 월 일 현재

-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으로 구분
 2. 시인명 : 저수지, 양수장, 보, 뚝수입거
 3. 진도(%): 계획은 당원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서식 1-6호]

용수개발사업보완계획승인보고 및 승인신청시 도지사가 첨부할 서류

1. 보완계획승인공한사본
2. 보완계획승인신청내용(장관에게 승인신청시에만 첨부) (별첨㉔서식)
3. 심사서(기술 및 관리)
4. 사업계획 개요
5. 사업비 수지예산표 및 수지예산 증감대비표
6. 보조금 산출내역
7. 보조금 재원별 내역
8.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등 사무비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증감사유 명기)
9.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10.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11. 지급자재조서
12. 공사수량 이동조서(별첨㉕서식)
13. 보완계획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14.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서식 ㉔]

보완계획승인신청내용

공 종	당 초 계 획	당 초 계 획	도지사 검토의견

※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만 기재한다.

[서식 ㉔]

공사수량이동조서

공정	규격	단위	공사수량		증감내역			사유
			당초	변경	수량	단가	금액	
소계	(%)							잡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부가가치세
계								

[서식 1-7호]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농 조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직 급	성 명		

주) :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서식1-8호]

자 재 수 불 부

결	재		년월일	품명	규격	수입량		출고수량			제고량	부기
	책임자	담당				금회	수계	번호	금회	수계		

중규모용수개발사업지급자재공급추진상황

도	조합지구명	지체명	중소요량 (A)	분기별개회(B)								(B ÷ A) 누계진도	비고 (부진시사유)
				1/4		2/4		3/4		4/4			
				개회 진도 심척	개회 진도 심척	개회 진도 심척	개회 진도 심척						
계		양회 정근 기계,전기	대 농 주										

년 월 일 현재

일반용수개발사업계획인가결과보고

도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지구수	면적(ha)			중수량 (M/T)	총사업비	국고			지방자치단체			비고			
		개	신규개발	보충수			개	담	개	담	개	담	개	담	비고	
계																
지표수개발 (신규)																
지수지																
양수장																
보																
지표수개발 (보강)																
지수지																
양수장																
보																
도수로																

지하수개발사업(공공계획)

1. 목 적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한밭우심지역 또는 수리시설이 있으나 지역여건의 변동등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한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농어촌의 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개선 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조사(수맥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개발함

나. 사업추진계획

(사업량:ha,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총계획	'94까지	'95계획	'96이후	비 고
사업량	45,000	26,618	1,040	17,342	
사업비	280,417	92,381	7,000	181,032	

다. 사업의 종류 : 대형관정, 집수정

3. 대상지 선정기준

가. 대형관정개발

- 농업진흥지역내의 한밭우심지역 또는 물부족지역으로 대형관정개발 적지
- 한밭우심지역중 타 수원공개발 부적지
- 농민이 개발을 원하는 지역으로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농조편입 또는 농지개량계조직 운영등으로 유지관리가 양호한 지구

나. 집수정개발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자갈, 모래층이 잘 발달되어 다량의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 지하수 함양원이 되는 넓은 유역이 있는 지역
- 하상의 구배가 완만한 지역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및 농지개량조합장

나. 사업내용

(1) 대형관정 : 수원공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시행

- 수원공시설 : 지구답사, 착정공사(그라우팅 포함), 우물자재설치, 양수시설, 수질검사 및 토목조사등

우물구경(mm)	150	200	250
착정구경(mm)	200	250	300
착정심도(m)	50 ~ 100		

※ 암반관정의 기준채수량 : 250톤/일/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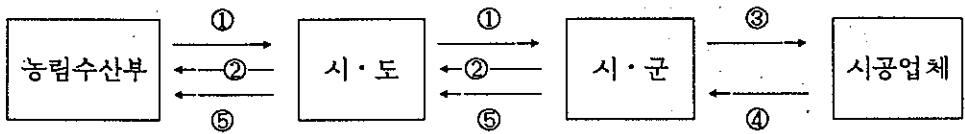
단, 도서 및 해안지역, 산간오지로서 대체수원개발이 불가능한 특수지역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50톤/일 까지 조정 시행 가능

(2) 집수정

- 심도 8m내의 구경 3,500mm, 채수량 4,000~7,000톤/일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라. 사업추진체계



- | | |
|-----------------|-------------|
| ① 예산내시 및 실시요령시달 | ② 사업지구 선정보고 |
| ③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시행 | ④ 시설물 인수인계 |
| ⑤ 공사완공 보고 | |

5. 사업의 시행

가.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가 실시하거나 관련전문기관 또는 건설업체에 위탁 가능
- 대형관정의 수원공개발(착정) 및 이용시설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공사감리 및 관리 : 농근법시행규칙 제47조(착정공사 이용시설중 송수호스 : 용·배수 시설, 이용시설 : 양·배수시설 범위)요율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결정

나. 공사시행 : 지하수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시·도지사 책임하에 시행

- 수원공개발(착정)시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풍리민대표등의 입회하에 오염 방지시설 설치여부등을 필히 확인
 - 착정공사는 지표면에서 암반층까지 굴착후 케이싱을 삽입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한후 양생이 된다음 암반층을 굴착
 - 개발실패공에 대하여는 폐공관리대장에 기입하고 지하수개발 이용폐쇄모식도에 따른 폐공처리

- 이용시설은 지하수시설 표준설계도를 참고하여 현지실정과 지하수법령 및 관련관리 지침에 부합되게 설계 시행
 - 이용시설동력은 전동화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세부기술적인 시행에 대해 농어촌진흥공사에 협조의뢰 가능
 -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수온상승시설을 설치하여 벼의 냉해피해 방지
 -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KS등 규격자재를 사용하고 자재조달시에는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관급자재 조달등으로 예산절감 도모
- 준공처리시 양수시험은 사업시행자, 몽리민대표 및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실시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채수량, 관개면적등을 재확인하여 조정 보완

다. 보 고

(1) 대형관정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구를 조속히 확정·사업시행 인가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서식 1
- 매월말 현재 추진실적(익월 10일까지) : 서식 3
- 익년도 지하수개발사업 후보지구(8월말까지) : 서식 4

(2) 집 수 정 :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보고 요령 적용

6.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서식7)비치, 시설물관리등은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규정 적용(수리 51322-444('94.9.23))

7. 기타 참고사항

가. 타 사업규정의 적용

-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중규모용수개발사업 실시요령에 의함

나. 사업안내기관

- 증 양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수리과
- 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 시·군 : 건설과

8. '95년도 사업계획(안)

가. 대형관정

(사업량 : ha,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500	5,000	5,000			
경 기	80	800	800			
강 원	30	300	300			
충 북	30	300	300			
충 남	69	690	690			
전 북	75	750	750			
전 남	99	990	990			
경 북	60	600	600			
경 남	57	570	570			

나. 집수정개발사업

(사업량 : ha,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304	2,000	2,000			
충 남	194	972	972			
전 북	60	608	608			
경 북	50	420	420			

지하수조사(수맥조사)사업(공공계획)

1. 목 적

농어촌용수개발, 한발상습지등 지하수개발예정지에 대하여 사전에 지하수부존상태를 파악하여 개발성공율의 제고 및 수리지질도를 작성, 지하수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제공하여 농어민의 지하수개발에 편의 제공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등 농어촌용수개발이 가능하도록 지하수개발 적지에 시행
- 지하수법등 제규정에 의한 지하수조사 및 자료배포로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도모

나. 년차별 투자계획

(사업량 : 천ha,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총계획	'94까지	'95계획	'96이후	비 고
사업량	536	71	27	438	
사업비	193,070	20,727	2,482	169,861	

3.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농어촌진흥공사

나. 사업내용

(1) 지하수 조사

- 담당 사 : 현지여건 및 기존 조사자료 정리

- 지표지질조사 : 분포지질과 관련된 지하수 부존성 검토
- 시설관정조사 : 지하수 부존량 및 지하수위 확인
- 선 구조 추출 : 위성영상자료를 분석하여 지질구조 파악
- 물 리 탐 사 : 대수층 심도 및 지하지질 구조조사(전탐 또는 탄성과 탐사)
- 수위관측공설치 : 지구내 지하수유량 및 지하수위 확인
- 시 추 조 사 : 지하지질 및 지하수위 확인
- 착정 및 양수시험 : 대수층의 수리학적 특성과 지하수 이용가능량 확인
- 수문 및 토질조사 : 지표수와 의 관계, 개발가능면적, 이용시설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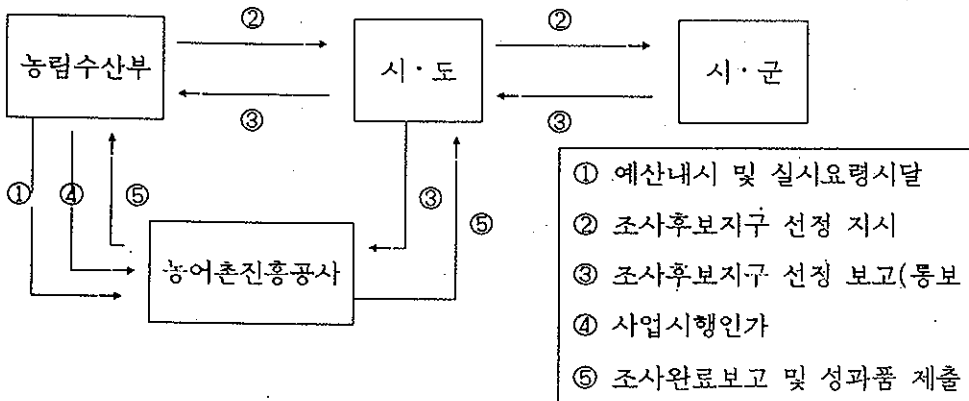
(2) 수리지질도(수맥도)작성

지하수조사 성과품은 조사보고서와 도면으로 발간하되 수리지질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지형, 지하수위, 수질특성 및 기반암 추정 등고선
- 가능 채수량 분포도 및 지하수개발시설 지하수개발가능 지역
- 지질도, 지질단면도
- 시추 주상도 및 제 양수시험자료
- 조사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전압별 전원거리
- 개발적지에 대한 공종별 추정사업비
- 제 조사지점의 위치 및 기타 지하수법 및 총리훈령(제304호)에 규정된 사항등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라. 사업추진 체계도



4. 사업지구선정

- 가.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당해년도 수맥조사사업 기본계획과 예산을 내시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에게 사업량을 배정
- 나. 농어촌진흥공사는 시·도지사와 협의, 한발우심정도 및 농민의 개발 희망도등을 감안한 조사 우선순위를 결정
- 다. 조사 우선순위 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으로 당해년도 및 향후 개발 대상지구
 - 한해우심으로 지하수개발이 시급한 지역
 -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 생활용수등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
 - 도시계획등 다른 국토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5. 사업시행

- 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부터 이 사업에 대한 당해년도 예산 및 도별 사업량이 내시되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사사업지구를 선정
- 나.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선정된 지구에 대한 세부조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조사사업 시행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
- 다.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수맥조사후 조사 성과품을 도서로서 발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사업효과

- 개발예정지에 대한 지하수부존상태 사전조사로 지하수개발의 성공율을 제고함으로써 지하수 수질보전 및 개발예산절감도
- 조사전 성공율 37% → 조사후 완공율 73%(개소당 약 500백만원 절감)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정 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수리과
- 도 :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개발처
- 시·군 : 건설과

8. '95년도 사업계획(안)

(사업량 : ha,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농어촌진흥공사	3,400	2,482	2,482			

제주도 지하수 개발(공공계획)

1. 지하수개발사업

가. 목 적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제주도 전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 생활용수등을 공급하여 농어민의 편의 영능 및 생활환경개선 도모.

나. 추진방향

- (1) 기본방향 :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단계적 사업추진
 - 지하수관련 법규정의 준수.

(2) 사업추진계획

(사업량 : 공,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총계획	'94까지	'95계획(안)	'96이후	비 고
사업량	435	313	12	110	
사업비	17,339	8,842	540	7,957	

다. 사업대상지역

- (1) 대상지역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지역으로써 영능 또는 생활용수등 물이 부족한 지역
- (2) 우선순위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부합되며, 수맥조사 결과 필요한 지하수 부존량이 충분하고, 고생산성 작물의 재배등으로 사업효율이 높은 지역

라.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1)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2)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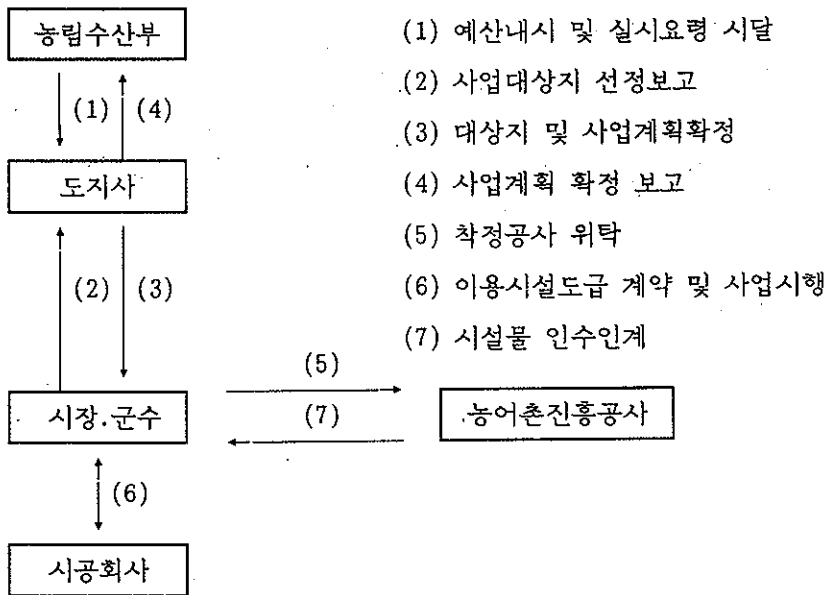
- 수원공시설 : 착정, 우물자재의 설치, 양수시험, 수질검사등의 공정

- 이용시설 : 수중모터펌프, 양수장, 전기시설 및 송수관등

○ 지원규모 :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

(국고보조는 50%를 초과할 수 없음)

(3) 사업추진체계도



마.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에게 사업대상지 선정보고.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지구별 사업비가 저렴하고 사업효율 및 수혜자의 호응이 높은 지역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등 지역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 가능한 한 농업지역으로서 물부족지역을 우선 선정.
- 지하수개발 밀집으로 인근의 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 및 해수침투등이 발생치 않는 지역

(2) 사업지역선정

도지사는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선정 보고한 지역중 사업의 타당성 및 지방비 부담능력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후 시장·군수에게 통보.

(3)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음용수로도 사용됨을 감안하여 착정은 지하수개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과업지시로 위탁 시행
- 지하수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 시설등 설치

바. 사후관리

- 사업시행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지하수관련 제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

사. 기타

(1) 보고

- 도지사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 1)
- 도지사는 매월말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서식 3)
- ※ 지하수개발 및 장기관측망 설치사업공통

-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지하수 개발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침에 따름

아. 사업안내기관

- (1) 중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수리과
- (2) 도 : 제주도 개발국 시설관리과
- (3) 시.군 : 건설과 또는 산업과

자. '95년도 사업계획(안)

(사업량 : 개소,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제주도지하수	12	1,080	540	540		

2. 해수침투조사사업

가. 목 적

제주도 지하수 수자원에 대한 장기관측을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수침투 및 채수량 감소등의 관측조사.

나. 사업시행자 : 도지사

다. 지원비율 : 국고 100%

라. 추진방향

(1) 사업추진방향

-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관측조사를 추진하되 관측에 필요한 지하수 관정은 당해년도 개발공을 최대한 이용하고 필요시 신규 관측공을 설치함
- 관측용 장비는 최신장비 설치를 원칙으로 함

(2) 년차별 추진계획

(사업량 : 개소,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총계획	'94까지	'95계획(안)	'96이후	비 고
사업량	96	48	12	36	
사업비	3,264	400	100	2,764	

마. 사업시행

- (1) 도지사는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 (2) 도지사는 당해년도 예산범위를 감안 장기관측 예정지역을 선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
- (3) 농어촌진흥공사는 관측용 장비구입, 조사항목 및 조사량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4) 도지사는 해당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5)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보존 관리
- (6) 농어촌진흥공사는 매 년도말에 관측장비 설치내역과 관측조사 성과품을 도지사에게 제출
- (7) 도지사는 정산완료후 조사 성과품과 정산내역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바. 사업안내기관

- (1) 중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수리과
- (2) 도 : 제주도 개발국 시설관리과

사. '95년도 사업계획(안)

(사업량 : 개소,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제주도지하수	12	100	1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계획)

1. 목 적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면지역 마을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암반지하수를 개발, 생활용수와 농업·축산용수등 다목적 용수공급 도모
- 농어촌의 생활수준향상, 시설채소재배 수요등을 사전예측하여 필요수량 확보
-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사업목표 : 2004년까지 면단위 농어촌지역 마을에 5,000개소의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어촌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증대 도모
- 장기계획

(사업량 : 개소, 사업비 : 억원)

구 분	계 획	'94	'95	'96~'98	'99 이후
사업량	5,000	52	320	1,628	3,000
사업비	12,000	130	800	4,070	7,000

3. 사업대상지역

- 전국 면지역중 우물, 하천수이용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 정주권개발사업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마을
-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개발후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특히, '95년 사업지구선정은 가뭄이 우심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우선시행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사업내용	지원기준 (%)			
	계	국고보조	지방교부세보조	자담
○ 지하수조사 및 수원공 시설	100	50	50	
○ 이용시설(양수장, 수중모타펌프등)	100	50	50	
○ 급수시설(농가까지의 배관시설 및 계량기)	100	50	50	
○ 농가별 내부배관 시설	100	-	-	100

※ 1개소당 250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교부세보조 50%)수준으로 지원하되
 도지사는 지구 여건을 감안,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구간 조정 시행 가능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 지하수조사	현지답사, 지표지질조사, 선구조 추출물리탐사, 시추조사 (간이양수시험 포함), 지하수개발 영향조사, 수질검사등 ※ 지구당 시추조사는 필요심도까지 1공을 시행한후, 실패시는 추가로 1공을 시추조사할 수 있다.
○ 수원공 시설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등
○ 이용시설	수중모타펌프, 양수장옥, 송배수관, 물탱크, 정수장, 전기시설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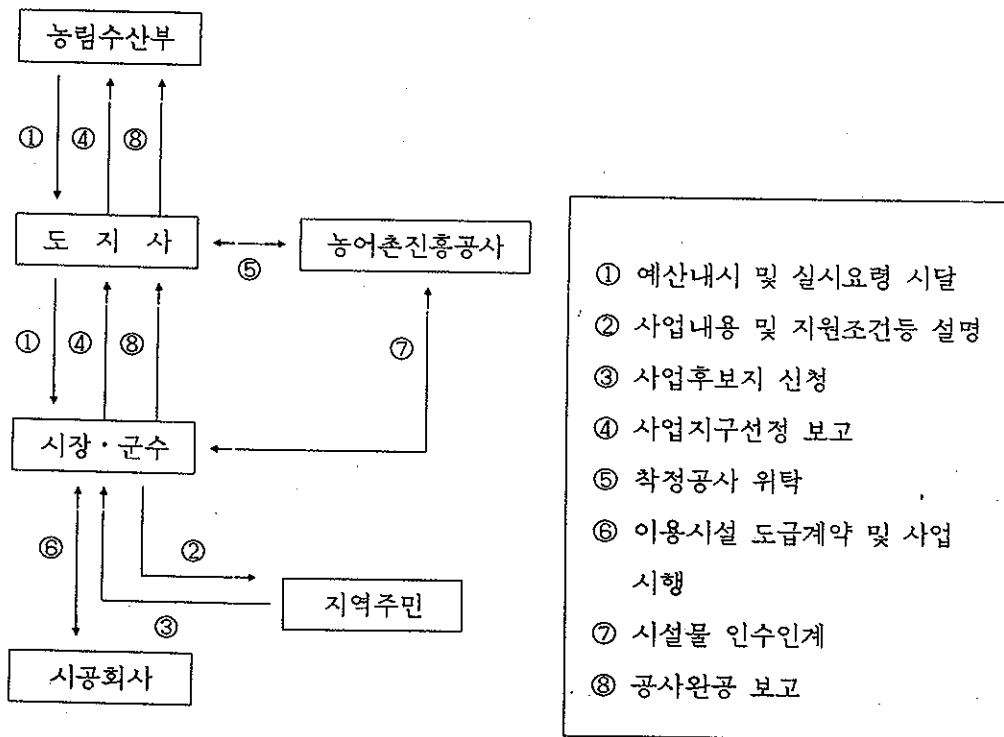
다. 사업기준

- 우물기준심도 : 200m내외
- 우물자재구경 : 200mm
- 1일 채수량 : 150톤이상/공

※ - 우물기준심도는 200m내외의 적정수량 확보심도까지 개발

- 산간, 도서지역등 특수지역은 도지사 책임하에 채수량을 공당 1일 채수량 100톤이상으로 하향 조정 가능

라.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계획 및 공정계획 수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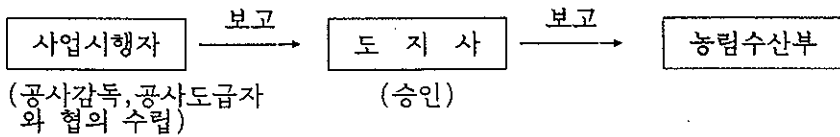
가. 사업계획 수립 주체 : 사업시행자

나. 사업계획수립(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유의사항

- 정주권개발사업과 동일지구일 경우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일괄계획화에 설계 실시
 - 수원공의 확공 위치는 안정수위이하의 심도까지 적합하게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양정길이등을 고려하여 안전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각종자재는 KS 규격자재등을 사용하되 소요강도 및 부식에 강한 제품사용
 -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등을 활용하여 관급 조달등으로 예산절감도모
 - 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하도록 충분히 높은곳에 설치하되 동파 및 수온변화가 없도록 설치
 - 물탱크의 규모는 지역실정에 맞는 용수사용량(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을 고려하여 결정 (예 : 도시지역 1일 용수사용량 : 450 ℓ/인)
 - 송배수관등은 동결심이하 및 중차량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
 - 지하수법등 제규정에 의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지하수착정 소요장비, 자재는 반드시 소독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반드시 확인
- ※ - 지표면에서 암반층까지 토사부분을 굴착하고, 케이싱을 삽입한 후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처리한 후 암반부분을 굴착
- 수원공개발시(착정)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등 마을 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등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 대표가 날인.

다. 공정계획수립

- 수립자 : 사업시행자
- 수립방법 : 수원공개발과 이용시설로 구분
- 수원공을 우선개발원칙으로 하되 필요수량 및 수질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는 이용시설 선시공가능
- 수립절차



- 효 과
 - 사업시행자 공정계획 준수 의무
 - 공사진도가 공정계획미달시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
 - 공사진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 기 타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승인. 단, 지구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승인전 농림수산부와 사전 협의

라. 공사추진 및 완료

- 지하수조사, 수원공설계 및 개발 : 도지사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일괄 과업 지시
- 단가적용 : 농업용지하수사업 사업비 산정기준(수리51322-478, '94.10.12)을 참고하여 동일공종의 타공인 품셈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 공사감독 : 도지사 및 시장·군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용지매수보상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적용

- 공사완료후 조치 : 계약서, 설계서등 이행여부 확인 검사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관정등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 수질검사 :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질검사에 합격한 후
음용

6. 사업대상지 선정

가. 사업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 설치비용등 자부담능력, 주민호응도, 사후관리능력, 사업의 효율성, 개발시급성등을 감안 선정
- 지역주민이 자발적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사후관리등에 적극적인 지역여부등을 고려(정부에서 강요하는 사업이 아님을 주시시킬 것)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협의 보상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 여부등
- 아래요건이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지 선정시 제외
 - 상수도계획이 수립예정이거나 수립된 지역
 - 자연수 이용마을 이더라도 수질오염이 안된 수량이 풍부한 지역
 - 인구감소로 앞으로 존속할 수 없는 지역
 - 수물예정지등 항구적 주거지로 부적합한 지역

나. 사업대상지 확정 절차

기 관 명	추진내용
농림수산부 도지사 시장·군수 지역주민	기본지침 작성 대상지 검토 확정 사업홍보(사업내용, 지원조건등), 대상지 선정 사업후보지 신청

7. 사후관리

- 관 리 자 : 시장·군수(공무원 1인, 수혜주민 대표자 1인)
- 관 리 방 법 : - 시설물의 관리대장(서식7) 작성 비치
- 수혜자들로 관리 조직을 구성 관리(차울적인 방법 유도)
- 관 리 비 용 등 : 시장·군수가 관리 조직으로 하여금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 적립 조치(지역주민의견 반영)
- 수 질 검 사 : 관련규정에 의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조치
- 점 검 정 비 : 관리조직이 우선 실시, 자체점검 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지원(농어촌진흥공사등 전문기관 활용)
- 시 설 물 보 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시설 안내판등 제작 설치 특히 양수장, 물탱크, 염소소독기 관리 철저

8. 기 타

가. 보 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서식 5 , 매년 8.30까지
-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서식 5
- 공정계획수립 결과 보고 : 서식 2
- 사업추진상황보고 : 매월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서식 6
- 사업완료 : 일괄보고
-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하수개발실시요령, 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등 제규정 적용

나. 사업안내기관

- 정 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수리과
- 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 시·군 : 건설과

9. '95년도 사업계획(안)

(사업량 : 개소,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보조	용 자	자 담
계	320	80,000	40,000	40,000		
경 기	30	7,500	3,750	3,750		
강 원	15	3,750	1,875	1,875		
충 북	33	8,250	4,125	4,125		
충 남	50	12,500	6,250	6,250		
전 북	37	9,250	4,625	4,625		
전 남	48	12,000	6,000	6,000		
경 북	53	13,250	6,625	6,625		
경 남	54	13,500	6,750	6,750		

(서식 11)

지하수개발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금액 : 천원)

사업명	지구수 (공)	용수활용						총사업비	까지	금전예산			이후	비고	
		생활용수		관개용수 (ha)		축산	수산· 공업용			계	국고	지방법비			
		호수	인구	계	담							진작			도비
						채소	과수			기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관정 ○ 한발대비 용수개발 - 소형관정 ○ 제주도지하수 개발 															

주) 1. 사업별로 작성, 2. 용수활용면의 축산, 수산, 공업용 기타는 해당만에 표, 3. 정수정은 중규모사업 공적계획 인가 보고 인식에 준하여 별도보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업자 : (인)
 원형성자 : (인)

○○군 ○○면 ○○마을 사업시행년월일 : 최종년월일 : (금액단위 : 천원)

과 목	송 인 액		○○년도까지		년도개회		년도이후		분기별공정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 수 원 공													
○ 이 용 시 설													
- 양 수 장													
- 물 펌 프													
- 송·배수관													
- 기 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관 리 비													
○ 기 타													

(서식 3)

지하수 () 사업 () 월중 진도보고

○○○도

(금액 : 천원)

구분	총 계획		() 말현재 계획대 실적					누계 진도	자금집행	
			계 획		실 적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진도		금 액	진도

주) 1. 지방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외서로 표시

2. 집수정개발사업은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진도보고 양식에 준해서 보고.

※ ○ 소형관정 { 착정완료 : 공 (%)
 전기시설 : 개소(%)

○ 대형관정 { 착정완료 : 공 (%)
 이용시설 : 개소(%)

(서식 4)

지하수개발 익년도 대상지 보고

○○○도

사업명	위 치			지구명	용수활용계획				수맥조사 실시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답작	전작	생활용수	기타		
					ha	ha	호(인)			

주) 1. 시설별(소형관정, 대형관정, 집수정, 제주도지하수개발, 해수침투조사)로 구분작성

2. 수맥조사 대상지 면적은 용수활용계획란에 답작, 전작을 구분하여 작성

(서력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대상지(시행인가결과)보고

읍 신 순 위	지 구 명	위 지		개발 종 수	관 수 대 상						사 업 비			신청기준		수백조사업부		비고		
		군	리		총 이용량 m ³ /일	이용량 m ³ /일	가구수	급수인구	이용량 m ³ /일	관개용수 면적	면적	면적	국고	지방비	기타	정주권 지구	일반 지구		실시	미실시
				공																
계																				

* 1. 생활용수는 450m³/인/일 기준

2. 개발공수는 필요수량을 감안 결정하되 1개소당 개발사업비(회전 및 이용시설 포함)는 250백만원 계상

3. 선정기준, 수백조사업 여부만은 해당란에 O표

4. 비포만에는 기타 참고자료 기재

5. 1 : 25,000 지형도 원도에 지구위치 표시(도면을 자르지 않것)하여 첨부

(서식 6)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진도보고

비율명	위 치		금 수 계 획				시 업 계 획			시 업 비			진 도			년 월 일 현재	특기사항	
			생활용수	가구수	인구	관개용수	기타용수	배수지	용수권	국고	지방비	계	회장	이동	시			도
	면	리	조	인	ha	ha	ha	공	m ²	m ²	전원	계	도	도	도			

* 기타 용수면에는 축산, 수산물 용수목적 명기

** 사업비()내서로 실적금액 기재

(서식 7)

Q

지하수개발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치 : 도 군 면 리 지번 : 관리자 :						
○ 공사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사업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이용현황	○ 급수면적 : ha - 답 : ha - 전 : ha ○ 생활용수 : 호(영) ○ 기타용수 :					
주 요 시 설 내 용						
○ 착 정						
- 관 정 : 구경 m/m, 심도 m						
- 양수량 : m ³ /일						
- 우물자재설치 : 파이프 m, 유공관 m						
- 수 위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 이용시설						
- 물 탱 크 : m ³						
- 양 수 장 : 평						
- 송 · 배수관 : m						
○ 시공업체						
○ (수중)모타펌프						
- 구경()m/m, 설치심도()m, 마력()HP						
- 제품명 :						
주 상 도						
심 도	층 후	주상도	지 질	비 고		
m	m					

○ 오염방지 시설 조치 현황

구 분	규 격
상부보호공	높이 : cm , 가토 : cm, 세로 : cm
	지표면에서 보호공까지 높이 : cm
케 이 싱	구 경 : cm, 심도 : cm
그라우팅처리	처리심도 : m, 처리두께 : m
기 타	우물자재 및 관정내 소독여부 (O , X)
	유량계설치 (O , X)
	출수장치설치 (O , X)
	지하수위측정관 (O , X)
	상부보호경 반경 1m 내 경사도 : 도

○ 수질검사 실시 현황

실시일자	검사의뢰기관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결과조치사항

- 주) 1.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작성
 2. 조치사항란은 불합격시 조치사항을 기재

○ 이용현황 및 수위측정현황

이용 현황			수 위 측 정 결 과		
년.월.일	이용량(톤)	기 록 자	측정일자	수위(EL. m)	측 정 자

밭기반정비사업(공공계획)

1. 목 적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채소, 과수, 화훼등 의 생산성 향상과 시설농업등 기술농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품질향상과 인력절감 효과를 거양하여 농업 생산성을 개선

2. 추진방향

가. 농업성장이 유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한한 농업진흥지역과 영농환경개선을 위하여 밭경지정리 가능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사업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개발

나. 채소, 과수, 화훼단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경작을 기준으로 하고, 주변한계농지 및 진흥지역밖도 흡수개발할 수 있음.

다.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원예생산 및 시설농업 지원사업과 가능한한 연계토록 계획하며, 단지화 및 종합개발방식으로 유도

라. 개발형태

(1) 경지정리지역 : 정지, 수원공, 용·배수시설, 도로, 공동시설부지정지

(2) 일 반 지 역 : 수원공, 용·배수시설, 도로, 공동시설부지정지

3. 사업지구의 선정

가. 예정지 조사 : 예정지 조사는 시장, 군수가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평면도 (1:25,000도)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1) 예정지선정은 지목보다는 실경작을 기준으로 채소, 과수, 화훼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주변의 한계농지를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음.
- (2) 예정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 (가) 농어촌정주권개발 집단마을 조성사업 지역
 - (나) 시설농업예정지역과 채소, 과수, 화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지역
 - (다) 품목별 주산(특산)단지중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
 - (라)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농민의 사업 희망도가 높은 지역
 - (마) 경지의 집단화가 용이하고 경사, 토양, 토심등 개발조건 및 영농조건이 양호한지역
 - (바) 국도, 지방도등 기존 포장도로와 거리가 가까운지역
- (3) 아래와 같은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가) 마을도로가 위주로 되는 지구
 - (나) 지구 전체가 일 개인의 소유로 된 지구
 - (다) 용지매수등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합의가 안된지구

4.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

나. 사업비 재원 : 당해년도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단가의 70%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에서 부담

다. 사업내용

(1) 도로

- (가) 진입로 : 국도, 지방도등 기간도로에서 부터 사업지구까지의 도로를 말하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한다. 다만 개발면적에 비해 진입거리가 길어 사업비가 너무 많아 경제성이 없을 경우를 감안 진입거리기준 개발면적 10ha당 500m내외로 함.
- (나) 간선농로 : 진입로에서 분기되어 사업지구내 중앙을 통과하여 지선농로와 연결되는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말하며, 진입로와 연계하여 확·포장할 수 있음.
- (다) 지선농로 : 간선농로에서 분기되어 농지와 직접연결되는 농로를 말하며, 우기에 통행이 곤란한 토질에는 자갈을 부설할 수 있다, 원예생산, 시설농업 지원사업으로 모노레일등 설치(급경사 과수원등)계획이 있는 지구는 가능한 한 연계하도록 계획함.

(2) 수 원 공

- (가) 기설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등)을 가능하면 활용하고, 수량부족 또는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나) 대형관정은 가능한 한 공당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공수를 적게하므로써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계획하고 심층지하수 부존된 심도까지 착정하되 암반관정의 심도는 200m내외를 한도로 함.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지역(해안 및 도서지역, 유역이 적은 지역등)은 대수층 분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취수량과 심도를 정함.

(다)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11.12) 관정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암반관정개발시는 지하수부존량에 대한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등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상의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토록 함.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시추조사공은 소구경으로 하되 개발(계획) 1공당 2배수로 필요심도까지 조사 시행

(마) 시설농업의 양액재배 용수등은 수질이 중요하므로 수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함.

(3) 용 수 로

(가) 용수로는 송수관로(送水管路 : 관정에서 저수조까지의 Pipe Line)와 배수관로(配水管路 : 저수조에서 분수공까지의 Pipe Line)로 구분하며 PE관등으로 계획하고, 적절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하여 농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나) 살수관개(Splinkler)나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등 수압이 필요한 관개를 지역농민이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수공에서 이에 필요한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계획

(4) 배 수 로

(가) 사업지구 전체의 지형이 표고나 경사도등으로는 배수상태가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저지대 일부가 침수되는 경우 기존사업비 내에서 적절히 처리될 수 있는 경우 경미한 복토나 지하배수로 처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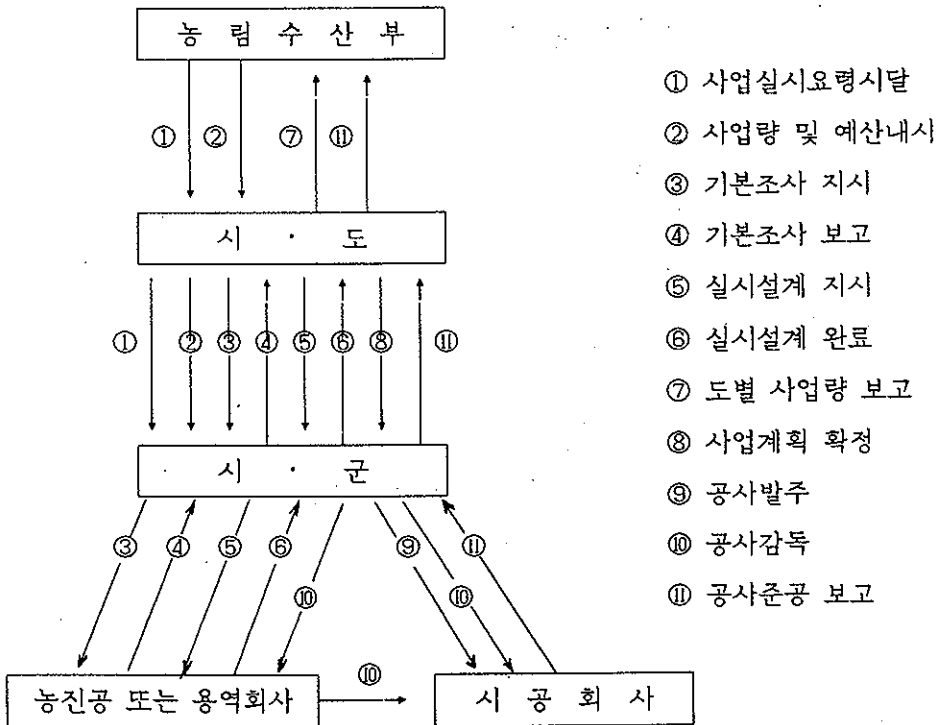
(나) 지구내 유입수를 안전하게 지구외로 배제하기위한 배수로는 조립식 개거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타설식개거로 계획하여야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5) 밭 경지정리

(가) 토지소유자가 희망하고, 토양·토심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되 지구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획 단, 무리한 정지계획으로 토양보존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는 않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토양보존과 관계 없이 시설노업등 장기적인 영농계획이 있어 특별히 정지를 원할 때는 지원할 수 있음.

(나) 정지방법은 지구여건에 따라, 정지를 하지않고 구획만을 정리하는 구획정리 경사지에 원지형을 살려 정지하는 경사정지, 평탄지 또는 시설농업을 위한 수평정지등으로 계획할수 있으나 어느경우도 토량이동이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계획

라. 사업추진체계도



마. 사업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기관	추진일정															
		일자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도별사업량 가내시	장관	전년 10.15	-														
예정지구 선정	시군 장수	전년 11.15	-	-													
도별사업량 보고	도지사	전년 11.30		-													
도별예산 가내시	장관	12.30			-												
사업량 및 예산내시	장관	1.10				-											
기본조사 지시	도지사	1.15				-											
기본조사 완료	농진공 등	3.15				-	-	-									
지구확정 및 실시시설계 지하수개발 착수지시	도지사	3.30					-	-									
지하수개발 완료	농진공 등	6.30						-	-	-							
실시시설계 완료	농진공 등	8.31							-	-	-						
사업계획 확정	도지사	9.15								-	-	-					
공사발주 및 준공	시군 장수	12.15									-	-	-	-	-	-	
공사완료 보고	도지사	12.31															-

5. 사업계획수립

가. 기본조사

- (1)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타당한 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
- (2) 시·도지사는 지하수 기초조사를 지하수법상의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게 일괄 과업 지시하여 조기 시행
- (3) 기본조사후 사업시행 가능지구중 실시설계 년도 이월지구에 대하여는 현행법(농근법)상 기본조사비의 별도 지급이 어려우므로 당초 기본조사자에게 실시설계를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단, 기본조사 요율이 개정될 경우는 개정요율에 따라 지불

나. 실시설계

- (1) 시·도지사는 기본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을 우선 시행토록하고,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자를 선정 시행케하고 예정지구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시·도지사로부터 지하수개발 기초조사 및 개발사업 착수지시를 받은 지하수개발 담당자는 지구별로 개발완료 되는대로 개발공위치, 채수량, 안정수위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실시설계 담당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내용을 시·군별로 취합하여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
- (3)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담당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받는대로 즉시 실시조사 설계를 착수

6. 사업시행

가. 시·도지사는 실시설계 결과를 받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인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첨서식 1)

나. 공정계획

- (1) 공사는 가능한 한 당해년도에 완공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규모가 크고, 공종이 다양하여 타사업과 연계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2차년도 사업으로 시행할수 있음.
- (2) 공사시행자는 공사감독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 계획변경

공사 시행자는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 (2) 진입로 및 간선농로의 로폭을 확장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 (3) 관정수를 늘리는 경우
- (4) 용·배수로의 총연장을 각각 10%이상 연장하는 경우
- (5) 발경지정리를 추가하는 경우
- (6) 농업시설부지를 추가로 조정하는 경우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는 도로중 진입로 구간만 매수
- (2)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등 보상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마. 공사감독

공사감독은 시·군자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바. 준공검사

- (1) 공사시행차는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시행 함.
단, 준공검사는 공사감독기관 이외의 차상급기관에서 시행 함.
- (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준공보고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일괄 보고

사. 조사설계, 공사감독 및 관리요율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비와 관리비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88.1.22 개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함.

조사설계 , 공사감독 및 관리요율

구 분		적 용 요 율	비 고
진입로 및 경작로		용·배수시설	※ 경지정리지구내의 도로 및 용·배수로 는 경지정리 요율 적용
수원공	송 수 관	용·배수시설	
	양수기 및 이용시설	양·배수장	
용·배수시설		용·배수시설	
경 지 정 리		경 지 정 리	

7. 사후관리

- 가. 완공된 관정은 개발공에 대한 완공 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수질검사결과등이 기재된 내역서를 비치
- 나. 시장,군수는 이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혜농가들에 의한 관리조직을 만들어 관정등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다. 시설물의 점검정비는 1차적으로 수혜농민에 의한 관리조직에서 책임관리하고, 자체 점검이 불가능 할 경우 시장,군수가 인력 및 장비를 지원

8. 사업효과

시설농업등 기술농업을 위한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발작물의 경쟁력 강화

- 가. 용수공급 : 품질향상 및 수확량 증대 약 20%
- 나. 경작로 개설 : 수송로 개선으로 신설도 및 상품성 보존(손상방지)
- 다. 경 지 정 리 : 기계화 작업능률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채 소 : 8%
 - 과 수 : 16%
 - 화 획 : 8%

9. 기타 참고사항

가. 보 고

- (1) 사업대상지 보고 : 서식 (1-1)
- (2) 공정계획 승인결과보고 : 서식 (1-2)

- (3)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월말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1-3)에
- (4) 수시보고 : 사업추진에 있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하여야 함.
- (5) 공사완공 : 사실상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간단한 완공개요를 보고
- (6) 준공보고 : 공사시행자 및 도지사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즉시 준공결과를

나. 기타사항

- (1) 시장,군수는 시설물대장 서식(1-4)을 작성하여 비치
- (2) 공사시행자는 시공전, 중,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설물대장에 첨부 비치
- (3)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반조성사업 실시요령을 준하여 시행
- (4)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수유입 방지 그라우딩, 폐공처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5) 사업기관안내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수리과
 - 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기반조성과(농지개량과)
 - 군 : 건설과

'95반기반정비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합 계	4,000 ^{ha}	88,000	61,600	26,400	-	-
경 기	190	4,180	2,926	1,254		
강 원	410	9,020	6,314	2,706		
충 북	220	4,840	3,388	1,452		
충 남	340	7,480	5,236	2,244		
전 북	240	5,280	3,696	1,584		
전 남	780	17,160	12,012	5,148		
경 북	990	21,780	15,246	6,534		
경 남	510	11,220	7,854	3,366		
제 주	320	7,040	4,928	2,112		

※ ha당 사업비 : 22백만원

재원별 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서식1-1)

반기반정비사업 대상지 보고

우선 순위	지구명	위 치			면적	단지 구분	지역 구분	사업비	필요 시설					토 자 소유자	비 고	
		군	면	리					진입로	단지내 도로	관 정	용수로	배수로			정지공사
					ha			백만원	m	km	공	km	km	ha	명	

- 단지구분란 : 채소, 특용작물, 화훼, 파수, 기타 단지 구분 기재
- 지역구분란 :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구분 기재
- 비 고 : 원예생산 시설농업 지원 사업 구역이면 기재

(서식1-2)

반기반정비사업 공정계획 보고

지구명	위 치		면 적	주 요 공 사	사업비	분 기 계 획				비 고	
	군	면·리				1/4	2/4	3/4	4/4		
			ha		천원						

(서식1-3)

밭기반정비사업 진도보고

지구명	위 치			면 적	주 요 공 사	사업비 천원	진 도 %	비 고
	군	면	리					
				ha				

(서식1-4)

받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공사기간 : '94. ~							
○ 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							
○ 주요공사내용 : 경 작 로 km							
· 진 입 로 : m(노폭 m, 포장 m)							
· 간선농로 : m(노폭 m, 포장 m)							
· 지선농로 : m(노폭 m)							
관 정 : 공(구경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m ³ /일)							
용 수 로 : m							
배 수 로 : m							
정지공사 : ha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관정시설재원

구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6번공
구경	m/m						
심도	m						
양수량	m ³ /일						
우물파이프	m						
우물유공관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수중모터펌프	HP						
"	m						
제품명							
설치심도							
양수장	m'						
배수지	m'						
송수관	m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공공계획)

1. 목 적

기능저하 및 노후된 수리시설의 효율적인 개보수와 누수붕괴등으로 물손실이 많은 옹수로 구조물화로 재해의 예방과 효과적인 시설 유지관리 및 물관리를 함으로써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어촌발전에 기여.

2. 추진방향

농업진흥지역 및 재해위험지구로 농어촌발전계획의 우선순위지구 우선지원

가. 계속지구

- (1) 당해년도 위주의 사업추진은 지양
- (2) 총계획에 의하여 시급구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효과제고
- (3) 원공위주로 사업추진

나. 신규지구

- (1) 기술진단결과 시급히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지구,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구, 유지관리 및 물관리가 어려운 지구중 사업효과가 큰 지구로 농어촌 발전계획의 우선순위지구 선정.

다.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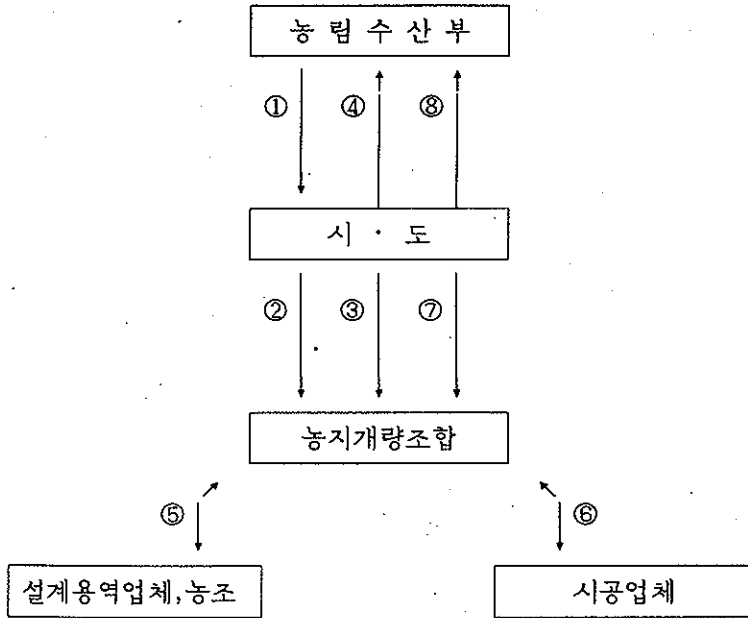
목 표		'94까지		'95계획		'96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44,098	400	77,389	7,892	2,633,572

,보수사업이 필요한 시설

합장

(단, 사업비 자체부담이 가능한 지구는 조합에서

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체계도



- ① 예산 내시(도별) ② 예산 내시(지구별) ③ 사업시행인가
- ④ 사업시행 인가보고 ⑤ 설계실시 ⑥ 공사 도급계약
- ⑦ 년도말 검정 ⑧ 년도말 검정보고

5.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제 47조에 의함.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비 요율표

(단위 : %)

구 분	요 율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50억원초과
측량설계비	2.52	2.22	1.89	1.63	1.57
공사감리비	3.44	3.24	3.00	2.81	2.32
관 리 비	1.40	1.40	1.40	1.40	1.40

가.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산출대상공사비

$$= (\text{순공사비} + \text{자재대}) - \text{부가가치세}$$

나. 관리비 산출대상공사비

$$= (\text{순공사비} + \text{자재대} + \text{용지매수 및 보상비}) - \text{부가가치세}$$

단, 사업시행자 자체설계시에는 규정된 요율 범위내에서 인건비등을 제외하고 실비 정산.

6. 사업계획의 수립

가. '95사업시행 지구중 신규지구의 조사측량설계는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등 능력을 판단하여 자체 설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연합회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에게 의뢰 하여 실시.

나. 사업시행상 수원공과 개별 용수간선 단위로 각각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 지구를 일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 설계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와 사전 협의.

7.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립.

가. 수원공

- (1)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시설의 저수량 및 갈수량을 재검토하여 현 설계기준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
- (2) 저수지 제방안정성(단면부족, 누수 등) 여수로, 방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이 충분한지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
- (3) 저수지, 보 및 양수장 수원의 수질오염 상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

나. 평야부

- (1) 단위용수량을 현 설계기준에 부합되게 산정하여 수로단면을 결정. 수로단면은 소단지별 유휴관개등으로 일시적용수가 증대되는 단면은 현 단면이 부족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
- (2) 용수로는 수리현상 및 물관리등을 감안하여 부분적인 개보수는 지양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급구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
- (3) 토공수로를 구조물화 함에 따라 남는 부지는 경작도로등으로 활용.
- (4) 토공수로의 개거등 구조물은 가능한 농지개량사업표준설계(해설 및 도면) 조립식 수로구조물편을 참조하여 조립식 제품을 사용.
- (5) 용수로 개보수사업시행구간에 오폐수등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시장·군수)과 협의하여 오폐수가 용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설치등 별도대책을 강구.

8.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

가.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

나. 사업은 관개기 전에 완공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

9. 계획의 보완

가. 사업계획의 보완(물량변동)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나. 현지 여건상 부득히 계획을 보완하고자 할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당부와 기본계획을 협의한 지구중 수원공시설의 규모, 형식, 구조의 변경 및 공법 변경등 주요 변경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와 재협의를 하여야 함.
- 다. 도지사는 계획보완승인과 동시에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 라. 수질오염방지대책 사업시행중 당초계획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및 공법변경등의 보완이 있을 경우 농림수산부와 재협의를 하여야 함.

10. 시공 및 시공감독

시공은 관련시방서에 부합되게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함. 시공감독은 사업 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 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할수 있음.

11. 검 사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나. 농어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 교부규정 제 16조 및 동 교부규정 시행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12. 보 고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월말까지(서식 1-1)

익월 10일까지(서식 1-2)

결과보고(서식1-3, 1-3-1)

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는 별도 시달하는 지시에 의함.

한편 검토의 경우 수필

14. '95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400	62,389,000	62,389,000	-	-	-
경 기	34	8,941,000	8,941,000	-	-	-
강 원	28	1,957,000	1,957,000	-	-	-
충 북	26	3,470,000	3,470,000	-	-	-
충 남	49	10,646,000	10,646,000	-	-	-
전 북	63	13,077,000	13,077,000	-	-	-
전 남	68	10,144,000	10,144,000	-	-	-
경 북	64	6,324,000	6,324,000	-	-	-
경 남	66	6,180,000	6,180,000	-	-	-
제 주	2	50,000	50,000	-	-	-
농진공	-	600,000	600,000	-	-	-
유보액		1,000,000	1,000,000	-	-	-

방조제개보수사업(공공계획)

1. 목 적

노후된 방조제의 효율적인 개보수로 재해의 예방, 간척농지의 보존 및 효과적인 시설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안전영농으로 농어촌발전에 기여.

2. 추진방향

- 가. 농업진흥지역, 재해위험지구로 농어촌발전계획의 우선순위지구 우선지원
- 나. 완공위주로 사업추진
- 다.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94까지		'95계획		'96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가관리 방조제	74	381,488	24	111,767 [26,855]	40	15,120 [5,399]	40	254,601
○지방관리 방조제	1,481	416,517	210	41,523	90	8,199	1,261	366,795

※ []내서는 지방비

3. 사업의 대상

방조제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 2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4. 사업시행자 및 사업비재원

가. 사업시행자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자(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가 사업시행자가 됨.

나. 사업비 재원

(1) 국가관리방조제 : 국고 100 %

(2)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 일반지구 : 국고 30 %, 지방비 70 %

- 특수지구 : 국고 50 %, 지방비 50 % (방조제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 별첨)

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시행

(1)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 체계표(별첨)

(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 체계표(별첨)

5.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동일

6. 계획의 수립

가. '95사업시행 예정지구중 신규지구에 대하여는 조사측량 설계를 실시.

조사측량설계는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능력을 판단하여 자체 설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에게 의뢰 현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조기에 효과가 거양되도록 계획을 수립.

나.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전체지구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지구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지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와 사전 협의.

7.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가. 배수갑문의 홍수배제능력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토.

나. 방조제의 높이 및 단면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토.

8.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

가.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시행.

- 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구는 우기전에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다. 농림수산부가 배정한 당해년도 국가관리방조제 지구별 사업비는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구간에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 아래 내시된 범위안에서 조정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지구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라. 개보수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은 방조제에 대하여도 관리대행자는 재해의 예방, 간척농지의 보존등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9. 공정계획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대하여는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준하여 공정계획을 방조제와 배수갑문등으로 세분하여 수립 보고등을 실시.

10. 계획의 보완

- 가. 사업계획의 보완(물량변동)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나. 현지 여건상 부득이 계획을 보완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되, 농림수산부와 기본계획을 협의한 지구중 방조제 및 배수갑문의 규모, 형식, 구조의 변경 및 공법변경등 주요 변경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와 재협의를 하여야 함.
- 다. 도지사는 계획보완승인과 동시에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1. 시공 및 시공감독

시공은 관련시방서에 부합되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한다.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12. 검 사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나. 검사는 국가관리 및 시·도 관리방조제는 시·도지사가, 시·군관리방조제는 시장·군수가 실시.

13. 보 고

시·도지사는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의 사업추진현황을 종합하여 별첨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 당해년도 2월말까지
(서식 3-1)

나. 추진상황보고 : 매월말일 현재실적을 익월 10일까지(서식 3-2)

다. 국가관리방조제 계획보완승인 결과보고 : 보안후 즉시 결과보고(서식3-3,3-3-1)

라. 공정계획보고(서식 1-4)

14. 기 타

본 실시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시달하는 지시에 의함.

15. '95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담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40	15,120	15,120	-	-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90	8,199	2,800	5,399	-	-

가. '95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40	15,120,000	15,120,000	-	-	-
경 기	6	2,105,000	2,105,000	-	-	-
강 원		-	-	-	-	-
충 북		-	-	-	-	-
충 남	5	2,245,000	2,245,000	-	-	-
전 북	10	3,457,000	3,457,000	-	-	-
전 남	16	6,546,000	6,546,000	-	-	-
경 북		-	-	-	-	-
경 남	3	767,000	767,000	-	-	-
제 주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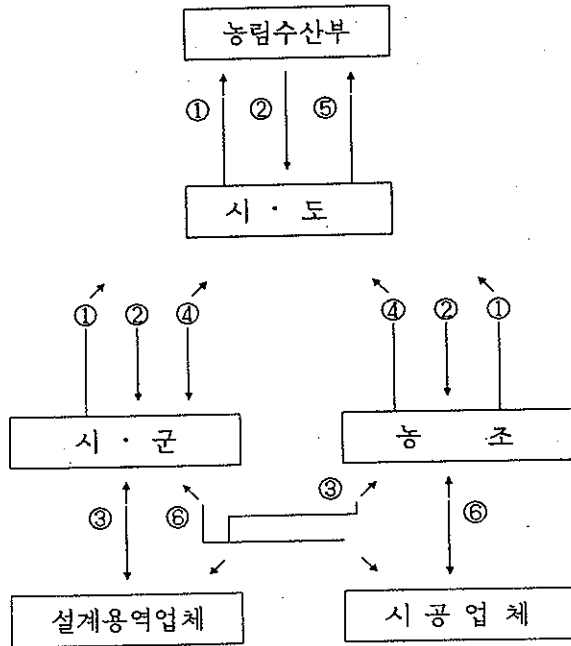
나. '95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90	8,199,000	2,800,000	5,399,000	-	-
경 기	19	2,127,000	689,000	1,438,000	-	-
강 원	-	-	-	-	-	-
충 북	-	-	-	-	-	-
충 남	5	553,000	166,000	387,000	-	-
전 북	5	420,000	126,000	294,000	-	-
전 남	56	4,526,000	1,647,000	2,879,000	-	-
경 북	-	-	-	-	-	-
경 남	5	573,000	172,000	401,000	-	-
제 주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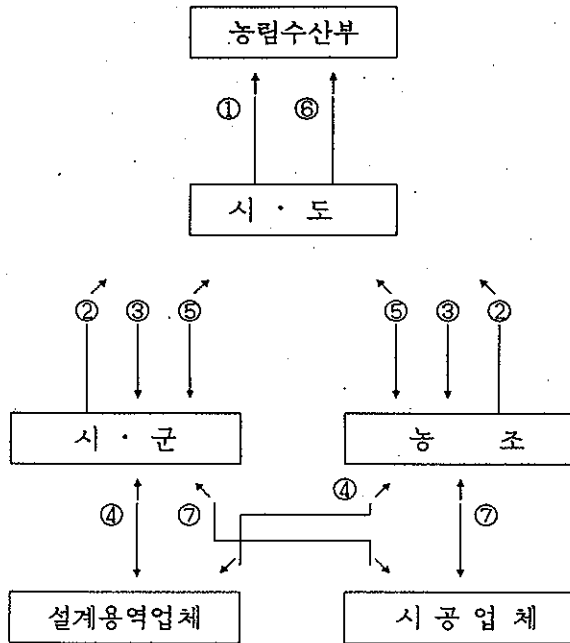
다.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체계도

(1)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체계도



- ① 사업시행 예정지구 보고
- ② 사업시행 지구결정 및 예산내시
- ③ 설계실시
- ④ 설계승인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 ⑤ 사업시행인가 보고
- ⑥ 공사 도급계약
- ⑦ 년도말 검정 및 준공검사

(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체계도



- ① 예산내시
- ② 사업시행 예정지구 보고
- ③ 사업시행지구 결정 및 예산내시
- ④ 설계실시
- ⑤ 설계승인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 ⑥ 사업시행 인가보고
- ⑦ 공사 도급계약
- ⑧ 년도말 검정 및 준공검사

[시군 → 시군
 농조 → 시도

(별첨)

도서등 특수지역 지정내역

도 별	군 명	특 수 지 역
경 기	강 화	군청소재지 도서를 제외한 군관내 도서
	용 진	군관내 도서
전 남	고 흥	군관내 도서
	완 도	군청소재지 도서를 제외한 군관내 도서
	진 도	군청소재지 도서를 제외한 군관내 도서
	신 안	군관내 도서
계	6 개 군	

〈서식 1-1〉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단위:천원)

농조명	지구명	위 치		시진명	용리면적	총인가액 (A)	전년까지 부지액	과년예산액	금년까지 부지액		내년이후 사입비	착 년	개·보수 공종내역		
		시·군	읍·면						금액(B)	(B/A)			총계회	전년까지	금년계획
계					ha										

* 사업시행인가서 및 별첨사업비 수지예산서 시본 첨부요(서식1-1-1)

< 서식 1-1-1 >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천원)

과 목	기인가액	금회인가액	년 도 별 내 역		
			전년도까지	금 년 도	내년도 이후
보 조 금					
기 타					
합 계					

지출

과 목	기인가액	금회인가액	년 도 별 내 역		
			전년도까지	금 년 도	내년도 이후
순 공사비					
지 급 품 비					
용지매수보상비					
측 량 설 계 비					
공 사 감 독 비					
관 리 비					
기 타					
합 계					

< 서식 1-2 >

농조관리 수리시설 개 · 보수사업 추진상황 보고

((금액: 천원) (19 년 월 현재))

농조명	지구명	위 치		주요공종	용리면적 ha	총인가액	전 년 도 까 지	금년도예산 (A)	현 실 처		원 공 면 적 ha	내 년 도 이 후	사 업 추 진 상 문 제 점 및 대 처
		시.군	읍.면						금액(B)	(B/A) %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구체적으로 기술

< 서식 1-3 >

계획보완 승인결과보고

농조명 : 지구명 : 시설명 : 면적 : ha

위치 : _____

수 입 (단위:천원)

구 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 감	보 완 사 유
계				
국 고 기 타				

지 출

구 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 감	보 완 사 유
계				
순 공사비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기 타				
합 계				

- ※ 1. 사업시행변경인가서, 심사서,보완내역서 사본 첨부요 (서식1-3-1)
 2. 대규모지구,기본계획 협의지구, 재해위험 수리시설 정밀진단 지구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사업지구만 보고

< 서식 1-3-1 >

지구 계획보완 내역서

(단위 : 백만원)

보완공종	당 초		변 경		증 (△) 감		보 완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저수지 준설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단위:천원)

농조명	지구명	위 치		용리면적 ha	준설보량 천m ³	총인가액 (A)	전년까지 투자액	금년에산액	금년까지 투자액		내년이후 사업비	회공년도	준 설 추 진 내 역			
		시·군·읍·면	시·도						금액(B)	(B/A) %			총계액 m ³	진전까지 m ³	금년계획 m ³	
계																

※ 사업시행인가서 및 별첨사업비 수지에신청서 사본 첨부요(서식2-1-1)

< 서식 2-1-1 >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천원)

과 목	기인가액	금회인가액	년 도 별 내 역		
			전년도까지	금 년 도	내년도 이후
보 조 금					
기 타					
합 계					

지출

과 목	기인가액	금회인가액	년 도 별 내 역		
			전년도까지	금 년 도	내년도 이후
순공사비					
지급품비					
용지매수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기 타					
합 계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금액: 천원) (19 년 원 환제))

농조명	지구명	위 치		준설공종 (육상·해상)	용리면적 ha	준설도방 m'	총인가액	건설도 까지	금년도 예산	원실적		내년도 이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시.군	읍.면							금액(B)	(B/A)		
계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구체적으로 기술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보고

(단위: 원천)

사업 시행처	지구명	위 치		종인가액 (A)	전년까지 부 자 액	금년 사업비			금년까지 투자액		내년이후 사업비	회공년도	개보수 공종내역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금액(B)	(B/A)			총계회	전년까지	금년계획		
				ha													

※ 1. 국가 및 지방관리로(시도·시군)구분하여 별도 작성

2.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사업계획도서, 사업시행인가서 및 심사서 사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첨부할 것(서식3-1-1)

< 서식 3-1-1 >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천원)

과 목	기인가액	금회인가액	년 도 별 내 역		
			전년도까지	금 년 도	내년도 이후
보 조 금					
기 타					
합 계					

지출

과 목	기인가액	금회인가액	년 도 별 내 역		
			전년도까지	금 년 도	내년도 이후
순 공사비					
지 급 품 비					
용지매수보상비					
측 량 설 계 비					
공 사 감 독 비					
관 리 비					
기 타					
합 계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보고

((금액:천원) (19 년 월 일 현재))

사업시행처	지구명	시·군	읍·면	총인가액	진년까지	금년예산 (A)	금년입지		원	공	금년이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금액(B)	B/A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구체적으로 기술

< 서식 3-3 >

계획보완 승인결과보고

(국가·지방관리방조제)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수 입 (단위:천원)

구 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 감	증 감 내 역	보완사유
계					
국 고 기 타					

지 출

구 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 감	증 감 내 역	보완사유
순 공사비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기 타					
합 계					

※ 1. 보완 계획도서 및 사업변경 인가서, 심사서, 보완내역서 사본 첨부요

(서식 3-3-1)

2.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전체지구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지구중 기본 계획협의 지구만 보고

< 서식 3-3-1 >

지구 계획보완 내역서

(단위 : 백만원)

보완공종	당 초		변 경		증 (△) 감		보 완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저수지 준설 사업(공공계획)

1. 목 적

저수지내 토사유입에 의한 퇴적물을 준설하므로써 저수지의 저수량 증대로 기능 회복과 수질오염 원인제거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 및 물관리를 함으로써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어촌발전에 기여.

2. 추진방향

농업진흥지역내 한발 우심지구 및 준설효과가 높은 지구 우선지원

가. 추진현황

구분	저수지	준 설 대 상			준 설 계 획			
		계	기 준 설		금 후 계 획	'94 9 - 12	항 구 대 책	간 이 준 설
			93까지	94.1-8				
합계	개소 17,894	11,945	2,781	1,213	7,951	167	3,972	3,812
시·군	15,122	9,853	2,252	1,084	6,517	127	3,363	3,027
농조	2,772	2,092	529	129	1,434	40	609	785

나. '94하반기 추가 및 '95상반기 농조저수지 준설추진계획

지 구 수	관 개 면 적 (ha)	예 산 배 정			비 고
		계	94하반기	95상반기	
153	73,189	35,000	20,000	15,000	

3. 사업의 대상

시·군 및 농조관리 저수지중 준설사업이 필요한 지구

4. 사업시행자 및 사업비재원

가. 사업시행자 : 해당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나. 사업비재원

시·군저수지	: 지방비 100%
농조저수지	: 국 고 100%

※ 사업비의 자체부담이 가능한 지구는 시·군, 조합에서 부담

5. 사업대상지구 선정

- 지구선정은 '94.9.3 항구적인 농어촌용수확보 증장기대책으로 우리부에 조사보고한 준설대상 지구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93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조저수지에 대한 준설타당성 조사결과 보고된 지구를 최우선 선정
- 준설여건이 양호하여 사업비가 저렴하고 효과가 높은 지구 우선 선정
 - 사토장 확보가 용이하고 사토장까지 운반거리가 가까운 지구
 - 사토를 이용하여 객토등 농지를 개량하거나 인근토지의 이용도를 높일수 있는 지구
 - 준설토를 골재로 사용할수 있어 그 매각대금을 준설사업비로 충당할수 있는 지구
 - 제당진입도로가 증장비 통행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구
 - 준설사업비가 3700원/m² 이하로 준설추진이 가능한 지구
 - 암반관정등 대체수원개발이 불가능하고 계획저수량 대비 준설토량 비율(%)이 높은 지구
- 사업시행 예정지구 우선순위 결정은 상기 선정요령에 따라 선정된 지구를 지역 단위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종합검토 하여 우선순위 결정

6.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관리실태검토
 - 유지관리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면적의 변동 사항 및 저수지 유지관리와 관계되는 관리체계, 관리기록, 급수계획, 침수사항 등 준설에 관련된 제반 사항 검토
- 저수지 퇴적상황 및 주변답사
 - 저수지 당초 내용적 평면도가 있는 지구는 내용적평면도를 참고로 하여 퇴적부위별 퇴적상황, 준설가능량과 공법선정 검토

- 사토장 및 기타

- 사토장의 위치는 준설토의 성질, 준설공법, 운반거리, 농경지 재토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을 연계 검토하여 선정함은 물론 홍수시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역이외의 장소에 선정하거나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며, 준설시 활용가치가 있는 골재는 매각하여 수익이 발생시는 준설사업비에 충당함.

- 운반도로

-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

- 준설계획 검토

- 준설계획은 토사유입방지공 설치방안등 기술적, 경제적, 행정제도상의 제반 사항은 물론 저수지 제당등 시설물의 준설에 따른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 여부를 종합판단하여 계획 수립

7. 조사측량 설계

조사측량 설계는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등 능력을 판단하여 자체 설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

8.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준한다.

9.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

가.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

나. 사업은 관개기 전에 완공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

다.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시구어진에 따라 공사비를 최대한 절약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시행

10. 계획의 보완

- 가. 사업계획의 보완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나. 현지 여건상 부득이 계획을 보완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도지사는 계획보완 승인과 동시에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1. 시공 및 시공감독

시공은 관련시방서에 부합되게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함.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12. 검 사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함.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나. 농어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 교부규정 제16조 및 동 교부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

13. 보 고

시·도지사는 관할 사업추진상황을 별첨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당해년도 2월말까지 (서식 2-1)

나. 추진상황보고 : 매월 말일 현재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서식 2-2)

14. 기 타

- 시·군관리 저수지준설사업은 본요령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
- 본실시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시달하는 지시에 의함.

15. '95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120	15,000,000	15,000,000	-	-	-
경 기	7	835,000	835,000	-	-	-
강 원	5	870,000	870,000	-	-	-
충 북	8	1,290,000	1,290,000	-	-	-
충 남	12	2,644,000	2,644,000	-	-	-
전 북	9	1,383,000	1,383,000	-	-	-
전 남	33	2,490,000	2,490,000	-	-	-
경 북	28	2,543,000	2,543,000	-	-	-
경 남	18	2,945,000	2,945,000	-	-	-
제 주	-	-	-	-	-	-

수해복구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풍수해피해 농경지및 수리시설의 조속한 복구추진으로 농어촌발전에 기여

2. 추진방향

풍수해피해 농경지및 수리시설의 조속한 복구추진

3. 사업의 대상

풍수해피해 복구지원대상 수리시설및 농경지

4. 시설별 수해복구추진

가. 수리시설

(1) 사업시행

- 시·군관리 수리시설 : 시장·군수
- 농조관리 수리시설 : 농지개량조합장

(2) 사업시행 인가 및 준공검사

- 농조관리 수리시설 : 시·도지사의 인가는 착공전 농조의 사업계획서 제출로 가름. 단, 필요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수 있음.
- 시·군관리 수리시설 : 시장·군수

(3) 공사시행

토공용·배수로 보수등 단순공종은 마을 도급사업으로 시행하여 공사비 절감 및
농민들의 수익증진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복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에게 도급 시행.

(4) 공사감독

사업시행주체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의 난이도 시·군 및 농조의 기술 인력과 능력등을 감안하여 자체감독이 어려울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 조합연합회등 전문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또한, 재해위험 저수지등 주요 피해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 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및 농어촌진흥공사 기술진으로 하여금 순회·감독하게 함.

(5) 실시 설계비 및 공사 감독비

시설복구 공사를 위한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비등 부대경비는 순공사비의 1.5% 한도내에서 집행할수 있음.

단,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위하여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을 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설계 및 공사감독비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제 47조의 별표2)의 개보수사업에 대한 요율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6) 기술지원 협의회 운영

- 수리시설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하여 시·도에 수해복구 기술 지원협의회를 편성 운영.
- 수해복구 기술지원협의회는 시·도지사가 필요시 학계, 도, 농진공, 농조연 및 농조의 전문기술진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음.
- 수해복구 기술지원 협의회는 주요 수해시설 복구계획수립(설계)에 대한 협의 및 기술지원과 시공상황을 점검 확인 및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협의회의 주요임무)

- 피해시설 복구대상 범위 및 공종협의
- 피해시설 안전진단, 복구계획 협의 및 기술지원
- 필요시 복구사업 시공상태 점검, 확인 및 지도
- 기타 복구공사와 연계된 기술사항 지원

(7) 기록관리

- 저수지 및 방조제가 월류하여 유실된 지구는 월류표고를 실측하여 지구별로 기록보존.
- 공사감독일지, 공정계획표, 사업계획도서, 자재수불대장, 도급계약서, 시방서등 제반서류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계획 당시부터 공사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계획, 완벽한 설계, 하자없는 시공을 하고 기록보존.
- 복구시설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기 시달된 수해복구대장을 작성 비치.

나. 농경지

- (1) 농경지의 복구는 대파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복구완료함.
- (2) 피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농민들이 희망할 경우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수 있음.
- 수해복구공사의 착공전, 공사중 및 완공후의 광경을 사진(전경, 근경 3"×4" 칼라) 촬영하여 기록보존용으로 비치하여야 함.

5. 보 고

시·도지사는 수해복구추진상황을 매월말 현재를 다음달 10일까지 "별첨서식1"에 의거 기일엄수,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서식 1 >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보고

(현재)

구분	사업별	위 치		지구별	시행자	용리면적 ha	복구물량	사 업 비				추진상황			진 도		비고	
		군	면					계	국고	지방비	저부담	실계	착공	완공	실행액	진도		진도 %
								전원	전원	전원	전원							

- ※ 1) 구분란에는 지원지력으로 구분작성
- 2) 사업별은 농경지, 수리시설, 방조제로 구분
- 3) 추진상황은 해당란에 ○표
- 4) 비교란에는 시행방법(도급, 마을도급 등)을 기재

경지정리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 논배미,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을 기계화와 공동영농 등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향상 및 편농기반구축

2.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중심으로 우선추진
 - '98년까지 진흥지역 136천ha, '99-2004기간중 진흥지역밖 105천ha 추진
- 소요사업비, 주민호응도 등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 우선추진

3. 사업시행자

- 농조구역 : 당해 농지개량조합장
- 비농조구역 : 당해 시장. 군수

4. 대상지역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서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구
 - 소요사업비가 예산단가 보다 저렴한 지구
 - 단, 소요사업비가 예산단가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지방비로 추가 부담이 가능한 지구는 포함
 -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구
 - 주민호응도가 양호하고 관개. 배수에 지장이 없는 지구
-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경지정리계획으로 포함된 지역

5. 사업비 재원

- 국 고 : 예산단가의 80%의 해당액을 정액으로 지원
- 지방비 : 국고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

6.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업무의 개방계획에 의하되 '95년도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

구 분			시 행 자
조사설계	기본조사	50ha미만 50ha이상	사업시행자가 선정 농조연, 농진공
	실시설계	농조구역 - 50ha미만 - 50ha이상	사업시행자가 선정 농조연, 농진공
		비농조구역	사업시행자가 선정
공 사' 감 독			사업시행자가 선정

- 재경지정리사업은 현행방안과 턴키제도에 따라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 농업용수, 배수개선, 집단마을조성사업 등과 병행시행되는 지구와 시행중인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를 농진공이 담당
 - 시장·군수가 직접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업무 추진가능
 - 50ha미만은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가능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의 세부추진요령 및 유의사항, 조사설계결과에 대한 검토 기준, 공사감독업무의 세부추진지침 등은 별도 시달
 - 조사설계를 농지개량사업설계기준(경지정리편) 및 대구획(논)경지정리설계요령(조성51306: '93.2.13) 등에 의거 추진하고, 토양조사시 현장조사·실내분석시험·보고서 확인요령 등은 경지정리사업 토양조사철저(조성51306-66: '93.2.19)의 지시공한에 의함

7. 환지업무

- 환지업무는 조성27257-1952('87.9.15)호로 기 시달된 환지업무추진요령에 의거 실시
- 동일사업지구에서 2개이상의 공구로 사업이 추진되고 공구별로 환지계획을 수립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교시때 이를 명기
- 확정측량은 사업(봄마무리) 완공 1개월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측량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
- 환지청산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조기에 완결

8.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집행은 5항(사업비의 재원)에 의하되, 노임·불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포함한 사업시행중 증가되는 사업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여 완료
- 도별 평균집행단가가 예산단가이내일 경우에는 집행단가의 80%해당액을 국고에서 지원
-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는 현지확인·지도 등에 소요되는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소정요율범위내에서 집행
- 측량설계비는 현지답사·기본조사비를 포함
- 확정측량비는 내무부장관이 인가한 전년도(착수년도 기준)단가적용
- 농업용수개발·배수개선·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 지원

9. 사업비 절감

- 예산의 효율적집행을 위하여 입찰공고시 도단위 합동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함과 아울러 지역제한 등 참여자격제한으로 입찰참여회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전국 공개경쟁입찰추진
- 현행 여건상 사업비과다 지구는 지방비를 추가부담하거나 간이 경지정리식으로 사업수준을 낮추어 시행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ha당 사업비를 우선 검토기준으로 정함

10. 기 타

- 가을착수사업은 조기착공하여 당해년도말까지 전체계획공정의 40%이상 달성하고, 봄마무리사업은 이양적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완료
 - 못자리는 용수의 낭비 및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집단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전후의 전경사진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 보관

11. 행정사항

서식번호	행 정 사. 항	보고기일	비 고
1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	3 말	
2	경지정리 조사측량설계 및 기설계지구 보완결과	6.30	
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승인결과	승인후 즉시	
4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입찰후 즉시	
5	환지업무 납품실적보고	가환지 5.31 본환지 12.15	
6	확정측량추진현황보고	10. 15	
7	환지청산금징수 및 교부현황보고	분기익월 15	

12. 사업관련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조성과 (02-500-2664)
- 도 : 각도 농정국 기반조성과
- 군 : 해당군 건설과
- 농조 : 해당농조 개발과

13. '95년도 사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합계	계	ha	552,958	402,984	149,974			
	경상 영남 충청 전라 경남 제주 경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강원 제주 미내시	기원	67,145	38,607	28,538			
		불원	40,751	26,483	14,268			
		담	11,875	8,261	3,614			
		담	87,850	64,855	22,995			
		담	107,250	82,204	25,046			
		담	113,479	83,729	29,750			
		담	66,796	49,238	17,558			
		담	31,665	23,460	8,205			
		담	26,147	26,147	-			
봄마무리	계	27,700	379,528	264,240	115,288			
	경상 영남 충청 전라 경남 제주 경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강원 제주 미내시	기원	3,111	52,935	27,239	25,696		
		불원	1,354	22,708	12,049	10,659		
		담	598	7,736	4,950	2,786		
		담	4,753	56,765	39,987	16,778		
		담	6,546	76,368	57,498	18,870		
		담	6,684	80,540	57,377	23,163		
		담	2,932	35,798	24,440	11,358		
		담	1,722	20,531	14,553	5,978		
		담		26,147	26,147	-		
가을착수	계	30,000	173,430	138,744	34,686			
	경상 영남 충청 전라 경남 제주 경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강원 제주 미내시	기원	2,458	14,210	11,368	2,842		
		불원	3,121	18,043	14,434	3,609		
		담	716	4,139	3,311	828		
		담	5,377	31,085	24,868	6,217		
		담	5,342	30,882	24,706	6,176		
		담	5,698	32,939	26,352	6,587		
		담	5,362	30,998	24,798	6,200		
		담	1,926	11,134	8,907	2,227		
		담						

※ 1) 사업량 및 예산은 실제추진결과에 따라 조정

2) 예산은 ha당 예산단가의 80%를 국고로 지원

(서식1)

봄나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 보고

도

코드	위치		지구명	면적	사업시행자	면적		면적조정 사유	ha당사업비		기승인사업비		조정사업비		중 Δ 감	
	군	면				기승인	조정		증감	기승인	조정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계					①	②	③=②-①			④		⑤		⑥=⑤-④	

(단위 : 면적 : ha, 금액 : 천원)

전년도소요액	금년도소요액		금년도예산액		금년도부족액		비고
	계	국고	계	국고	계	국고	
⑦	⑧		⑨		⑩=⑧-⑨		

- * 1) 대구회경지제정리는 동서적으로 별도작성
- 2) 기승인사업비, 조정사업비, 전년도집행액은 전년도집행 기본조사비율 < > 외서하고, 전년도 이전집행조사설계비(기론조사비 포함)는 << >>외서 표기
- 3) 환지비는 ()외서 표기
- 4) 농림용수,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병행사업비가 지원되는 지구는 비교단에 해당금액을 외서 표기

(서지2)

경지정리조사측량실적 및 시설계지구보완결과보고

도

(단위 : 천원)

코 드	위 치		지구명	면 적 (ha)		설계년도	설계기관	사업시행 예정자	사업비		사업비 보완내역		비 고
	군	면		계	농초				시군	계	ha당	보완전	

※ 1) 농업용수,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병행사업비를 제외한 경지정리사업비만을 대상으로 작성

2) 농업용수,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타사업 지원사업비는 ()로 외서표기

3) 비교단에는 보완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예, 단가조정, 물량보완 등)

가을작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승인 결과보고

도

(단위: 원)

구분	코드	위치	지구명		면적(ha)			사업시행처	공사감동기관	사업총액	제한내역		과목별·내역					조사실적기관	비고																														
			면	구	개	농	조				시	군	조	국	공	관	타			비	확	축	공	가	본																								
급원화공구																																																	
몰원미착공지구																																																	
계																																																	

※ 1) 기본조사실적비의 중앙정보원은 상단 ()내서로 표기

2) 전년이전에 정산된 조사실적비는 상단 < >외서로 표기

3) 금년 미착공지구는 조사실적비만을 표기

(시적4)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보고

도

(단위: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 시행자	총사 업비	선계 가액 (A)	예정 가액 (B)	낙찰 가액 (C)	낙찰율(%)		입찰 일자	입찰 방법	응찰 회차수	낙찰자			공사 감독 기관	비고	
	군	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 일자

* 1) 낙찰자 소재지 : 본사소재 시.군.면 기입

2) 응찰회사 : 입찰에 응한 회사수

3) 비교판에 : 경지정리 동 병행사업명 기입

4) 입찰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제한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표기

(서식5)

환지업무 납품실적 보고

도·번	지구명	위 지		시행지	업 무			납 품	장△진	납 품 입 자	비 고
		시·군	읍·면		송 인	장△진	장△진				

(서식6)

확정측량 추진현황 보고서

지구명	위 치		시행지	계약면적 (A)	적수일차	전도도 %	위장면적 (B)	중점 (A-B)	비고
	군	번							
계 지구				ha			ha	ha	

(서식7)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상환 보고 (분기분)

(년 분마무리)

시행정	지구명	인원	확정액	징수액	미징수액		교부액	미교부액		지연사유 및 대책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기히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중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대구획 경지재정리를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94- 2004년까지 200천ha 추진
 - '98까지 80천ha, '99-2004기간중 120천ha
- 대형기계작업의 효율을 높여 경쟁력 제고
 - 경사도 등 지역여건에 따라 필지의 대구획화
- 농어촌지역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공동영농 활성화
 -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설치 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부지 조성
 -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영농조직 연계육성
- 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변의 취락과 밭, 영농체계 등을 연계하여 종합개발
 - 농업용수, 배수개선, 하천개수, 집단마을조성, 도로사업 등과 병행 및 종합개발

3. 사업시행자

- 농조구역 : 당해 농지개량조합장
- 비농조구역 : 당해 시장, 군수

4. 대상지역

- '76년이전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중 능토가 없거나 협소하고, 용·배수토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으며 필지규모가 작아 물관리 및 대형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지역으로써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된 지역

-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

5. 사업비 재원

- 예산서상에 계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전액 농어촌특별세에서 지원하되, 80%는 농림수산부에서, 20%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6.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환지업무, 사업비 절감

- 일반경지정리내역과 동일

7.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집행은 3항(사업비의 재원)에 의하여 집행
-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시.군)는 현지확인.지도 등에 소요되는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소정요율범위내에서 집행
- 측량설계비는 현지답사.기본조사비를 포함
- 확정측량비는 내무부장관이 인가한 전년도(착수년도 기준)단가적용
- 농업용수개발.배수개선.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 지원

8. 기 타

- 가을착수사업은 조기착공하여 당해년도말까지 전체계획공정의 40%이상 달성하고, 봄마무리사업은 이양적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완료
 - 못자리는 용수의 낭비 및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집단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전후의 전경사진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 보관

9. 행정사항

행. 정 사 항	보고기일	비 고
○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	3 말	
○ 경지정리 조사측량설계 및 기설계지구 보완결과	6.30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승인결과	승인후 즉시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입찰후 즉시	
○ 환지업무 납품실적보고	가환지 5.31 본환지 12.15	
○ 확정측량추진현황보고	10. 15	
○ 환지청산금징수 및 교부현황보고	분기익월 15	

- 서식은 일반경지정리와 동일

10. 사업관련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조성과 (02-500-2664)
- 도 : 각도 농정국 기반조성과
- 군 : 해당군 건설과
- 농조 : 해당농조 개발과

11. '95년도 사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교부금	용자	자담
합계	계	ha	290,518	232,418	58,100		
	경남 충청 전남 전북 경북		51,543 5,932 15,508 28,412 69,723 40,476 37,012 41,912	41,235 4,746 12,406 22,730 55,780 32,381 29,610 33,530	10,308 1,186 3,102 5,682 13,943 8,095 7,402 8,382		
봄마무리	계	5,026	75,535	60,428	15,107		
	경남 충청 전남 전북 경북	708 108 315 600 1,226 687 600 782	10,696 1,632 4,759 9,064 18,127 10,379 9,064 11,814	8,557 1,306 3,807 7,251 14,502 8,303 7,251 9,451	2,139 326 952 1,813 3,625 2,076 1,813 2,363		
가을착수	계	25,000	214,983	171,990	42,993		
	경남 충청 전남 전북 경북	4,750 500 1,250 2,250 6,000 3,500 3,250 3,500	40,847 4,300 10,749 19,348 51,596 30,097 27,948 30,098	32,678 3,440 8,599 15,479 41,278 24,078 22,359 24,079	8,169 860 2,150 3,869 10,318 6,019 5,589 6,019		

※ 1) 사업량 및 예산은 실제추진결과에 따라 조정

2) 보조율 : 국고 80%, 지방교부금 20%

배수개선사업(공공계획)

1. 목적

- 가. 지표배수개선 : 매년 홍수시 수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도모
- 나. 지하배수개선 : 발작물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논에도 발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확대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대책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내의 침수피해 상습지역 우선집중개발
- 침수피해가 심한 평야부 저지대 농경지에 대하여 우선시행
- 수해피해지구 집중지원
- 소유역 또는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 수해위험이 크나, 배수시설이 미비된 지구에 대하여 배수시설 확충
- 답리작 또는 고급 농산물 재배가 가능한 논에 대하여 지하배수개선사업 추진

나.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 사업목표 : 2004년까지 배수개선사업 대상면적 207천ha 완료
-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대상면적	'94까지	'95계획	'96이후	비 고
년 간	207	65	3	139	※ 준공면적 기준
누 계		65	68	207	
개선율		31%	33%	100%	

3. 조사설계

가. 답사

- (1)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이 신규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건의할 경우 예정지 답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하되 농업진흥지역을 위주로 하여 대상지구를 선정하여야 함.
- (2) 기본조사시행자가 각 시·도의 사업시행건의 지구를 사전답사 할 때에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업진흥지역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

나. 기본조사

- (1)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담당함.
- (2) 기본조사 시행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시한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여야 함.
- (3) 기본조사는 현지 행정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4) 경지정리·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함께 실시하는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행하여야 함.
- (5) 기본조사는 구역별로 실시하되 구역이 상이한 지구를 1개 지구로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시는 농림수산부와 사전 협의후 시행하여야 함.
- (6) 기본조사비는 지구별로 별도 요율에 의하여 지급함.
- (7)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후 150ha미만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기본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 수행자 및 계획확정

구 분	실시설계 수행자	계획확정
○ 물리면적 150ha미만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민간용역업체중에서 설계자 선정	도지사
○ 물리면적 150ha이상	○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위탁시행	농림수산부장관

- (2) 농림수산부장관은 물리면적 150ha 미만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선정지구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설계 수행자를 선정토록 함.
- (3) 150ha미만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는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검토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실시설계 수행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조사측량 설계지시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측량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5) 조사측량설계 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구역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 변경등이 불가피할때는 사업시행자 및 도지사(150ha미만지구) 또는 농림수산부장관(150ha이상)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6) 조사측량설계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 설계가 없는 완전한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만일 기본계획 및 구조, 면적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
- (7)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설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도지사는 실시설계 수행자에 대하여 보완설계 지시 또는 용역입찰 참가 제한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인가

- 가.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아 배수개선사업시행을 인가함.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35조 ⑩ 파항)
- 나. 시·도지사가 배수개선사업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인가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결과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 나항의 보고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계획확정 또는 지구 선정시 부한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검토내역이 첨부되어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6. 계획의 보완 라"항에 의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 라. 지시조건의 보완은 사업착수에 임박하여 보완하므로써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이행하여야 함.

5. 공사감리

- 가. 공사감리는 공사감리수행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 용역업체]로 함.
- 나. 공사감리자는 개량 27222-1206 ('85.6.19) 호로 시달한 공사감독위탁계약준칙 별표1. 공사감독 위탁계약서 제2조(감독업무)에 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원을 빈번히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업무를 태만히하거나 부적정하게 수행하는등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 수행자는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라. 공사감리 수행자는 현장에서 전문분야 (기계, 전기, 건축, 토질 등) 의 기술을 요할 때에는 해당 기술직원을 파견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의 현장이탈을 엄금함.
- 마.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 직원을 현장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계획의 수립 및 업무 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바. 사업시행자는 지구별로 해당공종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감리원을 상주시켜야 하며 그 배치상황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6. 계획의 보완

가.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보완 (단가변경에 따른 보완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함.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 기본계획의 변경
- (2) 배수장, 배수갑문 규모 및 구조변경
- (3) 배수간선의 단면 및 노선변경
- (4) 특수 전문기술자의 판단을 요하는 중요한 공종 및 특수공사의 추가사항

다. 시·도지사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1) 사업계획보완 개요 (1/25,000 ~ 1/50,000, 1/3,000 ~ 1/6,000사업계획위치 평면도 포함)
- (2) 심사서 <서식 3-1, 3-2, 3-3>
- (3) 농림수산부장관 지시사항 이행검토 내역
- (4) 설계자 의견서(보완 전·후 설계자 의견) <서식 15>
- (5) 사업비 수지예산서 <서식 4>
- (6) 년도별 공사비 내역 <서식 5>
- (7) 자재대 내역 <서식 6>
- (8)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서식 7>
- (9) 공사감독비 산출내역 <서식 8>
- (10) 공사감독비 대상 자재대 내역 <서식 9-1, 9-2>
- (11) 관리비 산출내역 <서식 10>
- (12) 잡지출 산출내역 <서식 11>
- (13)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서식 12>
- (14) 단가개정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서식 13>
- (15) 계획보완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서식 14>
- (16) 계획보완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설계도면 : 보완전 청사진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도면을 함께 첨부토록 할 것.)

- (17) 기타 보완에 필요한 사항

라. 시·도지사가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사업계획보완을 승인하고 결과보고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는 항목에 한하여 다음 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 (1) 사업계획개요 (1/25,000 ~ 1/50,000, 1/3,000 ~ 1/6,000 사업계획위치 평면도 포함)
- (2) 보완승인 공문 사본
- (3) 심사서 <서식 3-1, 3-2, 3-3>
- (4) 농림수산부장관 지시사항 검토내역
- (5) 사업비 수지예산서 <서식 4>
- (6) 년도별 공사비 내역 <서식 5>
- (7) 자재대 내역 <서식 6>
- (8)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서식 7>
- (9) 공사감독비 산출내역 <서식 8>
- (10) 공사감독비 대상 자재대 내역 <서식 9-1, 9-2>
- (11) 관리비 산출내역 <서식 10>
- (12) 잡지출 산출내역 <서식 11>
- (13)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서식 12>
- (14) 단가개정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서식 13>
- (15) 계획보완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서식 14>
- (16) 필요시 설계도서
- (17) 기타 보완에 필요한 사항

7. 용지매수보상비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과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상규정에 의함.

나.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8. 자금의 운용관리

- 가. 사업비재원은 전액 국고로 함.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함.
- 라. 관리비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정요율에 의거 도지사가 정하되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현지확인, 지도에 소요되는 여비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 시행할 수 있음.

9. 공정계획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승인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고시, 동의서징구, 용지매수감정의뢰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나. 사업시행자는 조기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되, 배수로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등은 영농기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 사업시행자는 내시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계획 및 별첨 서식에 의거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1월 30일까지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라. 예산변경 또는 계획보완 승인이 있을 때는 변경되는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승인 즉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0. 기 타

- 가. 시·도지사가 지구별 예산을 변경하여 내시한 때에는 즉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나.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시에 의함.

11. 보 고 : 별첨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제보고

보 고 사 항	서 식	보고기일	내 용
1. 사업시행인가 및 배수개선공정 계획보고 (농근법 제96조)	1	'93.1.30	지구별 공정계획승인 결과를 종합하여 일괄 보고
2.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총28-61)	2	매년말현재 익일10일 까지	지구별 사업추진상황 및 시공상의 문제점을 포함
3. 준공처리결과보고 (농근법 제101조)	3-1~ 3-4	준공즉시	
4. 배수개선사업 예산내시 결과보고	4-1 4-2	- 년초예산 내시는 1.31까지 - 예산변경 내시는 수시	지구별 예산내시 또는 변경내시 상황보고
5. 계획보완승인신청 및 계획보완 결과보고 (농근법 제97조)	5-1~ 5-15	계획보완 승인즉시	

12. '95배수개선사업 계획(안)

(금액 : 천원)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구수	면 적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담
계	106	30,152 ha	74,500,000	74,500,000			
광 주	1	315	629,000	629,000			
경 기	7	2,633	4,179,893	4,179,893			
강 원	2	280	922,086	922,086			
충 북	2	447	919,687	919,687			
충 남	4	3,307	9,466,438	9,466,438			
전 북	25	13,535	18,057,667	18,057,667			
전 남	14	3,294	9,295,480	9,295,480			
경 북	16	2,363	13,327,587	13,327,587			
경 남	22	3,539	15,069,347	15,069,347			
제 주	3	439	2,632,815	2,632,815			

< 서식 1 >

배수개선사업공정계획표

회 인 자 :
 사업시행자 :
 시공업체 :
 확 신 자 :

위치 : 도 군 지명 : (내지구명 :) 민 역 : ha ha당중수량 : M/T 당조승인 : 착공
 사업시행주 :

구	분	회	종	년	까지	년	이후	년도	공	원															
										승 인 액			정 산 액			잔 사 업 비			예 산 액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과	목	별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자		대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용		지		매		수		및		보		상		비											
속		랑		설		계		비																	
공		사		감		독		비																	
관		리		비																					
잔		지		출																					
기		타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지구명	위치		구분	사업시행자	면적	총사업비	기정잔액	전사업비	당해년도 예산	실영액	진도(%)		누계잔도(%)	부진사유
	시·군·면	읍·면									계획	실적		
계					ha									

단위 : 원천, 년 월 일 현재

주 : (1) 매월말일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총괄수산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할 추가한다.
 (3) 구괄물준공, 계속으로 구분
 (4) 진도(%):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 서식 3-1 >

배수개선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확인자 :

작성자 :

1. 사업지구현황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사업 :

- 사업효과
 - 증수량 : M/T - I.R.R : - B/C :
- 사업시행인가 년월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시공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공사감독 :

※ 준공지구 도면(1/25,000)을 첨부할 것.

< 서식 3-2 >

2. 년도별 검정내역

가. 수입

(금액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년도별검정내역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기 타									

나. 지출

(금액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년도별검정내역					비고
계									
순공사비 지급품비 용지매수 및 보상 비 측량설계 비 공사감독 비 관 리 비 잡 지 출									

< 서식 3-3 >

3. 공사비 검정내역

(금액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년 도 별 검 정 내 역					비고
계									
순공사비									
자 재 대									

< 서식 3-4 >

4. 사업량 검정내역

(금액 : 천원)

과 목	단위	총사업량	년도별검정내역					비고

※ 과목은 가능한한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5. 준공처리 의견

< 서식 4-1 >

년 배수개선사업 예산배정 결과보고

시·도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사 업 시행주	착공 년도	총 사업비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군	면							
계				ha			천원			

※ 구분란은 준공지구, 계속지구, 신규지구로 구분할 것.

< 서식 4-2 >

년 배수개선사업 예산배정 변경결과보고

시·도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사 업 시행주	착공 년도	총 사업비	년 까지	년 계 획			년 이후
		군	면						당초 (A)	금회 (B)	증감 (B-A)	
계				ha			천원					

※ 구분란은 준공지구, 계속지구, 신규지구로 구분할 것.

< 서식 5-1 >

심 사 서

- 1. 계 목 :
- 2. 지구명 :
- 3. 사업목적 :
- 4. 사업시행주 :
- 5. 면 적 : 구역면적 : ha 예택면적 : ha
- 6. 사업비

(단위 : 천원)

총 사	어 비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 고

7. 공사개요

총 계 획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 고

8.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식 5-2 >

9. 보완내용

구	관	보완내용	보완내용 및 심사 의견

< 서식 5-3 >

10. 지시조건

11. 심사자 종합의견

심사자 : 년 월 일 인

< 서식 5-4 >

사업비 수지예산서

(금액 : 천원)

○ 수입

과 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국 고							
지 방 비							
용 자							
계							

○ 지 출

(금액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축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계							

< 서식 5-5 >

년도별공사비내역									
구분	공시명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비	고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체대를 대상으로 작성할 것.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서식 5-6 >

자산채대내역

구분	년도	배 수 장			평 야 부		부 대 공		계		비 고
		수 량	단위	액	수 량	단위	수 량	단위	수 량	단위	
양 회	까지										
	년도										
	이후										
	계										

< 서식 5-7 >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 ²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중(△)값		년		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년까지 정산액	년계획	년이후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 서식 5-8 >

공사감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년도별	공종별	순공사비 (A)	자재대 (B)	공사감독비 대상공사비 (A+B)	낙찰율 (%) (C)	공감요율 (D)	공사감독비 (A/(C+B))x(D)	산출기초
합계								

※ 순공사비, 자재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서식 5-9-1 >

공사감특비 대상 자재대 내역										(금액 : 천원)			
구분	종	명	자재명	수량	단위	계		자재원가		부가가치세		비	고
						단위	금액	단위	금액	단위	금액		
계													
배수장													
평가부													

< 서식 5-9-2 >

구분	공종	자재명	수량	단위	계		자재원가		부가가치세		비고
					금액	단위	금액	단위	금액	단위	
부대공											
	합계										

< 서식 5-10 >

관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년도 별	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계	요율	관리비	비	고
합계								

※ 순공사비, 자재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잡지를 산출내역

구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까지			계좌			(금액: 천원) 이후		
	필지	단가	금액	필지	단가	금액	필지	단가	금액	필지	단가	금액	필지	단가	금액	필지	단가	금액
계																		
유지메수 입기비																		
분촉 합비																		
공정 부비																		
수 등 기비																		
기 타																		

< 서식 5-12 >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 승인액	정산내역		보원전 잔공사비	보완 후 증가액		비고			
				년까지	년		보완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공사명												
합계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할 것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값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서식 5-13 >

단가개정에 따른 공사비 이동표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량명	단위	단가			공사비	단가개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계								

※ 단가개정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 서식 5-14 >

계 획 보 완 에 떠 른 공 사 비 이 동 조 서								(단위 : 천원)	
공 증 명	공 사 물 량 명	단 위	물 량			단 가	공 사 비	공 사 물 량 이 동 사 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 감				
합	계								

- ※ 1. 공사물량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 2. 본 조서는 자체에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3. 공사물량명에는 변동이 있는 것에 한한다.

< 서식 5-15 >

설계자 의견			
전 설	계 자 의 건	회 설 계 자 의 건	진
		금 회 설 계 자 의 건	
		전 설 계 자 : 소속 금 회 설 계 자 : 소속	성 명 인 성 명 인

※ 주요계획의 변경사항인 경우에만 작성

서남해안간척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척지개발대상지역의 공유수면(간척지)과 유휴지를 개발 용수원 확보와 용배수로 정비 및 개답공사 등으로 생산기반인 농지를 조성하여 국가경제 및 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함에 있음.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침

-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
- 다목적 개발 및 농지규모 대구획화로 개발효과 제고
- 농업목적 간척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철저 시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 어업권 등 보상비의 적정한 보상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나. 장기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계	'93 까 지	'94	'95	'96 - '98				'99 - 2004
					'96	'97	'98	계	
사업량	20,269	-	363	501	443	2,240	400	3,083	16,322
사업비	15,578	5,613	790	900	948	1,050	1,140	3,138	5,137

다. 사업효과

- (1) 국토의 확장과 우량농지 확보
 - 경지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로 기계화 영농 촉진
 - 농경지의 절대면적 감소에 따른 우량토지 대체 개발
- (2) 국토종합 및 균형발전 촉진
 - 해안오지개발로 수산업 위주에서 복합영농구조로 변경
 - 도로재정비 및 해안선 단축으로 육로거리 단축

3. 사업시행대상

- (1)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사업, 미완공간척사업, 유휴지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10만㎡이하에 한하여 민간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2)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며,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전액 자기 부담.

4. 사업시행절차

가. 예정지조사

국가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간척농지개발사업에 대한 예정지조사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직권 또는 사업시행자(자방자치단체, 농진공, 농조, 이와 같음)의 요청에 의거 실시.

나. 기본계획

- (1) 예정지조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2)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지체없이 조사설계를 착수하여 기간내에 제출.
- (3) 기본조사비는 지구별로 할당하여 측량설계비 내에 포함하여야 하되, 별도 요율이 확정될 시에는 이에 준하여야 함.

다. 대상지선정

- (1) 기본조사결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 (2) 지역주민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였거나, 매립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실보다 훨씬 많은 지구.
- (3)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대상지 선정.

라. 사업시행주체

- 사업여건에 따라 장관이 지정하며,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외곽시설, 내부개답, 배후지 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마. 실시설계

- (1)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도지사(사업시행자가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이하 같음)에게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지시하고 도지사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시달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수행자를 선정.
- (3) 실시설계수행자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과학기술처에 신고된 용역업체등으로 함.
- (4) 민간용역업체 참여에 의한 실시설계는 '98년 이후부터 신규 실시지구에 대하여 전면확대 실시하되 한시적으로 '95년까지는 매립면적 300ha미만, '96년까지는 600ha미만, '97년까지는 1,000ha미만으로 민간용역업체 참여 규모를 제한.
- (5) 전항의 규모이상의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수행.
- (6) 사업시행자로 부터 선정된 실시설계수행자는 지체없이 조사설계를 착수하여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7) 사업 시설물 부지의 지질조사, 연약지반 처리에 필요한 조사시험, 축제재료와 조세골재의 매장량 및 필요한 조사시험 등은 필히 실시.
- (8) 제(4)항 규모 미만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설계서를 제출 받아 사업계획을 확정 승인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9) 제(4)항 규모 이상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설계서를 제출 받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확정 승인 신청.
- (10) 조사설계가 소홀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대폭적인 보완을 요할 때에는 보완 사유의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소재를 규명.

바. 공사시행

-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에 공정계획서(제1호 서식)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
- (2) 사업시행자의 인가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 (3) 사업시행자가 도지사로 부터 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인가내용 고시.
- (4) 공사의 발주 및 계약공종은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계획확정 승인된 공종에 한함.
- (5)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성질, 규모, 공사기간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직영 또는 도급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입찰계약상황을 도지사 경유 농림수산부장관(기금관리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월별 사업추진상황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기금관리자)에게 보고(제출).
- (6) 사업시행자는 내시된 예산 범위내에서 년내에 추진 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자재의 확보 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여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7) 전항의 공정계획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변경코자 할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8) 도지사가 공정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승인된 공정계획을 통보.
- (9) 도지사(농어촌진흥공사 사장)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이상 주요시설물(방조제, 배수갑문,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은 그 결과를 발췌 점검.

사. 계획보완

- (1) 불가상승으로 인한 단가보완은 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사업계획의 보완(물량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외에는 최대한 억제.
- (3) 현지여건상 부득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방조제의 규모, 형식, 구조 및 기초지반개량공법과 배수갑문, 수원공시설 및 물리면적의 증감 및 재해대책 지원에 의한 보강 등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4)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단가인상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함.

아. 공사감리

- (1) 간척농지개발사업의 공사감리는 공사감시수행자(농어촌진흥공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용역 업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승인결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공사감리수행자는 사업규모, 시행공종, 시공의 난이도,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격있는 숙련된 기술자로 적정인원을 공사감리원으로 배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3) 공사감리수행자는 현장에서 연약지반의처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종및 구조물시공시에는 복수감리제를 실시하여야하며, 사전에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반시험및 기술을 검토토록하여 계획 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4) 지구별로 배치된 공사감독원의 빈번한 교체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배치된 공사감독원은 시공자료, 사진등 현장자료와 근로일지 등을 상세히 작성 보관하여야 함.

자.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

- (1) 조사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등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 (2) 불가변동 및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개량 27223-2785('85 .12.20)호의 지시에 의함.
- (3) 사업비(개발비)에 계상된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독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환경 관리비등의 수령자가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가 농진공에 직접지급할 수 있음.
- (4) 관리비는 요율범위내에서 계상하되 재산적 성질의 물건구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비의 절감을 기하여야 함.
- (5) 잡지출인 이전등기,공부정리비는 사법서사법에 규정한 요율기준에따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함.

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1) 환경영향평가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
-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조사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환경처장관의 최종협의내용의 이행 계획과 평가서상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관리 내용을 근거로 함.
- (3)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 (4)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수질, 대기질, 생태계 등의 환경을 계절에 따른 변화를 조사해야함으로 사업 승인 이전이라도 행정지시로 사업에 착수 할 수 있음.

카. 예산 및 자금(농지기금) 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주무부처의 장이 내시한 예산액에 의거 공정계획을 수립 사업시행 인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가서 사본 및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지원 계약체결 요청을 하여야 함.
- (2)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 실행자금집행계획(변경계획) 및 분기별 자금배정요구서를 작성 기금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 (3) 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분기별 자금배정액내에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또는 사업 시행실적에 의한 자금 교부요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자금을 교부하여야 함.
- (4) 사업비 자금을 배정(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집행 하되 보상비, 순공사비등의 직접비용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함.
- (5) 농지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여야 함.
- (6) 배정받은 농지기금은 지정된 목적이외의 전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자금의 전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도부진 또는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타. 실행검정

- (1) 사업시행자는 농지관리기금운용지침(제23조)과 우리부에서 시달한 검정요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도지사)에게 실행검정 신청 .
- (2) 사업인가권자(도지사)는 년도별검정을 실시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그결과를 년도말 10일까지 보고 .

5. 일반사항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과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세부사업지침, 농지관리기금운용지침 및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함.

6. 보고서식

- 공정계획표 : 제1호 서식
- 월별 사업추진현황 (총괄) : 제2-1호 서식
- ○ ○ 지구 계획대 실적 (사업비) : 제2-2호 서식
- ○ ○ 지구 계획대 실적 (사업량) : 제2-3호 서식

7. '95년도 사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도별	지구명	사업량 (면적)	사 업 비					
				계	농 지 금	국 보 조	고 조	지방비 보조	용 자
	계	14	ha 14,415	87,037	87,037				
	경기	2	5,203	20,900	20,900				
	화 진	응 촌	4,880 323	17,700 3,200	17,700 3,200				
	충남	3	3,885	18,500	18,500				
		남 포 석 이	1,135 2,050 700	10,000 6,500 2,000	10,000 6,500 2,000				
	전남	9	5,327	47,637	47,637				
		군 보 해 완 고 고 사 만 구	내 전 남 도 금 흥 내 덕 암	400 230 1,842 225 157 1,860 400 213 (93)	7,000 2,800 9,037 2,000 4,000 16,000 3,000 3,000 800	7,000 2,800 9,037 2,000 4,000 16,000 3,000 3,000 800			

* () 내서는 보강개발면적임.

<제2-1호 서식>

월별 사업추진현황 (총괄)

(금액 : 천원)

지구 명	총사업비	까지		년도 계획 대 실적				총 누계 진도	'95 이후	부진사유
		사업비	%	총계획	당월 누계		당해 년도 진도			
					계	획		실	적	%
							%	%		

<제2-2호 서식>

○○ 지구 계획대 실적 (사업비)

(금액 : 천원)

과목별	총계획	까지		년도 계획 대 실적					총 누계 진도	'95 이후	부진사유
		사업비	%	총계획	당월 누계			당해 년도 진도			
					계	획	실 적				

<제2-3호 서식>

○○ 지구 계획 대 실적 (사업량)

(금액 : 천원)

공 종	단위	총계획	까지		년도 계획 대 실적					총 누계 진도	'95이후
			사업량	%	총계획	당월 누계			당 해 년 도 진 도		
						계 획	실 적	%			
									%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공공계획)

1. 목적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수계를 중심으로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농어촌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사업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므로써 영농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복지농어촌의 건설을 촉진함.

2.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 새만금지구는 농림수산부장관.(전라북도지사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사업대행자)

3. 사업시행 대상지구

- 당해년도 예산내시 지구에 한함.

4. 사업시행 기본방침

- 가. 사업효과를 조기 거양할 공종부터 부분완공 위주로 시행.
- 나. 조사측량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은 공사 시행중에 계획변경 및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여야 함.
- 다. 공사감독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 라.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내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 마. 시설물 인수예정농조를 조기에 지정하고, 부분완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철저.
- 바. 하천개수가 되지 않은 지역의 경지정리 시행은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조하여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실시, 하천개수 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토록 함.

5. 사업시행계획 승인

- 가. 사업시행자(또는 대행자)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년내에 실시할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년도별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첨부.
- 사업 추진경위
 - 사업계획 개요
 - 사업 추진현황
 - 과목별 추진물량 및 금액
 - 년도별 수지예산서
 - 기타 사항
- 다. 투자사업비는 개발형태별로 구분하고, 년도별 개발실적은 대단위사업 이외의 여타 일반사업과 지역주민의 자력개발 실적을 포함하여 조사 수록.
- 라. 장관의 승인이 있을 후 20일 내에 월별 공정계획서를 제출.
- 마. 년도초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전년말 가격으로 우선 작성.

6. 조사 설계

- 가. 기본조사
- 별도의 장관 방침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가 실시. (조사비는 실비 정산)
- 나. 실시설계
- 년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구단위로 실시설계하여 장관의 확정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신기술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최적설계가 되어야 함.
 -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수로구조물, 양.배수장, 수로터널등)에 대한 기초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시행 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실시설계는 개발면적 600ha 이내의 범위에서 적격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 가능.

7. 공사감리

- 가.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또는 사업대행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분야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감리전문업체에 용역시행 할수 있음.
- 나. 공사감독원은 공중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다. 공사감독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라.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중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 마.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전문기술 요원과 기사급 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복명서(사진첨부)를 보존하여야 함.
- 바. 지급자재는 입출고 시 마다 대장정리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8. 계획보완

- 가.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내역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결과보고. 다만, 총사업비가 변동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계획보완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계획보완을 실시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1) 물리면적의 증감 : 공구별 물리면적의 5% 이상 변동

(2) 주요시설의 구조 및 수량 변동

- 수원공의 규모, 형식, 구조변경
- 용수간선의 노선계획등 기본계획의 변경

(3)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특수한 변경

- 수문처리기법의 변경
- 기초지반개량공법의 변경
- 특수공종의 신설 또는 변경

다. 주요사업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당해 도지사에게 제출.

라. 계획보완으로 인하여 농근법 제 96조에 의한 주요 고시내용(사업기간, 개발면적, 총사업비, 농민부담금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9. 실행 검정

가. 중간 점검

- 사업시행자(또는 대행자)는 매분기마다 실행검정을 필한 후 실행금액을 확정.

나. 년도말 검정

- 사업시행자(또는 대행자)는 년도말 검정을 실시하여 검정결과를 12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수산부장관은 주요공종을 확인한 후 년도말 검정액을 확정.

다. 준공검사

(1) 공사준공

- 사업시행자(또는 대행자)는 공사준공 계획을 수립하고, 준공검사 10일 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공사준공을 위한 검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 농림수산부는 인수예정 농조 임회하에 주요공종을 발췌 확인.

(2) 사업준공

- 사업준공은 공사준공 완료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또는 사업대행자) 책임하에 총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재확인 검사하고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준공 보고서가 접수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사업준공을 확정.

10. 용지매수 및 보상비

-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고, 지장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나.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함으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작물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함.
- 다. 분할측량후 확정된 용지매수비는 조속히 지급하고, 이전등기 수속.
- 라. 용지매수 및 보상비에 대한 확정액중 수령자가 불명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대금은 즉시 공탁등의 조치를 취함.
- 마. 전년도까지 매수한 용지는 당해년도내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

11. 어업권 보상

가. 보상물건조사 실시

- 당해 사업지구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 확인토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사업시행자(또는 사업대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 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평가기관 선정은 평가실적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평가용역은 작업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집행중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다. 보상액의 산정

- 보상평가는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여부를 검토 심의 확정된 후 관계 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

12.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 2조 및 제 14조 제 2항에 의함.

13. 자금관리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자금은 용지매수보상비를 공사비에 우선하여 집행.

14. 기타사항

가.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비 국고의 예치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은 익년 1월 31일 까지 국고에 반납.

- 나. 사업시행자의 공사완공증명 발급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주요공종 발체 확인이 끝난 경우에 할수 있음. 다만, 발체확인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한후 공사완공증명을 발급함.
- 다. 본 요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 교부규정 포함)에 의함.

15.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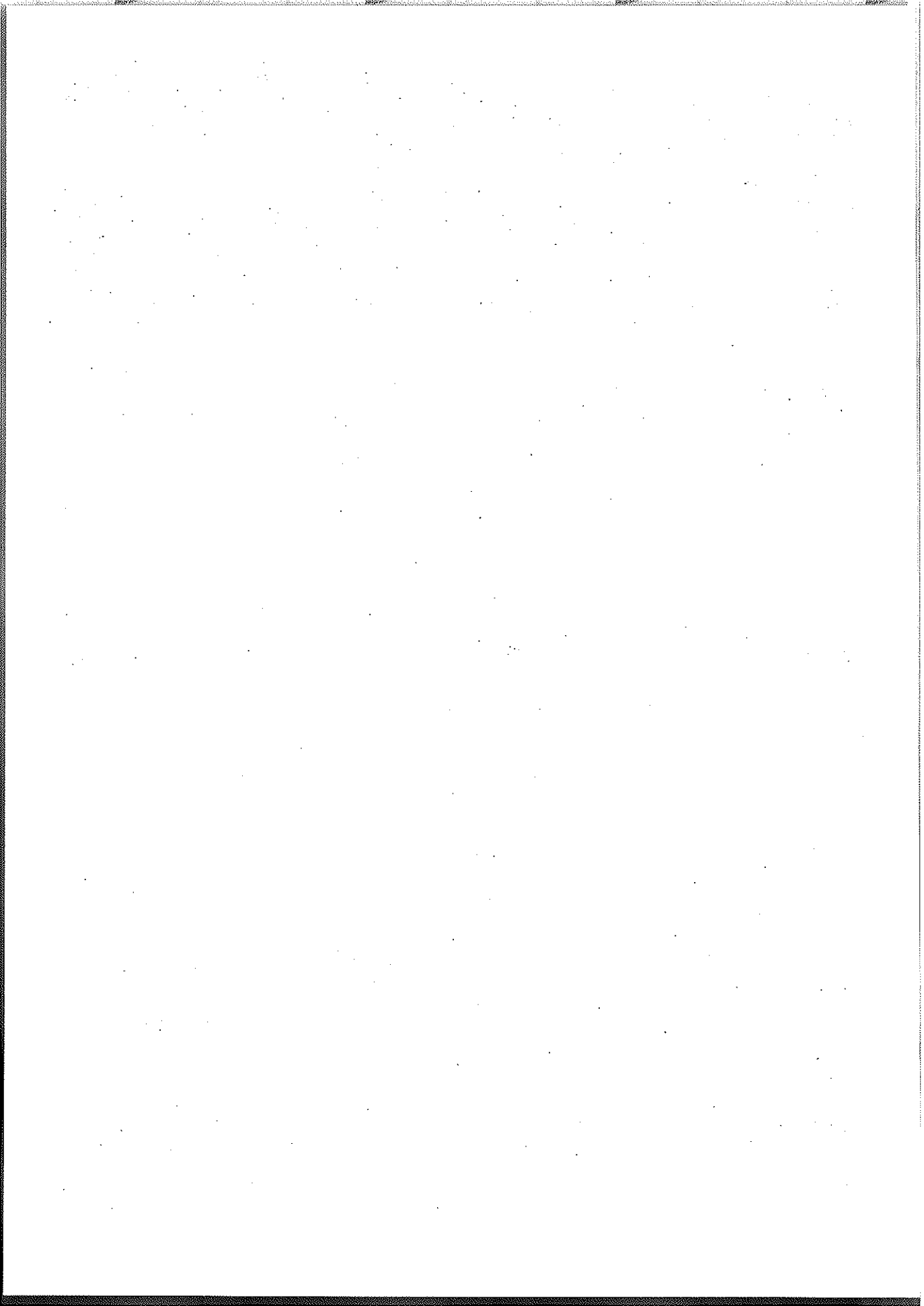
- 가.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공구 단위로 작성하여 익월 2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당해 도지사에게 통보.
- 나. 년도말 사업보고서는 다음 각항을 종합 작성하여 익년 3월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개요
 -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실적
 - 차관 및 채무상환 현황
 - 사업별 추진상황
 - 기타 사항
- 다. 간척지 매각대금 집행현황은 매분기 종료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라. 신규지구 공사입찰은 대상지구의 입찰시기, 입찰방법 등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
- 마. 차관선과 관계되는 주요사항은 반드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16. 대단위 사업비 '95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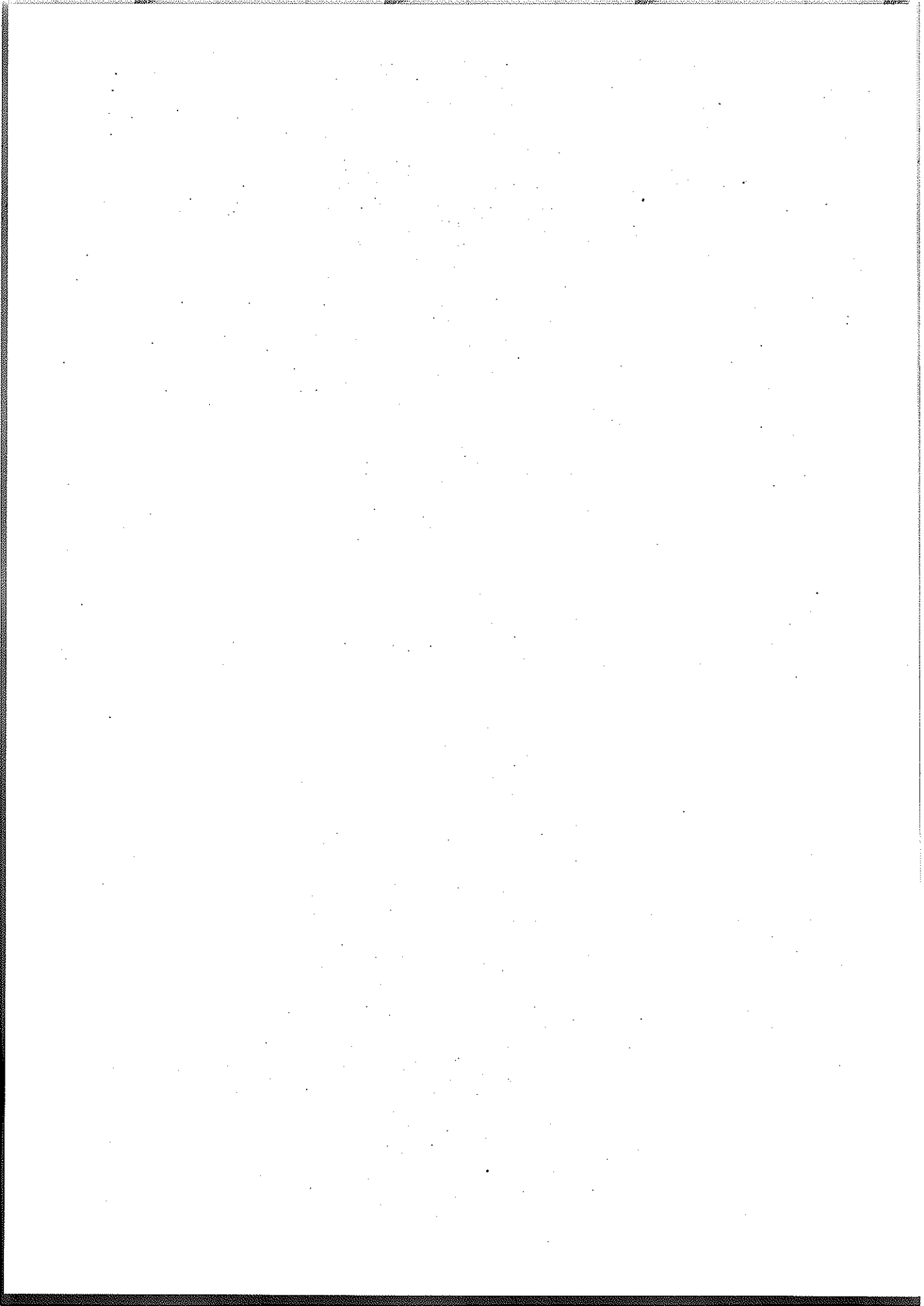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지구명	개발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구역	사업기간 (년)	총사업비	'94 까지	'95 예산 (안)
합 계					3,608,448	1,391,102	(50,000) 179,078
영산강(Ⅱ)	20,700	농진공	전남	'76~ '97	336,402	278,978	(12,000) 3,000
대 호	7,700	농진공	충남	'80~ '96	187,600	172,302	8,500
금 강(Ⅱ)	43,000	농진공	충남 전북	'89~2004	415,850	32,506	12,000
미호천(Ⅱ)	4,430	농진공	충북	'89~ '99	118,861	27,135	8,000
홍 보	8,100	농진공	충남	'91~2001	218,400	21,912	23,000
영 산 강 (Ⅲ-1)	7,960	농진공	전남	'95~2003	328,000	0	(2,000) 1,000
영 산 강 (Ⅲ-2)	6,800	농진공	전남	'89~ '96	64,015	42,810	(11,000) 1,000
새 만 금	40,100	농림수산부	전북	'91~ '98	1,388,000	207,548	(25,000) 97,100
- 보상업무		전라북도			438,000	117,500	79,100
- 공사시행		농진공			950,000	90,048	(25,000) 18,000
채무 상환		농진공			551,320	427,911	25,478

※ ()는 농지관리기금 외서



3. 경 영 규 모 확 대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자율)

1. 총 칙

가. 목 적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매매, 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사업과 장기임대차간척 농지매매 및 영농복귀지원사업등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을 농어민자율추진사업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세부시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나. 기본 방향

- 전업농가의 육성지원
-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소유 억제로 경자유전의 실현
- 농지의 집단화로 영농의 능률성 제고
-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轉業)농가의 자립여건조성

다. 사업 신청

-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농지의 매매, 임대차 및 교환분합을 위한 농민의 신청을 종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시·군 산업과에 제출

라.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기준

- 공사가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업대상 지역의 농지면적과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수립 다만, 장기임대차 간척·개간농지 매매사업은 당해년도 예상사업량을 고려하여 수립

(2)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 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매년 10월 20일까지 기금운용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여 공사에 시달
- 공사는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농업진흥지역내(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 농지면적과 마을별 전업농 육성대상자를 파악
- 공사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지역별 농가영농규모적정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 11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별 세부시행방침
 - 도별·사업별 규모 및 예산
 - 사업별 상환원리금 및 임대료 회수계획
 -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 농림수산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다음연도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공사에 확정시달
-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각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각 지사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협의 시군별·사업별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군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기준은 라-(1) 항의 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 적용
- 공사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사업실적에 따라 도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받은 당해년도 사업시행계획의 범위내에서 동일사업에 한하여 이를 조정시행하고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마. 사업시행 소요경비 지급

-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의 매매, 임대차등의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의 지급방법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함.
- 공사는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농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채권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업무지침과 채권관리규정을 제정·운영

바.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 시행계획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관할 시·군·읍·면 및 지부의 게시판에 10일이상 게시 공고

- 분기별 사업시행규모
- 사업별 지원내용
- 사업별 대상자의 요건
- 사업별 대상농지 및 농지조건
- 매매대금 및 임대차료의 지급 및 수납
- 용자금의 지급 및 상환조건
- 분기별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본 요령에서의 사업별 대상농지는 전·답·과수원

- 공사는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고한 때에는 시·군·읍·면 및 농지관리위원회 협의 협조를 얻어 농민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토록 적극 지도·홍보

사. 자금배정

-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시행계획에 의거 매분기별(월별포함) 소요자금을 매분기개시 15일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

-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때에는 각지사예 소요자금을 배정하며 지사는 관할 군지부별 자금 배정, 이 경우 도별·군지부별 자금배정 기준은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함

아. 사업정산

- 공사는 당해년도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 정산서를 회계년도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사업정산결과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농지관리 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등 손실금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손비처리 요청

자. 용어의 정의

본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농 지 :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농 가 : 세대주 또는 그 동거가족이 농업에 종사하여 생활하는 가구단위
- 전업(專業)농가 : 주된 소득을 농업에 의존하며 농업노동력을 1인 이상 보유한 농가로서 다음 각호의 농가
 1. 농지를 2.0ha 이상 자경하는 농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의 농업소득에 상당한 농업소득이 있는 원예, 잠업, 축산등 농가
- 전업(轉業) : 농가의 세대주 및 그 동거가족 전원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것

-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
- 농업진흥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 농어촌지역 : 군지역과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시지역
- 간 척 : 바다, 호수, 하천등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거나 매립하여 육지화하는 것
- 개 간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지 목 :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
- 공시지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토지의 가격
- 전 매 : 농지를 매입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
- 전 대 : 농지를 임차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 이해관계인 : 토지등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登記된 권리를 가진 자
- 영농조합법인 :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5인이상의 농민이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 위탁영농회사 : 농업노동력의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대행하는 법인
- 전업농육성대상자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55세이하로써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근면성실하며, 전업농가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민. 다만, 18세이상의 후계농민이 있는 경우는 65세까지 지원
-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
- 농지소유규모가 1.0ha이상으로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민.
다만, 농지소유규모가 1.0ha 미만인 경우에도 1.0ha이상의 임차농지를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이양을 전제로 부모소유농지를 1.0ha이상 경작하고 있는 40세이하의 농민인 경우도 지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서 영농정착의지가 뚜렷한 농민
다만,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로 선발·편입된자는 포함
-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영농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등으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 후계농민

- 동일가구내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농지매입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동일가구내 거주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과계학교에 재학중인 자(이 경우 연령과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
- 군복무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는 후계농민으로 봄. 다만, 농지를 매입한 후 8년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겨 타직업에 종사할 경우 후계농민의 매입자격은 인정되지 아니함.
- 부재지주 :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읍·면 또는 통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연결한 시·군·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 재촌지주 :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읍·면 또는 통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연결한 시·군·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민이 아닌 자
- 영농복귀자 : 농지를 공사에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농가로서 전업후 2년이내에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

< 참 고 >

1. 년차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별	계	'95	'96	'97	'98	비 고
계	15,454	2,800	4,007	4,654	3,993	
○ 농지매매	9,047	2,350	2,750	2,750	1,197	
○ 농지임대차	6,050	400	1,200	1,800	2,650	
○ 농지교환분합	357	50	57	104	146	

2.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도 별	계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농지교환분합	비 고
계	280,000	235,000	40,000	5,000	
경 기	37,500	31,910	4,970	620	
강 원	16,130	13,890	1,960	280	
충 북	18,780	15,790	2,640	350	
충 남	43,380	36,310	6,180	890	
전 북	33,700	28,600	4,550	550	
전 남	45,230	37,880	6,620	730	
경 북	49,000	40,050	7,970	980	
경 남	32,600	27,330	4,720	550	
제 주	3,680	3,240	390	50	

2. 농지매매사업

가. 사업목적

비농가,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매도함으로써 전업농육성과 경자유전 실현

나. 농지매입

(1)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다음의 농지순위로 매입
 - 비농가의 농지 및 법인소유의 농지
 - 전업(轉業)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 고령 또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 겸업농가의 농지등 기타의 농지

- 겸업농가의 농지라 함은 주된 소득을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농가의 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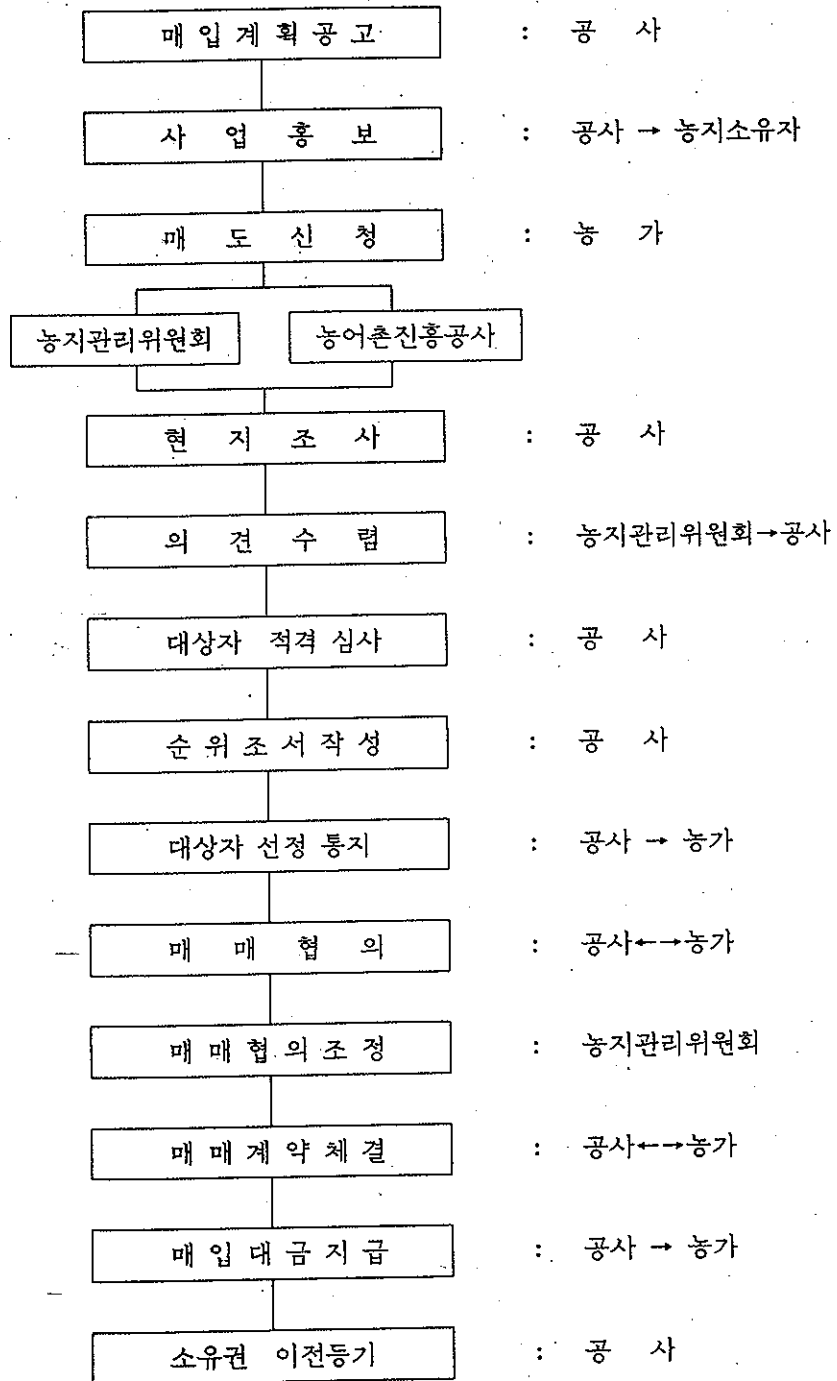
-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지집단화를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인접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공사는 이를 매입. 다만, 공사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도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지매입 대금으로 일시불로 납부

-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연접된 매입대상농지중 일부인 일반농가 소유농지를 매입 하므로써 농지의 집단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입

(2) 매입제한농지

- 농업진흥지역이외의 농지
-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어 매입후 농지로서의 이용이나 매도가 곤란한 농지. 다만, 근저당권의 경우 공사가 대위변제키로 약정한 경우와 송전탑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

(3) 농지매입 시행절차도



(4) 매입계획의 홍보

-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당해년도 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매도신청기간전에 현지방문 및 유인물 배포등의 방법으로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가 전원 신청토록 함
- 농지매입계획의 홍보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매도자의 요건
 - 매입대상농지
 - 매입조건
 - 매입대금의 지급방법
 - 신청기간
 - 구비서류

(5) 매도신청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매도신청서를 공사 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매도신청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함.

(6) 매입적격여부 심사

공사는 농지매도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조사와 제출서류 검토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조사확인과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입하며 매도신청이 매입계획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자의 요건, 농지조건 및 매도면적을 감안 매입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순위조서를 작성

(7) 매입대상자 선정 및 통지

- 공사는 매도신청이 매입계획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작성된 순위조서에 의거 매입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농지매입대상자 선정통지서를, 그 외의 신청자에게는 심사결과를 통보
- 공사는 농지매도신청자가 매입예정자를 선정하여 매도신청을 하는 경우중 매입예정자가 공사의 농지매도대상자 적격심사기준의 일반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당해농지와 연접한 농지의 소유자이거나 2년이상 당해 농지를 영농하고 있는자인 때에는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매도할 수 있고 연접한 농지의 소유자가 아닐 때에는 일정기간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후 농지집단화와 연령을 고려한 매입예정자 순위조서를 작성하고 고득점자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원
- 매입대상자가 매입계획에 미달한 때에는 관할 읍·면·동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사업내용을 적극홍보하므로써 매입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는 매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매입농지가 지체없이 매도될 수 있도록 농지의 조건, 매입가격 및 매도가능성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입
- 매입대상자선정통지서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함.

(8) 매매협의 및 매입가격의 결정

- 공사는 매입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원칙으로하여 매매가격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 및 현지조사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
다만, 공시지가와 실제거래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농지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농지매도자가 부담

- 매입할 농지의 가격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매입할 농지에 주택등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지적정리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매입할 수 없음.
- 지적공부상 매입할 농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로서 농업에 필요한 용배수로, 농로, 유지, 관정 및 농막등 정착물은 그 시설에 대하여 매매가격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 공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는 매입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매입대상자가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적격여부 심사 결과 매입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순위조서에 의한 고득점자와 협의하여 농지 매입

(9) 매매계약의 체결

- 공사는 매입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 계약 체결
- 등기부상 당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농지매도자가 이를 말소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적공부상의 토지표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등기명의인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농지매도자가 토지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후에 계약 체결

(10) 매입대금의 지급

- 공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 매매계약 체결시 : 매입대금의 10 %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잔금 전액

- 공사는 매입대금의 잔금원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농지매도자로부터 징구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인감증명
 - 토지대장등본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사용
 - 주민등록등본
 - 등기축탁승낙서

(11) 소유권이전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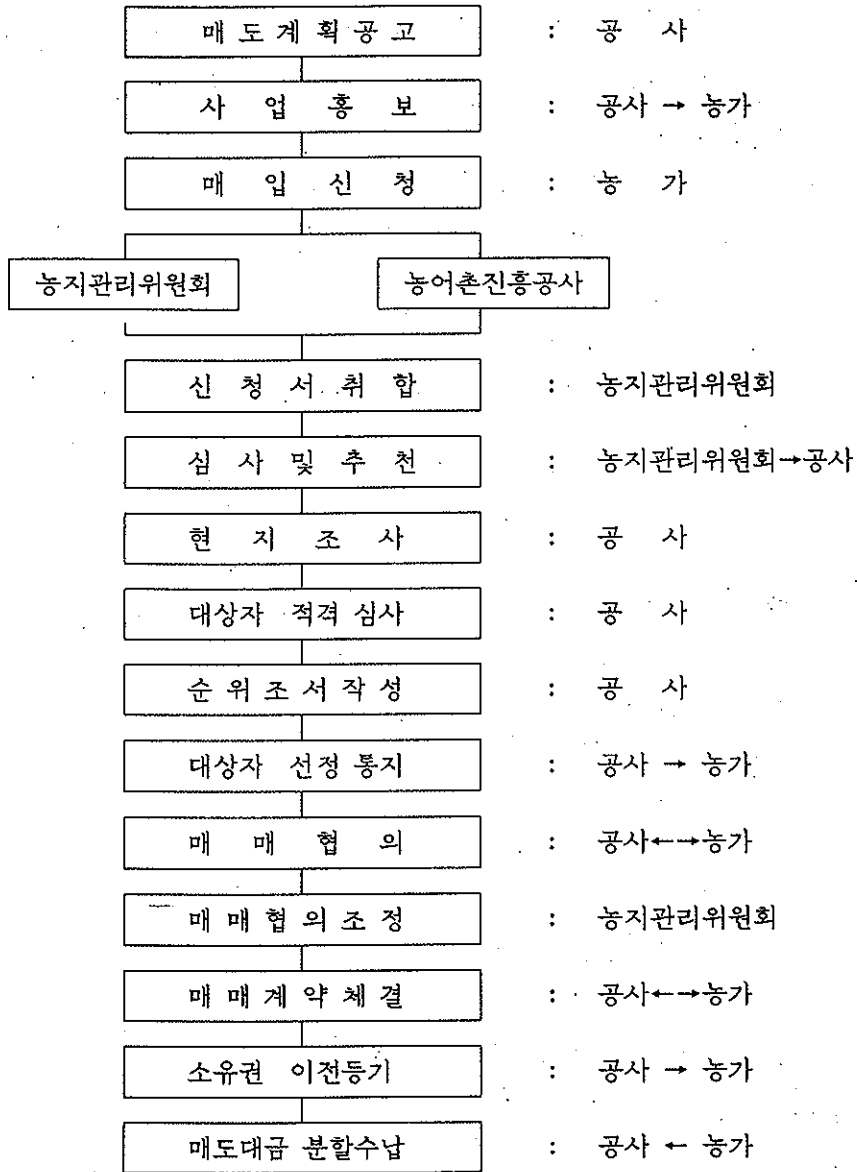
공사는 매입대금을 원불하고 매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축탁하고 등기필증을 발급 받아 이를 비치

다. 농지 매도

(1)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 영농복귀자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상속농지를 구입하는 영농 1자녀
- 장기임대차증인 간척·개간농지를 매입하는 경작농민
- 겸업농가중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구비하고 1ha이상의 농지를 소유·경작하는 자로서
 - 부업형태의 영세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과세특례자 및 면세사업자
 - 일용근로자
- 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 및 농지매매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중 보유농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영농규모확대 또는 교환·분합등으로 불가피하게 농지를 매도한 것으로 공사 지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도한도 : 기존소유농지를 포함하여 5.0ha까지 매도함을 원칙, 다만
 - 매도대상자가 기존소유농지와 집단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1,000㎡이내에서 5.0ha를 초과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 : 기존소유농지(최소 5ha이상)를 포함하여 10ha까지 매도
 - 농업회사법인 : 기존소유농지(최소 10ha이상)를 포함하여 20ha까지 매도
-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가 거주지로부터 20km이상 떨어져 있는 농가는 제외

(2) 농지매도 시행절차도



(3) 매도계획의 홍보

-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당해년도 농지매도사업 시행 계획에 의한 매입신청기간전에 현지방문 및 유인물 배포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원 신청토록 함.
- 농지매도계획의 홍보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매입자의 요건
 - 매도농지의 물량과 종류
 - 매도조건 및 매입대금의 납부방법
 - 신청기간
 - 구비서류
-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와 연결한 농지를 소유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매입의사를 우선 확인하여야 함. 다만, 매입의사는 당해지역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4) 매입신청

-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매입신청서를 공사 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매입신청서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함.

(5) 매도적격여부 심사

- 공사에 접수된 농지매입신청서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하며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와 함께 이를 심사하여 매도대상자를 공사에 추천
- 공사는 농지매도대상자 추천서를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조사 및 제출서류 심사등의 방법에 의하여 매도대상자를 결정하며, 매입신청이 필지당 2인이상일 때에는 영농경력, 연령, 영농전문성, 영농규모, 농지집단화 정도, 통작거리, 자부담능력 및 영농기술개발실적등을 감안 매도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매도농지별 고득점자순으로 순위조서를 작성하되 농지집단화정도와 연령을 중점 고려하여 작성. 이경우 공사로부터 장기입차하여 경작중인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도적격자로 선정
- 공사는 지원금액 누계액이 2억원이상인 대상자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공사는 농지매입 신청자가 당해 농지의 매도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매도하지 못함. 다만, 농지매도인이 이농·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이거나 비농민이고 매수인이 매도인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로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사는 매입희망자가 없는 매도대상농지에 대하여는 관할 읍·면·동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사업내용을 적극홍보하므로써 매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매도대상자 선정 및 통지

- 공사는 필지별 매입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심사결과 작성된 순위조서에 의거 매도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도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매도대상자 선정통지서를, 그 외의 신청자에게는 심사결과를 통보

- 매도대상자선정통지서는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함.

(7) 매매협의 및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는 매도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매도가격을 결정하되 매입후 1년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매입가격으로, 취득 1년 경과후 매도시에는 실제거래가격의 범위안에서 결정
- 공사는 매도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거나 매도대상자가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도적격여부 심사결과 당해농지 매입을 신청한 자중 매도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고특점자와 협의하여 농지 매도
- 공사는 매매협의를 매입희망자에게 농지매입후 8년이내에 당해농지를 타인에게 전매(증여를 포함한다), 임대, 대리경작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농지매입자 및 후계농민이 이농하거나 타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당해농지 또는 지원금을 공사가 회수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계약조항에 명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만, 농지매입자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 동일가구원중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있거나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후계농민이 있는 때에는 회수하지 아니함.
- 매도가격의 결정에 관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등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

(8) 매매계약의 체결

- 공사는 매도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9) 매도대금의 수납

○ 수납방법

- 일 시 불 : 농지매입능가가 원할시 일시불로 수납
- 분할상환 : 금 리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연리 3%
다만, 금리변동시 별도 통보된 금리에
의함.
상환기간 : 20년간 균등분할상환

- 농지매도대금 분할상환금액을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농지구입자금의 연체이자를 적용)
를 가산하여 수납

(10)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사는 매매계약체결후 농지매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다음 서류
를 인계. 다만, 농지매입자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에는 매매대금 완납시 인계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인감증명
 - 위임장
 - 매도대금 납부영수증
- 공사는 농지매입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 이경우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농지매입자가 부담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수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전매, 임대, 대리경작 및 담보제공 제한을 위한 "특약등기"를 하므로써 전매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등기비용은 농지매입자가 부담.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다른 적격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 할 수 있음.

- 농지매매계약이 성립된 대상농지에 경지정리사업이 실시되어 후취담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농지이외의 농지를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나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농지에 담보를 이전하여야 함.

3.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사업 목적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로부터 장기임차한 농지와 공사 소유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장기임대하므로써 전업(轉業)지원과 영농 규모확대 및 안정영농 보장

2. 장기임대차 대상농가

○ 임차대상농가

- 10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전업(轉業)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현행)
- 전업(轉業) 및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이하 '95. 2월이후 시행)
-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1.0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겸업농가의 농지
-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자경하고 있는 농지와 연결된 비농가의 농지
-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 임대대상농가

- 전업농육성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 영농복귀자

3. 장기임대차 대상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4. 장기임차 대상농지

- 다음의 농지를 임대차 함.

- 경지정리완료 및 대상지역내의 농지
- 대단위 간척지역내의 농지
- 농지확대개발사업에 의한 개간지역내의 농지
- 기타 수리시설이 완비된 지역내의 농지

5. 임차대상 제외농지

○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
다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로서 상당기간 진흥지역변경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 예정지구내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내의 농지
-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의 농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역내의 농지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관광휴양지, 취락지역 및 개발촉진지역내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농지
- 기타 이에 준하는 농지

- 임차하고자 하는 농지상에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어 임차후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임대차계약체결시까지 이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하지 아니함.

6. 장기임대차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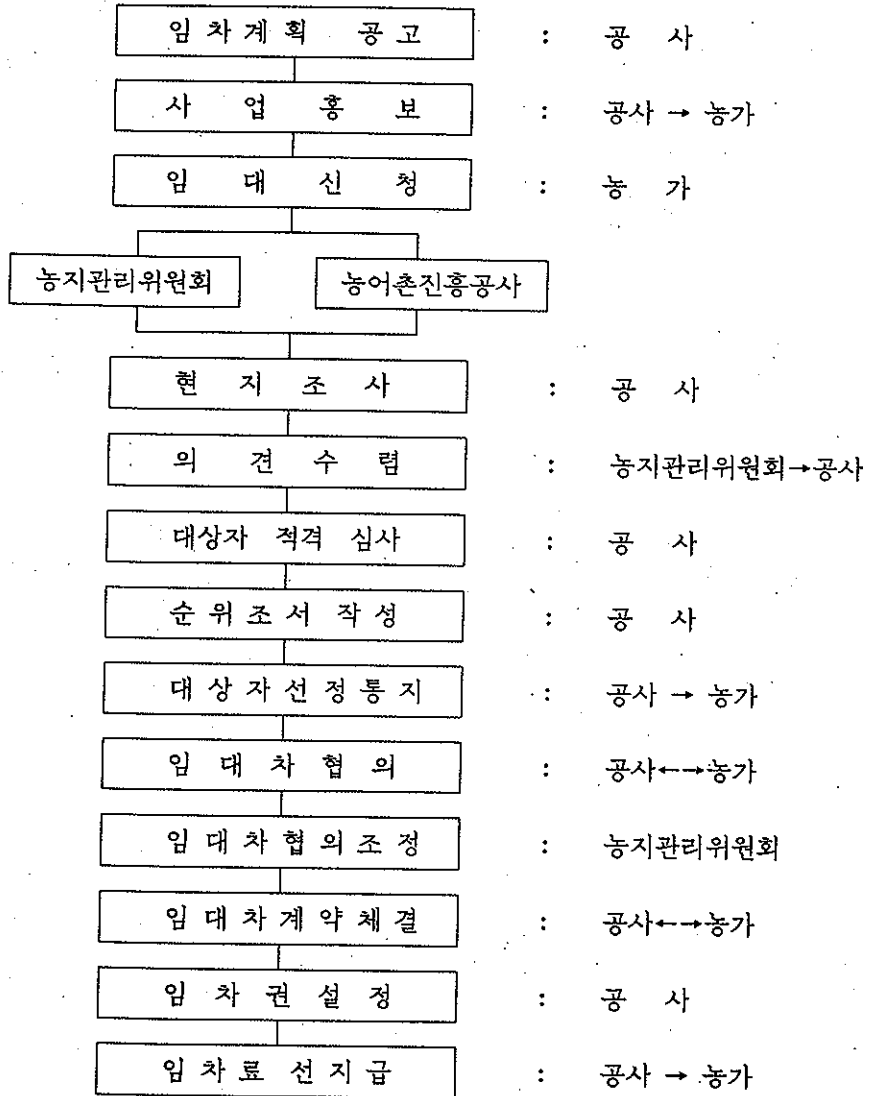
- 임차기간 : 3 ~ 10년으로 하되 임대자와 협의하여 결정

○ 임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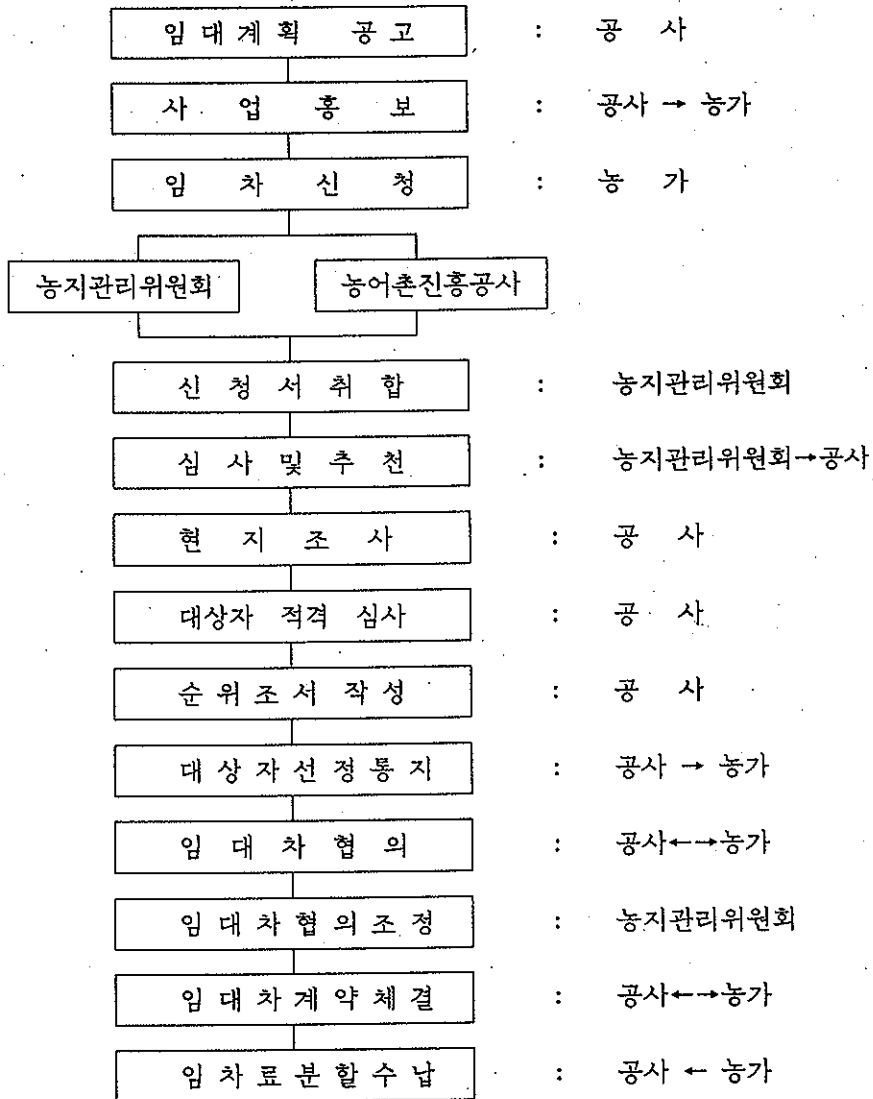
- 임 차 농 지 :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
- 공사소유농지: 당해 농작물 수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

7. 농지장기임대차 절차도

○ 공사가 임차시



○ 공사가 임대시



8. 임대차계획의 홍보

-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당해년도 임대차계획에 의한 신청기간전에 현지방문 및 유인물 배포등의 방법으로 적극홍보하여 농지를 장기임대차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토록 함.
- 농지임대차계획의 홍보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임차계획의 홍보
 - 임차대상자의 요건
 - 임차대상농지
 - 임차기간
 - 임차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
 -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임대계획의 홍보
 - 임대대상자의 요건
 - 임대농지의 종류
 - 임대기간
 - 임차료 납부방법 및 시기
 -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9. 임대차 신청

- 농지를 임대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신청서를 공사 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장기임대차신청서는 별지 제 21 호 및 제 24 호서식에 의함.

10. 임대차 적격여부 심사

- 공사는 임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조사와 제출서류 검토등의 방법

에 의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과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차
하며 임대신청이 임차계획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영농규모, 임대면적 및
임대기간등을 감안 임차대상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조서를
작성

- 공사에 접수된 농지임차신청서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하며 농지관리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와 함께 이를 심사하여 임대대상자를 공사에
추천
- 공사는 농지임대대상자 추천서를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
조사 및 제출서류 심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대상자를 결정하며, 임차신청이
필지당 2인이상일 때에는 영농경력, 연령, 영농전문성, 영농규모, 농지집단화
정도, 통작거리, 임차기간 및 영농기술개발실적등을 감안 임대적격여부를 심사
하여 임대농지별 고득점자순으로 순위조서를 작성
- 임대대상자가 임차하고자 하는 농지가 거주지로부터 20km이상 떨어져 있는 농지
는 임대대상에서 제외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임차신청의 경우에는 영농규모, 조합원수, 농지집단화 정도,
통작거리 및 임차기간등을 감안 임대적격여부를 심사

11. 임대차대상자 선정 및 통지

- 공사는 임대차신청이 임대차계획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작성된
순위조서에 의거 임대차대상자를 선정하고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임대차대상자선정통지서를, 그 외의 신청자에게는 심사결과를 통보
- 공사는 농지임대신청인이 임차인을 선정하여 임대신청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공사의 농지임대 대상자 적격심사기준의 일반요건에 적합하고 당해 농지와
인접한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인 때에는 이를 우선적

으로 임차하여 임대

- 임대차대상자가 당해년도 임대차계획에 미달될 때에는 관할 읍·면·동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사업내용을 적극홍보하므로써 임대차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사는 임대차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임차농지가 지체없이 임대될 수 있도록 농지의 조건, 임차료 및 임대가능성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차하여야 함.
- 농지장기임대차대상선정통지서는 별지 제 23 호 및 제 26 호서식에 의함.

12. 임대차 협의 및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시·군 조례로 정한 지역별 임차료 상한범위안에서 당해지역의 관행 임차료수준등을 감안하여 결정
- 공사는 임대차대상자와 임차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에 임대차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요청하여 결정
- 공사는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임대차대상자가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차대상자 적격여부 심사결과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순위조서에 의한 고득점자와 협의하여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음.

13.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차권설정등기

- 공사는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자로부터 임차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징구하여 임차권

설정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등기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등기부 및 토지대장 등본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사용)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
 - 영수증
- 공사는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차자로 부터 다음의 서류를 징구
- 연대보증인 1인의 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
- 공사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징구하는 보증서의 보증인은 임차인과 동일한 읍·면·동지역내에 거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이어야 함.

14. 임차료의 지급 및 수납

- 임차료 지급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된 때에 임대자의 희망에 따라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지급
- 임차료 수납
- 임차인이 2년이상 농지를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총금액을 균등분할 하여 공사에 매년 납부
 - 임차자가 당해년도 임차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 공사는 임차한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거나 임대한 농지의 임차료가 시·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임차료 상한선 또는 관행임차료의 하락으로 일시 선급한 임차료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손비처리를 요청

15. 임차료의 감면

- 공사는 농지를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천재·지변·자연재해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재해등으로 당해년도의 수확량이 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수확량보다 30%이상 감소하거나 수확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은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하여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의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확전에 감소비율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수확후에 청구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임차료 감면기준

감 수 비 율	임차료 감면율
30 % 미만	0 %
30 % ~ 40 % 미만	45 %
40 % ~ 50 % 미만	55 %
50 % ~ 60 % 미만	70 %
60 % ~ 70 % 미만	80 %
70 % ~ 80 % 미만	95 %
80 % 이상	100 %

16. 부과금등의 부담

-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용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계가 부과하는 경비중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 노임, 종묘, 비료, 농약등 영농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17. 위탁영농

- 공사는 소유농지가 매도되지 아니 하거나 농가로부터 임차한 농지가 임대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영농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영농수수료는 당해지역의 관행에 의하여 결정

4. 장기임대차 간척·개간농지매매사업

가. 사업 목적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 및 개간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경작농민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민의 당해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자유전실현과 분쟁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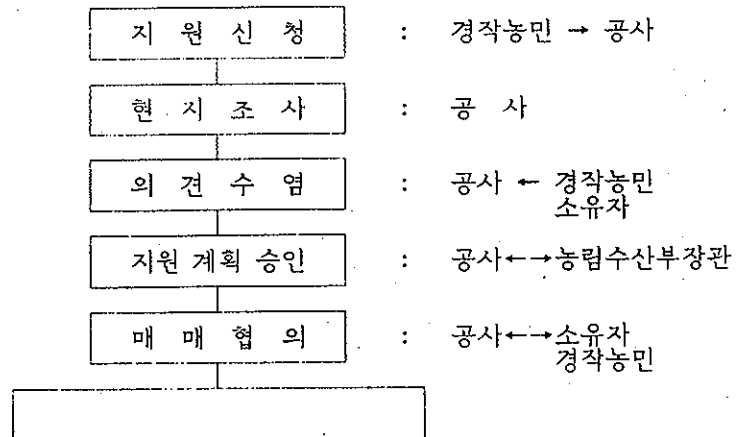
나. 매입대상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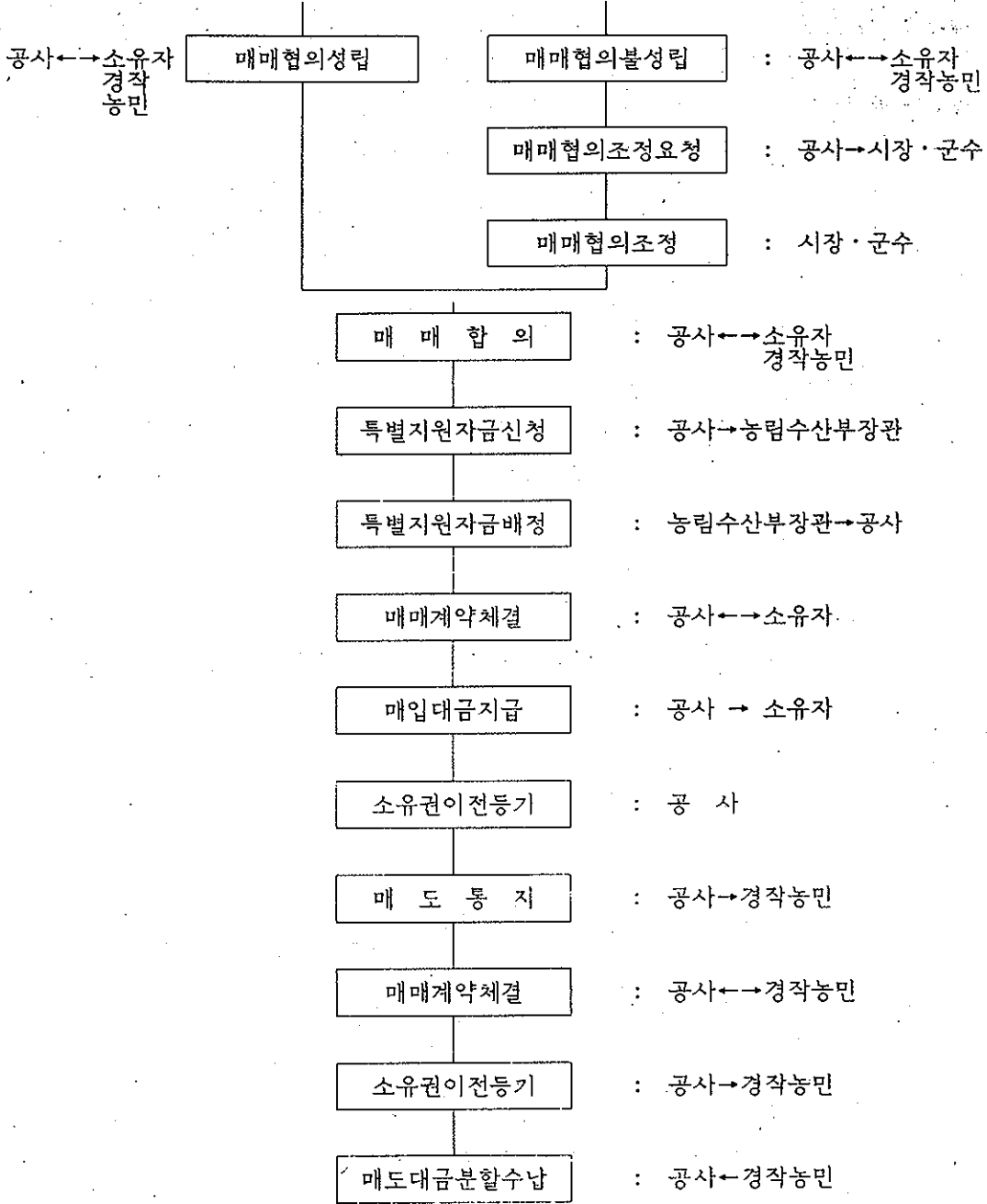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준공되어 20년이상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 및 개간농지

다. 지원대상자

당해 간척·개간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

라. 장기임대차 간척농지매매 절차도





마. 매매가격의 결정

공사가 매입하여 경작농민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농지소유자 및 경작농민과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함.

바. 매매협의를 조정

- 공사는 농지를 매입하여 당해농지를 경작농민에게 매도하여 줄것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와 경작농민 및 농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원계획의 승인요청
- 공사는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매매협의를조정 요청
- 시장·군수는 공사로부터 매매협의를조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당사자(공사·농지소유자) 및 농민에게 통보하여 협이가 이루어 지도록 조정
- 공사는 농지소유자 및 경작농민과의 매매협이가 성립되거나 시장·군수의 매매 협의조정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농지소유자 및 경작농민과 매매의 조건·방법·가격·시기등에 관한 합의를 한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매입자금의 특별지원을 요청하여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매매계약 체결
-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개간농지의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납,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권의 설정 및 전매제한등에 관하여는 본 요령중 농지매매사업에 관한 사항 준용

5. 영농복귀지원사업

가. 사업 목적

농지를 공사에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농가가 영농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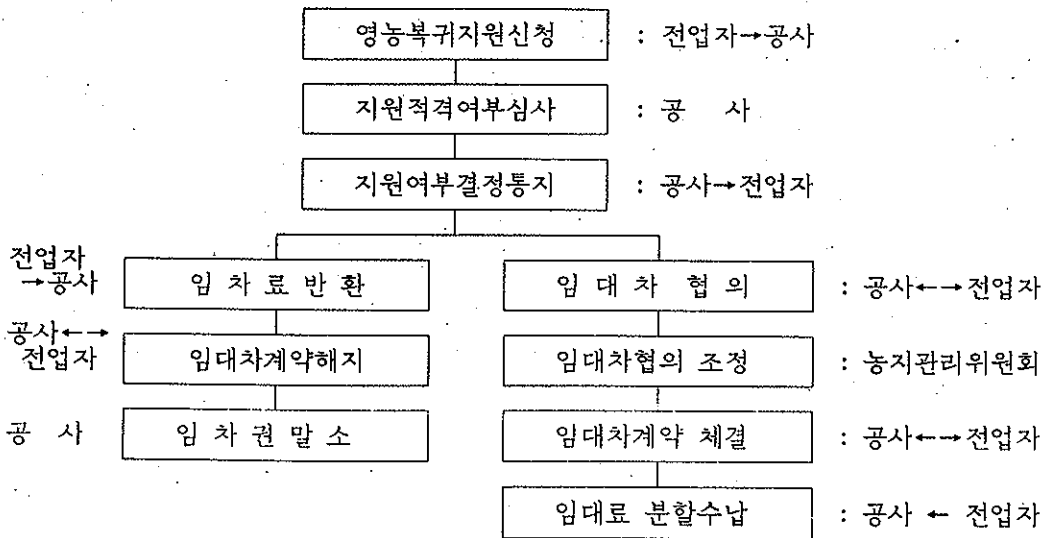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후 2년이내에 영농 복귀 및 지원신청을 하는 자

다.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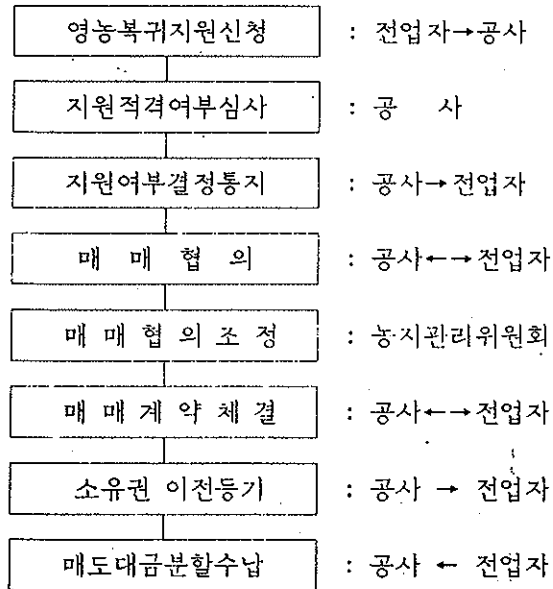
- 지원규모 : 전업(轉業)당시의 영농규모 수준
- 지원내용
 - 임대하고 전업한 자 : 임대차계약의 해지
공사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를 임대
 - 매도하고 전업한 자 : 공사 소유농지 매도

라. 영농복귀지원 시행절차도

-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자의 영농복귀신청시



○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자의 영농복귀신청시



마. 영농복귀 지원신청 및 심사결정통지

공사는 영농복귀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여부 결정 통지

- 임대하고 전업(轉業)한 자
 - 전업기간
 - 공사가 임차한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 공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
 - 전업기간
 - 매도되지 아니한 공사 소유농지 보유여부

바. 임대차계약의 해지등

- 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영농복귀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잔여기간의 임차료 선지급금 반환
- 공사는 영농복귀자가 임차료 선지급금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당해농지에 설정된 임차권을 지체없이 말소하여야 함. 이 경우 임차권의 말소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
- 공사가 영농복귀자에게 공사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 요령중 장기임대에 관한 규정 적용

사. 농지매도 지원등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자의 영농복귀를 지원하기로 결정통지한 경우에는 영농복귀자에게 공사 소유농지 매도. 이 경우 농지의 매도에 관하여는 본 요령중 농지매매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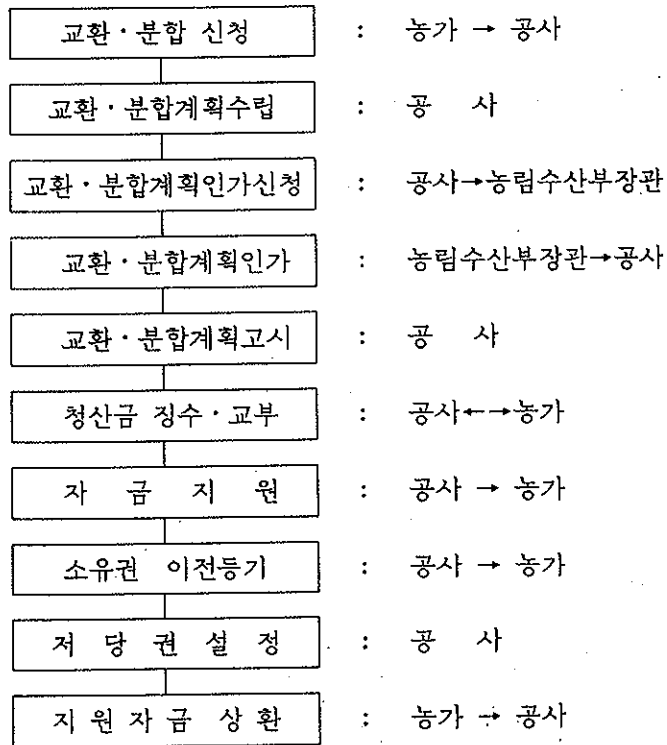
6.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가. 사업목적

농지의 교환·분합을 위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여 농지의 집단화를 기하므로써
영농의 능률화 및 생산성향상 도모

나. 공사의 교환·분합사업 시행

(1) 시행절차도



(2) 사업 시행

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이상이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포함한 일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환·분합을 신청하는 경우에 시행

(3) 교환·분합계획의 수립 및 인가

공사는 신청에 의한 교환·분합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4) 교환·분합계획의 고시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환·분합계획의 개요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함.

(5) 청산금의 징수·교부

- 공사는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산금을 징수·교부 하여야 하며 징수대상자가 청산금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소요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 5 ~ 10년 균등분할상환

다만, 금리변동시 별도 통보된 금리에 의함.

- 징수대상자가 청산금의 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6) 교환·분합등기 촉탁

공사는 인가된 교환·분합계획에 의거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

(7) 준용 사항

- 공사가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본 요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교환·분합에 관한 규정 준용
- 공사가 농지 교환·분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지업무(분환지업무) 대행 비 단가를 적용

다. 농민 상호간의 교환·분합

(1) 지원대상자 : 자경농민

(2) 지원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 다만, 농업진흥지역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농업진흥 지역내 농지의 집단화를 위한 교환분합 대상농지일 경우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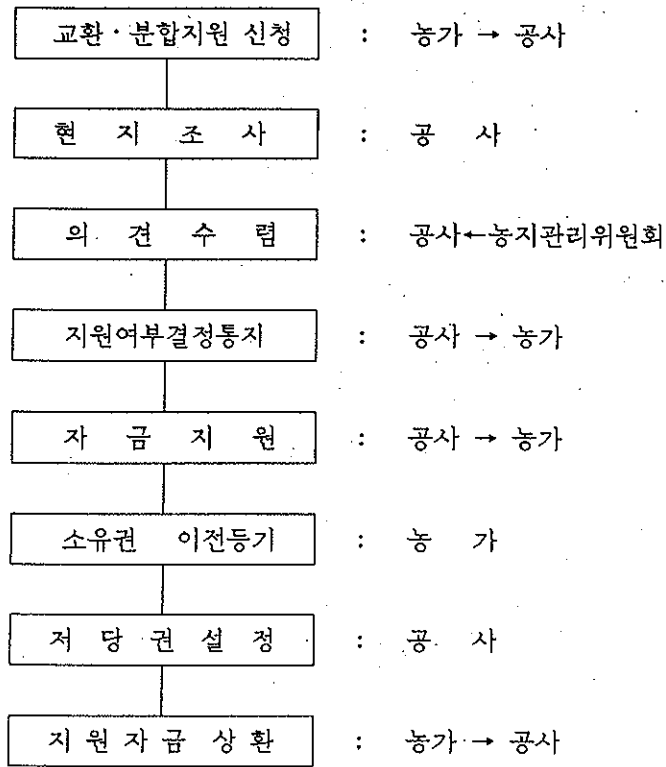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가격의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금 리 : 연리 3%

다만, 금리변동시 별도 통보된 금리에 의함.

상환기간 : 5 ~ 10년 균등분할상환

(4) 시행절차도



(5) 교환·분합지원신청서 제출

농민 상호간에 농지를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환·분합지원신청서 제출

- 대상농지의 교환·분합계획서
- 농지소유자간의 교환·분합 합의서
- 소요자금 지원요청액 산출내역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 주민등록등본

(6) 교환·분합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공사는 교환·분합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기재사항과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2인이상의 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농가의 자격 및 지원대상농지 여부
 - 교환·분합후 영농의 합리성
 -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농지의 가격 및 면적의 차이
 - 농지가격의 적정 여부
-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농지상에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어 소요자금 지원의 경우 채권확보가 불확실한 때에는 이를 말소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음.

(7) 소요자금의 지원

- 공사는 농민이 교환·분합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농지 교환·분합에 소요되는 자금 지급
- 교환·분합 소요자금의 지원등 기타절차는 본 요령중 농지매매사업의 농지매도 관련사항 준용

(8) 마을단위 교환·분합

공사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마을을 선정하여 농민 상호간의 교환·분합을 집중 지원

라. 집단환지 청산금 지원

(1) 지원 대상자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집단환지사업으로 농지를 집단화한 농민

(2) 지원신청

- 공사로부터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지소유자는 지원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당해농가의 교환·분합계획서 또는 환지계획서
 - 지적도 등본 또는 확정도 사본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청산금 징수 해당액
- 지원조건 : 금 리 : 연리 3%
상환기간 : 5 ~ 10년 균등분할상환

(4) 지원시기

-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환지계획(교환분합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7. 사 후 관 리

가. 매도 및 구입자금지원농지의 관리

(1) 영농관리상황조사

- 공사는 농지매매사업 또는 구입자금지원사업으로 당해년도 6월말까지 지원한 농가 및 농지에 대하여 매년 9월말까지 1회이상 현지조사와 등기부 및 주민 등록부등을 열람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 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 및 후계농민의 이농 및 타직업 종사여부
 - 지원농지의 전매, 임대 또는 대리경작여부
 -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민후계자 및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상실 여부
- 영농관리상황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도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자 및 전매농지 매수인에게 지원금의 회수 또는 공사가 당해농지를 매입하고자 함을 통지하고,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용자금을 회수 조치토록 용자 취급기관에 동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2) 매도농지의 매입

- 공사가 매도한 농지에 대하여 전매동의를 얻기 위한 농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영농관리상황조사결과 전매된 농지로서 공사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농지에 대하여는 인근의 실제거래가격(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비용은 매도자 부담) 범위안에서 공사가 당초매도한 가격에 다음의 경비를 가산한 금액(가산지가)으로 매입. 이 경우 가산하는 경비는 농지소유자 또는 전매농지매수인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결정

- 이 자 : 상환한 이자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농지매입에 직접소요된 경비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비 : 취득세, 등록세
- 공사가 전매농지의 매입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전매농지매수인 또는 농지소유자에게 매입대금을 수령토록 통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후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 공사는 전매농지매수인 또는 농지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공사가 지급하기로 통지한 매입대금의 수령을 기피할 때에는 공탁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
 - 공사에서부터 지원을 받은 자가 농지 또는 지원금(용자금 포함)의 회수사유에 해당되어 농지 또는 용자금을 회수당한 자는 향후 5년간 농지매매 및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3) 전매, 임대, 담보제공, 대리경작 동의

- 공사는 농지를 매입한 자 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당해농지의 전매, 임대, 담보제공 또는 대리경작동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한후 동의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영농기를 포함하여 1년이상 장기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
 -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당해농지의 등기부등본
- 질병 또는 사고등의 경우
 - 농업노동력을 상실하여 1년이상 회복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사고확인서
- 해외장기체류의 경우
 - 이주, 유학, 혼련, 취업등으로 1년이상 해외장기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확인서
- 공공사업시행으로 편입된 경우 (전매의 경우에 한한다)
 - 공공사업시행자가 당해농지가 사업구역내에 포함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
-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전매의 경우에 한한다)
 - 새로이 구입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과 영농여건이 전매농지보다 유리한 사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 각종 선거에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및 군복무의 경우

○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새로이 구입하는 농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새로이 구입하는 농지는 공사가 농지를 매입할 때의 매입대상 농지조건을 모두 구비한 농지이어야 하며, 구입자금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구입자금을 지원할 때의 지원대상 농지조건을 구비한 농지이어야 함.

- 전매하고자 하는 농지보다 농지면적이 1.3 배이상인 농지
- 전매하고자 하는 농지보다 경지정리, 수리시설과 집단화정도등의 영농 여건이 유리한 농지
-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전매동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사는 새로이 구입하는 농지의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동의하며 공사가 매도한 농지의 전매 시에는 공사가, 구입자금지원농지의 경우에는 용자취급금융기관이 새로이 구입한 농지로 담보물건 대체. 이 경우 담보물건대체에 따른 비용은 전매 농민이 부담
- 공사는 전매 또는 임대동의신청자가 농민에게 농지를 전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를 하되 당해농지를 매수 또는임차하는 농민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사의 당초 매매계약조건이나 임대 규정을 승낙한 자이어야 함.
- 공사가 전매동의를 한 농지를 우선하여 매입할 때의 매입가격은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하는 농지에 대한 매입가격의 결정방법 적용
-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였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구입한 자가 당해 농지에 대한 공공사업등의 시행으로 공사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았거나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농가주택등 농업용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면적 이상의 농지를 새로이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사가 매입하는 농지에 대한 매입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은 본 요령의 농지매입사업에 관한 규정 적용

나. 임대농지의 관리

(1) 전대조사

- 공사는 임대농지의 소유권이전여부와 전대여부를 연1회이상 점검하여야 함.
- 공사는 점검결과 계약위반사례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농지소유자) 및 임차인(경작농민)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임대차계약의 해지

- 공사 및 공사에 농지를 임대한 농지소유자 또는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경작농민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 공사와 농지소유자와의 계약해지사유

공 사	임대인(농지소유자)
○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한 때	○ 공사가 고의로 경작이외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할 때
○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새로이 설정된 때	○ 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자가 농지를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하였을 때
○ 당해농지가 공공용지등으로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

공 사	임대인(농지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 임대인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농지가 공공용지등으로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 공사와 경작농민과의 계약해지사유

공 사	임차인(경작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농지를 전대한 때 ○ 임차인이 고의로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할 때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를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하거나 수확량이 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수확량보다 30%이상 감소하였을 때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2회 이상 임차료 납부를 연체할 때 ○ 임차인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상속인이 없을 때 ○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농지가 임차인의 파실에 의하지 아니 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임차인이 질병, 징집, 취학, 복역등으로 임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때 ○ 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청구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응하지 아니 한 때 ○ 당해농지가 공공용지등으로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공 사	임차인(경작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대목적에 달성하기 곤란할 때 ○ 당해농지가 공공용지등으로 편입되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8. 행정 사항

가. 일반 사항

- 공사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및 교환·분합상황등 농가영농규모적정화 사업내용을 사업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 용자취급금융기관은 매월 용자금 지급 및 회수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에 통보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매매가격 또는 임대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
- 시·구·읍·면의 농지관리위원장과 시·군농촌지도소장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민원사항을 확인처리하여야 함.

확 인 사 항	용 도	확 인 자
재촌지구확인신청서	농지매도	농지관리위원장
임차영농사실확인신청서	농지매입 및 임차	"
과학영농기술개발실적 확인신청서	농지매입 및 임차	농촌지도소장

나. 보고 사항

- 공사의 군지부장은 매분기마다 사업추진실적을 분기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지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사장에게 보고
- 공사는 매분기마다 군별·사업별 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공사는 매도 및 구입자금지원농지와 임대농지에 대한 전매, 임대 및 전대 등 위반여부를 조사한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관계서식

- 농지매도신청서 (별지 제 1 호 서식)
- 농지매입대상자 적격심사 순위조서 (별지 제 2 호 서식)
- 농지매입대상자선정통지서 (별지 제 3 호 서식)
- 매입농지관리기록부 (별지 제 5 호 서식)
- 농지매입실적보고서 (별지 제 6 호 서식)
- 농지매입신청서 (별지 제 7 호 서식)
- 농지매도대상자 적격심사 순위조서 (별지 제 8 호 서식)
- 농지매도대상자선정통지서 (별지 제 9 호 서식)
- 매도농지관리기록부 (별지 제 10 호 서식)
- 농지매도실적보고서 (별지 제 11 호 서식)
- 농지구입자금지급 및 회수상황 통보서 (별지 제 18 호 서식)
- 농지구입자금지원자 관리기록부 (별지 제 19 호 서식)
- 농지장기임대신청서 (별지 제 21 호 서식)
- 농지장기임차대상자 적격심사 순위조서 (별지 제 22 호 서식)
- 농지장기임차대상자선정통지서 (별지 제 23 호 서식)
- 농지장기임차신청서 (별지 제 24 호 서식)
- 농지장기임대대상자 적격심사 순위조서 (별지 제 25 호 서식)
- 농지장기임대대상자선정통지서 (별지 제 26 호 서식)
- 장기임대차농지관리기록부 (별지 제 27 호 서식)
- 농지장기임대차실적보고서 (별지 제 28 호 서식)
- 농지임대차계약 해지 및 영농복귀지원신청서 (별지 제 29 호 서식)

- 농지임대차계약 해지 및 영농복귀지원결정통지서 (별지 제 30 호 서식)
- 영농복귀신청서(농지매도농가용) (별지 제 31 호 서식)
- 영농복귀지원결정통지서(농지매도농가용) (별지 제 32 호 서식)
- 농지 교환·분합신청서 (별지 제 33 호 서식)
- 농지 교환·분합지원결정통지서 (별지 제 34 호 서식)
- 교환·분합농지관리기록부 (별지 제 35 호 서식)
- 농지 교환·분합실적보고서 (별지 제 36 호 서식)
- 농지전매동의신청서 (별지 제 37 호 서식)
- 농지전매동의서 (별지 제 38 호 서식)
- 전매농지매입통지서 (별지 제 39 호 서식)
- 영농관리상황조사보고서 (별지 제 40 호 서식)
- 재촌지주 확인신청서 (별지 제 42 호 서식)
- 임차영농사실 확인신청서 (별지 제 43 호 서식)
- 과학영농기술개발실적 확인신청서 (별지 제 45 호 서식)

농지 매도 신청서

농지소유자		주소		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도농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매도 희망 가격	소유권 이오 의의 권	부대 시설	
		읍면	이동							
매도자의 요건		1. 비농가 2. 법인 3. 전업농 4. 은퇴농 5. 겸업농 6. 기타								
농지조건		답	1. 경지정리답 2. 수리안전답 3. 수리불안전답							
		전	1. 관개및입지조건량호 2. 관개및입지조건불량 3. 기타							
소유농지		필 ㎡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4. 주민등록등본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공사에 매도코저 신청하오니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지매입대상자 적격심사 순위조서

순위	농지매도자		적격심사내용				비고
	주소	성명	총득점	매도자 요건	농지 조건	매도 면적	

○○년도 농지매입대상자 적격심사결과 위와 같이 순위조서를 작성함

19 년 월 일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작성자 (인)

 확인자 (인)

농지매입대상자선정통지서

농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매입대상농지	농지소유자		지 번	지 목	면 적 (㎡)	비 고
	읍면	이동				
협의및계약일자	19 년 월 일					
협의및계약장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지 참 물	1. 인감증명(매매계약용) 2. 인감					
<p>위의 같이 귀하를 농지매입대상자로 선정통지하오니 당공사와 협의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농어촌진흥공사 ○○ 군지부장 (인)</p> <p style="margin-top: 50px;">○ ○ ○ 귀하</p>						

매입농지관리기록부

입건 번호	매입농지				매입추변등내역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입 금액	매입 일자	매도자		매입											
	읍면	이동						주소	성명	매도 일자		매도 금액	주소	매입자 주소	매입 일자	매입 기간	임대료 원				

< 별지 제6호서식 >

농지매입실적보고서

1. 총괄

군별	매도신청자			매도자수			매입면적					매입금액				비고		
	인원	면적 ha	매도회당 금액 만원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평균 평준 가격
								계	담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만원	

2. 매입농지 유형별 내역

군별	매도자 총수	부채지주		재혼지주		진입농		은퇴농		겸업농		기타	
		인원	면적 ha	인원	면적 ha	인원	면적 ha	인원	면적 ha	인원	면적 ha	인원	면적 ha
		인	ha	인	ha	인	ha	인	ha	인	ha	인	ha

3. 농지비도자 유형별 내역

군 별	비도자수	연 령					영 농 규 모					농 지 비 도 규 모							
		30세 미만	30~40 세미만	40~50 세미만	50~55 세이하	56세 이상	0.5ha 미만	0.5~1.0 ha미만	1.0~1.5 ha미만	1.5~2.0 ha미만	2.0~3.0 ha미만	3.0ha 이상	0.5ha 미만	0.5~1.0 ha미만	1.0~1.5 ha미만	1.5~2.0 ha미만	2.0~3.0 ha미만	3.0ha 이상	

별지 제7호서식

농지매입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입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매입희망 가격	비고	
	읍면						
영농경력	년	매입대금납부방법		1. 일시불 2. 분할상환			
영농전문성	1. 자영농고 및 자영농과 졸업 2. 농업계고교, 농과계대학·대학원 졸업						
영농규모	계	m ²	소유농지	m ²	임차농지	m ²	
농지집단화	경작농지와 1. 인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작거리	거주지로부터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20km미만						
영농기술개발	1. 유 2. 무	병역관계	1. 병역필 2. 병역면제 3. 기타				
후계농민유무	가족중 18세이상의 후계농민		1. 유 2. 무				
<p>위와 같이 귀공사 소유농지를 매입코져 신청하오니 본인에게 매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p>							

농지매도대상자선정통지서

매도대상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도대상농지	농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읍면	이동				
협의를뢰계약일자	19 년 월 일					
협의의뢰계약장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지참물	1. 인감증명(매매계약용) 2. 인감					
<p>위와 같이 귀하를 농지매도대상자로 선정통지하오니 당공사와 협의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 (인)</p> <p>○ ○ ○ 귀하</p>						

매도농지관리기록부

(일련번호)

농지의 표시	농지비입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전화	입까지
매도금액	원	매매계약 입자	농지비입자	주소 :	비연속	비연속	입까지
이전종기일자	원	매도금액 입부양금	비합성원 ()	비합성원 ()	비합성원 ()	비합성원 ()	비합성원 ()
근저당권 설정		설정일자 :		취권리고환도액 :		원 해지일자 :	
매도대금수납상황							
회수	일자	원금	이자	원	입자	원	이자
1		원	원	원	원	원	원
2							
3							
4							
5							
6							
7							
8							
9							
10							
누계							

< 별지 제11호서식 >

농지매도실적보고서

1. 총괄

구분	매입신청자			매입자수			매도면적					매도금액				비고	
	인원	면적 ha	매입 최대 금액	개회	실적	비율 %	개회	심적			비율 %	개회	실적	비율 %	평균 평군 가격		
								담	진	진							
			ha	백만원	만원		ha	ha	ha	ha	ha	ha	ha	ha	ha	만원	

※ 영종분류자는 () 내서로 표시

2. 농지매입자 유형별 내역 (1)

구분	매입자수	영종경력					연령					영종전문성					농지매입규모				
		3~5 년미만	5~10 년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55 이하	56세 이상	저영종 포함 과출	중과 고 이상출	총과 계 이상출	기타	0.5ha 미만	0.5~ 1.0 ha미만	1.0~ 1.5 ha미만	1.5~ 2.0 ha미만	2.0ha 이상			

농지배여자 유형별 내역 (2)

		배입진 영농규모						배입후 영농규모						비
		0.5~ 1.0 ha 미만	1.0~ 1.5 ha 미만	1.5~ 2.0 ha 미만	2.0~ 3.0 ha 미만	3.0ha 이상	0.5ha 미만	0.5~ 1.0 ha 미만	1.0~ 1.5 ha 미만	1.5~ 2.0 ha 미만	2.0~ 3.0 ha 미만	3.0ha 이상		

농지장기임차대상자 적격심사순위조서

순위	농지임대자		적격심사내용			
	주소	성명	총득점	영농규모	임대면적	임대기간

농지장기임차대상자 적격심사결과 위와 같이 순위조서를 작성함

19 년 월 일

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 작성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23호서식

농지장기임차대상자선정통지서					
임차대상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차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읍면				
협의및계약일자	19 년 월 일				
협의및계약장소	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				
지참물	1. 인감증명 (임대차계약용) 2. 인감				
<p>위와 같이 귀하를 농지장기임차대상자로 선정통지하오니 당공사와 협의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 귀하</p>					

농지장기임대대상자적격심사순위조서

순 위	농지임차자		적격심사내용								비고
	주 소	성 명	총점	영농 경력	연령	영농 전문성	영농 규모	농지 집단화	통작 거리	임차 기간	

농지장기임대대상자 적격심사결과 위와 같이 순위조서를 작성함

19 년 월 일

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 작성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26호서식

농지장기임대대상자선정통지서						
임대대상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대 농 지	농지소재지		지 . 번	지 목	면 적 (㎡)	비 고
	읍면	이동				
협의및계약일자	19 년 월 일					
협의및계약장소	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					
지 참 물	1. 인감증명 (임대차계약용) 2. 인 감					
<p>위와 같이 귀하를 농지장기임대대상자로 선정통지하오니 당공사와 협의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 을 체결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 귀하</p>						

< 별지 제27호서식 >

장기임대차용지 관리기록부

(입원번호)

봉지의 표시	봉지소유자 (입대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	원정 (연간)	입대기간	19년 월 일	19년 월 일	원정	원 (연간)																																					
입차내용	총 원정 (연간)		총 원정		총 원정																																							
입대내용	입차인	주소	원정 (연간)	원정	1. 동의일자 2. 동의사유 3. 기타																																							
	입대기간	주소명	원정 (연간)	원정																																								
입대료	총액	금	원정	원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임대료 수납상황</th> </tr> <tr> <th style="width: 10%;">회수</th> <th style="width: 10%;">수납일자</th> <th style="width: 10%;">수납액</th> <th style="width: 10%;">수납누계</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임대료 수납상황				회수	수납일자	수납액	수납누계																												
	임대료 수납상황																																											
	회수	수납일자	수납액	수납누계																																								

농지장기임대차 실적보고서

1. 농지임차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군 별	임대신청자		임대자수		임차면적				임차요금			비 고	
	인원	면적	임대 희망 금액	계획	실 적	계	단	전	계획	비율	실적		비율

2. 임대차 유형별 내역

군 별	임대자수	영농규모		임대기간										임대면적				임대자		비 고																		
		0.5ha 미만	0.5~ 1.0ha 미만	3	4	5	6	7	8	9	10	0.2ha 미만	0.2~ 0.5ha 미만	0.5~ 0.8ha 미만	0.8~ 1.0ha 미만	전입 농가	은려 농가	계약 농가	기타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3. 농지임대 실적

(단위: ha, 백만원)

군 별	임차신청지			임차처수			임대면적					임대료			비 고
	인원	면적	임차회합금액	개회	실적	비율	개회	심적		비율	개회	실적	비율		
								계	면적						
						%				%			%		

4. 임차자 유형별 내역 (1)

군 별	임차처수		전업농육성대상지		영농조합법인		영농부귀지		기타농가		비 고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임차자 유형별 내역 (2)

구분	입차자수	입대기간										영농경력			연령				영농전문성					
		2	3	4	5	6	7	8	9	10	3년	3~5	5~10	10년	30세	30~40	40~50	50~55	56세	전영농	교묘농	농과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미만	년미만	년미만	이상	미만	미만	미만	이하	이상	파출	파출	이상출	기타	

5. 임차자 영농규모 변화

구분	입차자수	농지임차규모										입차전 영농규모										입차후 영농규모									
		0.5ha	0.5~	1.0	1.0~	1.5	1.5~	2.0	2.0ha	0.5ha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0.5ha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이상	이상	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이상	미만	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이상	이상		

별지 제29호서식

농지임대차계약해지 및 영농복귀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읍면	이동										
임대차계약일	19	년	월	일	임대기간	19	년	월	~	19	년	월
영농복귀예정일	19	년	월	일	부터							
임대료총액	금	원정 (연간					원정)					
임대료반환 예정액	금	원정 (연분)					
<p>위와 같이 본인이 귀공사에 임대한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영농에 복귀코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p> <p style="text-align: center;">년</p> <p style="text-align: center;">월</p> <p style="text-align: center;">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p> <p>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p>												

농지임대차계약해지 및 영농복귀지원결정통지서							
지원대상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농지 (임대농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m ²)	임대료 반환액 (원)	비 고
	읍면	이동					
임대차계약내용	계 약 일 자		19 년 월 일				
	계 약 기 간		19 년 월 ~ 19 년 월 (연간)				
	임차료선지금액		금 원정 (연간 원정)				
임대차계약 해지내용	계약해지일자		19 년 월 일				
	임대료반환기한		19 년 월 일 까지				
	임대료반환액		금 원정 (연분)				
	임대료반환장소		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				
지 원 방 법	1. 임대차계약 해지 2. 공사보유농지 임대						
<p>위와 같이 귀하와의 농지장기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통지하오니 기한내 임대료반환액을 납부하여 주시고 영농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사 보유농지를 임대하기로 결정통지하오니 당공사와 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영농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 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장 (인)</p> <p style="text-align: left;">○ ○ ○ 귀하</p>							

영농복귀지원결정통지서

지원대상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입자금지원	지원 조건	연리 3 % 2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농지가격상한	평당 원이하의 농지		
	용자지원한도	만원		
공사소유 농지매도	지원 조건	연리 3 % 년 균등분할상환		
	협의및계약일자	19	년	월 일
	협의및계약장소	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귀하의 영농복귀를 지원하기로 결정통지하오니 구입자금지원의 경우 구입농지를 선택하여 당공사에 신고하여 주시고, 공사 소유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공사와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 귀 하</p>				

농지교환분합지원결정통지서

지원대상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농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비 고
	읍면 이 동				
지원금액	금 원정				
지원조건	연리 3% 5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청구기한	19 년 월 일				
자금청구장소	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				
지참물	1. 인감증명 (자금대여약정용) 2. 인감				
<p>위와 같이 귀하를 농지 교환분합 지원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오니 지원자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 귀하</p>					

< 별지 제35호시식 >

교환반합농지관리기록부

(단위 : m, 원)

입번 번호	지위저		지원종지				교환		지원금액		상환내역						근저당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지소재지 읍면	지인	지목	면적	교환 상환 일자	금액	회수 일자	원금 이자	계	상환 누계	상환 잔액	원장 일자	권 최 고 원 도 액		
										1								
										2								
										3								
										4								
										5								
										계								
										1								
										2								
										3								
										4								
										5								
										계								

농지 교환분합 실적보고서

(단위 : ha, 백만원)

군 별	지 원 신 청 자			지 원 자 수			지 원 면 적				지 원 금 액			비 고
	인원	면적	지원 신청 금액	계획	실적	비율	계	심	답	진	계획	실적	비율	
						%							%	

- * 1. 지원신청자만에는 교환분합 상대자 전원의 수와 면적을 기재
- 2. 지원자수는 실제 자물지원자수를, 지원면적은 교환분합농지의 차이면적을 기재

별지 제37호서식

농지전매(임대, 대리경작)동의신청서							
농지소유자	주소				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매(임대)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매입일자	비고
	읍면	이동					
등의구분	1.전매 2.임대 3.대리경작	농지구분	1. 공사매도농지 2. 구입자금지원농지				
전매(임대)사유	1.이주 2.상속 3.질병 4.사고 5.해외장기체류 6.공공사업편입						
전매(임대)예정	19 년 월						
전매(임대)대상	1. 공사 2. 전업농육성대상자 3. 영농조합법인 4.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전매(임대, 대리경작)코져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p>							

농지 전매 (임대, 대리경작) 동 의 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매(임대)농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비 고
	읍면 이동				
전매대상자	1. 공사 2. 전업농육성대상자 3. 기 타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농지 전매(임대, 대리경작)를 동의하오니 공사에 매도시에는 공사와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타인에게 전매시에는 당해농지매입자가 당초의 매매계약조건을 승낙하는 승낙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 ○ ○ 귀하</p>					

전매농지매입통지서					
전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입대상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당초매매가격
	읍면 이동				
매입근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p style="text-align: center;">위 농지는 당공사가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도한 농지로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귀하가 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어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가 매입코져 통지하오니 당공사와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처리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진흥공사 ○ ○ 군지부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 귀하</p>					

< 별지 제40호서지 >

영농관리상황조사보고서

(단위: 필, ha)

군 별	구 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조사내용				비 고			
		인원	필수	면적	본인경작 필수	본인경작 면적	전 배 필수	전 배 면적	임대(전대) 필수	임대(전대) 면적	시 정 필수	시 정 면적	회 필수	회 면적		수 필수	수 면적	회수 필수
	배도농지																	
	구입차금지원																	
	임대농지																	
	계																	
	배도농지																	
	구입차금지원																	
	임대농지																	
	계																	
	배도농지																	
	구입차금지원																	
	임대농지																	
	계																	
	배도농지																	
	구입차금지원																	
	임대농지																	
	계																	

재촌지주 확인 신청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소유농지 표 시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임차영농자
<p>본인은 위와 같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읍·면 농지관리위원장 귀하</p>					
경 유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이·동 농지관리위원 ○ ○ ○ (인)</p>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읍·면 농지관리위원장 ○ ○ ○ (인)</p>					

별지 제4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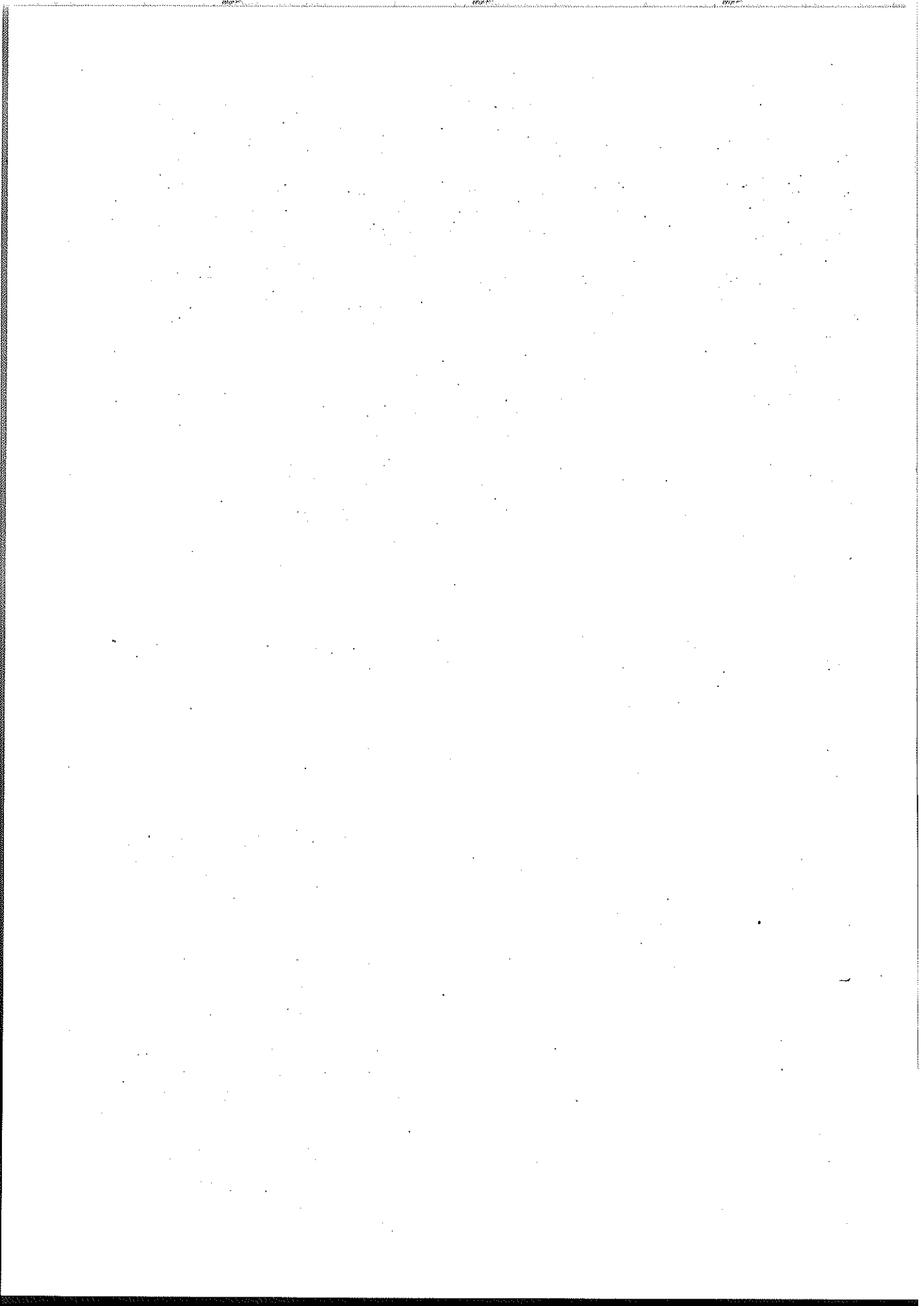
임차영농 사실확인 신청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임차농지 내 용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임 대 자
<p>위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p> <p>○ ○ 읍·면 농지관리위원장 귀하</p>					
경 유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 ○ ○ 이·동 농지관리위원 ○ ○ ○ (인)</p>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 ○ ○ 읍·면 농지관리위원장 ○ ○ ○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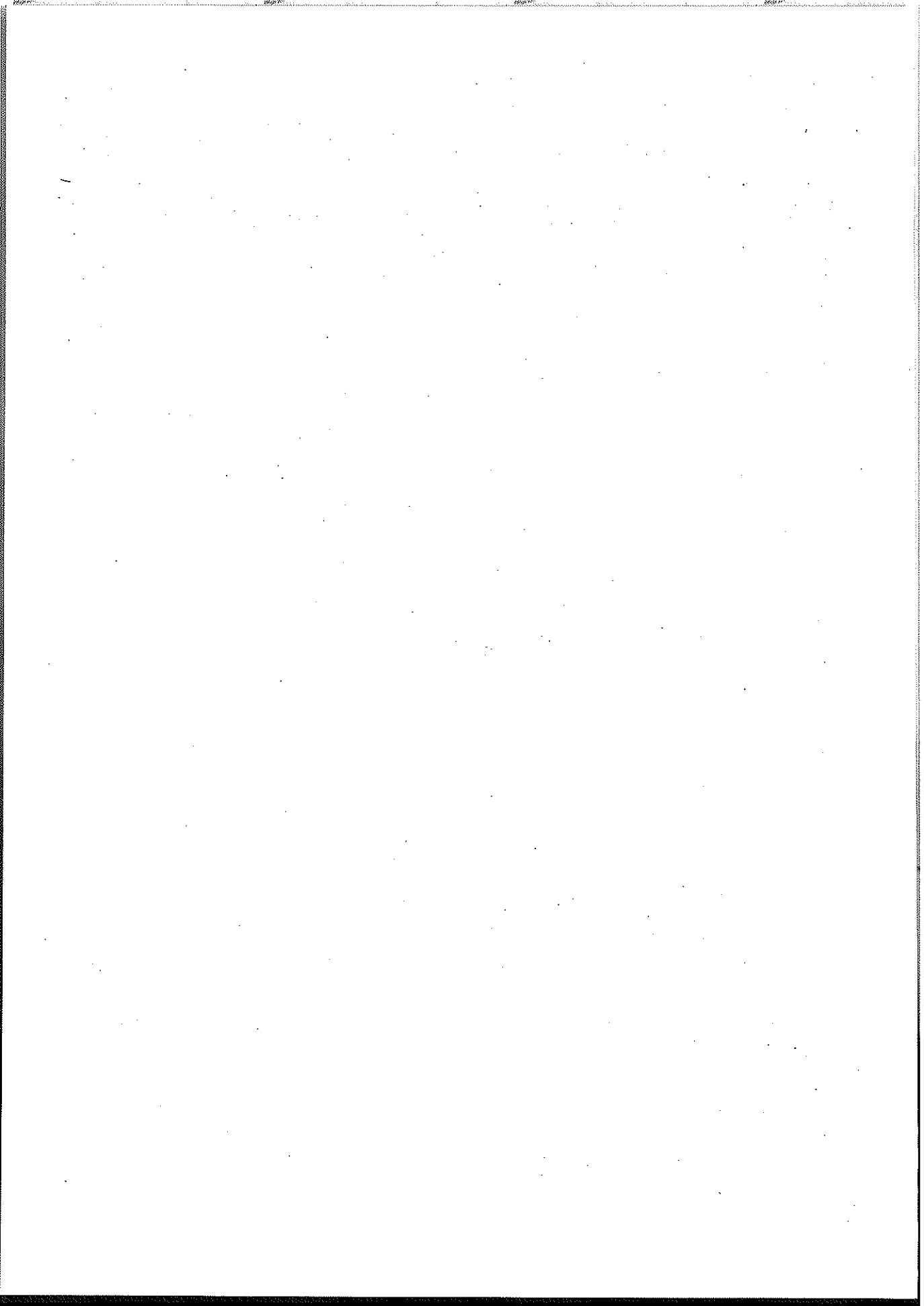
별지 제45호서식

과학영농기술개발실적 확인 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 농 기 술 개 발 실 적 내 용			
위와같이 과학영농기술개발실적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 ○ 읍·면 농촌지도소장 귀하			
위와같이 과학영농기술개발실적이 있음을 확인함.			
19 년 월 일 ○ ○ 읍·면 농촌지도소장 ○ ○ ○ (인)			



4. 농 업 기 계 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자율)

1. 목 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2. 추진방향

- 농기계 반값공급원칙을 지키면서 일반용자 지원 병행 시행
- 대형농기계(부속작업기 포함) 보급과 농업진흥지역의 기계화 촉진
- 지역실정에 맞는 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적정수량의 공급과 사후관리 강화로 농기계의 이용도를 높임.

3. 선정 대상 및 우선순위

가. 보조지원 농기계

(1) 선정대상

-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
- 트랙터, 콤팩트, 스피드스프레어(자주형에 한함)는 혼련수료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농가에 한함.
-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는 내용년수 동안 보조 지원하지 않음.
다만, 용자지원으로 농업용 온풍난방기를 구입하여 사용중인 경우와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우선 지원
- 기계화영농사, 전업농, 농어민후계자, 영농지도자 기타 농가순으로 함.
다만, 벼직파기와 관리기 구입 희망농가는 우선 지원
-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은 한번 보조지원 받은 농가는 신규지원 신청농가
보다 차순위를 적용
다만,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용을 받지 않음.

(3) 선정방법

- 읍·면장은 농기계 공급 계획과 수요자 선정대상 및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농가의 신청서 및 사업비(농기계 가격)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산정한 후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발급함.

나. 용자지원 농기계

- 용자지원농기계 선정대상은 농가 또는 농기계 이용조직등으로 하며
보조지원 탈락자를 우선 지원
-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어(자주형에 한함)는 훈련수료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농가에 한함.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보조지원 : 시장·군수
- 용자취급기관장 : 종합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지원대상 농기계

- 지원대상 농기계는 동력용으로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기능을 확보하고 일정기준 이상 국산화된 제품으로 국정검사에 합격한 농기계를 우선으로 하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별표 1]과 같음
- 개별 기대의 품질과 사후관리에 특수성이 있는 농기계(농업용 은풍난방기, 은실용동력개폐기)와 국정검사를 받지 않은 농기계로서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동력경운기 및 관리기의 부속 작업기는 제외)는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공급함.
- 지원 대상농기계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조건을 갖추고 판매가격 결정내역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다. '95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천대	백만원				
보조지원농기계	180	765,000	90,000	90,000	355,500 (213,300)	229,500
용자지원농기계	33	215,820	-	-	151,000 (90,600)	64,820
합 계	213	980,820	90,000	90,000	506,500 (303,900)	294,320

* ()내서는 농협자금 용자임.

라.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계획

- '95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계획에 의한 사업량은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급

합 계	대 형	중·소형	경 운 기
180,000 대	20,000	100,000	60,000

주 1) 대형은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어(자주형)임.

2) 중·소형은 경운기 및 대형을 제외한 기종임.

3) 그룹내의 공급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마. 공급계획량 배정

- 시·도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지원계획은 [별표 2]와 같음.
- 시·도지사는 주요 농기계에 대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 고시한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계획(고시 제1992-16호: '92.4.2)과 지역별 주요농기계 확보지침(붙임 1)에 따라 지역별 공급목표를 세워 적정수량의 농기계 공급이 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읍·면별 농기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 확정후 읍·면별로 시달하고 농협시·군지부 및 공급자에게 통보함.

바. 지원기준 및 한도액

(1) 지원기준

○ 보조지원 농기계

- 일반농가의 호당 농기계 보조지원 대상한도액은 ~~2백만원으로~~ 하며,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구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기종별 지원한도액 [별표 3]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 지원
- 보조지원 대상 한도액 2백만원을 초과하여 농기계를 구입하는 일반 농가는 1백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기종별 지원한도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지원
- 보조지원 소요액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50:50으로 분담
- 일반농가 보조지원농기계 공급은 농가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용자지원 농기계

- 보조 지원없이 용자지원만으로 농가 및 농기계 이용조직이 농기계를 구입 할때는 기종별 지원한도액을 용자 지원
- 중고 농기계 구입 지원액은 중고 농기계 구입가격의 80% 이내를 용자 지원

(2) 기종별 지원한도액

- 기종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3]과 같음.
- 농업용 은풍난방기 구입설치의 경우에는 농가의 시설규모에 따라 대수를 제한하지 않고 용자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지방비로 보조공급하는 농업기계는 기종별 지원 한도액에서 보조지원액을 제외한 금액만 용자 지원

(3) 용자 지원 조건

- 지원금리 : 년5%
- 기종별 상환기간

기종명	지원조건		기종명	지원조건	
	지원기준	용자금상환기간		지원기준	용자금상환기간
1. 보조 지원 농기계	상당		농업용동력운반차	상당 90%	1년거치5년 균분상환
농업용트랙터	80%	1년거치7년 균분상환	농업용톱밥제조기	80 "	1 " 5 "
농업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90"	1 " 7 "	다목적관리작업차	90 "	1 " 5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60"	1 " 6 "	동력전정기(전용 형 및 부착기)	90 "	1 " 5 "
동력이앙기	90 "	1 " 5 "	과수인공교배기	90 "	1 " 5 "
동력이앙기용부속 작업기	90"	1 " 5 "	화훼결속기	90 "	1 " 5 "
벼직파기(전용형)	90 "	1 " 5 "	온실용살수기	90 "	1 " 5 "
바인더	90 "	1 " 5 "	농산물세척기	90 "	1 " 5 "
콤바인(자탈형)	90 "	1 " 6 "	채소수확기	90 "	1 " 5 "
콤바인(보통형)	80 "	1 " 6 "	탄산가스발생기	90 "	1 " 5 "
곡물건조기	90 "	1 " 6 "	탈망기	90 "	1 " 5 "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90 "	1 " 5 "	2. 용자지원농기계		
이식기	90 "	1 " 5 "	보조지원농기계		(1과 같음)
농산물건조기	90"	1 " 6 "	온실용동력개폐기	80 "	1 " 5 "
농업용온풍난방기	90 "	1 " 5 "	농용로우더 (전용형)	70 "	1 " 5 "
스피드스프레어	90 "	1 " 6 "	농용굴삭기 (전용형)	70 "	1 " 5 "
과일선별기	90"	1 " 5 "	농용혼합기	70 "	1 " 5 "
예도형동력예취기	90 "	1 " 5 "	농용잔가지파쇄기	70 "	1 " 5 "
동력분무기	70 "	1 " 5 "	농용환풍기	70 "	1 " 5 "
육묘용파종기	90 "	1 " 5 "	중고농기계 (본문참고)		
동력연무기	90 "	1 " 5 "			

5. 공급자

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확속진법시행규칙에 의한 사후봉사업자의 자격 및 시설을 갖추고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종합농업협동조합(이하 "공급농협"이라 한다)과 대리점으로 함.

6. 농기계 구입신청 및 인수

가. 보조지원 농기계

- 보조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농가는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농기계 공급자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보조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읍·면으로부터 발급받아 동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
- 용자취급기관장은 위항의 용자신청에 대하여 용자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함.
- 용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지원한도액내의 용자금 지원 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기대를 인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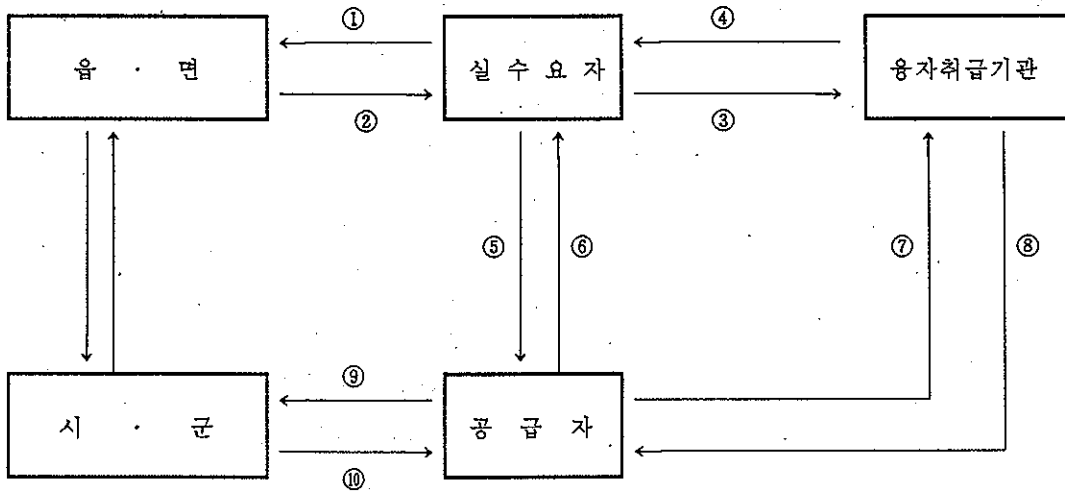
나. 용자지원 농기계

- 용자금만으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일반용자 농기계 구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농기계 공급자의 확인을 받아 동 신청서와 용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위항의 용자신청에 대하여 용자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함.
- 용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기대를 인수함.

다.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 용자지원

- 지원대상 농기계는 [별표 1]과 같음
- 용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중고농업기계는 미상환액을 승계함.
- 용자금 상환잔액이 없는 중고농업기계는 다음과 같이 용자 지원함.
 - 용자지원액 : 중고농기계 구입가격의 80%이내
 - 용자기간 : 잔여 내용연수(내용연수 - 사용연수)이내
 - 용자금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균분상환
 - 거래확인 : 중고농업기계 대리점, 농업기계 수리업소(지정대리점, 공급농협 또는 지정수리점에 한함)또는 영농회장이 확인한 구매계약서 부분 또는 사본징구

라.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체계도



보조지원농기계

용자지원농기계

- ①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제출
- ②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발급
- ③ ②의 선정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 제출
- ④ 용자수속필확인서 교부
- ⑤ 기대인수 신청
 - 용자수속필확인서
 -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 보조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 자부담금납부
- ⑥ 기대인계
- ⑦ 용자실행 신청
- ⑧ 용자실행신청 접수증 발급
- ⑨ 보조금 지급신청(보조금교부신청서)
- ⑩ 보조금 지급

- ③ 일반용자 농기계 구입신청서와 용자 신청서류 제출
- ④ 용자수속필확인서 교부
- ⑤ 기대인수 신청
 - 용자수속필확인서
 -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 자부담금납부
- ⑥ 기대인계
- ⑦ 용자실행 신청
- ⑧ 용자실행신청 접수증 발급

7. 보조금과 용자금 신청 및 지급

가.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매월 2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농기계구입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
다만, 공급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보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으며, 농기계 대리점이 부실할 경우는 판매 위탁한 생산업체가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확인한후 신청자에게 매월 2회 지급하며, 지방비 조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만 우선 지급함.

나. 용자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시에 실수요자로 부터 받은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용자금 지급을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실행신청 접수후 공급자에게 용자실행신청접수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하고, 농업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농기계 구입 및 규격의 상이 여부를 확인함.
- 농협은 확보된 자금범위내에서 월2회 용자실행함.

8. 사후관리

가. 농기계 구입지원 보조금의 사후관리

- (1)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자가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 하여야 함.
- (2) 보조금 교부목적과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와 이농등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 하여야 함. 다만, 농기계 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시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3) 시·읍·면·구청장은 농기계 보조지원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조사업의 수행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 (5)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6)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련 공급농협 및 대리점은 그 승인 및 지정을 취소함.
- (7)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은 보조금 지급후 당해년도내에 보조지원 공급된 농기계에 대하여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치 않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해당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함.

나.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 및 용자금 사후관리

- (1) 농협중앙회장은 공급농협에, 농기구공업협동조합은 농기계 생산업체와 대리점에 대하여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2) 농업기계 구입자금 대출과정에서 부적합한 용자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함.

(가) 대리점 및 공급농협

- 농업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용자지원 대상기종이 아닌 기종(본체)을 공급하고 용자 신청한 경우 : 1년간 용자신청 접수중단
- 용자지원 기종 또는 규격이 다르거나, 작업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용자 신청한 경우 : 6개월간 용자신청 접수중단

- (나) 실수요자에 대하여는 용자액(용자 유용액)을 회수하고 3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 중단
 - (다) 용자취급기관의 농업기계 인수 확인자 문책
 - (라) 관련공급 업체에 대하여는 생산 및 부품확보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는 기지원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음.
- (3) 농협중앙회장은 필요시 용자실태를 조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유통질서 위반등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대리점에 대하여 사후봉사업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5) 농협중앙회장은 공급농협이 실수요자의 용자수속 접수순위를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대리점 공급분의 용자실행 신청을 부당하게 지연등 불공정한 판매행위 와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공급농협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

다. 대형 농업기계의 이용기술지도

- (1) 농협중앙회 군지부장은 관할농협에서 기술지도 대상 농업기계(50마력 이상 트랙터, 승용이앙기, 4조이상 콤바인)의 용자실행자 명단을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관할시·군농촌지도소에 통보함.
- (2) 농촌지도소장은 농협에서 통보된 기대구입 농가를 1개월 이내에 방문하여 기대구입 내역을 확인하고 대장에 등록(별지 제10호 서식) 관리하여야 하며, 1년간 경제적인 이용방안등을 지도하여야 함. 구입기대가 없거나 규격 또는 기종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읍·면·구청장과 용자취급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확인후 관리하여야 함.

라. 농업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 (1) 농업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피해보상은 당해 농업기계의 공급자(대리점, 공급농협, 생산 및 공급업체)가 책임을 짐.
- (2)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공급시 한글로 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및 부품 목록을 제공함.
- (3) 시장·군수는 공급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등 사후봉사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기종 공급업체의 농기계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4) 농업기계 공급자와 생산업체는 농기계 공급시 당해농가가 보유한 폐농기계를 회수하여야 함.

9. 기 타

- 가. 시·도지사는 농업기계 보유 및 공급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수량이 보급되고 사후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농촌진흥청장은 본 요령에 의한 대형 농업기계의 이용기술지도 세부지침을 시달하여 경제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다. 농협중앙회장은 공급농협 및 농기구써비스센터가 사후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라.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사후봉사업소(대리점) 지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 농업기계 용자실행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10. 보 고

	보 고 자	보고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농업기계 출하실적	한국농기구공업 협동조합	월 보	익월 7일	별지제11호서식
농업기계 용자 지원 공급상황	농협중앙회장	"	"	별지제12호서식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실적	"	"	"	별지제13호서식
농업기계 품질보증서 발급실적	한국농기구공업 협동조합	"	"	별지제14호서식
농업기계 보조지원 공급 및 집행실적	시·도지사	"	익월 20일	별지제15호서식

11. 사업 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기계과,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자재부
- 도 : 농정국 농산과, 농협도지회 자재과
- 군 : 산업과, 지도소, 농협시군지부, 농기계지정 사후봉사업소
- 읍·면 : 읍·면사무소, 종합농협, 농기계 지정사후봉사업소

[별 표 1]

지 원 대 상 농 기 계

1. 보조지원 농기계

- 농업용 트랙터
- 농업용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 플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무논정지기, 파종기, 로우더, 비료살포기, 휴립피복기, 심토파쇄기, 결속기, 감자파종기, 스피드스프레어, 글삭기, 땅속작물수확기, 벼직파기, 서류글취기, 콤스프레어, 모우어, 반전집초기, 옥수수수확기, 동력초수확기, 발근파쇄기, 사료배합기, 그레플, 심경로타리, 휴립복토기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 동력이앙기
- 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 축조시비기, 벼직파기
- 벼직파기(전용형)
- 바인더
- 콤바인(자탈형 및 보통형)
- 곡물건조기
-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이식기
- 농산물건조기
- 농업용은풍난방기
- 스피드스프레어
- 과일선별기
- 예도형동력예취기
- 동력분무기(주행형 및 원격조종형)
- 육묘용파종기
- 동력연부기
- 농업용동력운반차
- 농업용통발제조기
- 다목적관리작업차
- 동력전정기(전용형 및 부착기)
- 과수인공교배기
- 화훼결속기
- 은실용살수기
- 농산물세척기
- 채소수확기
- 탈산가스발생기
- 탈망기

2. 용자지원 농기계

- 보조지원농기계(1과 같음)
- 은실용 동력개폐기
- 농용 글삭기 및 로우더(전용형)
- 농용 혼합기
- 농용 잔가지파쇄기(부착형 및 전용형)
- 농용 환풍기
- 중고농기계

[별표 2]

시도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지원계획

시도별	사 업 량				사업비 (보조금)		
	계	대 형	중·소형	경운기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대				백만원		
계	180,000	20,000	100,000	60,000	180,000	90,000	90,000
서울	200	30	133	37	200	100	100
부산	780	90	518	172	780	390	390
대구	570	54	275	241	570	285	285
인천	380	52	193	135	380	190	190
광주	1,340	154	723	463	1,340	670	670
대전	700	67	441	192	700	350	350
경기	20,000	2,777	11,609	5,614	20,000	10,000	10,000
강원	10,060	1,024	5,080	3,956	10,060	5,030	5,030
충북	12,230	1,084	7,131	4,015	12,230	6,115	6,115
충남	24,520	2,821	14,098	7,601	24,520	12,260	12,260
전북	15,870	1,391	8,845	5,634	15,870	7,935	7,935
전남	28,560	3,721	14,977	9,862	28,560	14,280	14,280
경북	35,090	3,428	19,500	12,162	35,090	17,545	17,545
경남	25,900	2,834	15,076	7,990	25,900	12,950	12,950
제주	3,800	473	1,401	1,926	3,800	1,900	1,900

[별표 3]

기 종 별 지 원 한 도 액

기 종 명	규 격	지원한도액	비 고
		천원	
농업용트랙터 본 체	○ 20마력미만	4,300	
	○ 20마력이상 25마력 미만	5,300	
	○ 25마력이상 30마력미만	6,300	
	○ 35마력이상 40마력미만	7,800	
	○ 40마력이상 45마력미만	10,500	
	○ 45마력이상 50마력미만	12,500	
	○ 50마력이상 60마력미만	15,000	
	○ 60마력이상 70마력미만	18,600	
	○ 70마력이상	22,800	
	※ 안전캡 부착 구입시	1,000추가	
농업용트랙터용 플라우	○ 자동양용 2련	400	
	○ 자동양용 3련이상	700	
	○ 단용 3련이상	1,200	
	○ 회전 2련이상	3,300	
	○ 원판구동 6련이상	2,800	
	○ 이랑쟁기		
	- 3-4련	600	
- 6련이상	1,100		
농업용트랙터용 로타베이터	○ 로타리축길이 130cm미만	600	
	○ " [130cm이상 170cm미만	900	
	○ " 170cm이상	1,100	
농업용트랙터용 트레일러	○ 적재정량 1.0톤이하	500	
	○ 적재정량 [1.1톤이상 2.0톤미만	8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농업용 트랙터용 무논정지기	○ 적재정량 [2.0톤이상 3.0톤미만	1,300	
	○ 적재정량 3.0톤이상	1,500	
농업용 트랙터용 파종기	○ 전규격	1,200	
농업용 트랙터용 파종기	○ 전규격	2,000	
농업용 트랙터용 로우더	○ 버킷산적용량 0.50㎡미만	1,400	
	○ 버킷산적용량 0.50㎡이상	3,100	
농업용 트랙터용 비료살포기	○ 전규격	1,000	
농업용 트랙터용 휴립피복기	○ 1두독식	1,300	
	○ 2두독식	1,700	
농업용 트랙터용 심토파쇄기	○ 1조식	3,800	
	○ 2조식	5,900	
농업용 트랙터용 결속기	○ 드럼폭 80cm미만	4,700	
	○ 드럼폭 80cm이상	8,800	
농업용 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 이어	○ 전규격	2,900	
농업용 트랙터용 굴삭기	○ 버킷산적용량 0.05㎡미만	3,400	
	○ 버킷산적용량 0.05㎡이상	3,800	
농업용 트랙터용 벽직파기	○ 로타베이터 포함 구입시	2,000	
	○ 파종장치만 구입시	900	
농업용 트랙터용 심경로타리	○ 전규격	1,400	
농업용 트랙터용 휴립복토기	○ 전규격	1,3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동력경운기 및 그부속작업기	○ 6마력		
	- 본체만 구입시	600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800	
	○ 8마력이상		
동력이앙기	- 본체만 구입시	800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1,100	
	○ 보행형 2조	1,400	
	○ 보행형 4조	1,500	
	○ 보행형 6조	1,900	
	○ 승용형 4조	4,000	
동력이앙기용 축조시비기	○ 승용형 6조(크랭크식)	4,300	
	○ 승용형 6조(로타리식)	7,500	
	○ 전규격	800	
동력이앙기용 벼직파기	○ 보행형	600	
	○ 승용형	600	
벼직파기 (전용형)	○ 보행6조식	1,400	
	○ 승용6조식	4,400	
	○ 승용8조식	6,200	
바인더	○ 전규격	1,300	
콤바인 (자탈형)	○ 2조	5,600	
	○ 3조(정격출력 20마력미만)	8,000	
	○ 3조(정격출력 20마력이상)	13,200	
	○ 4조이상	17,8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콤바인 (보통형) 곡물건조기	○ 전규격	39,400	전규격 부착 가능
	○ 30석미만	3,000	
	○ 30석이상 50석미만	3,300	
	○ 50석이상 ※ 수분측정기 부착 구입시	4,500 700추가	
관리기 및 그부속작업기	○ 3마력미만 - 본체만 구입시	400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800이내 (구입가격의 90%)	
	○ 3마력이상 5마력미만 - 본체만 구입시	800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1,500이내 (구입가격의 90%)	
	○ 5마력이상 - 본체만 구입시	1,000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2,000이내 (구입가격의 90%)	
이식기 농산물건조기	○ 전규격	2,300	
	○ 2형	1,400	
	○ 3형 ~ 6형 - 선반식 또는 겸용식	2,000	
	- 선반순환식	4,000	
	○ 7형 ~ 11형	2,400	
○ 15형 이상	4,1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농업용 은풍난방기	○ 20,000kcal미만	700	
	○ 20,000kcal이상 30,000kcal	1,200	
	○ 30,000kcal이상 40,000kcal	1,300	
	○ 60,000kcal이상 80,000kcal	2,000	
	○ 100,000kcal이상 120,000kcal	2,700	
	○ 140,000kcal이상	3,400	
스피드 스프레이어	○ 자주형		
	- 약액탱크용량 450ℓ 미만	7,300	
	- 약액탱크용량 [450ℓ 이상 550ℓ 미만	10,100	
	- 약액탱크용량 [550ℓ 이상 1,000ℓ 미만	10,700	
	○ 운반작업 겸용형	11,300	
과일선별기	※ 안전캡 부착 구입시	1,000추가	
	○ 중량식(기계식 선별)		
	- 수동공급식(7단)	1,400	
	- 수동공급식(10단)	1,700	
	- 자동공급식(6, 7, 10단)	2,200	
	○ 중량식(전자식 선별)	3,500	
	- 8단이상		
○ 형상식	1,700		
- 수동공급식(6단)			
예도형 동력예취기	○ 전규격	1,1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동력분무기 (주행형)	○ 트랙터 탑재식	1,300	
	○ " 견인식	1,700	
육묘용파종기	○ 전동산파식	1,500	
동력연무기	○ 연무량 40ℓ/시간	500	
	○ 연무량 50ℓ 이상 90ℓ/시간 미만	600	
	○ 연무량 90ℓ/시간 이상		
	- 약액통 용량 30ℓ 미만	800	
	- 약액통 용량 30ℓ 이상	1,800	
농업용 동력운반차	○ 보행형		
	- 적재정량 200kg미만	500	
	- 적재정량 400kg이상	1,400	
	○ 승용형		
	- 2륜 구동식	2,600	
	- 4륜 구동식	3,300	
- 작업대 겸용형	5,500		
농업용 톱밥제조기	○ 전규격	2,100	
동력전정기	○ 전규격	1,100	
탈망기	○ 전규격	4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은실용 동력개폐기	○ 전규격	700	
농용굴삭기 (전용형)	○ 버킷 산적용량 0.016㎡미만	6,000	
	○ " 0.016㎡이상	8,500	
농용로우더 (전용형)	○ 전규격		
	- 버킷 산적용량 0.014㎡미만	4,400	
	- 버킷 산적용량 0.014㎡이상	5,800	
농용 잔가지파쇄기	○ 경운기 부착형	700	
	○ 전용형	1,000	

(붙임 1)

지역별 주요 농업기계 확보지침

1. 목 적

지역(지구)별로 주요농업기계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동 확보목표 범위에서 신규 농업기계를 보급하여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

2. 지역별 농업기계화 계획 수립

-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2-16호('92. 4. 2)로 고시한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현대화 추진계획을 기본으로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
- 지역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벼농사, 과수, 노지채소 및 특작, 시설농업, 양잠, 축산등의 기계화와 수확후의 기계화를 말하며 작목별로 규모화 하여 농작업이 일관기계화 되도록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수립

3. 벼농사의 주요 농업기계 확보 목표 설정

- 지역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농기계 이용조직과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작업별로 주요농기계의 기종별 확보목표 대수를 설정
- 벼농사의 기계화 대상목표 면적은 경지정리 대상면적(전국 1,000천ha)으로 하고 '96까지 완전기계화 되도록 함.

4. 신규 농기계 보급대수 결정

- 기종별 확보 목표대수에서 보유대수(폐기대수 제외)를 제외한 대수를 신규 보급 대수로 하고 연차별 폐기대수를 감안하여 연도별 신규 보급대수를 산출함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예정 농기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공급회사	규격 (모델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보조금	용자및자부담	

2. 공급자 확인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에 책임 사후관리 하겠습니까.

공급자 : ○○○ 대리점 또는 공급농협 ○○○ (인)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읍·면·구청장) 귀하

----- 절 ----- 취 ----- 선 -----

발급번호 :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신청자 주소 :
성명 :

기종명	공급회사	규격 (모델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비고
					계	보조금	용자및자부담	

19 년 월 일

(시·읍·면·구청장) (인)

※ 용자 지원을 병행하여 구입시는 위 선정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를 갖추고 용자취급 기관장에게 제출하십시오.

< 예 시 >

(이 면)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교부조건]

1.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농기계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농등으로 영농을 계속할 없을 때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절 ----- 취 ----- 선 -----

< 예 시 >

(이 면)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교부조건]

1.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농등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용자 농기계 구입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예정 농기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공급 회사	규격 (모델 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희망일
					계	용자금	자부담	

2. 공급자 확인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에 책임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공급자 : ○○○ 대리점 또는 공급농협 ○ ○ ○ (인)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용자취급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용자수속필확인서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소		
기종명	수량	기대금액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절-----취-----선-----

용자수속필확인서

1. 발급번호 :
2. 건 명 : 농업기계 구입자금 대출 신청
3. 용자신청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4. 용자신청내역

기종명	규격	수량	기대금액				비고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대					

귀하의 대출신청에 따라 대출수속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1) 본 확인서는 용자실행전의 확인서로 용자금은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확인서 또는 일반용자 농기계구입신청서"에 의거 산출하였음.
- (2) 본 확인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9 년 월 일
 용자취급기관장 또는 취급자 ○ ○ ○ (인)

(신청자)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기종명 (규격)	공급 회사	모델명	엔진 번호	자체 검사 번호	수 량 (대)	단가	기 대 금 액 (천원)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부 속 작 업 기										
계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용자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대리점 :

대 표 (인)

공급농협 :

조합장 (인)

19 년 월 일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기종명 (규격)	공급 회사	모델명	엔진 번호	자체 검사 번호	수 량 (대)	단가	기 대 금 액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부속 작업기										
계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대리점 :

시·군지부 :

대 표 : (인)

지부장 : (인)

19 년 월 일

시 장 · 군 수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농기계 구입자금) 교부신청서

기종명	수량	사업비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대				

상기와 같이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요령에 의거 농기계를 공급하였기에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어 보조금을 공급자가 정하는 송금계좌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송금계좌) 은 행 :

계좌번호 :

성 명 :

(인)

(공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붙 임 : 1. 읍·면별 농기계 보조금 청구내역(서식 6-1) 1부.
2. 보조금 지급대상자 현황(서식 6-2) 1부.
3. 보조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서식 제5호)
4. 품질보증서 사본(품질보증대상 기종에 한함) 1부. 끝.

시 장 · 군 수 귀 하

[별지 제6의 1호 서식]

읍면별 농기계 보조금 청구내역

구분 읍·면	기종명	수량	기 대 금 액			
			계	보 조 금	용 자 금	자 부 담
○ ○ 읍	○ ○ ○	대				
	○ ○ ○					
	○ ○ ○					
○ ○ 면	○ ○ ○					
	○ ○ ○					
	○ ○ ○					

[별지 제6의 2호 서식]

보조금 지급 대상자 현황

기종명	대 상 자		수량	기 대 금 액			
	주 소	성 명		계	보 조 금	용 자 금	자 부 담
			대				

[별지 제7호 서식]

용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실수요자성명	기대공급회사명		
기종명	수량	기대금액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대				
계					

----- 결 ----- 취 ----- 선 -----

용자실행신청접수증

1. 발급번호 : _____
2. 실수요자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3. 용자실행 신청내역

기종명	규격	모델명	수량(대)	기대금액				공급회사명 대리점명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부속 작업기								
계		-	-					

19 년 월 일

용자취급기관장 ○ ○ ○ (인)

공급회사(대리점) 귀하(농협공급분은 "(실수요자) 귀하")

[별지 제 8호 서식]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신청처리부

점 번 수 호	점 일 자	차 주 (성명, 주소)	융자신청기종		구 입 금 액				처 리		
			기종명 (수량)	업체명 (공급자명)	계	용 자	보 조	차부담	일자	내 용	

[별지 제9호 서식]

농기계 보조지원 확인서 발급대상

발급 번호	성 명	주 소	기종명	규 격 (모델명)	생산업체	구입처	기대대금(천원)			구 입 일 예 정 일	비 고
							계	보 조	용자 및 자부담금		

[별지 제10호 서식]

대형 농업기계 관리대장

	주 소	기종명	제조사	규격 (모델명)	자체 검사 번호	구입 일자	이용방안지도 내용
○ 일반농가							
○ 이용조직							

※ 자체검사번호란에는 자체검사 합격번호의 기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검사합격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기대번호 또는 엔진번호를 기입한다.

※ 이용조직의 경우 전기종을 등록 관리하여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기계 출하실적

1. 총 관

(단위 : 대)

기종별	계획 (A)	출 하		비 율 (B/A)	전년동기 실 적 (C)	전년대비 (B/C)
		당 기	누 계 (B)			
계						

2. 기종별, 업체별 출하실적

(단위 : 대)

구분 기종별	업체별	출 하 실 적					
		당 기			누 계		
		계	농협분	대리점분	계	농협분	대리점분
계							

3. 기종별, 시도별 출하실적

(단위 : 대)

시도별	기종별	계	(기종명)	(기종명)
계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기계 용자지원 공급상황
(199까지 접수증 발급실적)

1. 총괄

(단위 : 대)

기종별	공급계획 (A)	공급 실적			전년동기 공급실적 (C)	비율	
		전월까지	당월	누계(B)		B/A	B/C

※ ()는 순수용자지원분 별도내서

2. 시·도별 농기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분 시·도별	기종명	공급 실적		
		계	농협분	대리점분

3. 업체별, 기종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분 업체별	기종별	공급 실적		
		계	농협분	대리점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실적

1. 재원별 용자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농특회계자금 차관회전자금 농협자금 등 계						

2. 용도별 용자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

용도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용 부품확보 지원 - 수리장비 지원 - 농기계보관창고시설 지원 - 폐농기계 수집처리 지원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 자금 <li style="text-align: center;">계 						

3. 기종별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기종별	금 차 지 원					지 원 누 계				
	계	수량	보조	용자	자담	계	수량	보조	용자	자담

※ 용자란중 ()는 순수용자 지원분 별도내서

4. 업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업체별	금 차 지 원				지 원 누 계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보조	용자	자담

[별지 제14호 서식]

농업기계 품질보증서 발급실적

(단위 : 대)

업체별	농업용은풍난방기	은실용동력개폐기	기 타	계

[별지 제15호 서식]

농업기계 보조지원 공급 및 집행실적

1. 공급실적

< 일반농가 >

(단위 : 대)

기종명	공급계획 (A)	공 급 실 적			전년 동기 공급 실적 (C)	비 율	
		누 계 (B)	전월까지	금 월		B/A	B/C

< 이용조직 >

(단위 : 대)

기종명	공급계획 (A)	공 급 실 적			전년 동기 공급 실적 (C)	비 율	
		누 계 (B)	전월까지	금 월		B/A	B/C

2. 보조금 집행실적

< 일반농가 >

(단위 : 대, 백만원)

기종명	공급계획		집행			
			금회		누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 이용조직 >

(단위 : 대, 백만원)

기종명	공급계획		집행			
			금회		누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 (자율)

1. 목 적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음.

2. 육성방향

- 농기계이용조직은 위탁영농회사와 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 육성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육성

3. '95 지원계획

가.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

(1)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금	자부담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	796개소	79,600	19,900	19,900	31,840 (19,104)	7,960

※ ()내서는 농협자금 융자임.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와 같음.

(2) 개소당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위탁영농회사		100	25	25	40	10
공동 이용 조직	대 규모	60	15	15	24	6
	소 규모	20	5	5	8	2
지 원 율		100%	25	25	40	10

- 개소당사업비 범위내에서는 보조 50%, 용자 40%, 자담 10%의 비율로 지원하고, 개소당사업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구입비의 90% 범위내에서 보조금(지방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위탁영농회사 및 대규모 공동이용조직과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의 사업량을 조정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육성할 수 있음.
- 기종별 용자금 상환조건은 '95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3) 지원대상 농기계 : '95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요령에 정한 기종

나. 위탁영농회사의 시설설치 자금 및 경영비 용자지원

(1) 지원계획

구 분	용자지원액	지 원 조 건		
		개 소 당 지원한도	상환기간	금 리
○ 시설설치 자금	134.4 억원	백만원	3년거치 7년상환	5 %
-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33.6		
- 소득사업시설		200		
○ 경 영 비(농업경영자금)		20	1년	5 %

- 소득사업시설지원자금은 농기계 정비시설, 육묘시설, 퇴비 및 상토조제시설, 건조·조제등 수확후 기계화시설, 폐농기계 처리 시설의 설치비와 건축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지구입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시설설치 자금은 시설설치소요액의 80%이내로 지원하며, 소득사업시설비 지원은 시·도별 배정금액에서 신규설치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용으로 우선 지원후 예산잔액의 범위내에서 개소당 200백만원 까지 지원 가능

< 시·도별 위탁영농회사 시설설치 자금 지원계획 >

(단위: 백만원)

계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440	33.6	33.6	67.2	1,381	775.2	960	2,004	2,206	2,105	1,971	1,769	134.4

(2) 지원절차

- 위탁영농회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지확보 내역, 규모, 시설설치 내역, 소요액등을 명시한 시설설치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등 시설설치 가능여부등을 확인한후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농협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시설설치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기간내 완공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등 행정사항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3) 용자대출

- 위탁영농회사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용자대출은 법인 명의로 하고, 작목반은 작목반장을 포함 2인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연대차주 명의로 용자하여야 함.

4. 지원대상자 선정요령

가. 지원대상자의 자격

(1) 위탁영농회사

- 지원대상 위탁영농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로 다음의 영농작업 규모,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사업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이 1/2이상이어야 함. 다만, 직할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도 가능
 - 영농작업규모 :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이상
 - 영농인력 : 5명이상, 그중 농기계 운전자 2명이상, 정비기술자 1명이상
 - 영농장비 : 기계화 일관작업이 가능하도록 5종 10대이상 확보
 - 시설 :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60평 이상
- 농기계 운전자 및 정비기술자는 기계화영농사,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농기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이수자, 농업계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이어야 함.
- 장비 및 시설은 지원신청 당시의 시설장비와 회사설립후 확보할 시설장비를 구분하여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설립후 확보할 장비는 1년이내, 시설은 2년 이내에 모두 구입(설치)하여야 함.

(2) 공동이용조직

회원농협에 등록된 작목반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음의 공동작업 자격요건을 갖춘 생산자조직

< 농기계 공동작업 자격요건 >

	대규모공동이용조직	소규모공동이용조직
영농작업규모	30ha이상	10ha이상
인 력	○ 농기계운전능력자3인이상	○ 농기계운전능력자2인이상
농 기계 공동이용 규 약	제정운영	제정운영

- 농기계 운전능력자는 기계화영농사,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농기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이수자 또는 농업계고등학교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이어야 함.

나. 우선 선정 순위

(1) 위탁영농회사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 지역인 회사
- ②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농협
- ③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위탁영농회사
- ④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 설립하는 회사등

(2) 공동이용조직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 지역의 생산자조직
- ②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되는 생산자조직
- ③ 농업진흥지역의 생산자 조직
- ④ 기계화영농사, 전업농, 농어민후계자등이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등

5.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가. 사업추진 절차

- 위탁영농회사 또는 공동이용조직을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자격구비요건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 군수(읍·면장)에게 선정을 신청함. 다만, 작목반은 관할 종합농협장이 신청할 수 있음.
- 시장·군수(읍·면장)는 제출된 사업계획과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구비요건, 지역여건, 사업성, 수지전망 등을 검토한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특별시, 직할시는 별도 심의회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함.
 -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농협장은 동 선정 심의회시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위탁영농회사설립은 설립발기, 정관작성, 설립등기등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자는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설립자는 회사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설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1) 등기부 등본
 - (2) 정 관
 - (3) 장·단기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추진 계획
- 시장·군수는 설립보고를 받은 위탁영농회사의 영농규모, 인력, 장비 및 부지 확보 여부등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의 상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지시하고, 보완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동이용조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지정, 농기계 공동이용 방법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농기계 공동이용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업단체 및 지역농민이 참여하는 "위탁작업료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위탁작업료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도

나. 지원기관별 임무

(1) 위탁영농회사

(가) 농촌진흥청

- 경영평가
- 영농기술지도 및 소득사업 개발지원
-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

(나) 행정기관

- 법령에 정한 업무
 -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행 상황보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등 보조금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조사업자의 업무
-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총괄지도 감독
 - 회사설립에 따른 회사설립 발기, 정관작성, 설립등기등의 설립절차에 대한 지도
- 위탁영농회사 세무지도
 - 사업년도 세무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작성, 원천징수, 결산관련세무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등에 관한사항등 지도
-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병역특례
 - 적격대상자 선발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복무토록 함.
- 기타 행정지도 사항
 - 농지전용,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 사항, 정책자금 융자, 의료보험 관련업무등에 관한 지도

(다) 농촌지도소

- 담당지도사 지정
-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지도 및 평가
 - 위탁작업면적에 따라 적정 영농계획 수립
 - 영농계획을 감안한 적정농기계의 선택과 구입 및 농기계 이용을 제고방안 지도
 - 인건비, 자재대 등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대경영기법 지도
 - 감가상각, 자본이자지출, 장부기장등 결산업무 지도
- 위탁영농회사 운영실적 조사분석
- 위탁영농회사 영농기술 및 소득사업 개발지도
 - 첨단농기계 및 시설을 이용한 생력화와 과학영농기법
 - 농림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농한기 소득사업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지도

(2) 공동이용조직

(가) 도 농민교육원 및 농촌지도소

- 농기계 훈련기관 및 업체의 각종 농기계 운전조작, 정비기술훈련시 우선선발
 - 정비훈련등의 강화로 영농기계화의 기간 요원으로 양성

(나) 농 협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기계 이용 조직에 대한 경영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농기계 공동이용 및 운영요령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가공유통시설등과 효율적인 연계방안
 - 농기계의 경제적 이용방법
 - 회계정리등

6.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관리

-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후봉사업소(농협, 대리점)등이 명확히 기록된 농업기계 구입확인서[별지서식 제1호]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농업기계 구입확인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확인한후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농협장에게 통보함.
- 지방비 확보 지연등으로 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될 경우, 우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용자실행 및 자부담금의 정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의 농업기계 구입현황[별지 서식 제2호]을 비치하여 농업기계 구입확인, 기대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유지 여부등(12월말 기준)을 매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함.
-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농협장은 농업기계 구입지원자금 용자시 농업기계 구입 현황[별지서식 제2호]을 매월 10일까지 시·군 및 농촌지도소에 통지하고 농협 면세유류 관리대장 정리에도 활용토록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요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농업기계 보관시설 설치비 지원(지방비)으로 보유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조지원 농업기계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5년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려워 신기종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처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처분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요령과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추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보조지원된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명시하여야 함.
-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95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요령에 의함.

7. 보고사항

	보고자	보고기한	서식
○ 위탁영농회사 설립 결과보고	시·도지사	'95. 5. 31	별지제3호서식
○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사업추진실적 보고 (반기별)	"	'95. 7. 31 '96. 1. 31	별지제4호서식
○ 위탁영농회사 운영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 보고	농촌진흥청장	'96. 2. 28	별지제5호서식
○ 공동이용조직 운영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 보고	농협중앙회장	"	별지제5호서식

[별표]

시·도별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계	796	79,600	19,900	19,900	31,840	7,960
부 산	3	300	75	75	120	30
대 구	1	100	25	25	40	10
광 주	4	400	100	100	160	40
대 전	1	100	25	25	40	10
경 기	82	8,200	2,050	2,050	3,280	820
강 원	46	4,600	1,150	1,150	1,840	460
충 북	57	5,700	1,425	1,425	2,280	570
충 남	119	11,900	2,975	2,975	4,760	1,190
전 북	131	13,100	3,275	3,275	5,240	1,310
전 남	125	12,500	3,125	3,125	5,000	1,250
경 북	117	11,700	2,925	2,925	4,680	1,170
경 남	105	10,500	2,625	2,625	4,200	1,050
제 주	5	500	125	125	200	50

※ 시·도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위탁영농회사, 대규모 공동이용조직,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의 사업량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구입확인서

기종명	규격	제조회사	수량	금액	구입처 및 사후봉사자

- ※ 1) 구입처 및 사후봉사자는 농기계 판매대리점 또는 공급단협명 기입
- 2) 부속작업기를 구입시 부속작업기도 기입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를 구입코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군(시) 면(읍) 리 번지

○ ○ 대표 : (인)

○ ○ 군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구입현황

명칭	소재지	기종명	제조사	규격 (모델명)	자체검사 합격번호	구입비				구입 년월일
						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 자체검사 합격번호가 불분명시 엔진 혹은 기대번호 기재

위탁영농회사 설립결과 보고

1. 회사현황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기일	자본금	사원수 (주주)수	설립자	주작업분야
계					백만원	명		

- ※ 1. 회사명은 ○○○○ 주식회사, ○○○○ 합자회사등 회사 형태를 구분 기재
 2. 설립자는 농민, 농협, 농지개량조합 등으로 구분 기재
 3. 주작업분야는 수도작, 전작, 과수, 특작등으로 구분 기재

2.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회사별	농기계 구입비					시설비	농업경영비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금	자부담		
계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사업추진 실적 보고

I. 위탁영농회사

1. 농기계 공급

구 분	계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기 타
계획(A)	대							
실적(B)								
비율(B/A)	%							

2. 부대시설 설치

구 분	계	격납고	건조장	정비장	육묘장	기 타
계획(A)	평/동					
실적(B)						
비율(B/A)	%					

3. 사업비 지원

○ 농기계 공급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계 획 (A)					
농기계공급 금액 (B)					
집행액 (C)					
미집행액 (B-C)					
비율	B/A	%			
	C/B				

※ 농기계 공급금액(B)는 받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 구입자금 총액을 기재

○ 부대시설 및 경영비 용자지원

(단위 : 개사, 천원)

구 분	부대시설비		경 영 비	
	사 업 량	금 액	사 업 량	금 액
계 획 (A)				
실 적 (B)				
비율(B/A)				

II. 공동이용조직

1. 사업현황

구 분	조 직 수	영농규모	참여회원	주작목	비 고
계	개소	ha	명	개소	개소
대 규모					
소 규모					

- ※ 1. 주작목란은 수도작, 전작, 과수, 특작등으로 주작목별 조직수를 기재
 2. 비고란은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 조직수를 기재

2. 농기계 공급

구 분	계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기 타
계획(A)	대							
실적(B)								
비율(B/A)	%							

3. 사업비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계 획 (A)					
농기계공급 금액 (B)					
집행액 (C)					
미집행액 (B-C)					
비율	B/A	%			
	C/B				

- ※ 농기계 공급금액(B)는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 구입자금 총액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위탁영농회사 운영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

1. 운영실적

가. 위탁영농실적

○ 농기계 활용

	경운·정지		이앙	수확		건조		방제		기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주행식분무기	동력분무기	
활용대수	대									
작업량	ha									
대당작업량	ha									

○ 위탁영농형태별

	완전위탁	부 분 위 탁							
		경운·정지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육묘+이앙	수확+건조
위탁농가수	호								
위탁면적	ha								
위탁작업료	천원/ha								

나. 운영수지(개소당)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지출		손익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위탁작업	계				
	소작업료		인건비 유수감운 건류가상영 리관리비		
기타소득사	소계 (.)		(.)		

2.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총괄적으로 별지에 작성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설치 지원(자율)

1. 목 적

농업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예방 및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마을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게함으로써 개별 보관시설비를 절감시키는데 있음.

2. '95 지원계획

-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설치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100 개소	백만원 5,500	2,200	2,200	1,100
개 소 당	55	22	22	11
지 원 율	100%	40	40	20

※ 개소당 사업비는 100평 규모 설치기준임.

- 창고설치는 40~100평 규모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알맞은 규모로 설치
- 사업비는 평당 550천원(자담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규모에 따라 지원하며, 총소요액의 80%내에서 지원
- 사업비는 시설설치비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음.
- 시·도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계획은 [별표]와 같음.

3.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우선순위

- 지원대상자의 자격
 - 7호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 마을, 신규조성되는 농업기계공동이용조직
- 우선지원순위
 - ① 농업진흥지역으로 기계화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
 - ② 기계화영농사, 농어민후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
 - ③ 경지정리지역으로 농업생산이 집단화된 지역

4. 사업추진절차

-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홍보토록 조치함.
-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시설설치 및 공동이용계획서, 부지확보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읍·면)에 신청함.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출된 사업계획과 지원대상자의 자격구비요건, 지역여건등을 검토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특별시·직할시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시장·군수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쉽게 설치하고 설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기 보급한 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건설부 공고 제1992-188호: '92.12.22)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함.

5.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공동이용실태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농기계보관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는등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등 공동보관창고의 운영부실을 방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참여농가가 연명으로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 이행토록 하는 한편, 보관창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여 보관창고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6. 보고사항

보고내용	보고자	보고시한	보고서식
○ 농기계보관창고설치 사업추진실적보고 (반기별)	시·도지사	'95.7.31 '96.1.31	별지보고서식

[별 표]

시·도별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도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100	5,500	2,200	2,200	1,100
부 산	3	165	66	66	33
대 구	1	55	22	22	11
인 천	1	55	22	22	11
광 주	1	55	22	22	11
대 전	2	110	44	44	22
경 기	11	605	242	242	121
강 원	7	385	154	154	77
충 북	14	770	308	308	154
충 남	6	330	132	132	66
전 북	13	715	286	286	143
전 남	13	715	286	286	143
경 북	10	550	220	220	110
경 남	15	825	330	330	165
계 주	3	165	66	66	33

(보고서식)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실적보고

1. 사업현황

○ 총 괄

개 소 수	설치규모	참여농가수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개소	평/동	호	천원			

○ 규모별 설치현황

계	40평형	50평형	60평형	70평형	80평형~ 100평형
동					

2. 설치추진상황

계 획	미착수	착 공	설치중	완 공
평/동				

※ 부진사유는 별도 기재

3. 사업비 지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부 담
계 획(A)	평/동	천원			
집행액(B)					
비율(B/A)					

농업기계 기술훈련(공공계획)

1. 목 적

농업기계의 운전조작기술과 점검정비 능력 배양으로 농업기계의 이용을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2. 훈련용 농업기계 및 정비훈련용 장비지원

○ 사업량 및 지원내역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	용자금	자부담
훈련용 농업기계	130대	1,013,840 천원	506,920	506,920	-	-
정비훈련용 장비	27개소	405,000	202,500	202,500	-	-

- 사업기간 : '95. 1 - 12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 지원대상기관 : 시·군 농촌지도소 및 도농민교육원
- 시·도별 지원내역

구 분	계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훈련용 농업기계											
- 사업량	대 130	-	19	14	15	13	19	20	10	16	4
- 국고 보조액	천원 506,920	-	61,412	51,229	55,859	65,434	92,417	50,700	55,214	63,548	11,107
정비훈련 용장비											
- 사업량	개소 27	1	2	1	3	6	4	4	3	1	2
- 국고 보조액	천원 202,500	7,500	15,000	7,500	22,500	45,000	30,000	30,000	22,500	7,500	15,000

- 훈련용농업기계는 지역실정에 맞게 기종과 수량을 조정 선택구입, 정비훈련용 장비는 절단모형, 계측기, 수리장비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있을시는 정비훈련용 공구 구입

3. 기계화영농사 양성

가. 기계화영농사 양성

(1) 양성인원 및 지원내역

구 분	양성인원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	용자금	자부담
기계화 영농사	1,000 명	백만원 600	300	300	-	-

※ 사업비는 훈련비용(교재비, 실습재료비, 강사료, 급식비, 피복비, 합숙비, 현장견학비등)과 기계화영농사에게 지급하는 공구 구입비임

(2) 도별 양성인원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00 명	120	60	70	120	150	170	150	140	20

(3) 훈련기관 : 각도 농민교육원

(4) 훈련기간 : 4주내외(단, 훈련기간을 단축할때는 훈련비 한도내에서 인원을 증가시켜야 함)

(5) 훈련대상자 선발

- 선발대상 : 기계화영농 종사자 또는 희망자로서 농촌에 정착의지가 확고한 젊은 인력
- 선발요령 : 농업기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농민 중심으로 농촌 지도소장 및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선발

(6) 훈련실시

- 시·도지사 책임하에 농민교육원장이 세부계획을 수립·실시함.
- 농기계 정비기능사 2급 및 운전기능사보 자격취득을 목표로 훈련을 실시함.

나. 기계화영농사 선정

- 선정자 : 시·도지사
- 법적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제3항
- 기계화영농사증 수여
 - 시·도지사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기계화영농사 훈련과정 이수자증 훈련기관 자체 평가에 의하여 성적이 60점이상 취득자에 대하여 기계화영농사로 선정하고 기계화영농사증(별지 제1호 양식)을 수여함.
 - 기계화영농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기계화영농사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별지 제2호 양식)을 수여함.
 - 기계화영농사 훈련성적 60점이상 자로서 기계화영농사수료증을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받은 경우에 기계화영농사증을 수여함.

다. 지원 및 사후관리

- 기계화영농사는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조직, 농어민후계자, 농지구입 자금 지원대상자, 전업농등 정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함.
- 마을단위 농업기계 수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계화영농의 기술 지도 및 자문요원등으로 지정하여 활용함.

4. 농업기계 기술훈련 추진

가. 농촌진흥청장

- '95 농업기계 기술훈련 세부 지침을 작성 시달하고 지도함.
 - 기능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자격검정 지도
- 위탁영농회사 요원에 대한 농업경영 교육실시
- 농업기계 점검정비 및 운전기술 훈련교재 개발 보급 등

나. 농협중앙회장

- 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 수리기사에 대한 보수훈련 실시
- 농업기계 실수요자에 대한 농업기계 운전 및 점검정비 훈련실시

다.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농업기계 기술훈련 및 교재개발 협조
-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수리기사에 대한 훈련 협조

라. 생산업체

- 실수요자에 대한 조작기술 훈련실시
 - 농용트랙터, 콤팩트, 스피드스프레이어등
- 대리점 및 수리점 수리기사 정비기술훈련
- 훈련용 교재(슬라이드, VTR테이프, 정비지침서등) 개발등

5. 보고사항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시한	보고양식
시·도지사	○ 훈련용 농업기계 및 정비훈련용 장비지원 실적	분기별	익월 15일	별지 제1호 서식
"	○ 기계화영농사 양성실적	분기별	익월 15일	별지 제2호 서식
농촌진흥청장, 농협중앙회장, 농기구공업협이사장	○ 농업기계 기술훈련실적	분기별	익월 15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양식)

제 호

기계화영농사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하는 19 부터 19 까지 ○ ○에서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기계화영농사로 자격을 갖추었기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기계화영농사로 선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도지사 인

190 × 268 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2호 양식)

계 호

수 료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하는 19 부터 19 까지 농업기계 기계화영농사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0000 교육원장 인

190 × 268 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기술훈련 여건보강실적

1. 훈련용 농업기계 지원공급

(/ 분기)

구 분		계	농 용 트랙터	동 력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스피드 스프레어	곡 물 건조기
공급 대수 (대)	계획 비율 (%)								
예산 (천원)		사업비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비 고			
		계획 확보 집행							

※ 농민교육원 지원분은 ()내서로 표기

2. 정비훈련용 장비 지원 공급

구 분		계	절단모형	계측기	수리장비	공 구
공급 대수 (대)	계획 비율 (%)					
예산 (천원)		사업비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비 고	
		계획 확보 집행				

※ 농민교육원 지원분은 ()내서로 표기

3. 자체기술훈련 보강계획(실적)등 특기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기계화영농사 양성 실적

(/ 분기)

구 분		훈련인원	기계화영농사 선정	국가기술펙취득				
				농기계정비기능사 2급	농기계운전기능사 2급	농기계운전기능사 보	기 타	계
양성	계획 (응시) (A)							
실적	실적 (합격) (B)							
(명)	B/A (%)							
예산 (천원)	계획 예산 확보 집행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비 고			

○ 수리공구 지원 : 명(금액 천원)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 분기)

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대상자	년간계획 (A)	실 적			비 고
					당분기	누계 (B)	B/A	
계				명	명	명	%	

농업기계 사후관리(공공계획)

1. 목 적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공급과 사후봉사를 강화하여 농민의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의 이용율을 높이고자 함.

2. 기본방향

- 수리용 부품 및 장비 확보자금지원으로 사후봉사기능 강화
-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공급자는 신속한 부품공급과 책임 사후봉사
- 폐농기계 수집 처리로 농촌환경 오염 방지

3. 수리용 부품확보 지원

가. 지원계획

- '95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 사업비 : 250억원
- 지원대상 및 개소당 지원한도

지원대상	도 단 위		군 단 위		면 단 위
	부 품 센 터		지정사후봉사업소(대리점)		지정사후봉사업소 (민간수리점 및 농협서비스센터)
	농협	업체	갑류 및 을류	병류	
개 소 당 지원한도	백만원 1,000~ 2,000	600	100	50	20

※ 면단위 수리점(민간, 농협)중 시설기준이 대리점 "을"류 이상인 경우는 50백만원 지원

- 용자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년리 3%
- 지 원 액 :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기간 : '95. 1. ~ 12.
- 자금용도 : 부품확보자금등
- 지원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부품센터는 도지사)
- 지원대상자 선정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수리용 부품확보자금 상환잔액이 있을시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도로 함
- 제조업체의 경우는 도단위 부품센터 7개소이상, 정비공장 5개소 이상을 확보한 업체의 부품센터에 한하여 부품확보자금을 지원함.

나. 지원절차 및 관리

- 수리용부품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후봉사업소는[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용자지원추천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 다만, 부품센터는 도지사에게 신청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농업기계화추진업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원대상자, 추천기관인 해당 시·도지사 및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부품확보자금의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용자취급기관에 용자지원 신청
- 부품확보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는 영농기(3-6월, 9-10월)에는 지원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부품을 보유하여야 함.
- 도단위 부품센터는 수입 및 구형농기계 부품을 중점확보하고 배달차량 운영등 부품의 신속한 공급체계를 강화
- 농업기계 제조업체와 공급자는 제조, 공급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내용년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확보 공급해야 함.

< 수리용 부품확보 기준 >

-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 : 모든부품(내구품, 준소모품, 소모품)
- 대리점 : 준소모품 및 소모품
- 수리점 및 농협 농기구서비스센터 : 소모품

4. 수리장비 지원

가. 지원계획

- '95 농업기계 수리장비 지원 사업비 : 10억원
- 지원대상 및 개소당 지원한도

지원대상	도 단 위	군 단 위	위탁영농회사
	종합수리업소 (제조업체)	거점대리점	
지원한도	백만원 200	50	30

-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지 원 대 상 자	자 금 용 도
종합수리업소(제조업체)	건축비, 수리장비 및 공구 구입비등
농업기계거점대리점	장비시설비, 수리장비 및 공구구입비등
위탁영농회사	재활용농업기계 수집 및 수리장비구입비 등

- 지원액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기간 : '95. 1 ~ 12
- 용자조건 : 1년거치 4년균분상환, 년리 8%
- 지원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종합수리업소는 도지사)
- 지원대상자 선정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 용자 취급 기관 : 농협중앙회

나. 지원절차 및 관리

-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재활용농업기계 수집장비 구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용자지원추천신청서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에 신청함. 다만, 종합수리업소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함.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농업기계화추진업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추천기관 해당 시·도지사 및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농협중앙회장에게 자금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5. 폐농기계 수집처리

가.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 지원계획

- '95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 지원사업비 : 10억원
- 사업량 및 개소당 지원금액

사업량	개 소 당 지 원 금 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5개소	백만원 200	-	-	200	-

- 설치지역 :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기간 : '95. 1. ~ 12.
- 지원액 : 사업비의 80%이내
- 용자금 지원조건
 - 상환기간 : 3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금리 : 년리 5%
 - 자금용도 : 폐농기계의 운반, 상·하차, 해체, 분류, 압축 및 폐유·폐수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시설비
- 용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나. 폐농기계 처리장의 시설설치 기준

구 분	기 준		
사업장의 위치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농기계 처리에 적합한 지역		
작업장·야적장·사무실의 총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장비	명 칭	기 준	수 량
	운반차량	적재정량 2톤이상의 것 (단, 1대는 상차장치가 장착되어 있는것)	2대이상
	지게차	3톤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것	1대이상
	압축기	처리능력 매시간당 3톤이상의 것	1대이상
	절단기	폐농기계 절단에 필요한 것	1대이상
	기타장비 및 공구류	폐농기계 분해, 처리에 필요한 것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것	
환경관련시설	폐유수집 탱크	2,000리터이상의 것	1식이상
	폐유·폐수 처리시설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포장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수집하고 정화하여 배출할 수 있는 설비	1식이상

※ 폐유·폐수의 정화 배출시설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처리를 위탁한 때에는 각각 그 시설을 한 것으로 봄.

다.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 도지사는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여 행정, 지도기관, 농협등에 시달
- 폐농기계 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95. 3. 31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설치위치,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의 사업경력 및 능력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자금 소요액과 대출농협을 명시하여 '95. 4. 2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 폐농기계처리장 지원자금은 도지사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지원함.

라. 운영 및 사후관리

- 폐농기계 처리장 운영자는 시설을 확보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도지사는 폐농기계처리장에서 폐농기계의 수집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기별로 1회이상 폐농기계처리장의 시설확보 상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 지도하고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별지 제4호 서식] 및 수집처리 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 시·도지사는 폐농기계 방치 실태를 반기별로 파악하여 해당농가로 하여금 조기에 처리토록 협조 요청하고 해당농가에서 폐농기계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폐농기계 처리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함.
- 농업기계 생산업체 및 공급자는 새로운 기종의 판매시 대체하는 구기종을 최대한 수집하여 폐농기계 처리장에 인계함.
- 농업기계 생산업체는 공급자가 폐농기계 수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농기계 수집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 시행함.

6. 농업기계 수리불편 줄이기 운동 추진

가. 농업기계 자체점검정비의 달 지정 실시

- 주 관 : 시·도지사
- 대상기종 : 모든 동력농업기계
- 실시자 : 농업기계 보유농가
- 실시방법 : 시·도지사 책임하에 3월 및 12월을 각각 농업기계 자체점검 정비의 달로 정하여 면단위로 1~2일간씩 "농업기계 점검정비의 날"을 정하여 자체점검 정비후 보관(창고등 옥내에 보관)

나. 농업기계 순회사후봉사 실시

- 실시기간 : 3~4월 및 8~9월(연 2회)
- 중앙순회수리반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책임하에 제조업체별로 실시
- 지역순회수리반 : 시장·군수 책임하에 농촌지도소, 대리점, 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등 협동으로 실시
- 농촌일손돕기 운동과 연계실시하고 순회사후봉사 실시후 시·도지사,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 농촌지도소의 농업기계 점검정비 훈련 및 수리지원

- 실시대상 : 전국 182개 농촌지도소
- 실시사항 [농한기 : 대농민 농업기계 점검정비 훈련
 농번기 : 마을단위 중점 순회수리 및 훈련
- 지원사항 : 시장·군수는 수리용 부품공급 및 수리기사 지원

라. 농업기계 사후봉사 불편신고센터 및 고장수리처리센터 운영

- 농어민 불편신고센터에서 농업기계 사후봉사 불편신고 취급 : 도·군·면·농협
- 농업기계 고장수리 처리센터 : 농협 농기구서비스센터, 대리점, 종합수리업소, 제조업체

마. 농번기 사후봉사사업소의 비상근무 실시

- 비상근무 시기 : 이앙 및 수확시기
- 대상사후봉사사업소 : 농협 농기구서비스센터, 대리점, 부품센터, 종합수리업소
- 휴일근무 및 평일근무시간 연장으로 대농민 수리봉사 강화

7. 농업기계 사후봉사의 기관별 추진사항

가. 시·도지사(시장·군수)

- 농업기계 지정 사후봉사사업소의 자격 및 시설 확보상황을 연2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수리용 부품확보 실적, 사후봉사 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사후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함.
- 농업기계지정 사후봉사사업소 점검결과 자격 및 시설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1차 시정조치하고 1개월이내에 시정이 아니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요청
- 농업기계지정 사후봉사사업소가 수리용 부품 공급 및 사후봉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보조지원 대상기종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농업기계 지역순회 수리반을 편성하여 년2회(3~4, 8~9월) 지역순회사후봉사를 실시함.
- 농업기계 자체 점검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년2회(3, 12월) 농업기계를 점검 정비
- 농번기는 농업기계 사후봉사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함.

나. 농촌진흥청(농촌지도소)

- 농업기계 교관, 지도사 및 전문수리기사등 농업기계 기술훈련을 실시
- 농촌지도소는 소모품 수리용 부품을 확보하고 년중 점검 정비 훈련 및 순회 사후봉사를 실시

다. 생산업체 및 지정사후봉사업소

- 공급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내용 연수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확보 공급하고 사후봉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은 제품을 교환해 주어야 함.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발생한 고장은 무상 수리하여야 함.
-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하였을때 제품을 교환해주어야 함.
-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10일이상을 초과할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여야 함.
- 도단위 사후봉사지정업소는 전부품을 확보하고 년중 순회 수리봉사하여야 함.
- 군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지정업소(대리점)는 소모품 및 준소모품을 확보하고 년중 수리봉사를 하여야 함.
- 면단위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수리점)는 소모품을 확보하고 년중 수리봉사를 하여야 함.

라. 농협중앙회 및 농기구서비스센터

- 도단위 부품센터는 전부품을 확보하고 수리용 부품공급차량 및 탁송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부품공급체계를 확립
- 농협 농기구서비스센터는 수리용 부품을 확보하고 공급한 기종에 대하여 책임 사후봉사
- 농기구서비스센터 자격 및 시설기준을 사후봉사지정업소(대리점)의 "병"류 기준으로 보장하도록 지원 및 지도하여야 함.

마.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 농업기계공급업체 및 사후봉사 지정업소가 부품공급 및 사후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년2회(3~4, 8~9월) 전국 순회 사후봉사를 실시하여야 함.

8. 보고사항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시한	보고양식
시·도지사	○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 추진실적	분기별	익월 15일	별지 제4호 서식
"	○ 폐농기계 수집처리 실적	반기별	익월 15일	별지 제5호 서식
시·도지사 및농기조합 이사장	○ 농업기계 순회사후 봉사 실적	-	사후봉사실시 후 1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농협회장 농기조합 이사장	○ 농업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 및 공급 실적	반기별	익월 15일	별지 제7호 서식
농기조합 이사장	○ 농업기계 사후관리자금 지원대상 선정현황	-	선정후 10일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전면)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신청서

1. 신청자

업 소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정번호(일자)		부품확보자금상환 잔액(지원받은경우)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소의 자격 및 시설		" 예 " : 대리점 을류	

2. 부품확보 용자금 신청

금회용자신청금	천원	자금 사용 시기	19 년 월
부품확보총소요자금	천원	현재고부품금액	천원

위 용자금을 농업기계 수리용 부품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오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업 소 명 :

대 표 자 :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후면)

부품 확보 계획서

기종명	총 확보계획		신규 확보계획		현재고	
	종수	금액	종수	금액	종수	금액
	종	만원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봉사 시설 및 수리장비 용자지원신청서

1. 신청자

업 소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 정 번 호		총 자 산	백만원
부품현보유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2. 용자금 신청

자금용도	수 량	단 가	금 액		
			계	용자신청액	자 담
		천원			

위 용자금을 농업기계 [종합수리시설
거점수리시설
재활용 농업기계 수집시설] 자금으로 사용

하고자 하오니 용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 : [종합수리 시설설치계획 및 수리장비 구입내역 1부.
거점수리시설 설치계획 및 수리장비 구입내역 1부.
재활용 농업기계 수집시설 구입내역 1부.

(별지 제3호 서식)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사업 계획 및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상 호(업종)		자본금(재산)	백만원
시설장비 확보계획	대지 m ² , 시설 m ² , 장비 종	점	
투 자 계 획	백만원	자금지원 요청액	백만원
시설·장비설치 예정지			
사무실 예정지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폐농기계 처리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제 출 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장비 및 인력확보 사업계획서(기확보분 포함) 1부. 2. 폐농기계 수집처리 경력 및 실적설명서등 참고자료 1부. 			

(별지 제4호 서식)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 추진실적

1. 대 상 자

- 사업소재지 (상호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2.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비율 (%)
			계	용자 금	자부 담	계	용자 금	자부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의 총면적 ○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차량 - 지 계 차 - 압 축 기 - 절 단 기 - 기타장비 및 공구 ○ 환경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유수집탱크 - 폐유 · 폐수시설 	3,000㎡ 이상 2대이상 1 1 1 2,000ℓ 이상 자가설치 위탁처리								

(별지 제5호 서식)

폐농기계 수집처리 실적

1. 수집지역 : 개시군
2. 수집기간 : ~
3. 기종별 수집실적

(단위 : 대)

계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	방제기류	수확기류	기 타

4. 수집방법

- 순회수집 : 대
- 위탁수집 : 대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순회사후봉사 실적

(시·도, 농기구조합)

1. 실시지역 : 개시군 개읍면
2. 실시기간 : -
3. 사후봉사 참여업소수 : 개소
4. 사후봉사 차량 : 대
5. 사후봉사 수리기사수 : 명
6. 기종별 점검 수리실적

(단위 : 대)

계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	방제기류	수확기류	기 타

※ 농기구조합은 업체별로 작성

7. 부품교환액 : 백만원(그 중 무상교환액 :)

(별지 제7호 서식)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 및 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업 소 명	업소수	확 보		공 급		재 고		비 고
		수입부품	수입부품	수입부품	수입부품			

※ 농기조합 : 생산업체별 공장 및 부품센터의 부품현황
 농 협 : 부품센터별 및 서비스센터의 부품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 자금 지원대상 선정

(단위 : 백만원)

업 소 명	계 획		/ 분 기		누 계		비율	비고
	개소수	금액(A)	개소수	금 액	개소수	금액(B)	(B/A)%	
계								
○ 부품확보 자금								
부품센터 (농협)								
부품센터 (업체)								
대 리 점								
수 리 점								
농협농기구 서비스센터								
○ 종합수리 시설								
○ 거점수리 시설								
○ 농업기계 재활용수집 시설								

농업기계 수리 및 운전요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공공계획)

1. 목 적

농업기계 수리 및 운전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보충하여 부족되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영농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자격

-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의 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자로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의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자
-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자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으로 종사하는 자

3. 산업기능요원 편입

- '95 산업기능요원대상 : 366명 (수리요원 293명, 운전요원 73명)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 대상인원 범위내에서 적격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추천 편입 조치토록 함.
- 시·도지사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4. 편입소요 인원조사 및 신청

- 시·도지사는 위탁영농회사와 사후봉사업소의 다음년도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소요인원을 조사하여 8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함.

5. 복무 및 관리

-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3년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의 관리책임 : 업체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 업체의 장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의 일일 복무상황 점검관리
 - 시장·군수·구청장 : 월1회 이상 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의 복무상황 점검관리
- 기타 산업기능요원 편입 선발요령 및 복무관리 세부요령은 기계 51130-29 ('94.1.18)호의 요령에 따른다.

6. 보고사항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시한	보고서식
시·도지사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현황	년별	8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결과	"	다음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현황

(단위 : 명)

○○시·도

일련번호	시·도	금년도 배정		금년도 편입		다음년도 소요인원			비고
		농기계운전요원	농기계수리요원	농기계운전요원	농기계수리요원	계	농기계운전요원	농기계수리요원	
계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결과

분 야	시 · 군 명	성 명	편 입 일 자
농업기계 수리요원			
농업기계 운전요원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공공계획)

1. 목 적

농업기계화와 시설장비 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농업기계 및 시설기자재의 생산 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우량농업용 국산기자재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2. 지원대상

농림용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의 생산업체

3. '95 예산 및 지원조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시설 지원계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금	자부담
시설농업 기자재 생산지원	7개소	백만원 3,500	-	-	3,500	

-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
- 지원액 : 사업비의 80% 이내
- 자금용도 : 농림용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의 생산시설 및 건축비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4. 대상자 선정

- 생산시설 설치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정하는 생산시설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95. 3. 15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상태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학계, 관련기관, 단체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규모를 정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후 해당 업체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함.

5.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등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장비구입등 사업착수 및 완료결과를 확인보고하며 추진상황을 설치완료시까지 반기별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농협중앙회장은 자금지원실적을 월별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한다.
- 자금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융자금을 회수하는등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공공계획)

1. 목 적

영농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농기계의 사전생산비축으로 수급원활 및 가격안정 도모

2.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생산비축자금 지원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금	자부담
농업기계생산비축자금지원	개소 20	300 억원	-	-	300	-

- 자금용도 : 농기계 생산비축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기계화사업자금으로 지원 공급되는 농기계의 생산업체
- 지원조건 : 연리 5%,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3. 지원대상 선정기준

- 농기계 매출액, 당해년도 생산계획,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등을 감안하여 대상업체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지원

농림수산사업추진흐름도

농 립 수 산 사 업

시기 기관별	사 업 준 비 년 도 (전)			
	전전년 12월	1 ~ 3월	4 ~ 6월	7 ~ 9월
농 어 민 및 생 산 자 체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상 시 영 농 어 구 상 및 신 청		
	공 고	- 제시된 통합실시요령내용을 참고하고 관련기관의 자문을 얻어 사업계획서 작성 - 읍·면, 시·군, 지도소, 농·수·축협, 농어촌진흥공사에 접수		
유 관 기 관 (읍·면사무 소 및 농(어) 촌 지도소, 농 수 축 협 농 진 공)	- 투융자계획 - 사업의 종류 - 신청자격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장소, 절차등 ⇒ 20일이상 각기관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게재	신 창 (1.15)	계 획 수 립 지 원 -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 사업계획상담 및 수립지원 - 시·군, 도 및 중앙의 투자계획 전산프로그램운영 및 취합자료분석지원(농어촌진흥공사 지원단)	
		취합조정 - 우선순위결정 - 사업규모결정 - 대상자선정 - 시군농발심의회의 ⇒ 결과공개		
시 · 군		사업계획제출 및 예산요구(2.15)		
도	(공공계획추진사업) 신청접수 : 전전년 8.31	종합조정 - 도계획(안)작성 - 도농발심의회의 ⇒ 결과공개		
		도농어촌발전계획제출 및 예산요구(3.15)		
중 앙			- 각국은 농발계획을 기초로 각년도 예산요구안 작성→기획관리실제출	
		검토조정	예산 확보 및 도별가 내시	

추진흐름도

